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주는

2013 규제개혁백서



2013 Regulatory Reform Book

2013

REGULATORY REFORM BOOK



88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주는

규제개혁백서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공정하게
지켜주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발간사



“규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한 규제개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백서발간을 계기로 규제품질제고와 규제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규제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과제 852건을 발굴하여,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국정과제와 규제정비과제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철회 및 개선권고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생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규제개혁보다는 국민과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발족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개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고 일선부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통한 규제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규제총량제가 도입되고 일몰제가 대폭 확대되는 등 규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행정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확산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각오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직무대행

김태준

내일을 꿈꾸는 국민,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밝은 등대가 되어
새로운 길을 밝히겠습니다.



2013. 9. 2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출범 장면





2013. 9. 2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출범 장면

국민의 삶은 행복하게,
기업의 가치는 높게,
규제개혁은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희망의 날개입니다.



금융규제(카드사 정보유출)관련 회의 장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부산)



규제 애로사항 현장점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장면





민생 경제는 안정하게,
기업의 경쟁력은 강하게,
합리적인 혁신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분과위원회 및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장면

제1장 |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20

1. 규제개혁의 의의 20
2. 2013년 규제개혁 추진 21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23

1. 추진체계 개요 23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4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29
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31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35

1. 규제 등록제도 개요 35
2. 등록대상 규제사무 35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36

제2장 | 기존규제의 정비(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40

1. 개요 40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41

제2절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개선방안 43

1.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념 43
2.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서의 규제개선 44
3.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주요 산업·업종 분야에의 적용 47

제3절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51
1. 추진 배경	51
2. 그간 추진실적	51
3. 향후 추진계획	59
제4절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	60
1. 추진배경 및 경위	60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61
3. 향후 추진계획	66
제5절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68
1. 추진 배경	68
2. 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68
3. 주요 내용	69
4. 주요 성과	71
5. 향후 계획	72
제6절 수요자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	73
1. 추진 배경	73
2. 주요 내용	74
3. 향후 방향	78
제7절 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	79
1. 추진 개요	79
2. 개선 방안	80
제8절 2013년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	81
1. 점검 개요	81
2. 점검 결과	82
3. 점검 결과 활용	84

제9절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출범 및 성과	85
1.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설립 개요	85
2. 추진단 규제개선 추진성과	89

제3장 |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94
--------	----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96
---------------------	----

1. 기획재정부 96
2. 금융위원회 110
3. 공정거래위원회 152
4. 관세청 163
5. 금융감독원 171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181
---------------	-----

1. 산업통상자원부 181
2. 중소기업청 206
3. 특허청 214

제4절 국토·해양 분야	222
--------------	-----

1. 국토교통부 222
2. 해양수산부 342
3. 해양경찰청 384

제5절 농림축산 분야	387
-------------	-----

1. 농림축산식품부 387
2. 농촌진흥청 412
3. 산림청 416

제6절 방송통신 분야	437
1. 방송통신위원회	437
제7절 노동·환경 분야	446
1. 고용노동부	446
2. 환경부	465
3. 기상청	510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512
1. 교육부	512
2. 미래창조과학부	529
3. 문화체육관광부	551
4. 문화재청	565
5. 원자력안전위원회	569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574
1. 보건복지부	574
2. 식품의약품안전처	605
3. 여성가족부	626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634
1. 통일부	634
2. 외교통상부	636
3. 국가보훈처	637
4. 국방부	645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647
1. 안전행정부	647
2. 소방방재청	661
3. 경찰청	679
4. 법무부	680
5. 국민권익위원회	685

제4장 |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제1절 규제 일몰제 - 일몰규제 정비 690

1. 규제 일몰제 개요 690
2. 재검토형 일몰규제 근거법령 일괄정비 추진 691
3. 향후 추진계획 693

제2절 규제정보화 추진 694

1. 추진 배경 및 경과 694
2. 규제정보화 사업 내용 695
3. 향후 추진계획 697

제3절 행정조사 정비 698

1. 행정조사 개요 698
2. 행정조사 정비원칙 699
3. 2013년도 행정조사 운영 및 정비실적 700
4. 행정조사 정비 세부내용 700
5. 행정조사 시스템 구축 700

제4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701

1. 개관 701
2. OECD 국제회의 참석 701
3. APEC 국제회의 참석 704
4. 규제개혁 경험전수 706

제5절 규제영향평가 707

1. 개요 707
2.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709
3. 향후 계획 713

제5장 |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3년 규제개혁 평가 716

1. 규제개혁평가 개요 716
2. 2013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717
3. 부문별 평가결과 717

제2절 2013년 규제개혁 평가 및 전망 719

1. 들어가며 719
2. 규제개혁 내용 측면 720
3. 규제개혁 시스템 측면 725
4. 결론 731

제3절 2014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732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732
2. 중점 추진분야 733

부 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738

- 가. 행정규제기본법 738
-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752
-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일부개정 2013.5.24) 763
- 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68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770

- 가. 규제개혁위원회 770
- 나. 경제분과위원회 773
-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2013년) 775

01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20

1. 규제개혁의 의의 20
2. 2013년 규제개혁 추진 21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23

1. 추진체계 개요 23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4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29
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31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35

1. 규제 등록제도 개요 35
2. 등록대상 규제사무 35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36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익을 주는
규제 개혁 백서

희망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능동적으로 듣고,
기업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제1절 |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김유일 사무관

(044)200-2452

enogengi@pmo.go.kr

1.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속성상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 질서를 재편성하게 되므로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왜도난마와 같은 해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이다.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고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도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들의 새로운 규제기법들과 규제개혁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2. 2013년 규제개혁 추진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로드맵으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채택하였다.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고, 풀 것은 과감히 풀겠다는 ‘투 트랙’ 방식을 취하는 등 종래의 단순한 규제완화와는 다르게 접근하였다.

내수시장 위축과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기업 경영상의 애로 및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규제개혁의 역량을 보다 결집하였고,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점검 등 성과 점검과 홍보 노력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였다.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국정기조에 맞추어 5대 중점분야를 선정, 창조경제 생태계조성 및 성장동력 확충, 민생경제 안정 및 시장경제질서 확립,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교육, 국민안전, 문화융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각 부처가 총 852개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 중 765개의 과제를 완료하였다.

특히 창조경제·투자활성화 촉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안전·환경·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보완·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 규제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위해 대국민 과제 공모, 부처 자체규제개선추진단 운영, 민원·언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2)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창업과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 활동을 자유로이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금지되는 행위만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기업관련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및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완화, 재검토 일몰을 설정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문턱을 낮추고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둔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을 유도하였다.

(3)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과제발굴·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분야별 옴부즈만(중소기업, 외국인투자, 산업융합),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 3차례에 걸쳐 총 335개의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 개설 등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하였고, 규제개선 현장간담회(톡톡 톡^{talk})를 개최, 권역별로 산업계를 직접 방문하여 규제개선 현황 전파,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4) 규제의 품질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성과 홍보

부처별 규제개혁과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고,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처별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연말 최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을 독려하였다.

또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기업·오피니언 리더 대상별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범부처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사례집 ‘규제개선 톡톡(제1호)’을 발간하였고, 국민이 알고 싶은 규제정보의 쉽고 빠른 원스톱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합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하였다.

제2절 | 규제개혁 추진체계

최병근 사무관
(044)200-2398 cbk3095@pmo.go.kr

송지영 주무관
(044)200-2437 yonha999@pmo.go.kr

권예진 사무관
(02)6050-3292 syuri0107@pmo.go.kr

1. 추진체계 개요

가. 추진체계의 변화

참여정부에서는 덩어리 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던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운영하였다(13.2.28. 폐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손톱 밑 가시 등 규제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업무 추진체계

(1)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개선과제의 관리 및 평가, 불필요한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 관련 제도의 운영을 담당한다.

(2)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규제 관련 현장애로 및 국민 불편사항의 발굴·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애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로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손톱 밑 가시’ 포함), 기존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 접수, 발굴 및 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자치단체 규제집행 실태 확인 및 개선과제 이행상황 현장 점검 등을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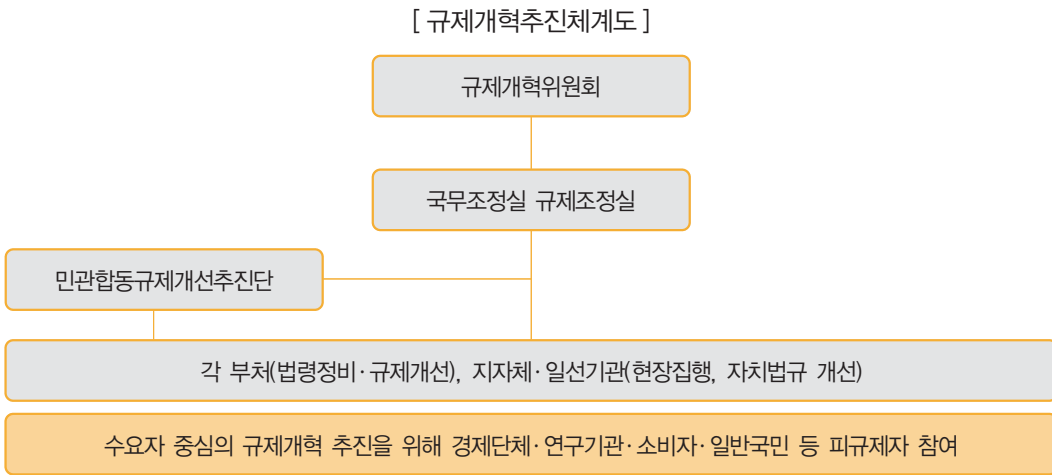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3.8.16. 총리훈령 공포)

(3) 중앙행정기관별 규제법무담당관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가. 구성 및 기능

(1)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3) 구성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5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2013.12.31,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정 흥 원 김 용 담	국무총리 한국법학원장
정부위원 (6)	현 오 석 유 정 복 윤 상 직 김 동 연 노 대 래 제 정 부	기획재정부 장관 안전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민간위원 (12)	이 병 진 노 명 선 김 주 훈 김 태 준 배 희 숙 사 공 진 김 종 일 박 영 일 백 윤 기 이 명 선 홍 은 주 김 영 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 연구부장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이나루티엔티 대표 한양대 경상대학장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한양사이버대 교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1. 2013.9.20. 김경수 위원, 박통의 위원, 이학태 위원은 임기만료

2. 2013.12.28. 조원철 위원, 이영신 위원은 임기만료

나. 회의운영

(1)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조정 및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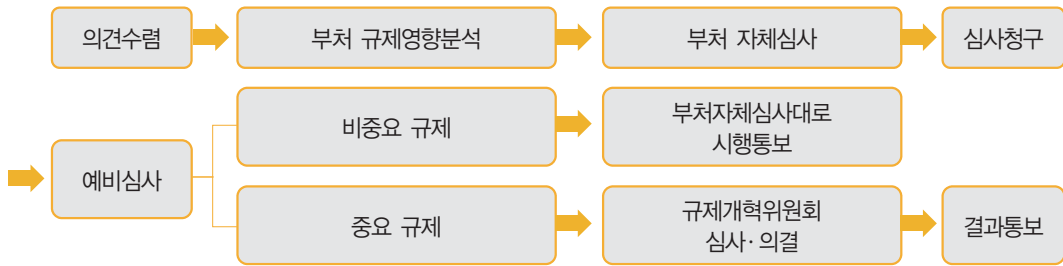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신설·강화규제 심사

(1)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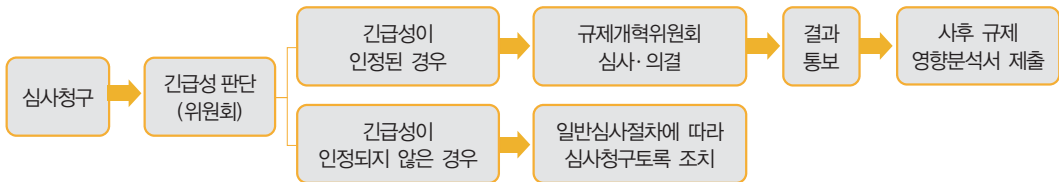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및 기능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3. 12. 31.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7~8인, 정부위원 4인 등 12~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13.12.31. 기준)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민간위원	이 병 진(위원장) 김 종 일 김 주 훈 김 태 준 노 명 선 배 희 숙 사 공 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17개 부처 1원)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 사회	민간위원	(조 원 철)(위원장) 김 영 수 박 영 일 백 윤 기 이 명 선 (이 영 신) 홍 은 주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24개 부처)
	정부위원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 1. '13.9.20. 김경수 경제분과위원은 임기만료

2. '13.12.28. 조원철 행정사회분과위원장, 이영신 행정사회분과위원은 임기만료

나. 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추진기구

(1) 규제심사위원회

①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인~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2) 규제개혁 총괄부서

① 기능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평가, 정부내 규제개혁관련 부처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구성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기구

(1) 기능

광역시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2) 구성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가. 설립 배경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무조정실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운영하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규제의 상징으로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지적하면서 출범해 5년간 1866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폐지 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남은 7명의 민간 조직으로는 규제를 발굴하더라도 곧바로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업들의 추진단 재정비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3년 6월 말부터 추진단을 부활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전신인 규제개혁추진단과 달리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세함으로써, 규제 효과를 통한 경제활성화 외에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추진단 개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부단장을 맡아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①총괄기획팀 ②중기·소상공인지원팀 ③투자환경개선팀 ④민생불편개선팀 등 4팀 26여명(정부13명, 민간13명, 단장제외) 규모로 구성되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가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를 미리 심사하는 사전적 기능을 한다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사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양 기관 간 기능 비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위원회
법적 근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행정규제기본법
관련 규정	<p>제2조(설치 및 기능)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p>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한 불합리한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부처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규제개선의 협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다. 주요 추진업무

추진단의 사업은 통상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발굴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규제개선 → 이행 점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건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추진단은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와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종별·권역별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1)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점검

기업·현장 애로 발굴·개선, 규제개선 성과물 공유·전파 및 이행상황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규제개선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단이 직접 찾아가는 형식의 간담회인 ‘규제개선 톡톡 톡(talk)’을 통해 ‘손톱 밑 가시’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업종별 협회·단체 등이 추진단을 방문하는 형식의 간담회인 ‘규제개선 마중 톡(talk)’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 및 만족도 조사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를 연 2회(1월, 7월) 실시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개선정책 및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3) 연구·조사사업

추진단에서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20명)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및 연구기관·학회 등을 활용하여 이른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는 동일한 분야 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로, 덩어리 규제보다는 범위가 좁고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과제를 의미한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내 규제개선 과제를 포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게 된다.

(4) 우수 규제개선 과제 선정 및 기관 표창

추진단은 규제개선업무 평가를 통해 정부부처의 규제개선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노력한 정부부처 및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정부부처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5)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추진단은 과제 발굴 창구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 및 추진단 홈페이지 Smart Regulation을 개설하였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규제 개선사항에 대해 공유해 나가는 등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The screenshot displays the homepage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Reform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The page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추진단 소개' (Introduction), '규제개선 활동' (Regulatory Reform Activities), '규제건의' (Regulatory Suggestions), and '계시판' (Noticeboard). A central banner reads '기업활동을 함들게 하는 손톱 밑가시를 찾습니다.' (We are looking for the splinter under the nail that hinders business activities). Below this, there are sections for '규제건의' (Regulatory Suggestions) with icons for '인터넷 접수' (Internet), '전화접수' (Phone), '팩스접수' (Fax), and '방문접수' (In-person), and '계시판' (Noticeboard) with a list of recent posts. The footer includes 'Link Service' and 'Family Site' sections.

제3절 |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안창민 사무관

(044)200-2406 cmahn@pmo.go.kr

1. 규제 등록제도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2009년 이후 등록규제를 전산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합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를 통해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등과 함께 부처별·유형별·성격별로 분류된 규제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규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업종별, 규제활동별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 (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는 유사·동일 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로 하고, 동일법령상의 규제조항을 복수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기관 허가, 1개기관 협의 등)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제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들을 하나의 단위로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통합 등록했던 기존의 기준을 바꿔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분리해 등록토록 해, 규제등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등록규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이와 같은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바, 등록 규제 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1998년 8월 총 10,717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과 규제등록방식 변경(개별행위단위 → 사업단위)으로 2008년말에는 총 5,186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등록 및 기등록규제에 대한 정비(주·부수규제로 재분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규제신설 등으로 2013년말 현재 15,269건이 등록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등록규제수]

(2013.12.31. 현재)

부처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2,905	13,417	14,082	14,889	15,269
국토교통부	2,056	2,166	2,225	2,367	2,446
해양수산부	1,314	1,327	1,355	1,453	1,483
산업통상자원부	1,043	1,064	1,154	1,212	1,222
보건복지부	997	1,036	1,107	1,196	1,205
금융위원회	953	1,016	1,039	1,078	1,139
농림축산식품부	723	766	843	879	918
환경부	719	740	780	816	850
고용노동부	511	526	546	568	572
미래창조과학부	485	515	526	555	563
소방방재청	499	503	521	515	520
공정거래위원회	379	426	471	479	480
교육부	427	445	459	465	473
식품의약품안전처	401	408	429	454	455
안전행정부	317	318	353	377	394
문화체육관광부	366	374	378	389	394
산림청	293	297	328	379	394

부처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법무부	201	203	217	227	229
기획재정부	157	160	175	201	214
여성가족부	98	111	116	160	172
중소기업청	134	136	142	145	151
경찰청	143	145	146	148	148
방송통신위원회	92	98	110	125	128
국가보훈처	102	103	104	107	106
문화재청	62	84	98	99	98
원자력안전위원회	90	93	93	97	97
특허청	70	71	72	72	84
해양경찰청	68	68	69	82	82
통일부	48	56	56	56	56
관세청	34	33	36	37	38
국방부	26	27	27	32	36
외교부	32	33	35	35	35
기상청	21	21	21	21	21
농촌진흥청	14	14	15	15	16
국무조정실	0	4	4	15	15
국세청	14	14	14	15	15
병무청	9	9	9	9	9
통계청	5	5	5	5	5
국민권익위원회	2	2	4	4	5
국가인권위원회	0	0	0	0	1

02

기존규제의 정비(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40

1. 개요 40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41

3. 주요 내용 69
4. 주요 성과 71
5. 향후 계획 72

제2절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개선방안 43

1.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념 43
2. 네거티브 규제방식에서의 규제개선 44
3.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주요 산업·업종 분야에의 적용 47

제6절 수요자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 73

1. 추진 배경 73
2. 주요 내용 74
3. 향후 방향 78

제3절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51

1. 추진 배경 51
2. 그간 추진실적 51
3. 향후 추진계획 59

제7절 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 79

1. 추진 개요 79
2. 개선 방안 80

제4절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 60

1. 추진배경 및 경위 60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61
3. 향후 추진계획 66

제8절 2013년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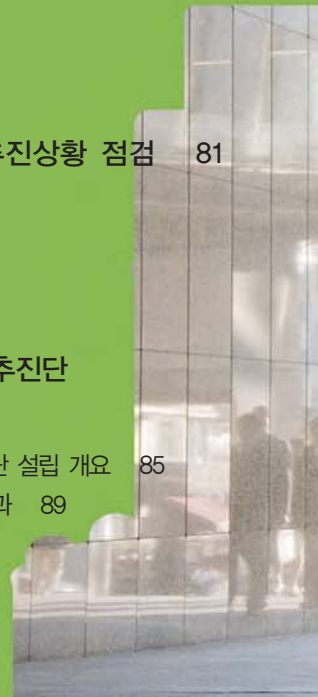
1. 점검 개요 81
2. 점검 결과 82
3. 점검 결과 활용 84

제5절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68

1. 추진 배경 68
2. 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68

제9절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출범 및 성과 85

1.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설립 개요 85
2. 추진단 규제개선 추진성과 89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익을 주는
규제 개혁 백서

혁신

규제개혁위원회는
열린 사고와 투명 경영을 통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기업 중심의 경영을 위한
튼튼한 규제개혁파트너로서
큰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제1절 |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김유일 사무관

(044)200-2452 enogengi@pmo.go.kr

1.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각 부처는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다. 2013년 규제개혁방향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성장동력 확충, 민생경제 안정 및 시장경제질서 확립,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교육, 국민안전, 문화융성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2013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140개 국정과제 중 규제개선 뒷받침이 필요한 93개 국정과제의 이행에 필수적인 규제개혁 과제(852개)를 발굴하였다. 국조실에서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 과제를 종합하여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동 계획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12.4.9.)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과제발굴은 분야별 옴부즈만(중소기업, 외국인투자, 산업융합),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경제 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발굴토록 하였다.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 부담을 주는 핵심적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장애요인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하였는 바, 존치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폐지하되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존치해야 할 경우에는 규제 품질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규제개혁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규제개혁 수혜자 단체와의 협조, 효과적인 교육·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 창조경제 생태계조성 및 성장동력 확충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확대(‘13.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신약의 요양급여여부 평가기간 단축(‘13.8.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식량작물 종자업 시설기준 완화(‘13.5.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 기술형 중소기업 코스닥 시장 상장특례 확대(‘13.2.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 민생경제 안정 및 시장경제질서 확립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장려금·추가비용 기준 마련(‘13.9.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폐지(‘13.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공공기관의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13.4.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교육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확대(‘13.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임신·출산진료비 사용가능한 의료기관 확대(‘13.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확대(‘13.7.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국민연금 장애 심사서류 간소화(‘13.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 국민안전

- 고의적 식품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13.7. 「식품위생법」 개정)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1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13.7.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 문화융성

- 소형호텔업 허용 및 연접규정 완화('13.12.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 설치규제 완화('13.8.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
-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투자대상 확대('13.7.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제2절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개선방안

한아름 사무관

(044)200-2414 hanarum@pmo.go.kr

1.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념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규제개선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방식의 규제로 주로 안전·위생·건강분야 규제에 적용된다. 이와 달리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금지된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규제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활동을 허용하고, 안전·보건·환경 등 최소한의 요건만 규정하여 기업활동의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창의와 혁신활동을 제고할 수 있다.

구분	포지티브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방식
특징	▶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
적용 예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다. 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다.

2.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규제개선

국무조정실은 기업 활동과 관계된 규제를 각 부처와 협업하여 조사한 뒤, 입지·창업 등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에 우선 적용 하였다. 정책 내용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 기술 방식의 변경을 지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업활동 규제 전체(1,845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그 결과 597건에 대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228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825건에 대해서도 규제일몰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단위 : 건, %)

구 분	전 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네거티브 수준 규제완화	재검토 일몰	현행유지
총 계	1,845(100)	597(32.4)	228(12.4)	825(44.7)	195(10.5)
진입요건 ¹⁾	746(40.4)	298(39.9)	103(13.8)	416(55.7)	29(3.8)
기업경영 ²⁾	1,099(59.6)	299(27.2)	125(11.4)	409(37.2)	166(8.9)

1) 입지, 창업, 자금, 인력 부문

2) 기술기준, 영업활동, 물류, 행정절차, 보건·환경, 부담금, 기타 부문

대책의 개선과제 중 파급효과 및 체감도가 큰 대표사례 7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입지여건 개선

- 상수원 보호구역¹⁾ 인근에 산업단지가 공장입지 승인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오·폐수 공동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는 신규 폐수배출업체 입지 및 기존업체도 증가된 폐수를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허용함
- 자유무역지역 입주율²⁾ 제고를 위해 입주자격 중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의 요건을 '30% 이상'으로 완화함

1)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7~20k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제한

2) 7개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현황 : 마산(86.4%), 군산(92.7%), 대불(94.7%), 동해(14%), 울촌(31.2%), 울산(21%), 김제(5.8%) ('13.6월 기준)

- 현재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 공장)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임대료가 제한³⁾되어 있어 임차를 원하는 영세업체의 사업장 확보가 곤란하므로 임대목적의 취득을 허용하여 물량 확대

(2) 창업 활성화

- 영세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의 직접소유 원칙이던 규제를 완화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임차보유를 허용하고 인정 시설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창업시 부담금 면제⁴⁾ 대상을 현행 '제조업'에서 일부 서비스 업종⁵⁾까지 확대
-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납입자본금(5천만원) 및 사무실 확보(전용공간) 요건을 폐지하여 자금은 없지만 전문성을 갖춘 상담회사의 설립을 확대

(3)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개선

-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⁶⁾에 '여행업'을 추가하여,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도모
-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기간이 만료('13.6.30)되어 금지된 관광특구⁷⁾ 내 옥외영업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변경
-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관광객 이용시설⁸⁾ 또는 유원시설⁹⁾ '2종류 이상'에서 '1종류 이상'으로 완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

(4)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개선

- 현행 방송법상 전송망 사업자¹⁰⁾의 등록의무만 규정되어 있어 등록허용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전송망 사업의 등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

3)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기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사업, 벤처기업 등이고, 대상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양도·임대를 제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5 및 28조의7)

4) 중소 제조업 창업시 사업개시 후 3년간 농지전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

5) (예시) 방송·출판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6) 현재는 목욕장업, 보양온천, 부설주차장, 일반음식점업, 미용업, 숙박업 허용

7) 13개 시·도에 28개소 관광특구 지정·운영 중

8)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온천장, 수렵장 등

9) 바이킹, 회전목마 등 각종 놀이기구

10) 유무선 전송설비를 갖추어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사업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하도록 변경

- 별정통신업¹¹⁾의 경우 등록요건¹²⁾이 까다로워서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등록거부 사유만 명시하여 이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입규제 개선
-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이 IPTV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IPTV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도록 중복규제하고 있으나, 중복규제 없이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5)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 현재 말(馬)산업 육성특구¹³⁾ 지정시 농가수, 사육시설, 매출규모 등의 요건¹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 말 사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
- 현재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시 충족하도록 하는 매출액 규모, 모범업소·자격증 소지 비율 등 요건¹⁵⁾을 대폭 완화함

(6) 행정적 규제개선

- 폐수처리업의 등록여부를 시·도지사가 결정¹⁶⁾하도록 하여 사실상 변형된 허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선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율을 개선하여, 제품군 내에서의 품목간 이동 제한을 폐지하고, 제품군 간의 재활용 실적이동도 일점 범위(20% 이내) 안에서 허용

* ① 제품군 내 품목간 실적이동 : 세탁기 200%, 냉장고 0% 달성 → 세탁기 초과 달성분(100%)을 냉장고 미달분으로 실적이동

② 제품군간 실적이동 : 대형기기 제품군 120%, 중형기기 제품군 80% 달성 → 대형기기 제품군 초과 달성분 20%을 중형기기군으로 실적 이동

11)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 모집 및 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13.7월말 현재 등록된 별정통신사업자수는 655개

12)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요건을 갖춘 법인

13) 말산업 육성특구는 '13년 1개소 지정·시범운영, 평가 후 중장기 전국에 5개소(권역별 1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

14) ① 말 사육농가 50가구 이상, ② 말 500마리 이상 사육시설, ③ 말 산업 매출규모 20억 이상

15) ① 외식업체 비율 50% 이상 ② 외식관련 매출 연40억 이상 ③ 모범업소 비율 10% 이상 ④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 40% 이상 ⑤ 외식산업 자격증 소지율 70% 이상

16) 시·도지사가 폐수종류, 처리방법,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 결정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제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경우 받도록 한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함

* 제조·수입업자는 판매업 신고 요건보다 엄격한 안전설비와 인적요건을 이미 충족

(7)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

- 부모협동 어린이집¹⁷⁾의 설립요건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수준(보호자수 11명 이상, 영유아수 11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설립 활성화
-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대상자를 사업장 내 근로직원에서 하도급·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¹⁸⁾
- 현재 모든 공중위생영업자¹⁹⁾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및 이·미용사만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제 완화

3.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주요 산업·업종 분야에의 적용

규제 체감도가 큰 주요 산업·업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의 진입·창업 등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IT·벤처 산업 등 산업 성장속도에 비하여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게 변화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11개 부처가 역량을 집중하였다.

17) 영유아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10조)으로, 설치요건은 영유아 보호자수 15명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수 11명 이상

18) 현행 사내대학 7개 업체 종업원수 중 입학대상자는 전체의 21%에 해당

19)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이 해당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주요 산업·업종 규제개선 목록]

연번	추진과제	소관부처
1	선박투자회사 규제 합리화	해양수산부
2	재활용 폐자원 순환산업 활성화	환경부
3	쌀 가공산업 진입장벽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4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	식품의약품안전처
5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	국토교통부
6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7	콘텐츠산업 육성 촉진	문화체육관광부
8	인터넷 신산업, 방송·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미래창조과학부
9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국무조정실
10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	보건복지부
11	공공정보의 공유 및 개방 활성화	안전행정부

선박투자회사 규제 합리화를 위해 인허가 요건을 네거티브로 전환하였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선박에 투자하고 그 선박을 빌려줌으로서 발생하는 대선료에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그러나 선박투자업 인가와 선박운용회사 허가에 있어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하거나,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자의적인 법 집행의 우려가 상존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인허가제의 원칙허용으로 개선하였다.

재활용 폐자원 순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기술을 대폭 허용하였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한정하여 가능하였다. 재활용 사업자가 신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개발할 경우 제도권내에 편입된 이후에만 사용가능하여 제도반영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사전 제한 없이 모든 재활용 기술에 대하여 환경성 심사를 통해 허용해 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기술을 적용한 재활용 설비투자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폐지하였다. 쌀 가공업자의 원료 확보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관리 양곡을 가공업자에게 공급하였었다. 다만 정부관리 양곡을 받으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확보해야 하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떡류 등)의

경우 대부분 해당 규모에 미달하여 중소 쌀 가공업자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가공능력 및 시설기준으로 구성된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을 모두 폐지하여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슈퍼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차별화된 관리를 위해 영업,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서 별도의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여 방문·다단계 비중이 높아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건식에만 기능성을 인정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였다. 이를 개선하여 일반판매업 신고요건(판매시설, 의무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내 제조·판매·물류 기능 입지를 허용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보관·집배송 위주의 운영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제조·판매기능 등 물류 연관기능의 도입을 허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확인시 R&D 투자비율을 일률적으로 5~10%로 규정하고 있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벤처 확인시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를 업종별 특성, 평균 R&D 투자비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뮤직비디오물 심의제도를 개선하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뮤직비디오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였으나, 빠른 유통이 중요한 뮤직비디오의 매체특성을 고려하여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산업계가 자율심의토록 하고, 등급분류 결과가 부적절할 경우 사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등급 분류하도록 개선하였다. 음악산업의 특성과 부합하는 합리적 뮤직비디오 심의제도 개선으로 음악 관련 유통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인터넷 신산업, 방송·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을 위해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의 전송 방식 혼합사용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으로 불리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신유형의 융합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었다.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21개의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벤처기업 집적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시설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입주가능 기업 및 지원시설(벤처창업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의 입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창업자도 대학·연구기관 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기관시설 내 실험실 공장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그간 벤처 투자, 자문서비스 제공 등 분야에서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가 활용이 저조하였으나,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 및 경력 등을 보유한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이들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도록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을 위해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에 유용한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 취약지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환자가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경증환자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일차 의료 중심의 효율적 의료 이용 가능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정부입법 추진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많은 이견이 있어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정보의 공유 및 개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정보보유기관의 법률 개정으로 데이터 제공근거를 확대하고 정보요청기관의 소관법에 제공근거를 명시하는 노력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다.

제3절 |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정재진 사무관
(044)200-2429 koreaajj@pmo.go.kr

이영진 사무관
(02)6050-3393 aldjlsd00@pmo.go.kr

1. 추진 배경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및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과제 등 작지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현실적인 규제(손톱 밀 가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바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정비대책이다.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한 개선대책을 시작으로 11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의한 3차 손톱 밀 가시 개선대책까지 총 428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그간 추진실적

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대책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 추진개요

규제개혁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관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손톱 밀 가시 힐링데스크, '13.1.24.)에서 건의된 299건의 손톱 밀 가시에 대하여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서 집중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2013년 2월 19일 총 94건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선과제 개요]

구분	개선 과제
분야별	창업·입지·기술 12건, 자금·금융·세제 14건, 조달·판로 18건, 상생 27건, 수수료·인증비 7건, 인력 11건, 경찰행정 5건
부처별	공정위 23건, 중기청 14건, 지경부 10건, 조달청 5건, 고용부 5건, 환경부 4건, 금융위 3건, 국세청 1건, 경찰청 5건, 기타 24건
법규별	법률 9건, 시행령·규칙 8건, 고시 등 8건, 비법규 사항 69건

(2) 주요 개선내용

중소기업인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을 분야별로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 27건, 조달18건, 자금 14건, 인력 11건 등 총 94건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네일 미용업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3.상)하여 네일 미용업 면허·자격증을 신설
- (나) 공공공사 분리발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여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가 발생되고 있던 것을, 국가계약법을 개정('13.상)하여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 (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개정('13.상)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점감시 업종을 선정하여 상시감독 추진
- (라) 채무불이행 손실을 방지하는 매출채권보험제도가 현재 중소제조업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업무요령을 개정('13.상)하여 건설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
- (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3.상)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연체가산율을 국민연금·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춰(현행 43.2% → 개선 9%) 지연납부 사업자 부담을 완화
- (바) 영세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기술관리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3.하)하여 종업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복잡한 규제·제도를 잘 몰라 과실로 규제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민생형 범죄 기업인에 대해 휴일 소환조사 및 불구속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PC방 등의 생계형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불심검문을 자제키로 하

였으며, 소상공인 배달차량 주정차 위반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과태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추진

94건의 개선과제 이외, 이미 시행중인 과제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기업인이 잘 모르고 건의한 과제도 23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디자인·공예업 1인 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참여 허용,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종 추가변경 등이었다. 또한, 기업인의 불편, 애로는 충분히 공감되나 공익 등과 상충되어 건의를 수용하기가 곤란한 과제는 소송제도 단심제로 개선,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폐지, 참기름 식품기준 완화 등 41건이었다.

나. 1차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손톱 밀 가시) 개선대책

(1) 추진개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은 작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에 대해 국가정책조정회의('13.5.10.)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19일 인수위 주관 ‘손톱 밀 가시 힐링데스크 처리결과 보고회’에서 발표한 94건의 개선과제에 이은 대책으로, 3월말까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련단체로부터 430여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총 130건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기초치된 65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건의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68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개선과제 개요]

구분	130개 개선 과제
분야별	창업·입지 23건, 자금·인력 11건, 판로조달 21건, 영업·환경 23건, 위생·안전 9건, 대중소상생 15건, 재정세제 10건, 기타 18건
부처별	중기청 25건, 국토부 15건, 농식품부 14건, 산업부 9건, 고용부 8건, 조달청 8건, 공정위 7건, 기타 44건
법령별	법률 15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 등 55건, 비법규 26건
개선시기	'13년 상반기 56건, '13년 하반기 66건, '14년 상반기 8건

(2) 주요 개선내용

개선과제 130건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현장 파급효과 및 체감도가 큰 대표사례를 4개 분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부담경감

- 표준가맹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다수 가맹사업자 동의 및 보증금 산정기준 등을 명시토록 하여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연매출 7천5백만원)을 음식·숙박업(1억5천만원) 등 유사업종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나)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규정을 마련하여 하도급 제도를 양성화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매출액 2억원 이상, 디자인전문인력 3인 이상)을 완화하여 우량 중소디자인업체 육성 및 수주기회 확대
-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의무서비스에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MVNO 사업 촉진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

(다) 재기기업에 대한 희망사다리 마련

- 정부·공공기관에게서 회생인가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용자요건(체불임금 50% 선지급)을 완화하여 선의의 사업자 및 체불근로자 보호
-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되는 전기·소방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라) 행정편의적인 사업자 불편 및 고질적 관행 개선

-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인차량 변경등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수료(8천8백원) 부담 경감 및 방문신청 불편 해소

- 공중위생업 폐업신고시 영업신고증 첨부 의무가 폐지되었음에도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관행 폐지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를 이용한 위험물질 운송시 관련 자격증 후대의무를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로 같음토록 조치

다. 2차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국민불편 개선대책

(1) 추진개요

2차 손톱 밑 가시 개선대책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의 및 자체 발굴과제 등 총 425건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 및 주요 이견과제에 대한 조정·협의를 거쳐 총 113건의 대책이 마련되었고 2013년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특히 2차 대책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과제에 대한 개선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기초치된 9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건의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63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개선과제 개요]

구분	113개 개선 과제
분야별	창업·입지 12건, 자금·인력 12건, 판로조달 21건, 영업·환경 9건, 기술인증 10건, 대중소상생 6건, 국민불편 19건, 기타 24건
부처별	안행부 14건, 산업부 11건, 조달청 10건, 농식품부 8건, 국토부·환경부·고용부 7건, 기타 49건
법령별	법률 11건, 시행령 19건, 시행규칙 18건, 고시 등 35건, 비법규 30건
개선시기	'13년 하반기 97건, '14년 상반기 16건

(2) 주요 개선내용

개선과제 113건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일반국민에게 현장 파급효과 및 체감도가 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연간 3건) 기준 및 신용평가(B-이상)등 적격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성 평가를 면제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 완화

- 종합우수인증업체(AEO) 공인접수 공개 및 예비심사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유망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통관절차 간소화 등) 강화
-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 연구전담인력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나) 국민생활 불편과제 개선

- 2kg 이내 소규모 우편물의 EMS(국제특송) 우편요금 증량단계를 현행 500g에서 250g으로 세분화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
- 경기도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시험 응시요건인 학력기준을 일부완화 및 폐지하여 예비 체육지도자들에게 자격 취득 기회 확대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던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

(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 중국이 수입화장품에 대해 위생허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함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식약처(CFDA) 등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중국 수출 촉진
-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에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영세 중소서점의 납품 구매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컨설팅 제공 및 상담회 등 추진
- 기술 수준은 우수하지만 경영 역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뿌리기술(공정기술)을 활용하는 기술로서 주력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한 기업 실태를 조사하여 지정요건 차등화 등 개선대책 마련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보증금 면제 대상을 현행 계약전력 5kW이하에서 20kW이하로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체당금 조력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10인 미만의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 보수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노무사 비용 무료 지원

-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수송지원을 받지 못하고 원거리를 이동하여 직접 외국인력을 인수해야 하는 지방소재기업의 불편을 개선하여 영남권 및 호남권 소재기업은 인원 수와 관계없이 대구, 광주 등 거점지역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

라. 3차 손톱 밀 가시 규제개선 대책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1) 추진개요

3차 손톱 밀 가시 개선대책은 2013년 9월 12일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관으로 추진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3년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의 민관합동규제개선조직이 폐지됨에 따른 기업현장의 애로해결 채널 공백을 해소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개선조직 필요성을 반영하여 설립되었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동단장(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아래 1국 4팀 26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민간조직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수요자 눈높이에서 현장중심 활동을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3년 6월 2차 손톱 밀 가시 개선대책 마련 이후부터 10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상의 등에서 발굴한 393건 개선과제와 10월 15일 국무조정실 제1차장 주재로 실시한 부산지역 현장간담회에서 발굴한 25건의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 및 부처협업·조정을 거쳐 총 91건의 3차 손톱 밀 가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 11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하였다. 아울러 기초치된 91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건의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45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개선과제 개요]

구분	91개 개선 과제
분야별	판로·영업 23건, 세제·요금 10건, 민생불편 8건, 금융·자금 8건, 기타 42건
부처별	금융위 15건, 중기청 11건, 고용부·식약처 9건, 기재부 8건, 기타 39건
법령별	법률 11건, 시행령 14건, 시행규칙 13건, 행정규칙(고시·예규 등) 20건, 자치규정(정관·약관 등) 11건, 제도(시스템)개선 22건
개선시기	'13년 11월(18건), '13년 12월(19건), '14년 6월까지(35건), '14년 7월 이후(19건)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2) 주요 개선내용

개선과제 91건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일반국민에게 현장 파급효과 및 체감도가 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 개선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인터넷 통신판매 관련 사전주문 허용
- 농공단지 입주가 제한되는 미생물제조 업종에 대하여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환경적 위해도가 감소되는 경우 입주 허용
- 개인기업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은행별 예규 개정을 통해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을 인정하여 신용평가상 불이익 해소

(나)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 입찰 심사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항목 반영 및 가산배점 부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
- 우체국쇼핑 공급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쇼핑몰 공급권 양도가 제한되었으나, 「우체국쇼핑 약관 및 취급기준」 개정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 허용

(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군·구 등에서만 발급되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외의 대한민국 공관에서도 발급 허용
-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에서 부계약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계약자가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보호예수(코스닥 상장 시 대규모 매도방지를 위해 주식매도 금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

(라)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후 미대출 등의 이유로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보증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필기·실기시험 합격확인서에 대한 발급수수료 폐지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수수료 내역 등을 일반인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소화

3. 향후 추진계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해소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애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마련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체감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매월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2014년에는 업종별 기업, 협회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 4 절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

서문수 사무관

(044)200-2436 sun61@pmo.go.kr

1. 추진배경 및 경위

- 벤처기업은 2014년 현재 2만9천3백여 개로 2010년 최초로 2만 개 돌파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²⁰⁾ 지식창업·1인창업 등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는 등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벤처확인제도, 창업지원요건 등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민간투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2013년 9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확정해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²¹⁾」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전적 창업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현행 창업지원요건, 벤처확인제도 등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 벤처 캐피탈이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지난 9월부터 긴밀히 협업하여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 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9.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

20) 벤처기업 수: '97년 2,042개 → '13년 29,336개: 약 14.5배 이상 증가

21)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국조실의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ICT, 보건의료, 콘텐츠 등 9개 업종은 부처별 우선추진과제로 지정(6.25 국무회의 보고)

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 5월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 금번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분야(창업지원, 입지환경, 투자활성화, 운영지원, 행정제도 개선)와 21개 세부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창업지원

(1) 청년창업 자금지원 대상 확대

- 현재 청년창업자금 용자사업의 경우 제조·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 한해 1억원 이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예: 전자상거래업, 관광관련 서비스업 등)함으로써 창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 ('12) 5,076건 1,326억원 → ('13.8) 2,929건 987억원

- ▶ 「20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에 반영 ('14.1)

(2) 벤처 해외창업 지원

- 현재 중소기업 대한 해외진출 지원책이 있으나 벤처기업에 특화된 해외창업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함에 따라 1천 5백억 규모의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가칭)'를 조성('14년)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창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²²⁾하였다.

22) 국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투자전문운용사 등 참여, 창업초기부터 해외판로, M&A 등 밀착 지원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3) 기술혁신형 기업의 벤처확인 절차 개선

- 현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²³⁾이 인증획득 후 6개월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 기술성 평가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 면제기간을 연장(인증 후 6개월 이내 → 1년 이내, 수혜대상 : 매년 약 2,800개社)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 (’13.12)

나. 입지환경 개선

(1)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 개선

- 현재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입주가능 기업(벤처기업 등)과 지원시설(창투사, 은행 등)의 제한적 허용으로 집적시설 확산이 부족(’09. 86곳 → ’12. 89곳)하고 집적효과도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입주가능 기업(예 :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등)과 지원시설(예 : 벤처창업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의 입주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집적시설 지정 제도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 (’14.6)

(2) 실험실 공장 설치대상 확대

- 현재는 대학·연구기관 시설 내에 교직원(학생)·연구원이 실험실 공장²⁴⁾ 설치시, 건축물 용도변경 등 특례를 적용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벤처창업자도 대학·연구기관 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기관시설 내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14.6)

(3)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

- 신기술 창업전문회사²⁵⁾ 설립시, 대학·연구소는 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2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중기청 인증 (’13.8, 17,198개)
벤처기업 : 기술평가 보증·대출 규모,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연구개발 비율 등을 평가하여 확인(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24) 공해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500㎡이내)을 갖춘 사업장 (’13.8, 43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비율을 완화(예: 10%, 연구용역 실시 예정)하도로 개선할 계획이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14.6)

다. 투자 활성화

(1)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 법제화

- 현재 벤처 투자, 자문서비스 제공 등 분야에서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가 활용이 저조(‘13.8, 100명 내외)한 실정이었으나,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 경력 등을 보유한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여 이들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하였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14.6)

(2) 투자 자금 중간회수 활성화

- 한국벤처투자조합은 △ 보유 투자지분 유동화 애로, △ 다른 투자조합 지분 매입수단 부재로 투자자금 중간회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타 조합 보유지분 매입 허용으로 투자자금의 중간회수가 활성화되도록 개선하였다.
- ▶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13.12)

(3) 투자조합 출자금을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하도로 개선하였다.

	현 행	개 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 '13.8, 개인투자조합 : 90개, 창투조합 : 326개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4.2)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6)

25)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회사 (‘13.8, 15개사)

라. 운영 지원

(1) 외국 전문인력 도입요건 완화

-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기술·마케팅 분야의 외국인력²⁶⁾ 채용을 지원('12년 216명)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전문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개선(석사학위 + 1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 3년 이상 경력자, 7년 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전문인력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 「2014년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공고」 반영 ('14.1)

(2) 기술료 납부 부담 경감

-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일률적 정액을 징수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상기술료제 도입 확대²⁷⁾ 및 징수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4.12)

(3) 벤처기업 再起 지원

- 중소기업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등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제기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14.9)

마. 행정 규제 개선

(1) 창업지원 업종 확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지원 제외 업종²⁸⁾을 규정·운영하고 있는 바, 창업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창업환경을 크게 개선해

26) ① 박사학위자, ② 석사학위 + 2년이상 경력자, ③ 학사학위 + 5년이상 경력자, ④ 10년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
27)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제도(중기청 1개 시범사업 중)

28)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 콘도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나갈 계획이다.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6)

(2) 예비벤처 제도 개선

- 현재는 기술성 평가를 거쳐 ‘예비벤처²⁹⁾’ 확인을 받은 자가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자 할 때 기술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 예비벤처 확인 후 1년내 창업하여 벤처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를 면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 (‘13.12)

(3) 창투자 등록취소 부담 완화

- 현재는 40% 투자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1년 이상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10~’12, 4개社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1년간 투자실적이 없어도 등록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창투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6)

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태조합 운영협의회 책임성 강화

- 모태조합 운영협의회³⁰⁾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4.6월)

(2)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체계 개선

- 운영성과 평가 및 사업비 지원 (現) 매년 평가 → (改) 3년 누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안정성 제고
- 평가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폭 완화 (80백만~20백만 → 60백만~40백만)

29)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 준비 중인 자로서 벤트법상 요건 충족자 (현재 57개社 등록)

30)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부 등 9개의 모태조합 출자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 2014 기본계획 수립 ('14.1)

(3) 창투사 전문인력 인정 확대

- 벤특법에 따른 유한회사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 경력자도 창투사 전문인력으로 인정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6)

(4) 한국벤처투자조합 거래규정 개선

-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주요출자자 및 특수 관계인간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 네거티브 전환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4.6)

(5) 예비벤처 평가기준 개선

- 기술성 평가 항목 이외에 혁신성 등 지표 도입
 -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 ('13.12)

(6) 지도사 등록취소 처분요건 강화

- 중기청장에게 등록된 지도사 등록취소 처분요건 강화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3.12)

3.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이번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과제별 추진일정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규제개선 수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홍보 등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추진계획에 반영된 법령 제·개정시, 규제에 대한 예비심사를 제외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벤처활성화 규제개선 추진실적을 부처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

•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 부 과 제	시 행 방 안	시기
창업 지원	1. 청년창업 자금지원 대상확대	「20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반영	'14. 1
	2. 벤처 해외창업 지원	해외진출 펀드 조성	'14년 내
	3. 기술혁신형 기업의 벤처확인 절차 개선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	'13. 12
입지 환경 개선	1.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 개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관련지침 개정	'14. 6
	2. 실험실 공장 설치 대상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14. 6
	3.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14. 6
투자 활성화	1.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 법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14. 6
	2. 투자 자금 중간회수 활성화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13. 12
	3. 투자조합 출자금 하향 조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 6 '14. 6
운영 지원	1. 외국 전문인력 도입요건 완화	「2014년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공고」 반영	'14. 1
	2. 기술료 납부 부담 경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4. 12
	3. 벤처기업 再起 지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14. 9
행정 규제 개선	1. 창업지원 업종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 6
	2. 예비벤처 제도 개선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	'13. 12
	3. 창투자 등록취소 부담 완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 6
기 타	1. 모태조합 운영협의회 책임성 강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4. 6
	2.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체계 개선	2014년 기본계획 수립	'14. 1
	3. 창투자 전문인력 인정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 6
	4. 한국벤처투자조합 거래규정 개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 6
	5. 예비벤처 평가기준 개선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	'13. 12
	6. 지도사 등록취소 처분요건 강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3. 12

제5절 |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김남기 사무관

(044)200-2407

namki3369@pmo.go.kr

1. 추진 배경

인증제도가 다양·복잡하고 중복되고 있어 기업에게 부담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인증제도간 중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중소기업 평균 보유 인증수 : 14.9개, 연간 보유비용 : 기업당 3,230만원(대한상의, '10년)

2. 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인증이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기술규제로서 검사·검정·형식승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되며, 현재 총 109개의 법정 인증제도(의무 38개, 임의 71개)가 운용 중에 있다.

'90년대 이후 품질, 안전, 환경,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 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 법정 인증제도 현황(누계) : ('80년) 12 → ('90년) 16 → ('00년) 52 → ('13년) 109

그간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06.5월)과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12.7월) 등을 수립하였으나, 후속조치 미흡과 산업기술 위주 시행으로 근원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나. 문제점

인증시험 항목과 기준이 동일해도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인증기준을 차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유발하였고, 대다수 인증제도는 품질·안전·환경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각 부처가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인증간 중복 발생이 불가피 하였으며, 범부처 통합 '신기술 인증제도 (NET)'와 별개로 부처별로 신기술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인증마크도 통일된 원칙 없이 운용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인증제도의 신설 또는 기존 제도의 존속·개선 여부를 종합적·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3. 주요 내용

가. 「시험검사 기준」 통일 및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1) 시험검사 기준 통일

동일제품에 대하여 인증제도간 시험항목은 동일하나, 합리적 이유없이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일치화시킬 계획이다.

전기용품(TV·냉장고 등) 및 공산품(가구·압력솥 등) 총 472개 품목의 기술기준(837종)과 해당 KS표준 전체를 일치화시키고, LED 등기구 등 10개 품목은 유사 시험기준을 일치화시키기로 하였다.

(2)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복수 인증제도간 시험항목과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시험검사 기준이 동일한 고추장, 참기름 등 101개 품목에 대해 인증제도간 시험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3) 상호인정 법제화

모든 인증제도간 동등 수준 이상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상호인정 하도록 개별 근거법령을 일괄 개정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나. 통합 인증체계 구축

KS를 기반으로 하는 범부처 통합 인증모델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품질·안전·환경 등 전문분야별 주무부처가 KS표준을 활용하여 '기본' 인증모듈을 마련하고 해당분야의 KS표준을 개발·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는 인증제도 신설·개편시 '기본' 인증모듈은 그대로 준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만 '추가' 인증모듈을 개발·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유사 인증 및 마크 통합

(1) 신기술관련 인증 통합

교통 신기술, 전력 신기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등 현 NET(신기술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NET에 통합할 계획이다.

* '06년 신기술과 관련된 4개 인증제도(일반·건설·환경·보건 신기술)를 NET(New Excellent Technology)를 신설하면서 통합하였으나, 이후 유사 인증제도(교통·전력·재해·목재·농림식품 신기술)가 추가 신설

실질적인 인증심사 기능은 소관부처가 수행하되, 공통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통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2) 인증마크 통합

20개 부처에서 운용중인 58개 인증마크를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단일디자인 또는 단일마크로 통합할 계획이다.

* (사례 1)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14개 인증마크를 단일디자인으로 통합('12년)

(사례 2) 법정 의무인증 마크(5개부처 13개)를 'KC' 마크로 통합('11년)

라. 인증제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1) 기술규제심사 강화

신규 인증제도 도입 및 기존 인증제도 변경시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부처 인증·기술기준 정보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 및 DB화하여 인증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규제 영향평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2) 인증 일몰제 도입

기존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여부 등을 매 3~5년 단위로 평가하여 인증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3) 총괄·조정기능 강화

분야별 민간전문가, 인증·시험·검사기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회」(국무조정실 주관)를 구성·운영하여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조율 및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4. 주요 성과

가. 「시험검사 기준」 통일

안전기준(전기용품·공산품)과 KS표준 일치화 우선추진 대상품목³¹⁾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품목은 일치화 방향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나. 「유사 시험기준」 일치화

3상 유도전동기 등 7개 품목³²⁾은 KS표준을 개정하여 유사 시험기준을 일치화하였으며, LED 등기구 등 3개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다.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환경표지인증(환경부), KS인증(산업부),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용부), 철도용품품질인증(국토부),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국토부)은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을 시행하고 있다.

31) (전기용품) 100여개 품목 200여종, (공산품) 22개 품목 22종

32) 3상 유도전동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으로, 수도용 새들불이 분수전 등 6개 품목은 위생안전기준으로 일치화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라.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7개 부처 합동으로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전력 신기술, 교통 신기술은 이미 NET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은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사용할 예정이다.

마. 부처별 인증마크 통합 추진

9개 부처³³⁾에서 인증마크 통합 방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해수부와 식약처는 기존 인증마크를 단일 디자인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곧 시행할 예정이다.

바. 「기술규제 영향평가 지침」 제정

국무조정실에서 「기술규제 영향평가 지침」을 제정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사. 인증·기술기준 정보 DB화

시험·검사·인증제도 정보 200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인증·기술기준 공동활용을 위해 국조실·법제처·방사청·해경청·국표원 등 5개 부처와 한국표준협회 등 4개 유관기관간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5. 향후 계획

진행 중인 과제는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33)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중기청, 산림청

제6절 | 수요자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

최지운 사무관

(044)200-2409 bonyduna@pmo.go.kr

1. 추진 배경

가. 검토 배경

2013년에는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규제정비 과제(852건), 손톱 밑 가시 뽑기(334건), 네거티브 규제개선(1,650건)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렇듯 국민 체감도가 미흡한 원인 중 하나로 개선된 내용이 실제 국민에게 전달되고 활용되기 위한 성과홍보 전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3년 기업부담지수는 105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세

*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중 ‘안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28.4%)가 1위

또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3.0 패러다임이 강조됨에 따라 규제관련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전달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나. 현황 및 문제점

규제정보의 전달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 ✓ [성과확산 미흡]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및 제도개선에 행정역량이 집중되어 개선성과 홍보 등 사후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 [통합적 관리 미비] 부처별로 제도개선 추진 시 이루어지는 산발적 정보 전달로는 국민 체감 확보 및 홍보 효과에 한계
- ✓ [공급자 중심] 정부관점의 행정편의적 홍보가 보편적이고, 국민과의 상호소통 및 신속전파가 가능한 뉴미디어 활용노력 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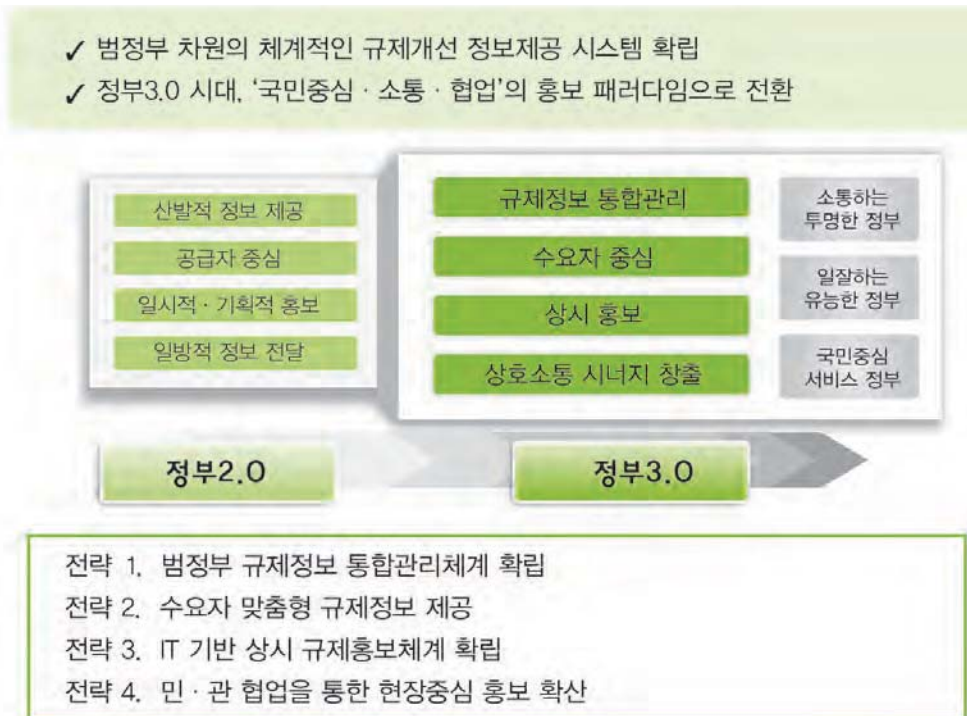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규제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추진 방향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개선 등 규제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정보 전달체계 확립 및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방향으로 크게 4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추진 방향]



나. 추진 내용

(1) 범정부 규제정보 통합관리체계 확립

그간 정부 내부적으로는 규제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나,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범정부 규제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통합 규제정보포털 (http://www.better.go.kr)’을 개설(‘14.1.28. 서비스 오픈)하였다.

‘통합 규제정보포털’은 수요자인 국민이 알고 싶은 규제정보를 쉽고 빠르게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처 칸막이 없이 정부의 모든 규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국민 중심의 규제정보 제공 서비스 포털이다.

[통합 규제정보포털 메인 화면]



- ✓ 긍정적이고 친숙한 홈페이지 디자인·구성
- ✓ 규제심사, 등록, 개선과제 등 규제정보의 투명한 공개·공유
- ✓ 원하는 정보의 맞춤형(키워드, 업종별, 부처별 등) 검색기능 제공
- ✓ 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 성과의 통합 홍보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정보포털에서는 등록규제 현황, 규제심사 일정 및 결과, 규제개선 추진과제 현황, 규제개선 성과 등 정부의 규제관련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참여마당을 통해 국민이 직접 건의사항을 제출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연계 및 네이버, 다음 등 주요 검색사이트를 통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온라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2)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 제공

규제가 개선되어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선의 효과가 전파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례중심의 규제개선 성과정보 제공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핵심 성과정보를 모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성과사례집 ‘규제개선 톡톡³⁴⁾’을 발간하였다.

‘제1호,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고’는 2013년 상반기 개선 성과 중 23개 부처의 총 43개 사례를 담고 있다.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러스트 삽화, 사례 스토리, 전후 개선 내용, 추가 활용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선 톡톡은 정기적인 정보제공 채널로 시리즈로 발간되어 제공될 계획이다.



(3) IT 기반 상시 규제홍보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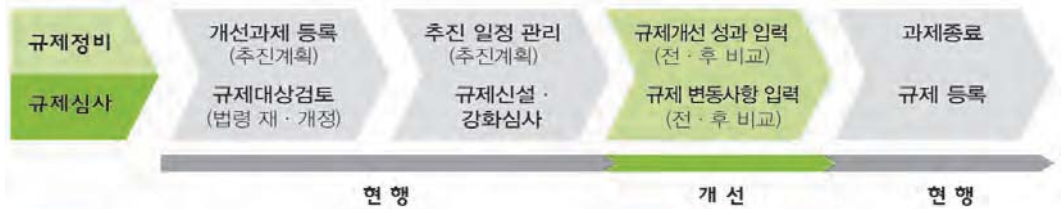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여 각 부처의 규제관련 DB(규제심사 안건, 규제등록, 규제과제 등)를 관리하고 있다. 내부시스템은 효율적인 정부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중심으로 생성된 DB정보의 활용을 통한 홍보에 한계가 있었다.

통합 규제정보포털의 개설로 그간 내부 DB로 관리하던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서 별도의 가공 없이 대국민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

34)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두드리고(톡톡), 소통한다(Talk Talk)는 의미
통합규제정보 포털(better.go.kr)을 통해 ebook 연재

부의 업무 과정에서 규제개선 성과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성과 관리체계를 2014년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규제정보화시스템(정부내부 시스템) 개선]



아울러, 각 부처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의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IT 기반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4) 민·관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 홍보 확산

매체를 통한 규제정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달 못지않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양방향 소통을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13.9.12)하고, 추진단이 주관하여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소통하는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톡톡 톡(Talk)’을 운영하고 있다.

‘톡톡 톡’은 권역별로 산업계를 직접 방문하여 규제개선 현황을 전파하고 건의사항을 듣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추진단 발족 이후 3차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2014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 * 제1차(부산, 10.15.) : 추진단, 지자체, 업계 관계자 120여 명 참석
- * 제2차(광주, 11.19.) : 추진단, 지자체, 업계 관계자 50여 명 참석
- * 제3차(대전, 12.11.) : 추진단, 지자체, 업계 관계자 140여 명 참석



제1 차 간담회(부산)



제2 차 간담회(광주)



제3 차 간담회(대전·충청)

3. 향후 방향

2013년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과 국민과 소통하는 서비스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3.0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이를 반영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규제정책 측면에서도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이러한 규제개선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통합 규제정보포털', 성과사례집 '규제개선 토크',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 규제정책 소통을 위한 채널이 마련되었다.

향후에는 이미 구축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 전달체계를 근간으로 규제정보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더 강화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를 국민에게 적재적소에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4 규제홍보 방향]

규제정책의 투명한 공개, 협업(부처간/민·관)을 통한 통합홍보로 국민 체감도 극대화

- 범정부 홍보채널로써 '통합 규제정보포털' 활용 강화 및 수요자 사용편의 개선
- 규제정보 제공 콘텐츠(2014년도 규제개선 정책 방향 및 내용, 성과사례집 등) 내실화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한 현장중심 규제소통 가속화
- 홍보 협의회, 규제개선사례발표, 규제교육 등 규제홍보 총괄 기능 강화

제7절 | 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

홍성애 사무관

(02)2100-2399

hong@pmo.go.kr

1. 추진 개요

-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제대로 반영·이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선 효과에 한계가 발생하여,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선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조실, 안행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위임규제와 관련된 조례·규칙을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97개의 자치법규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치법규 운영현황 조사결과]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조사 대상	483	42	33	36	27	31	31	32	35	32	23	26	40	26	21	24	24
정비 대상	97	7	2	12	4	12	6	4	9	6	3	7	8	5	3	5	4

- 정비대상이 되는 유형은 규제개선 사항 미반영, 위임사항 미규정, 근거법령과 상이한 규정 적용 등으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 미반영(15개)
 - * 대규모 점포기준을 완화(매장면적 500㎡ → 3,000㎡)하였으나, 조례에 미반영
 - 자치법규에 규제기준을 위임하였으나, 기준 미설정(54개)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에서 위임한 지방의료원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부재
- 근거법령과 다른 기준 적용(17개)
 - * 도시재정부 기반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을 계산시 다른 방식 적용
- 조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규칙은 소관부처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개선 방안

- 자치법규 위임규제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지방간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관리

- 부처·지자체가 개별 운영중인 규제 및 법령정보시스템 연계,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13.7월)
- ⇒ 규제정보 공유, 법령 제·개정 자동알림, 자치법규 정비 요청·점검 등 부처-지자체간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협업·관리

(2) 지자체의 적극적 규제개선 유도·지원('14년)

- 광역자치단체별 매년도 자체 규제정비계획 수립·추진
 - *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반영(안행부)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표준조례안 제공(각 부처)
- 지자체 법제사무 지원을 위한 시도별 자문전담제 실시(법제처)
 - ⇒ 수범사례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제개선 자율경쟁 확산
 - *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부처 공모사업 가점 등) 지급(안행부)

(3) 지자체 규제개선 점검 및 평가

- 부처 규제평가 지표에 '자치법규 정비실적' 반영
- 부처합동 자치단체별 규제개선 이행상황 점검·관리(상·하반기)

제8절 | 2013년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

김남기 사무관
(044)200-2407 namki3369@pmo.go.kr

1. 점검 개요

가. 점검 배경

2013년도 규제개선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일선기관 규제개선 현황 및 현장 착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나. 기본방향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부처라는 인식하에 추진상황을 관리·지원하여 기한 내 규제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운영, 유관과제 합동점검³⁵⁾ 등을 통해 점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 점검 방법 및 주기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매일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며, 중요과제, 지연과제 및 일선 현장의 체감도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분기별로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35) 「13년도 규제정보중합계획」에 포함된 852개 과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손톱 및 가시) 해소대책」 과제 외에 대통령 지시사항 등도 함께 점검 시행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라. 추진 경과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여 국무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매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총리 주재 회의에 보고하였다.

2. 점검 결과

가. 점검 결과 총괄

2013년도 완료하기로 계획된 총 1,067개의 과제(규제정비 종합계획 과제 852개, 손톱 밑 가시 과제 215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963개 과제를 완료하여 계획(1,067개) 대비 90.3%를 달성하였다.

구 분	총 과제수	2013년 완료계획	추진현황		계획대비 완료율
			완료	지연	
규제정비 종합계획 과제	852	852	765	87	89.8%
손톱 밑 가시 과제	243	215	198	17	92.1%
합 계	1,095	1,067	963	104	90.3%

104개 과제는 이해관계자 및 부처간 이견(25개), 입법절차 지연(71개), 정책상황 변화(8개)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과 함께, 인허가 절차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인허가 절차를 수요자 중심에서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13.4.4)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나. 분야별 우수사례

(1) 「창조경제 구현 및 성장동력 확충」 분야

일반미용사 자격없이 네일미용사 자격만 취득하면 네일미용업 영업을 가능하도록 미용사 자격제도를 개선(복지부) 하였으며, 용달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시 최저자본금 5천만원 확보의무를 유예(국토부) 하여 영세사업자를 보호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을 확대(중기청) 하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제를 개선(미래부)하여 창조경제를 지원하였다.

(2) 「민생경제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분야

예비군 휴일 훈련을 확대(국방부) 하고, 간이과세자 신고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축소(기재부) 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판매장려금 항목을 정비(공정위) 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를 강화(국토부)하였다.

(3)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교육」 분야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를 확대(복지부) 하고, 국민연금 장애등급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복지부)하는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효율화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규제를 완화(국토부)하고,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의 신속 공급제도를 시행(식약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였다.

(4) 「국민 안전」 분야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국토부)하고, 국제결혼 신상정보 제공시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을 확대(여가부)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고의적 식품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식약처)하고, 위생점검 요청 기준을 완화(식약처)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불량식품 근절 기반을 확립하였다.

(5) 「문화융성 및 관광활성화」 분야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규제(국토부) 및 중요 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완화(문화재청)하였으며, 고부가가치 관광객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 이동을 확대(법무부)하고, 외국관광객 부가세 환급방식을 개선(기재부)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6)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 분야

회생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증금을 최대 2년 동안 납부유예(산업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차량 등록변경을 온라인으로 처리(국토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를 허용(국세청)하고, 재창업 기업에게 16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중기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절차 개선 (대통령 지시사항)

지자체 인허가 원스톱 처리 전담부서를 신설(안행부)하고, 동원훈련 연기시 일반훈련도 일괄로 연기(국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서식 58종을 일제 정비(경찰청)하고, 민원인이 잇기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쉬운 법정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통보(해경청)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지방세 감면 신청시 제출서류를 면제(보훈처)하고, 특허권자 전입신고시 특허권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특허청)되도록 하였다.

3. 점검 결과 활용

각 부처의 규제개선 추진 실적을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였고,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사례집 ‘규제개선 톡톡’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지연된 과제는 2014년 추진 검토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정부내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과제별 진행 상황을 공개하였다.

제9절 |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출범 및 성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영훈사무관
(02)6050-3297 chojuju@pmo.go.kr

1.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설립 개요

가. 설립 과정

행정규제는 사회 및 시장질서 확립, 국민안전 확보 등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의 삶은 출생부터 교육, 취업·창업, 사망에 이르기까지 행정규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규제는 있어야 마땅하지만 사회적 환경이 달라져 규제가 현실에서 적절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가 애초 의도와 달리 불필요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부담을 지운다고 보고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국민행복’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규제가 10퍼센트 완화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0.3퍼센트 포인트 확대된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규제완화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이런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은 올해 특히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규제개선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부터 규제정비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년 초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개선계획을 수립·정비하기 위해서다. 올해 36개 부처에서 총 852건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8월 31일 기준 395건의 과제가 개선 완료되는 성과를 얻었다. 5월부터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손톱 밑 가시뽑기’ 사업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찾아내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857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두차례에 걸쳐 총 243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8월부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제 전체(1,845건)를 원점에서 검토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된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말한다. 또 ‘인증제도 중복해소’도 추진 중이다.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제도 간 중복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0개 인증 관련 부처는 협력을 통해 인증제도 중복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월부터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일을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다. 규제개선이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을 반듯하게 닦고 있다.

나. 협의내용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운영하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규제의 상징으로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지적하면서 출범해 5년간 1866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폐지 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남은 7명의 민간 조직으로는 규제를 발굴하더라도 곧바로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업들의 추진단 재정비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3년 6월 말부터 추진단을 부활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전신인 규제개혁추진단과 달리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세함으로써,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활성화 외에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추진단 출범 배경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매우 고통스럽고 성가시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는 몹시 괴롭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손톱 밑 가시’부터 빼내야 한다. 가시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온 신경이 가시에 쏠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생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본격 나섰다. ‘손톱 밑 가시’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8월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역할이란 손톱 밑의 가시를 뽑듯 중소기업의 제도나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비롯된 말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경제 단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며, 또한 처음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를 빼주는 것 같은 고통 분담으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작지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기업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잘못된 규제나 관행을 일소해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성장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국민 다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손톱 밑 가시’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밑바탕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대상이다. 큰 틀에서 보면 ‘손톱 밑 가시 뽑기’도 국민행복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박 대통령은 6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하나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참석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모든 부처 공무원이 국민 삶에 적극 관심을 갖고 어떤 게 ‘손톱 밑 가시’인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따뜻한 성장을 이루고 함께 나누는 복지 기반을 조성토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라. 현판식

2013년 9월 12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 등지를 틀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컨트롤타워로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현재 새누리당 ‘손가위’(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부단장을 맡아 추진단 실무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를 총괄하고 있으며, ① 총괄기획팀 ② 중기·소상공인지원팀 ③ 투자환경개선팀 ④ 민생불편개선팀 등 4팀 23여명(정부11명, 민간12명, 단장제외) 규모로 구성되었다. 또 대한상의 임원이 원활한 대외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해 대외협력지원처장을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날 출범식에서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중기·소상공인·민생 불편해소(‘손톱 밑 가시 뽑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개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며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과정에도 기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마. 추진단 개요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가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를 미리 심사하는 사전적 기능을 한다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사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양 기관 간 기능 비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위원회
법적 근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행정규제기본법
관련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한 불합리한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부처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협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15일에는 손톱 밀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 및 11월 말 추진단 홈페이지 Smart Regulation 개선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규제개선사항에 대해 공유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매년 1·7월)를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단 규제개선 추진성과

가. 과제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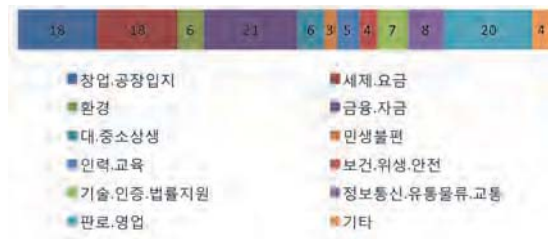
추진단은 12월 초 기준으로 기업 및 국민들의 현장애로 120건을 접수하였으며 47건의 가시년쿨규제를 발굴하였다. 접수유형별로는 E-mail(이첩 포함)이 57%(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간담회(38%, 46건), 전화·팩스(5%, 6건) 순이었다.

	전체 접수건수	'손톱 밀 가시' 과제				가시년쿨
		인터넷	전화·팩스	E-mail (이첩)	간담회	
11월	120	0	6	68(55)	46	47
비율		0%	5%	57%(46%)	38%	

(1) 분야별 접수현황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자금' 분야가 18%(21건)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영업' 분야가 17%(20건), '창업·공장입지'와 '세계·요금' 분야가 각각 15%(18건)이었다.

분야별 과제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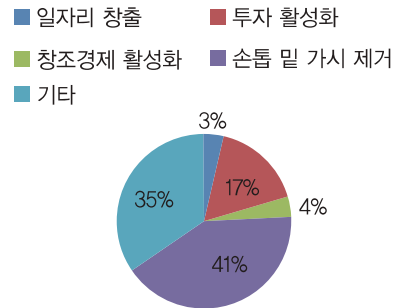
	계	창업·공장입지	세계·요금	환경	금융·자금	대중소상생	민생불편	인력·교육	보건·위생·안전	기술·인증·법률지원	정보통신·유통물류·교통	판로·영업	기타
11월	120	18	18	6	21	6	3	5	4	7	8	20	4
비율		15%	15%	5%	18%	5%	3%	4%	3%	6%	7%	17%	3%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2) 기능별 접수현황

기능별로는 '손톱 밑 가시 제거'(41%, 49건), '투자 활성화'(17%, 20건), '창조경제 활성화'(4%, 5건), '일자리 창출' (3%, 4건)순이었으며 '기타'가 35%(42건)를 차지했다.

기능별 과제접수 현황



	계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창조경제 활성화	손톱 밑 가시 제거	기타
11월	120	4	20	5	49	42
비율		3%	17%	4%	41%	35%

나. 처리현황

접수과제의 82%(98건)는 부처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부처협의를 결과는 '수용'이 8%(8건), '일부수용' 11%(11건), '중장기검토' 6%(6건), '수용곤란' 41%(40건)으로, 29%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부처협의를 (①+②)	진행 중(부처 의견조회 중) (①)	처리결과 (②)				수용률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11월	98	33	8	11	6	40	29%
비율	82%	34%	8%	11%	6%	41%	

다. 개선현황

(1) 분야별 개선현황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업·공장입지’ 분야와 ‘판로·영업’분야가 21%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자금’ (11%, 3건), ‘대·중소상생’ (11%, 2건), ‘기술·인증·법률지원’ (11%, 2건), ‘정보통신·유통물류·교통’ (11%, 2건), ‘환경’ (5%, 1건) 순이었다.

분야별 개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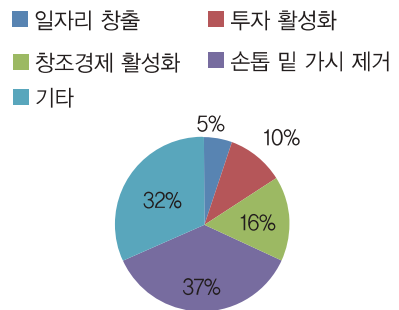


	계	창업·공장입지	세제·요금	환경	금융·자금	대중소상생	민생불편	인력·교육	보건·위생·안전	기술·인증·법률지원	정보통신·유통물류·교통	판로·영업	기타
11월	19	4	0	1	3	2	0	0	0	2	2	4	1
비율		21%	0%	5%	16%	11%	0%	0%	0%	11%	11%	21%	5%

(2) 기능별 개선현황

기능별로는 ‘손톱 및 가시 제거’ 37% (7건), ‘창조경제 활성화’ (16%, 3건), ‘투자 활성화’ (11%, 2건), ‘일자리 창출’ (5%, 1건) 순이었으며 기타는 32% (6건)이었다.

기능별 개선현황



	계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창조경제 활성화	손톱 및 가시 제거	기타
11월	19	1	2	3	7	6
비율		5%	11%	16%	37%	32%

03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94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96

1. 기획재정부 96
2. 금융위원회 110
3. 공정거래위원회 152
4. 관세청 163
5. 금융감독원 171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181

1. 산업통상자원부 181
2. 중소기업청 206
3. 특허청 214

제4절 국토·해양 분야 222

1. 국토교통부 222
2. 해양수산부 342
3. 해양경찰청 384

제5절 농림축산 분야 387

1. 농림축산식품부 387
2. 농촌진흥청 412
3. 산림청 416

제6절 방송통신 분야 437

1. 방송통신위원회 437

제7절 노동·환경 분야 446

1. 고용노동부 446
2. 환경부 465
3. 기상청 510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512

1. 교육부 512
2. 미래창조과학부 529
3. 문화체육관광부 551
4. 문화재청 565
5. 원자력안전위원회 569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574

1. 보건복지부 574
2. 식품의약품안전처 605
3. 여성가족부 626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634

1. 통일부 634
2. 외교통상부 636
3. 국가보훈처 637
4. 국방부 645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647

1. 안전행정부 647
2. 소방방재청 661
3. 경찰청 679
4. 법무부 680
5. 국민권익위원회 685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익을 주는
규제개혁백서

신뢰

규제개혁위원회는
확고한 믿음과 변함없는 열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 나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 옆에 있습니다



제1절 | 개요

이성용 사무관

(044)200-2442 leesy@pmo.go.kr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2013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200건(비중요 규제 포함)을 심사하여 이중 101건에 대해 철회를 권고하거나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철회 또는 개선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13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3년도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G=B+F)
			비중요 (B)	중요			원안 동의 (F)	
				계(C= D+E+F)	철회 권고 (D)	개선권고 부대권고 (E)		
기획재정부	15	40	36	4	0	2	2	38
금융위원회	29	113	78	35	0	18	17	95
공정거래위원회	9	32	15	17	0	12	5	20
관세청	10	10	10	0	0	0	0	10
금융감독원	9	23	20	3	0	2	1	21
산업통상자원부	26	48	40	8	0	5	3	43
중소기업청	10	14	14	0	0	0	0	14
특허청	4	13	13	0	0	0	0	13
국토교통부	99	213	197	16	1	13	2	199
해양수산부	49	96	96	0	0	0	0	96
해양경찰청	2	5	4	1	0	1	0	4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3년도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G=B+F)
			비중요 (B)	중요			원안 동의 (F)	
				계(C= D+E+F)	철회 권고 (D)	개선권고 부대권고 (E)		
농림축산식품부	24	69	68	1	0	1	0	68
농촌진흥청	3	6	6	0	0	0	0	6
산림청	9	24	24	0	0	0	0	24
방송통신위원회	7	14	14	0	0	0	0	14
고용노동부	14	27	16	11	1	7	3	19
환경부	48	99	89	10	0	3	7	96
기상청	1	1	1	0	0	0	0	1
교육부	19	36	26	10	2	2	6	32
미래창조과학부	15	37	36	1	0	1	0	36
문화체육관광부	14	39	23	16	2	10	4	27
문화재청	5	8	7	1	0	1	0	7
원자력위원회	6	10	9	1	0	0	1	10
보건복지부	38	72	63	9	0	4	5	68
식품의약품안전처	29	40	40	0	0	0	0	40
여성가족부	9	21	19	2	0	2	0	19
통일부	0	0	0	0	0	0	0	0
외교통상부	0	0	0	0	0	0	0	0
국가보훈처	12	17	17	0	0	0	0	17
국방부	2	2	2	0	0	0	0	2
안전행정부	18	31	23	8	0	6	2	25
소방방재청	20	26	21	5	0	4	1	22
경찰청	1	1	1	0	0	0	0	1
법무부	5	8	7	1	0	0	1	8
국민권익위원회	2	5	2	3		1	2	4
계	563	1,200	1,037	163	6	95	62	1,099

제2절 |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한아름 사무관

(044)200-2414 hanarum@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5개 법령에 대해 신설 35건, 강화 5건 등 총4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0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부대권고를 하고, 3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334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6.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8.30)	원안의결 11	신설 11 비중요 11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3.9.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관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9.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9.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2회 본위원회 (2013.9.27)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1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70회 경제분과위 (2013.11.2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71회 경제분과위 (2013.12.6)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예비심사 (2013.12.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통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8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신설 35, 강화 5 중요 4 비중요 36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제한 등(강화)
 - 담뱃갑포장지의 앞·뒷면 외에 옆면에도 흡연경고문구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고, 담배에 관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
 - 담뱃갑포장지의 경고문구 표시 및 담배에 관한 잡지광고 제한 사항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6월 7일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포함하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여 개정¹⁾하면서 상이하게 되었는데, 법 적용 및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 ☞ 본 규제 강화에 따라 담배제조사 3개, 수입판매업자 205명('11년 기준)에 대해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제한 관련 의무가 부과되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규제내용을 일치하게 하여 법령 적용·시행상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신설)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해 발급기관의 보고 의무,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부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 ☞ 원산지 발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그간 발급내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던 것을 '보고'로 하고, 소속직원 교육실시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규제임. 또한, 규제대상이 대한상공회의소에 국한되고 규제이행 비용이 크지 않아 원안의결

•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요건 강화(신설)

- FTA 원산지 증빙서류 면제대상 요건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을 과세가격 미화 1천불(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²⁾)에는 그 금액) 이하로서 협정이 정하는 범위내³⁾의 물품으로 변경

- ☞ 본 개정 규제는 그간 통관편의를 위해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를 규정하였으나, 일부 FTA의 경우 국내법과 상이하여 협정에 규정된 내용대로 FTA 특례 법령에 반영하는 사안이어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1) 경고문구 표시 강화('12.12. 8. 시행), 잡지광고 제한 강화('11.12. 8. 시행)

2) 한-아세안 : 미화 200불 이내

3) 한-EU, 한-EFTA, 한-인도 : 용도가 비상업용 물품인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설)
 -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 횟수가 증가할수록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고, 조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의무위반 행위	과태료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불응	50	100	150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100	150	200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점검 거부, 방해, 기피	200	250	300

- ☞ 본 법률 개정안은 동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이 업무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범위(300만원) 내에서 과태료 기준이 설정되었고 가중 또는 감경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청렴계약서의 제출 및 내용(신설)
 - 입찰참여 업체가 중앙관서의장(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위반시 입찰 취소, 계약 해지)을 체결하도록 하고, 청렴계약 위반이라도 국가의 손실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입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없이 계약을 이행시킬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제 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절차를 정한 사항으로, 조달청이 내부규정(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근거하여 既 시행중이던 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규제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강화)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를 ‘경쟁입찰’ 단계의 담합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이행’ 단계의 담합까지 확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그간 담합을 ‘경쟁입찰 과정’으로 제한함에 따라 조달사업법상 ‘계약체결 과정’인 다수공급자계약⁴⁾ (MAS,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 경쟁⁵⁾에서 담합이 적발되어도 부정당업체 제재가 어려워, 보완 필요하였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규제비용이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정비(신설)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부당·부정한 시공뿐만 아니라 부정·부당한 ‘감리’까지 추가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부당·부정 시공에 대한 ‘감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위임범위(계약 이행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내에서 부당·부정 시공에 대한 책임을 정한 것으로 그간 부당 또는 부정한 시공·제조에 관여한 감리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로 부정당업자 일차참가 제한이 불가한 한계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철도·궤도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면제 규정 삭제(신설)

-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공사로 분류되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었던 철도·궤도 공사를 납부 의무 대상으로 포함

☞ 성실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만, 그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성실한 시공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완 필요(계약 당사자의 귀책에 대해 철도공사에서 하자보수 부담)하였으며, 철도·궤도 공사 참여업체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이행보증서로 대체하므로 부담은 과다하지 않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징금 부과대상과 절차(신설)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당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담합, 뇌물제공, 서류 위·변조 등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과징금 납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근거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액수 및 감경기준을 마련함

4) 품질, 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조달청이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 → 수요기관은 별도 입찰공고 등의 절차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5) 1회당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수요기관이 5개 이상의 계약대상자에게 제안요청 후 제안서 평가(MAS 선정 업체간 2단계 경쟁)를 거쳐 조달업체 선정

- ☞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부당당업자 제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원칙이나, 건설업계 요청을 반영하여 기획박탈의 대체 수단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것임을 감안할 때, 법에서 위임한 부과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과징금으로 대체 불가한 대상(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지 않은 담합, 뇌물제공, 서류 위·변조 등)을 별도로 두는 것을 과도한 규제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징금 제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과징금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제도가 약화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소송 및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가능함. 과징금 납부 절차, 부과액수 및 감경기준 등은 유사 입법례를 감안시 적절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4)

• 입찰서 제출 등(신설)

- 전자조달이용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이용자는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 기재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전자조달이용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 ☞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전자조달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 후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도록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자간 구성비율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입찰자 실적평가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유사사례를 참조할 때에도 입찰서 제출 후 협정서의 제출 또는 변경을 금지하여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신설)

-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보증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전송하고,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 입찰보증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토록 규정

- ☞ 동 규제는 현행 법령상 제출하는 서면보증서 대신 전자적으로 보증서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전자조달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입찰 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전자조달을 통한 입찰수수 증대에 따른 입찰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등(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이용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
 - ☞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시에서 그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달청 고시(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그 수준도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체료의 경우 납입기한 도과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여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연체료 수준을 고려할 때에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료 분류, 원안의결
- 과태료의 부과기준(신설)
 - 법률에서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동 명칭을 사용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하였으며, 조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범위(500만원) 내에서 과태료 기준이 설정되었고 가중 또는 감경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유사 입법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료 분류, 원안의결

(6)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신설 11)

- 명칭에 관한 규정(신설)
 -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특정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대표성 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가 아니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유사 명칭도 사용 금지
 - ☞ 소수 협동조합만이 참여하는 연합회가 국가·지자체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역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조합 가입 시 편중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유사 명칭 사용금지를 통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와 거래상대방(조합원·일반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료 분류, 원안의결

-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신설)

- 현재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는 설립시 시·도지사에게 신고(법 제15조 및 제71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 시와 동일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설립신고 수리를 보완·반려하는 경우를 규정

☞ 협동조합등은 영리활동을 하는 법인임을 고려하여 설립을 자율화하되 최소한의 규제인 신고제를 도입하였으므로, 신고사항을 변경(예: 총회 의결로 정관 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규제로서 당초 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고확인증 발급절차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다는 편익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출자 및 책임(신설)

- 현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출자 1좌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도록 규정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으로 명문화

☞ 동 규제는 소수의 고액 출자자에 의해 사업운영의 편중이 발생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출자 1좌 금액을 균일하게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신설)

- 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 임기, 선출방법, 자격 등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 대의원총회 의결은 총회 의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대규모 협동조합등의 경우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 정수의 최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의원 정수의 기준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에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임원에 관한 규정(신설)

-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게 하고,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성명과 주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 신설

☞ 임원은 자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으로만 구성된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세력화 또는 정치적 악용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성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겸직금지 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신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소에 비치해야 할 운영공개 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경영공시 사항을 명확화하여 규정
 - ☞ 내부 조합원에 대한 운영공개 및 외부 고객에 대한 경영공시를 통해 협동조합등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음 아울러 경영공시는 시·도의 전산망 및 종합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공개에 따른 비용에 비해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법정적립금에 관한 규정(신설)
 - 현재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기자본'은 유동적이므로 그 기준을 고정자산인 '출자금 납입총액'으로 수정
 - ☞ 법정적립금 기준을 자기자본으로 하는 경우는 적립금액이 계속 변경되는 문제가 있는 바, 고정자산인 출자금 납입총액을 법정적립금 기준으로 규정하여, 협동조합 운영상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편익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법인등의 조직변경 및 경과조치(신설)
 - 상법상 법인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전환) 하는 절차 및 의결 정족수, 등기 의무를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자 및 법인의 조직변경 절차를 규정(경과규정, 법 시행일 2년이내)하고 전환 의결 정족수를 강화
 - ☞ 동 규제는 조직변경 시 최소한의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인 전환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상법과 동일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그 적정성이 인정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잔여재산 처리방식 특성상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경우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됨. 따라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규정(신설)
 -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의 관리·감독을 위한 보고·검사 규정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시정 명령권 신설
 - ☞ 협동조합연합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조합원·일반 국민 등)을 보호할 수 있음. 보고, 검사 및 시정조치 등의 감독사항은 협동조합연합회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요, 개별 협동조합법,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수준을 준용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취소사유(신설)

- 사회적협동조합이 법 제111조 제4항의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에 2회 이상 불응 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

☞ 동 규제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률의 다른 인가취소 사유와 비교할 때에도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신설)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사유 신설

☞ 동 규제를 통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중복·혼동 명칭 사용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사 입법례의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할 때에도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원산지증명서발급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신설)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 세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탁받아 수행하므로 그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 사항’을 ‘자료제출 및 지도·감독 사항’으로 보다 명확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및 지정취소(신설)

-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및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동 규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8) 관세법 개정안(신설 4)

- 선(기)용품 적재허가 준수 의무 부과(신설)
 - 현재 외국선박 등에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적재 시 세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허가받은 대로 적재할 의무를 부과
 - ☞ 동 규제는 현행 적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면세물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편익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보세사·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신설)
 - 현행 규정상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이 자신의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함
 - ☞ 보세화물은 운송 또는 취급과정에서 밀수·관세포탈 등 불법행위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운송·취급하는 자에 대한 자격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유사 법률에서도 자격(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탁송품의 최종 배송주소지 제출(신설)
 - 현행 규정상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탁송품의 수입통관목록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매월 단위로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할 의무 추가
 - ☞ 동 규제를 통해 당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 상 수하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 주소지를 파악함에 따라, 조세포탈 및 불법물품 반입을 위해 실제 배송 주소지를 달리한 경우를 적발하여 제재할 수 있고, 또한 각 업체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규제준수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영업정지 등(신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지정취소 사유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를 추가
 - ☞ 동 규제를 통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제출된 개인·기업의 수출입현황·과세자료 등 개인 및 영업상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등의 부당한 이익 취득을 위한 업무상 정보누설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9)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 보세판매장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중소기업·중견기업 특허비율 규정(신설)
 - 보세판매장(면세점)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 부여시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특허비율 신설하는 규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총 특허수의 100분의 60미만, 중소기업·중견기업은 총 특허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임
 - ☞ 대기업의 면세점 과점적 운영제한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참여기회 확대 측면을 고려하여 동 규제안은 원안 동의하고, 다만,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 및 면세산업의 상황변화 등에 따른 신속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일몰(3년) 설정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신설)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현행 면적 기준에서 당해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은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으로 조정
 - ☞ '3년도 특허수수료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경제발전 및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상향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동의
- 보세판매장 특허시 특허심사 평가기준(신설)
 - 보세판매장 특허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특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으로 특허기준, 관세법령 위반여부, 면세점 운영능력, 경제활성화 가능성, 주변 환경요소 및 보세화물 관리 능력 등을 신설함
 - ☞ 보세판매장은 재무건전성, 주변 관광인프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보세판매업자 특허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판매자 의무 및 판매 게시사항(신설)
 - 전자수입인지 판매기관은 전자수입인지의 모양, 발급방법, 환매시 유의사항 등을 판매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전자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및 미준수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시 판매계약 해지 규정 신설

- ☞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의 모양 및 발급·환매 유의사항 게시의무를 둬으로써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착오를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일몰(2년) 설정

(1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강화 1)

- 금융보험업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강화)
 - 현지법인의 자회사·손회사의 설립뿐만 아니라 투자금액 변경 및 청산도 변경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영주권 취득시 보고 및 회수의무 면제조항 및 소재불명시 보고의무 면제조항 삭제함
 -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악용은 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자행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방안 필요하고 현행 규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한 현지법인이 자회사·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한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2)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국제행사 주관기관 축소(신설)
 - 국제행사 개최를 위하여 10억원 이상 국고지원 신청가능한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비영리법인·단체 제외함
 - ☞ 비영리법인·단체가 개최하려는 국제행사는 소관 중앙부처가 주관 행사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원·개최가 가능하며, 행사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관부처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행사개최의 타당성 및 예산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가능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동의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범위(신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상위법이 개정·공포(의원입법)되고, 동 시행령에 입찰참가 제한자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
 - ☞ 일부 납세의무자들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

어,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외국환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할 필요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지역의무공동도급(강화)

-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기한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 일몰기한 미연장시 발생 가능한 ‘공사 미발주 지역’ - ‘공사 발주 완료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담배 판매가격 신고(강화)

- 담배사업법상 담배판매가격 공고시 인터넷에 대하여도 공고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하면서 판매개시일 5일전부터 판매개시일 까지 공고도록 규제

- ☞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의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중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의 경우 가격공고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바, 이를 법령에 명문화할 필요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5) 통계법 개정안(신설 1)

- 통계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외 사용금지(신설)

- 통계 공표 이전에 작성중이거나 확정된 통계의 누설 또는 목적외 용도 사용 금지 및 통계 결과를 변경하거나 대외 발표된 공표시기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영향력 행사 금지

- ☞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의 결정기준이 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바 통계자료의 객관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통계공표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 금융위원회

정재상 사무관
(044)200-2416 kkirri@pmo.go.kr

박완근 전문위원
(044)200-2413 wnkpark@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9개의 법령 및 규정에 대해 신설 82건, 강화 31건, 내용 심사 0건 등 총 11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3건 중 1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1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하였으며, 10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2.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고시 등 개정안	제458회 경제분과 (2013.2.28)	원안의결 9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0 중요 4, 비중요 7
3.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3.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제459회 경제분과 (2013.3.1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중요 3
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303회 본위원회 (2013.3.29)	원안의결 5	신설 5 중요5
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4.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4.2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제461회 경제분과 (2013.5.10)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중요 2, 비중요 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61회 경제분과 (2013.5.10)	원안의결 1 부대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61회 경제분과 (2013.5.10)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6.2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8.14)	원안의결 18	신설 18 비중요 18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제465회 경제분과 (2013.8.16)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중요 1, 비중요 5
1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9.6)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9.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8.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466회 경제분과 (2013.9.27)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화 3 중요 3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13회 본위원회 (2013.10.11)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2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68회 경제분과 (2013.10.25)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468회 경제분과 (2013.10.25)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4, 강화 1 중요 4, 비중요 1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제469회 경제분과 (2013.11.8)	원안의결 5 개선권고2	신설 4, 강화 3 중요 6, 비중요 1
2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제316회 본위원회 (2013.11.22)	개선권고 2	강화 2 중요 2
2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8.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9. 은행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제473회 경제분과 (2013.12.2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00 개선권고 12 부대권고 1	신설 82, 강화 31 중요 35, 비중요 78

나. 2012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감사인의 자격제한(강화)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감사인 자격제한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의 감사인까지 확대
 -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의 분식회계·부실감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사전적 예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의 일부 자격을 제한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감사인의 자격 제한으로 감사품질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품질관리제도 개선(신설)
 -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금융위의 품질관리기준 제정 승인을 규정하고, 증선위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사후조치안(필요한 경우 개선권고와 동 사항의 외부공개) 마련
 - ☞ 현재 시행령, 규정, 공인회계사회 내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감리와 감사인에 대한 조치 내용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의무(신설)
 -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증선위에도 제출을 의무화
 - ☞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기한 준수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하고, 감사인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내부감시기구로 이전(신설)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일체를 회사의 내부감시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전
 -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서 직접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내부감시기구가 외부감사인 선임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업무집행지시자 등 분식회계 조치대상자 확대(신설)
 -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게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조치를 부과하고, 경영진 및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위해서 일정기간 ‘상장법인 임원자격제한’ 조치를 신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게 등기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감안할 때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영진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상장기업 임원취임을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고시 등 개정안(신설 1, 강화 10)

■ 심사내용

-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 제도 도입(강화)
 -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수시심사를 받도록 하고, 6개월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주식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 수시심사 요건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요건충족명령 없는 주식처분명령 요건인 ‘6개월 이내에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할 경우’는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며, 주식처분명령은 재산권에 대한 핵심적 제한으로서 법률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건이 적시되어야 하므로 ‘수시심사의 요건’과 ‘요건충족명령 없는 주식처분명령의 요건’을 하위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대주주에 대한 정성적 평가 요건 도입(강화)
 - 대주주 승인·변경 요건에 정성적 기준⁶⁾을 추가 도입
 - ☞ 정성적 평가에 따른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대주주의 부적격 여부를 질적으로 평가하여 저축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편익이 우월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유사 입법

6)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위반소지가 크지 않을 것,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례⁷⁾를 감안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강화)

- 법령 위반등의 사유로 임원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요구에서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명령으로 강화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한 해임·면직 요구시 처분 확정 시까지 자동 직무정지 되도록 처분 강화

☞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를 해임 요구로 강화하고 직무정지 요구를 직무정지 명령으로 강화함에 따라, 해임안을 주주총회에서 부결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직무정지의 실효성⁸⁾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임직원에 대한 해임·면직 요구 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자동으로 직무정지됨에 따라, 해임·면직 요구와 같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불법행위 신고제도 강화(강화)

-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의무위반시 해임 권고·직무정지 요구, 주의·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함

☞ 사후에 임원의 불법행위 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등 동 규제 도입시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있으며, 금융 관련 타 법률에서도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음

또한,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업무상 임무위반에 대한 책임부과가 가능함에 비추어, 개정안에 불법행위 신고의무는 명시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요건에 의무불이행을 규정한 별표1 제37호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업무상 임무 위반과 같은 사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배임죄, 상법상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에 따라 법령·정관 위반 또는 그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 이사회 구성요건 강화(강화)

-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1/2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

☞ 중립적인 성격의 사외이사를 통해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조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결정된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은행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8) 직무정지 요구시 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개최하더라도 직무정지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강화)

- 당 저축은행에 법률·세무·회계자문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에 재직중인 자 또는 최근 2년 내 그러한 법인에 재직하였던 자를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추가함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사 입법례⁹⁾에서도 해당 저축은행과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편법적 신용공여 및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강화(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주식매입 등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 당해 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 당해 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금지
부실은폐를 위한 신용공여 금지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지
출자자 간 교차대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저축은행 출자자(대주주 등*)와 교차대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출자자(대주주 등)와 교차대출 금지

* 대주주등: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이들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신탁, 자산운용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편법적 신용공여로 동일계열저축은행을 지원하여 연결기준 BIS비율을 왜곡하는 경우를 제재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대주주등에 대해 교차대출을 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폐하는 경우를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등 편익이 있으며, 편법적인 신용공여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9) 은행법 시행령 제15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1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비업무용 부동산의 장기보유 제한 등(강화)
 - 예외적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장기간 보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평가, 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 ☞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해 부실을 은폐하고 건전성 지표를 왜곡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은행법 등 유사 입법례¹⁰⁾를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재(신설)
 - 명의대여에 관계한 자(명의대여자, 명의이용자, 명의대여 관련 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명의대여자에 대해 형사벌 부과
 - ☞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로부터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규제로 보이며 명의대여자도 제재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 유사 입법례 및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적기시정조치 유예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지도인 파견(강화)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지도인을 파견토록 함
 - ☞ 현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파견감독관을 통해 경영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나, 그동안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경영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 파견감독관의 현장감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역할이 제한적임으로 경영지도인의 파견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동의
- 저축은행 경영평가 요건 추가(강화)
 - 자본적정성 평가항목에 자본구성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평가항목에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하여 경영평가 요건 강화
 - ☞ 자본적정성 항목의 경우 은행 등 유사 사례¹¹⁾와 같이 제도 정착과정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한 것이며, 자산건전성 항목의 경우 기존 평가항목을 보다 구체화
 - ☞ 이러한 경영평가 요건 개정을 통해 자본충실도를 제고하고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저축

10) 은행법 제39조(비업무용자산등의 처분), 자본시장법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11) (은행업 감독규정) 2012년 8월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자본구성의 적정성' 도입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권이 없음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3)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상한액 상향 조정(신설)
 -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 ☞ 현행 업무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회계법인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실화¹²⁾함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편익에 비추어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예대율 규제(신설)
 -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을 80%로 제한하되, 대출금 200억원 미만 소규모 조합은 제외
 - * 시행시점 80% 초과조합에 유예기간을 부여('14.1월까지)
 - ☞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조합의 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예대율 기준 설정은 필요
 - 다만, 2012년 6월 기준 예대율이 80%를 초과하고 있는 122개 조합(전체 2,344개 조합의 5.2%)의 경우 대출금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유예기간 부여('14.1.1까지)로 비용부담이 분산되고, 햇살론 등 서민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준수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강화)
 - 가계대출 중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및 5개 이상 금융기관(조합 또는 중앙

12) 현행 과징금 상한액(5억원, 2001년도 과징금 제도 도입 당시 설정)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형 회계법인이 21개(2012년 3월말 기준, 전체 회계법인의 약 16%)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이 낮음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회 대출 포함)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설정

-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함

*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적립률을 가산, 다만 경과 조치에 따라 2016년 6월까지 10%, 2016년 7월부터 20%를 가산함

* 신규 대출('13.7.1.이후)에 한하여 적용하되 기존 대출의 경우 차환시부터 적용

☞ 2012년 2월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여 대손충당금이 추가 적립될 예정(6,792억원 규모)이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Coverage Ratio가 2012년 9월 108.1%에서 2015년 7월 129.8% 수준으로 여전히 은행(140.9%)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할 필요성이 인정

☞ ① 상호금융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83.4%, '12.9월)만을 고위험대출로 설정함에 따라 대출계약 및 이에 따른 경기위축 등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② 대출구간별 연체율 및 대출구간별 분포를 고려해 볼 때 3억원 이상 구간을 고위험대출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 ③ 거래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연체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다중채무자의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신탁관련 공제상품 목록 제출(신설)

- 공제상품 신설·변경에 따른 기초서류 심사제도를 '인가 또는 신고'에서 '신고 또는 자율'로 변경함에 따라, 자율상품은 사전 심사에서 제외하는 대신 사후적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

* 감독원장이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할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목록 및 기초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율상품의 경우 사후적 심사를 통해 상품 및 그 판매의 적정성을 감독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공제상품 인가 또는 신고절차에 따라 모든 기초서류 신설·변경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었으므로 자율상품의 경우에도 추가적 비용부담은 없음 감안하여 원안동의

(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계열회사 발권증권의 인수 관련 규제(신설)

- 증권회사가 계열회사 발행 증권에 인수와 관련된 주관회사 업무 또는 최대물량 인수

등의 행위를 제한

- ☞ 상기 규제는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불공정한 가격 산정 등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금융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규제의 실익이 크고 업계의 요구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제 시행시기를 일정기간(6개월) 유예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투자일임·신탁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 제한(신설)

- 투자일임·신탁에 대해 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편입을 제한

*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 ① 투자일임·신탁이 실제로는 펀드와 같이 운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나, 전체 일임·신탁에 대해 펀드와 동일한 규제(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 관련)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② 금융회사 설명의무 및 투자자(수익자) 동의절차 강화 등의 대안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 ③ 상당수 투자일임·신탁이 펀드와 같이 사전 설계·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형식적 동의를 전제로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투자자의 보호가 시급한 점을 고려할 때 원안동의 하되 일몰(2년) 설정

- 계열회사 고위험채권의 투자권유,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편입 금지 (신설)

-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채권에 대한 투자 권유 등 판매를 제한하고 동 채권을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 등 고객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

- ☞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및 투자자(수익자) 동의절차 강화 등의 대안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동 규제 도입으로 고위험채권의 발행 및 유통이 어려워져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나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투자자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하되 일몰(2년) 설정

- 계열회사 펀드 신규판매비율 규제(신설)

-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을 연간 펀드판매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되 펀드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기금융상품펀드(MMF) 및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기존 계약(적립식 펀드 등)에 따른 추가 납입금액은 시행일 이후 2년간 규제대상에서 제외

- ☞ 간접규제에도 불구하고 펀드 판매회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에 대한 우대 관행이 조만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규제비율 수준은 시장상황 및 정책방향 발표 이후 학계·업계 등 다양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의견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임을 감안

중장기적으로는 계열사 펀드 판매 우대 및 이로 인한 투자자 선택권 제약 등 펀드 판매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비율 규제보다는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몰(2년) 설정

- 자산운용 시 계열회사 위탁비율 제한 등(신설)
 - 자산운용사의 계열 증권회사를 통한 매매위탁거래를 연간 50% 이하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변액보험자산 운용금액의 50% 이상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함
 - 자산운용사가 매매위탁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자료 제공과 관련한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
 - ☞ 자산운용사의 위탁매매 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계열사간 상호 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차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권회사 등의 펀드 판매와는 달리 자산운용사의 거래 주문,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등의 경우 고객이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시장규율 작동이 어렵고 그만큼 불공정 경쟁 발생 소지가 큰 점에 비추어 원안 동의

(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대부업 신용정보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설)
 -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을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기관으로 대부업자를 추가
 - ☞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및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의무화(신설)
 - 금융회사 이용자가 非對面 自動化 方式(예: 자동응답전화, 컴퓨터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본인확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본인확인 조치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과태료 부과
 -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최근 피싱(phishing) 등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규제 신설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해외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조치 예외가 적용됨으로써 금번 규제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원안동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자에 대해 형법 상 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도입하고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 처벌도 규정
 - ☞ 형법 상 사기죄 등이 적용되기 어려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동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포괄범위 확대(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을 불특정다수인에서 타인으로 확대하고 대출사기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 ☞ 최근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거래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인을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시스템이 기 적용되고 있어 규제 준수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원안동의

(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상임이사장 선임 조합 기준 강화(강화)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자산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이사장을 비상임화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무상태가 악화된 부실조합의 경우 기존의 상임 이사장을 비상임화, 또한 단체조합은 중앙회 승인을 받은 경우 상임 이사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 현재 상임이사장이 있는 조합의 경우 비상임화가 제재로 작용하도록 하여 사전적으로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부실조합이 되어 이사장이 비상임화되는 경우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을 두게 되어 재무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라 직종단체조합은 종전의 원칙적 면제에서 중앙회가 승인하는 경우 면제받게 되어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다른 단체조합과의 규제 통일성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조합의 상황을 고려한 중앙회의 승인에 따라 종전과 같이 면제가 가능함에 비추어 원안동의
- 대형조합 등에 상임임원 설치(신설)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자산규모, 재무상태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에 상임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형조합(총자산 1,500억원 이상) 및 부실조합에 상임이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총자산 2,000억원 이상 조합(총 21개)의 경우 조합 선택에 따라 상임이사 외에 추가로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총자산 2,000억원 이상 조합(총 21개)의 경우 조합 선택에 따라 상임이사 외에 추가로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 상임임원은 조합·중앙회, 금융관련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형조합의 경우 조합 자산분포, 타 상호금융과의 비교, 조합에 미칠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상임임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실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비상임화됨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상임이사에 의해 전문적인 경영개선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퇴직 임직원 결격사유 명확화(신설)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임·직원으로 '재직 중'에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 후'라도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 수준의 제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4년' 동안 임원 자격을 제한

- ☞ 동 규제에 따라 임·직원이 법령위반 후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해당 조합에서 퇴직하였다더라도 일정 기간(4년)동안 다른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타 금융권 참조 시 자격제한기간(4년)의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동의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대부중개수수료 제한(신설)

-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대부금액의 5%)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해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에 따라 차등화

* 5백만원 이하 : 대부금액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초과금액의 3% + 25만원,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 + 40만원

- ☞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중개에 드는 비용 중 대부분은 광고비, 인건비 등 고정성 경비로 대부금액이 크다고 해서 중개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상한을 대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나, 대부금액에 따라 5%, 3%, 1%의 중개수수료율 상한 적용 시 대부중개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됨으로써 대출금리 인하 및 금융비용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부중개업자의 영업 악화 및 대부중개활동 위축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소액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 5백만원 이하 : 대부금액의 5%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초과금액의 4% + 25만원 /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 + 45만원

• 대부업자 등의 광고행위 규제 강화(강화)

-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

- ☞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해 서민금융지원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허위정보 등에 기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영업정지 요구 사유 명시(신설)
 - 금융회사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심 또는 고액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금융거래 상대방 또는 그 관계자와 공모 등 협력을 한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 재산이 불법재산임을 인지한 경우,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 ☞ 영업정지 처분은 긴급하고 중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법 원칙에 부합하고 의심거래 등의 미보고에 대해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임의적인 준수사항인 법 제4조제2항의 보고 미이행에 대해서까지 영업정지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계속 심사하였으며, 영업정지 요구를 금융거래 상대방 등과의 공모로 한정(불법재산 등의 인지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임의적인 보고 미이행을 제재 요구대상에서 제외한 금융위 수정안에 원안동의
- 심사 분석을 위한 요구자료 범위 확대(신설)
 -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분석을 위해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
 - ☞ 금융정보분석원이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의심거래 분석 등의 정도 제고가 기대되며 제공된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낮으므로 비중요 규제

(1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보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기준 설정(신설)
 -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정보처리업무 위탁 시 위탁계약에 표준계약내용[별표1]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체결 전(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 위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권리, 위·수탁회사의 의무, 감독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 의무위반의 효과, 해외 위탁시의 적용 특례
- ☞ 금융회사가 내부에서 정보처리 업무를 처리할 때와 달리 업무위탁 시 이용자 보호 및 감독권 확보가 어려우므로 업무위탁계약 시 이용자의 권리, 위·수탁회사의 책임 및 정부의 감독권 행사 수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동의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7)

■ 심사내용

- 장외거래의 청산의무(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장외거래의 청산의무를 정하고 그 거래상대방 및 청산의무거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외국 금융투자업자, 청산의무 거래대상은 원화이자율스왑(IRS, Interst Rate Swap)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만기 등에 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및 청산회사의 세부 요건을 정함
 - ☞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국경 간 거래가 많고 거래 규모 및 그 잔액이 크므로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을 감안하여 청산의무를 정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G20 국가 사례 및 거래규모 고려 시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원화이자율스왑(IRS)거래를 청산의무거래의 요건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신설)
 - CCP의 청산대상상품 등에 따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열거하고 청산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요건,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인력 및 설비 등 청산업 인가요건을 규정
 - ☞ 파생시장과 증권시장은 위험 정도가 달라서 전문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주체(CCP)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가업무단위를 구분할 필요성 인정되며 인가요건은 업무의 특성, 위험 정도 및 국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안정적인 청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예비)인가의 신청 및 심사(신설)
 - 청산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요건을 갖추고 그 심사를 위한 (예비)인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예비)인가절차,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 ☞ 동 개정안은 CCP의 인가, 예비인가 신청 및 심사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의 (예비)인가요건 항목을 존용하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청산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추가 또는 강화된 일부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특별한 이해관계 금지(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은 CCP의 임직원이 청산대상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채무보증, 담보제공, 정상적인 거래 활동과정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특별한 이해관계로 규정

- ☞ 특별한 이해관계를 규정함으로써, CCP의 임직원이 청산대상업자 등과 이해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자율성이 줄어드는 제약(비용)이 있으나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한 CCP의 건전한 청산업 영위로 기대되는 공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거래정보의 보관, 관리 및 보고(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보관·관리의무대상인 거래를 청산대상거래(의무청산거래와 자율청산거래)로 한정하고 그 기록유지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으며, 보고의무 사항을 열거

- ☞ CCP가 거래정보 보관·관리 및 정기적 보고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한 거래정보 보고주기(월1회) 및 보관·관리 의무기간(10년)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고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주식소유의 제한(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은 CCP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초과 소유 금지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초과 소유 가능하도록 규정

- * ①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 ②외국CCP와의 제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④제3호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및 비금융회사의 CCP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 CCP의 주식소유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주식소유 집중, 지분권 경쟁 등으로 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가 곤란한 바 주식소유비율을 제한하고 일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 사례 및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신설)

- CCP나 그 임직원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는 정관·청산업무규정의 변경,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인가취소·업무정지 및 해임·면직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他 금융투자업자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며, 의무위반내용에 따른 조치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CCP 및 그 임직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하나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확립하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장외거래의 청산의무에 관한 요건(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장외거래의 청산의무에 관한 일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청산의무거래로 지정된 원화이자율스왑(IRS)거래의 요건 및 이를 청산할 수 있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국경간 거래가 빈번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특성상 외국CCP에 대한 감독 및 협조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절차(신설)

- CCP의 (예비)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 금융시장에서 시스템리스크의 확산을 차단하는 CCP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가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항목은 청산업 인가요건 확인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심사기준 및 인가조건 부과(신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청산회사가 안정적으로 청산업을 영위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 조건 부과사항 및 인가심사 기준 규정
- ☞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조건을 준용한 것으로 청산업의 경우에도 경영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판단되며 인가심사기준은 업무의 특성, 위험 정도 및 국제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안정적인 청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신설)
 - 청산회사(CCP)의 정기보고, 즉시보고사유 및 보고방법 등을 규정
 - ☞ 보고방법은 유사사례 고려 시 CCP가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즉시보고사유는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고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8)

■ 심사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경쟁매매 방식 거래에 대한 한도 설정(신설)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경쟁매매 방법으로 매매체결 시 초과하지 않아야 할 거래량 기준을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의 100분의 5(특정종목 기준으로는 100분의 10)로 정함
 - ☞ 다자간매매체결 대상상품의 거래량 기준을 증권시장의 5%(특정종목 기준 10%) 이내로 정한 거래량 기준은 주요국 기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시장 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로 먼저 다자간매매체결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다음 향후 단계적으로 거래량 기준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기준 등(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의 위임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자증권중개회사의 업무기준을 상당 부분 준용하되, 거래 참가자, 가격 제한 폭 등 일부 사항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규로 기준을 마련
 - ☞ 다자간매매체결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다자

간매체결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으며 매매체결 대상 금융상품, 거래 참가자, 매매체결·청산·결제, 투자자 보호 조치 등 업무기준의 내용은 종전의 전자증권중개회사 업무기준 등을 준용한 것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요건(신설)

-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에 다자간매매체결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추가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정함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위한 최저자기자본: 투자매매업 300억원, 투자중개업 200억원

- ☞ 자본시장의 중요 인프라로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공정한 경쟁매매가격 형성, 매매체결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경쟁매매 없이 단순히 거래소 증가를 적용하여 매매를 체결한 종전의 전자증권중개회사(최저자기자본 150억원)보다는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 호가 제시형 매매체결방식의 경우(투자매매업에 해당) 단순중개방식(투자중개업에 해당)보다는 높은 수준의 최저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제한(신설)

-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분할 또는 분할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가액 등에 관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업무를 제한

* 영업정지 조치 등의 기간 중에 평가를 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평가 금지를 위반한 경우,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등

- ☞ 금번 규제는 합병가액 산정 등의 자율성 확대에 대응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며 평가업무 제한 사유 중 업무정지조치 등의 기간 중 평가 및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금번에 시행령으로 옮긴 것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주주간 초과청약 방식의 한도 설정(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실권주에 대한 발행 철회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바, 그 사유의 하나인 주주 초과청약에 대해 배정받을 수량을 시행령에서 청약 주식의 20% 이내로 제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초과청약 제도를 악용한 경영권의 부당한 승계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청약 시 배정받을 주식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번 규제에 의해 기업의 추가 자금조달 기회가 제한되는 등 일부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주주이익 보호를 통한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분류, 원안동의
- 미공개 중요정보 규제대상인 우회상장법인 구체화(신설)
 -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인 상장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 기업결합방법을 영업 및 자산 양수도, 현물 출자 등의 방식으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정함
 - ☞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과 사실상 유사한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방법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거래소에서 자산 및 영업 양수, 현물 출자 등을 통한 우회상장에 대해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번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에 분류, 원안동의
-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투자 한도 설정(신설)
 -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투자 한도를 보험회사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
 - ☞ 투자자와 보험회사 간 이해상충 방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계열 및 비계열 자산운용회사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을 위해 계열회사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자산운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 3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심의 시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펀드 판매, 자산운용회사 주문 위탁, 보험회사 변액보험 운용 위탁 등에 50% 한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원안 동의한 바 비중요 규제에 분류, 원안동의
- 사모전문투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신설)
 - 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직무정지 후 1개월 이내 미보정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명시
 - ☞ 금번 규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PEF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등록요건 및 동 요건 유지의무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투자자 이익 보호 및 PEF의 정상 운용 등의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른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 사유와 유사한 수준으로 PEF 업무집행사원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비중요 규제에 분류, 원안동의

- 준법감사인 선임이 면제되는 신용평가회사 범위(신설)
 -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은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사인 선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준법감사인 선임 대상 신용평가회사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외부감사 선임 요건(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을 감안할 때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신탁업자 등)와는 달리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사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경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신용평가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칙(신설)
 - 신용평가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행위를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 *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신용평가의 요청인 등에게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신용평가회사 간 교차·연계평가 행위 등
 - ☞ 신용평가제도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평가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신용평가회사와의 정보 교환, 재산상의 이익 획득, 신용평가회사 간 교차평가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신용평가서 제출·공시 등(신설)
 -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에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에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금융위 등에 제출·공시되는 서류 및 제출 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함
 - * 신용평가방법(제·개정일로부터 10일), 신용평가서(신용평가 결과 종료일로부터 10일), 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류
 - ☞ 신용등급이 변동되더라도 신용평가서를 통해 동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용등급 변동 시 현재 신용평가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신설)
 -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신용평가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비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취소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용평가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취소 사유,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상 다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어 규제준수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

• 거래소의 시장개설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 등(신설)

- 거래소의 허가제 전환에 따라 거래소 시장개설 단위 및 단위별 최소자기자본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자본시장법 상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 등을 준용하여 ① 사업계획 요건 ②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 요건 ③ 정관 등의 요건 ④ 대주주 요건 ⑤ 사회적 신용의 세부내용 ⑥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을 정함

시장개설 단위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최저자기자본 (억원)
1e-1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2,000
1e-11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1,000
1e-12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1,000
2e-1	장내파생상품	3,000

☞ 시장개설 단위는 자본시장법(제373조의2 제1항 제1호) 상 금융투자상품 구분(주권, 주권을 제외한 그 밖의 증권, 장내파생상품)을 준용하여 최소 필요 수준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으며 거래소 허가단위별 최저자기자본도 자본시장법 상 최저자기자본 요건(1천억원)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과도하지 않고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 등을 준용하고 있어 규제준수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

• 거래소 허가 및 예비허가 신청(신설)

- 거래소를 허가제로 전환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위임에 따라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거래소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 허가(예비허가 포함) 신청서 기재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 등 거래소 허가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 허가요건 심사 등에 필요하고 거래소 허가방법·절차 등은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회사(CCP)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

• 거래소에 대한 조치(신설)

- 거래소의 허가제 전환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의 위반에 대해 거래소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의 근거를 명시
- ☞ 거래소의 정상적인 운영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소의 허가 취소 사유,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증권금융회사 등 다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준용하고 있어 규제준수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료 분류, 원안동의
- 조건부자본증권에 적정성 원칙 적용 등(신설)
 -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에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하고 아울러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사유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 감면 사유 발생의 경우를 포함
 - ☞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법률상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지만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이 감면됨에 따라 투자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점에서 파생상품과 같이 일반투자자에 대한 적정성 원칙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 전환이나 원리금 감면 사유 발생 시 주요사항으로 보고하여 시장에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료 분류, 원안동의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의 사유(신설)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를 반영하여 “[별표 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에 종합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위반한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제·변경 시 금융위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경우,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파생상품 매매현황 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소규모펀드 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등을 포함
 - ☞ 종합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위반 시 동 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대한 조치 근거가 필요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시 및 이를 통한 동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사모펀드 운영현황 등의 보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조치 근거 필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펀드 합병요건 미충족 등에 대한 조치 근거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료 분류, 원안동의
- 부동산 자문·일임 등록요건(신설)
 - 투자자문·일임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외에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투자자문·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을 정함

- ☞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이 현행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및 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걸맞게 최저자기자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에 추가된 부동산 및 관련 권리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의 경우 현행 등록요건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자기자본 기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 원안동의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신설 4, 강화 2)

■ 심사내용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준수사항(강화)
 - 현재 신용카드 모집자는 회원모집 시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개정안은 설명시기(여신상품 권유단계에서부터) 및 설명의무사항(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 소비자 보호 사항을 보다 명확화하여 의무 부과
 - ☞ 소비자가 상품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권유단계에서부터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른 금융업권 법령에서는 법률상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설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규제 안에 대해 원안동의하되 설명의무는 법률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
-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기준 마련(신설)
 -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과 관련하여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日割) 계산하고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내에 반환하며 이용계약 체결 시 연회비 반환 기준 고지 등을 신설
 - ☞ 신용카드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실제 사용부분은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일 기준에 대한 카드사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규제 이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강화(신설)
 - 신용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카드상품의 수익성과 관련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
 - ☞ 동 규제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 수익성 분석을 강화할 의무가 발생하나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

라 동 규제와 같은 내용의 수익성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 충분히 이행가능하고,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자체 수익성 분석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광고규제(강화)

-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광고 방법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집자 등 제3자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시 여신금융업자등이 작성한 광고물을 사용하도록 의무부과

☞ 신용카드사는 주로 제3자를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므로 모집인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작성한 광고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출모집자의 허위광고, 무단 상호도용에 의한 대출중개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신용카드 거래조건의 임의적 변경 금지(신설)

- 회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 없이는 신용카드 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 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

☞ 회원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강화에 따라 카드사들의 비용이 일부 증가하게 되나 기업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마케팅비용 간접규제 도입(신설)

-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계량평가)’ 및 ‘마케팅비용 관리의 적정성(비계량평가)’ 추가

☞ 동 규제에 따라 카드사들은 수익성 부문에서 마케팅비용 지출비율 및 비용관리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되나 카드사들의 과도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간접규제로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아울러 과당경쟁 개선, 가계부채 문제 해소 등으로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1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기준 등(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78①)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 제외상품을 정하고 추가적인 제외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규정 개정안은 '매매체결대상 제외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함
 - * 거래소가 상장폐지 예정인 증권,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 신규상장종목 등 시가단일가 종목(상장당 일에 한정),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주식,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 대상 증권, 거래소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 (단기과열·투자경고·투자위험·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고려)
 - 한편 거래소 전환 및 추가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 등 업무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 ☞ (매매체결대상 제외상품) 상장거래소에 의해 특별한 시장관리가 필요한 종목 등은 투자자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 인정되며 (보고의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법령 준수 및 거래소 전환기준 해당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효율적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부실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인가(등록) 취소 규제회피 방지(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영업과 관련한 부실 운용사·자문사 퇴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i)부실 운용사·자문사가 인가(등록) 취소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ii)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허위·이면 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
 - ☞ 인가(등록)취소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이면계약 등을 체결하여 형식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부실 운용사·자문사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 금융투자업 시장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해당 비용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실 운용사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운용사 등을 선별함으로써 금융투자업 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100 초과 금지)

산정시 '재담보를 통한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은 재담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한편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현황 등에 대한 금감원 보고 의무를 부과하되, 협회를 통한 보고를 허용

- ☞ 과도한 레버지리 제공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어하고, 재담보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종전 금투업규정시행세칙(§3-20①)에서 정하여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고 협회를 통한 보고는 기존 개인 신용공여 현황보고와 일원화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총 한도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확대(신설)

- 대량보유 보고대상 주가지수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200으로 규정하고, 대량보유보고 기준수량은 1만계약으로, 변동보고 기준수량은 그 20% 수준인 2천계약으로 함

- ☞ 해외 사례 및 기초자산 관련 파생상품 거래 현황을 고려할 때 코스피200지수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대량보유보고(1만 계약) 및 변동보고(2천 계약) 기준수량은 적정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회피 목적의 이면계약 금지(신설)

- PEF의 기업인수 활동과 관련하여 ①대주주 변경심사 ②동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투자제한 등 ③손실보전약정에 따른 규제회피를 위한 이면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 ☞ PEF는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체이므로 위 사항(①②③)을 규제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PEF가 규제회피를 위해 사원간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이를 방지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거래소 허가요건 등(신설)

- 개정 법령(법 § 373-2②iii, 영 § 354-3)에서 거래소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거래소의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 등에 관한 요건(규정안 제8-87 및 별표27) 및 거래소 허가를 위한 본허가·예비허가 신청서 등 양식마련(규정안 제8-89조 및 별표 28, 별지 23, 24)

- 개정 법령(법 § 373-2②ix, 영 § 354-3⑧)에서 거래소의 허가요건 중의 하나인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는 업무정보 및 그 차단 방법을 규정

- ☞ (허가요건 등) 동 요건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거래소 허가제 도입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판단되며 (정보교류 차단 기준 및 방법)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1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매출신고서 면제요건(신설)
 - 증권을 장외에서 매출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매출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나 일정요건 충족 시 동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바, 금융위 고시에 위임된 면제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 * 발행인과 매출인이 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관계가 아닐 것,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 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매출인이 최근 1년간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 또는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과거 6개월간 매출한 수량과 이번에 매출하려는 수량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100 또는 과거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100보다 적을 것
 - ☞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는 비록 증권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 이익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발행인과 매출인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공시 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등을 받은 경우 신고서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제한 등의 조치 기준(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합병 등에 관한 평가업무 금지 위반 또는 현저히 부실한 평가 등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평가업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반 또는 부실 평가의 경중,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제재기준을 정함
 - ☞ 투자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외부평가기관의 법령 위반행위 또는 부실 평가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치 기준을 마련 시 제재 조치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금지 위반 또는 부실 평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별표)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상 과징금 부과기준 및 증권·선물조사 결과 조치기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 등을 준용한 것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실권주 철회의 예외 요건(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실권주(失權株) 발행 철회의 예외¹³⁾를 허용하면서 그 발행가격을 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실권주의 경우 자금조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 주식은 대주주의 경영권 부당 승계, 제3자에 대한 이익 제공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이익 침해 소지가 있는 저가 발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유상증자 시 발행가격에 적용되는 할인율(기준주가 대비)과 비교할 때 금번 개정안의 산정기준이 실권주 발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격 결정 등(신설)

- 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경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미리 정한 목표수준(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이 달성되는 경우로 정함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격을 전환사유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건전성 악화(부실 금융기관 지정 또는 부실징후 기업 통보)의 경우 전환사유 발생일 전 일정기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발행인이 정한 전환가격, 액면가액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전환가격을 정하되, 전환 전에 주식가치 변동 사유 발생 시 가격 재조정을 허용하도록 정함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잠재적으로 채권자의 손실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증권보다 위험이 큰 점, 금번 개정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되어 제도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환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시행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규정에서 정한 전환 가격 및 사유를 재검토하도록 일몰형 규제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13)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주주배정방식)에는 기준주가에 40%의 할인율을 적용,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제3자배정방식) 경우 기준주가에 10%의 할인율을 적용, 불특정 다수인(주주 포함)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일반공모방식)에는 기준주가에 30%의 할인율을 적용

(18)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강화)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Money Market Fund)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를 현행 90일에서 75일로 축소하고 MMF로 하여금 만기 1일 이내 유동성자산을 집합투자재산의 10% 이상, 만기 7일 이내 유동성자산을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며 다만 환매대금 지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자산 의무보유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1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MM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단기금융투자상품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용하여 당초 규정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규제준수 부담을 낮춘 것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수시입출방식의 투자일임재산 운용 제한(강화)
 - 수시입출방식의 투자일임계약(MMW: Money Market Wrap)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MMF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
 - * 신용등급 규제 도입: 상위 2개 신용등급의 채무증권에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가능,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 도입: 투자일임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를 90일 이내로 제한, 유동성자산 비율 규제 도입: 만기 1일 이내 유동성자산을 투자일임재산의 10% 이상, 만기 7일 이내 유동성자산을 투자일임재산의 30% 이상 보유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세계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단기금융투자상품인 MMW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MMF, MMW 등 단기금융투자상품 간 규제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으나 MMW의 경우에도 MMF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대규모 투자자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자산 보유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MMW에 대해 동 의무비율 미충족 시 MMF와 같이 일정기간(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선권고
- 수시입출방식의 신탁계약재산 운용 제한(강화)
 - 수시입출방식의 신탁계약(MMT: Money Market Trust)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MMF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

- * 신용등급 규제 도입 : 상위 2개 신용등급의 채무증권에만 신탁재산을 운용 가능,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 도입 :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를 90일 이내로 제한, 유동성자산 비율 규제 도입 : 만기 1일 이내 유동성자산을 신탁재산의 10% 이상, 만기 7일 이내 유동성자산을 신탁재산의 30% 이상 보유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단기금융상품인 MM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다만 MMT의 경우에도 MMF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대규모 투자자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자산 보유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MMT에 대해서도 동 의무비율 미충족 시 MMF와 같이 일정기간(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선권고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이자율 제한 규제의 유효기간 연장(강화)
 -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인 대부업자 등의 이자율 제한 규제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 규제는 그동안 저신용 가계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 반면 이러한 규제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계층에 대한 금융의 과소공급으로 인한 금융소외, 중소 대부업자의 폐업 및 불법 사금융화 등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자율 제한 규제의 유효기간을 원안대로 연장하되, 추후 일몰 도래 시점까지 그동안의 규제운영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함

(2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신설)
 - 위탁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위험이 큰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판매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권신고서에는 증권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투자자 권리, 투자위험요소 등이 중요사항으로 기재됨에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따라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현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위탁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2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강화)
 - 공중협박(테러)자금 조달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률에 대량살상무기(WMD)확산행위를 추가하고 금융거래제한 지정대상에 WMD확산행위자를 추가하여 금융거래 시 금융위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금융회사 종사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사실 누설금지 의무 규정 대상에 WMD확산행위자를 추가
 - ☞ 테러 및 WMD확산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제재제도 마련 및 국가 신인도 제고 필요하며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WMD확산 및 자금조달 억제를 위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금융자산 동결제도를 도입한 반면에 규제정도가 약한 ‘사전허가’ 제도에 해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화의 범위 확대(신설)
 -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테러행위자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모집하는 것을 금지
 - ☞ 지정사실 인지여부는 실제적 요건인 고의성(‘이롭게 할 목적’)의 판단사항으로 현행과 비교하여 금지행위의 확대범위가 크지 않으며 테러행위자에 대한 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정밀금융제재대상자의 개인정보 요청(신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자산 및 거래정보 등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테러 및 WMD확산행위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UN안보리 결의에 따른 알카에다 및 탈레반 관련자와 미국 등에서 지정한 테러관련자중 금융위가 지정하는 자로 내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타 입법례 등에 비추어 동 규제가 정보주체인 테러 및 WMD확산행위자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전신송금 기준금액 설정(강화)
 - 수취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송금내역정보 제공의무가 발생하는 전신송금의 기준금액(500만원의 범위내 위임)을 100만원(외화 1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함
 - ☞ 동 규제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전신송금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FATF의 권고안에 맞추어 1백만원(1,000USD/EUR)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 확인을 위하여 현재에도 송금내역정보(성명 및 계좌번호)가 수취금융회사에 제공되고 있고 송금인의 식별정보 제공 없이 해외송금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나, 원화와 외화(USD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송금 및 국외송금의 경우를 명시 하도록 개선권고

(2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신설)
 - 신탁업자로 하여금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개인투자자에게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되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설명서에 같음하여 투자 설명서(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잔존만기가 1일 이내인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수시입출방식의 신탁계약(MMT)인 경우 설명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
 - ☞ 신탁업자의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 및 다른 금융투자업자와의 규제 차익 제거 차원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상품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홍보 금지(강화)
 -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
 - ☞ 사전 설계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다수에게 판매할 경우 금융상품 공시, 판매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성상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이메일, SNS 등을 통해 특정 CP 또는 ELS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가 편입된 신탁상품을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파생상품 등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 시 투자권유 자격 제한 (신설)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 포함)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권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 ☞ 투자자 보호, 다른 금융투자업자와의 규제 차이 제거 등의 차원에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을 통해 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번 규제 시행에 따라 신탁업자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의 특정금전신탁 수익권 양도 등 금지(신설)
 - 자전(自轉) 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
 - ☞ 사실상의 자전거래를 전제로 신탁기간보다 만기가 길고 유동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 양도 또는 동 계약의 포괄 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래 허용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안동의

-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재산 운용내역 통지대상에서 제외(신설)
 -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운용내역 통지 대상에서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금전신탁계약을 제외
 - ☞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금전신탁계약에 대해 신탁재산 운용내역 통지 의무를 면제할 경우 신탁업자의 업무 부담 및 보고서 발송 비용을 경감해 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위탁자 동의가 없이 운용내역 통지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고객과의 일대일 계약으로서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금전신탁계약의 수탁고 잔액(10만원 이하) 외에 투자자 동의를 받기 위한 신탁업자의 노력, 최근연도 거래상황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 운용내역 통지 의무 면제 요건을 강화할 것을 개선권고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신설 4, 강화 3)

■ 심사내용

- 주요업무 적용배제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신설)
 -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요업무 적용범위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하여 주요업무 적용배제
 - * ①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금융위 규정 준수, ②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 ③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④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 ☞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것으로 다만 제3조제2항(적용제외 금융기관) 및 제3항(주요업무 적용예외 금융기관)에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주요업무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법 제3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벗어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요업무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권고
 - * 한국거래소, 한국 예탁결제원 등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용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조정(강화)
 - 금융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를 신설
 - * 접근매체 외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확인 절차를 위한 방법의 대여·양도 등 영 제8조제1호·제2호의 행위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금융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신설)
 - 전자금융거래법상 신설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대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출시기·방법 및 계획서의 내용등을 규정
 - ☞ 제출시기 및 방법, 계획서의 내용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범위에 정보보호위원회의 운용 및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업무를 추가
 - * (정보보호위원회)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취약점 분석·평가 등 심의·의결하고 이를 최고경영자에 보고 (감독규정안 제8조의2)
 - * (임직원에 대한 교육)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 법개정으로 정보기술부문 계획 수립,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등 전산보안 관련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적인 심의·의결 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보교육 평가 결과를 연수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의 적정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권고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신설)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대상범위를 일부 추가 (제11조의4)하고 분석·평가의 주기 및 방법, 보고서 제출 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제11조의5)
 - ☞ 금융회사의 경우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유자격자로 하여금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비추어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안동의
- 해킹 등 방지대책(강화)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는 대책을 추가 신설
 - * ① 내부업무용 시스템의 외부인터넷 접속 금지, ② 내부통신망에서의 파일 배포기능은 통합 및 최소화 하여 운영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 무결성 검증을 수행할 것, ③ 전산센터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단말기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할 것
 - ☞ 금융회사의 경우 다수의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 침해사고 발생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므로 인터넷망을 통한 침해를 차단할 수 있는 망분리의 필요성 인정되나 전산센터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한 사안의 경우 전산센터는 내부통신망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Storage) 등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논리적 망분리의 경우 서버의 전산자원을 활용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예기간

을 돕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침해사고 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신설)
 - 침해사고시 피해 최소화·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문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하고 업무범위 설정
 - ☞ 국내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자금융 이용 비중이 87.7%(13.6월)에 이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금융IT 사고가 급증하는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필요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훈련의무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하는 등에 비추어 의무부담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2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변경(강화)
 -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조정함에 있어 ① 기본부과율 적용 대상을 위반금액(기준금액)에서 법정부과한도액(기준금액×법정최고부과율)으로 변경하고, ② 법정부과한도액 구간을 기존 부과사례 중 최빈부과율인 20%를 적용하여 조정
 - ☞ 현행과 같이 위반금액에 기본부과율이 적용되는 방식을 따르면 위반정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감경률이 나타나거나, 위반정도가 보다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낮은 감경률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합리적이며 20% 이상의 법정부과율 적용 사례가 2010년 이후 70%(평균 부과율 19.3%)에 다다르고 다양한 감경기준이 신설되는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가(강화)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현행 10%에서 20% 이내로 가중 범위 확대
 - ☞ 당해 법규의 규범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동종의 반복된 위법 행위에 대한 응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되며 동종 위법행위의 누범자에 대한 과태료 상승이 예상되나 위법행위 억제에 따른 금융질서 확립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2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저축성보험 등의 계약체결비용 분급비중 확대(강화 1)
 - 저축성보험 및 장기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 지급하는 비용의 비중(이하 ‘분급비중’)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이하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2016년까지 분급비중을 확대

(단위 : %)

	현 행	2014	2015	2016
일반채널	30	40	50	50
- 종신연금	25	25	35	45
방카슈랑스 채널 ¹⁾	30	60	70	70
온라인 채널 ²⁾	30	80	100	100

주: 1) 방카슈랑스 채널 :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고객이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여 가입

2) 온라인 채널 : 사이버몰을 통해 고객이 직접 가입

☞ 저축성보험에 대해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을 확대할 경우 조기 해약 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현재 설계사 정착률 및 계약유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에 대한 분급 확대는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를 초래, 한편 2012년 4월 저축성보험 등에 대해 분급제도(계약체결비용의 30%)를 도입한 이래 1년 8개월 만에 다시 비중을 확대(시행일 기준)할 만큼 현재 사안이 시급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확대가 금융위의 기대만큼 과연 노후에 대비한 연금저축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 확대 시기를 당초 금융위 안보다 늦추고 종신연금에 대한 분급비중도 당초 안보다 낮추도록 개선권고

⇒ 분급비중 확대 시행시기를 당초 안보다 1년 늦춰 2015년부터 시행, 종신연금의 경우 분급비중을 당초 안의 45%에서 40%로 낮추고 2016년부터 시행('16년 35%, '17년 40%), 규제 시행 이후 성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일몰 설정

-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 인하(강화 1)
 -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을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로 인하함

[일반채널 대비 계약체결비용]

(단위 : %)

	현 행	2014	2015
방카슈랑스 채널	70	60	50
온라인 채널	-	60	50

☞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에 대해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을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낮출 경우 그만큼 중도해약 시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며 현행 보험판매 시장의 구조, 판매자와 보험가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매채널 간 판매수수료 비율을 규제할 필요성도 있으나 정부의 규제가격(이 경우 판매수수료)이 원가 및 이윤율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서비스의 과소 공급 또는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보험가입 저조 및 불완전 판매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금번 계약체결비용 인하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일반채널에서 수수료가 낮은 방카슈랑스로 이동(특히 상대적으로 상품 설명이 용이한 연금저축의 경우)하면서 설계사의 소득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계약체결비용 인하 시기를 당초 금융위 안보다 늦추도록 개선권고

⇒ 수수료 인하 시기를 당초 안보다 1년 늦춰 2015년부터 시행 ('15년 60%, '16년 50%), 규제 시행 이후 성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일몰 설정

(2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보험회사의 예보료 등 산정기준 조정(강화 1)
 - 예보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식¹⁴⁾에 반영되는 수입보험료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년환산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 ☞ 예보료의 경우 산정식에 사업일수 비율(해당일수 / 365)이 반영되므로 9개월분의 수입보험료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예보료가 과다하게 축소되며 보험업권의 특별기여금이 축소(약 161억원)되는 것은 금융권 등의 합의로 도출된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타업권에 전가시키는 결과 초래하므로 비중요 규제료 분류, 원안동의

14) 예보료 = (책임준비금 + 수입보험료) / 2 × 예보료율 × (해당일수 / 365)
 특별기여금 = (책임준비금 + 수입보험료) / 2 × 특별기여금율 × 1년

- 보험회사의 예보료 등 산정기준 조정(강화 1)
 - 출연금의 산정기준을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서 각 금융권역별 '인가 또는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자기자본'으로 변경
 - ☞ 납입자본금은 설립하는 법인마다 다르므로 동일 업권에서 금융기관마다 출연금이 달리 산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하며 납입자본금은 인허가시 필요한 최저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준변경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출연금은 현행에 비하여 최소한 같거나 작아지게 되므로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28)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른 과징금 조정비율 세분화(신설)
 -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제정하면서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 온 가중·감경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재조정
 - ☞ 현행 검사·제재규정의 경우 일정한 사유에 따라 가중(20%)·감경(50%)할 수 있는 근거만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제정안은 현행의 가중·감경 사유를 위반행위의 경중 판단기준에 반영하고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가중비율은 현행과 동일(20%)한 반면 경미한 위반의 경우 최대 75%(현행 50%)까지 감경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하는 등 합리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 기초서류 위반기간 등에 따른 기간별 가중·감경(신설)
 - 위반행위의 경중 및 고의·과실에 따라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위반행위 등의 기간에 따라 가중·감경토록 함
 - ☞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위반기간에 비하여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반일수가 1년이 넘어서는 경우 50%가 가중되는 것과 비교하여 제정안의 가중비율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29) 은행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금융상품 강요행위(강화)
 - 금융상품 판매시 강요행위로 간주되는 금융소비자의 범위를 확대¹⁵⁾하고 현행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룰을 감독규정(고시)으로 상향규정하면서 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은 1% 룰과 무관하게 강요행위로 간주하며 여신거래와 유사하게 상환우선주의 발행회사 및 관계인(발행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대한 꺾기 금지 신설함과 아울러 금융상품 강요행위 금지의무 위반시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대상상품(보험·펀드 등 여부)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 금번 개정안 중 꺾기 규제가 적용되는 차주 관계인의 범위 확대, 보험·펀드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강요행위 간주범위 확대(1% 비율 삭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나 은행의 대출 거피 등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향후 규제 변경의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규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일몰(3년) 설정을 권고
 - ☞ 꺾기 규제를 은행의 상환우선주 배정거래로 확대하는 규제안의 경우 선제적으로 꺾기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실제로 꺾기와 관련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점, 여신거래와 동일하게 규제할 경우 기업 자금조달의 신속성이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꺾기 행위로 간주하는 요건(이른바 '객관적 요건', 1% 룰 등)을 금번 규제안에서 제외하고, 의사에 반하는 강요행위(이른바 '주관적 요건')의 경우에도 향후 규제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규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일몰(3년) 설정을 권고
- 금융상품 강요행위(신설)
 - 과태료의 법정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 정함
 - ☞ 개정안은 법정최고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개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에 따라 가중하더라도 법정최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15) 차주의 관계인(중소기업 임·직원(대표자 포함) 및 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 강요행위 금지, 차주의 관계인(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에 대하여 1% 룰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펀드 등 판매시 강요행위로 간주

3. 공정거래위원회

한아름 사무관

(044)200-2414 hanarum@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9개 법령에 대하여 신설 18건, 강화 14건 등 총 3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2건 중 12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부대권고를 하고, 2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4.1)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경제분과위 (2013.4.3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 (2013.10.10)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중요 3, 비중요 1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3.12.6)	원안의결 1 개선권고 3 부대권고 1	신설 5 중요 5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3.12.17)	원안의결 4 개선권고 3	신설 5, 강화 2 중요 3, 비중요 4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3.12.26)	원안의결 4 개선권고 4	신설 7, 강화 1 중요 5,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20 개선권고 11 부대권고 1	신설 18, 강화 14 중요 17 비중요 15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4)

- 레미콘 제조위탁 관련 하도급법 적용지역 확대(강화)
 - 레미콘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중 8개 지자체에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던 것을 12개 지자체로 확대
 - ☞ 도급법 적용이 배제되던 지역인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의 경우 현금결제위반 위반, 대금지급기일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태가 있어도 조치할 수 없어 거래선 확보 이상의 피해가 수급자에게 발생하여 하도급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서류보존의무 범위 정비(강화)
 -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대상 서류(감액사유와 기준, 기술자료 요구 목적 등) 확대
 - ☞ 2011년 법률 개정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감액,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의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 등을 위해 사본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강화)
 - 어음과 기능이 동일한 수단인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40점 부과
 - ☞ 어음과 기능이 동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입법상 흠결로 과징금 부과 점수가 없는바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벌점 부과기준 정비(강화)
 - 벌점 경감점수를 줄여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벌점 경감 요소간 불균형이 존재하여 기준 정비함
 - ☞ 벌점 경감항목 중 배점의 하향조정은 벌점 경감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약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하도급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견인장치임. 따라서,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및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평가결과에 따라 벌점 경감을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 근거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공사·용역 개시 전에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금번 개정안은 서면의 지연 발급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하고, 그 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 ☞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를 구체화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 기간은 하도급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서면은 계약에 따른 행위 개시 전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발급할 경우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도록 개정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는 동 고시에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을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것을 감안하여,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3)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강화)
 -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
 - ☞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위험은 커지고 있어 지급보증을 강화할 필요성은 증대함에도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지급보증 면제 기준이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경되었으나,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개정내용이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필요한 규제인 바, 비중요 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요건·절차(강화)
 - 원재료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신설하고,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요건을 완화
 - ☞ 현재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은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의 상대방의 범위제한 및 협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중요 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요청 기준 강화(신설)
 - 법 위반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데, 개정안은 입찰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누산점수 기준을 현행보다 낮춤으로써(△5점) 규제를 강화함
 - ☞ 개정안은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준수 의무 강화를 위해 기준 벌점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억지력 제고 필요성 및 사업자에 대한 부담의 적정성을 비교형량한 바 규제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 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강화)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를 상향 (현행 : 60점 → 개정안 : 100점)
 - ☞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고유한 기술개발·생산·영업 등에 관련된 핵심정보를 활용,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탈취하여 부정할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만 있을 뿐 실제 처벌 사례가 없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법 제재 수위를 상향시킬 필요 인정되므로 중요 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 및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강화)
 - 현행 중요정보고시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도록 함
 - ☞ 법률에서 중요정보고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속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에서 과태료 대신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임을 감안하여 최소 수준의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것인 바 비중요 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5)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 개정안(강화 1)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건설공사의 위탁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보증을 면제하는 것과 관련 금번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기준을 강화
- ☞ 신용등급에 따라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원사업자 중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면제대상 기준을 강화할 경우 지급보증을 면제받는 원사업자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이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사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바 타당한 규제인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재화 품목 및 제공정보의 변경(강화)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에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기타용역' 품목을 추가하고, 기타 품목의 정보제공항목 조정함. 또한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KC 인증으로 안전인증 문구를 통일
 - ☞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모바일쿠폰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인정되며, 기존의 품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과 보상규정을 제시하여 소비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5)

-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규모(신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
 - ☞ 대기업 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하되, 다만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위법의 기업집단 구분방식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업집단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추후 법제처 협의시 규정 명확화할 것을 부대권고함
-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비율(신설)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 규제대상이 되는 기

업의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설정함

- ☞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계열사)을 어느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나, 다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개정안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음. 다만 경제변동 및 기업거래 행태의 변화에 따라 규제대상을 재설정하여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검토일몰(3년) 설정 권고함

•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기준(신설)

- 상위법의 위입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즉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유형,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하면서 일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가 만연한 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경제변동 및 기업거래 행태의 변화에 따라 규제대상을 재설정하여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검토일몰 설정 권고(3년)함

• 금지행위의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신설)

- 상위법은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 행위금지의 예외를 둬에 따라, 개정안에서 금지행위 적용 제외 사유 신설함

- ☞ 상당한 규모 이상으로 계열사간 거래를 하더라도,富力 부당하게 이전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바, 개정안은 이를 감안하여 대한 적용예외규정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중요 규제로 판단, 원안의결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사업자를 매개로 하는 거래 금지(신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통행세 관행의 두 가지 세부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면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하고,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금지

- ☞ 통행세 관행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재의 한계가 있는 바 개정안 통행세 관행 금지 규정으로 독립 중소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감을 받아 수행 가능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라 판단되므로 중요 규제라 판단, 원안의결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5, 강화 2)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구체적 행위 유형(신설)
 -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의 세부유형을 정함
 - ☞ 부당특약은 합의의 외형을 가장하여 이루어져 그 실태와 적발이 어려우며, 그 형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현재 개정안의 부당특약 유형이 시계열 변동성이 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는바 따라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재검토일몰을 설정, 추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정도, 기업의 행태변화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3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의 지급사유(신설)
 - 보증기관이 지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가 분쟁 없이 지급보증금 수령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하도록 하여, 장기공사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공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명시하여 수급사업자가 분쟁없이 신속하게 수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요규제로 분류, 신설된 제도가 기업행태의 변화를 유도, 하도급거래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토, 추후 재검토일몰(3년) 설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의 지급보류 사유(신설)
 - 보증기간 내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 보증기관이 지급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 지급보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류 기간에 제한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지급청구권 보호 가능하게 되므로 규제의 타당성 인정되나, 지급보류 사유를 재설정하여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검토일몰 설정 권고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의 지급보류 기간(신설)
 - 보증기관이 지급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지급보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류 기간에 제한, 지급보류기간은 30일이며,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

- ☞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8조제3항)하면서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의 지급보류 장기화가 우려되는 바 지급보류 기간 신설의 필요성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신설)

- 대물변제時 원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자료제공의 방식 및 절차 등을 새로이 정함

- ☞ 개정前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의사판단에 필수적인 자료의 종류·제공 방식 등을 정할 필요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징금 부과기준(강화)

-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자 및 대물변제의 권리관계 확인자료 미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신설함 (부당특약 위반유형 : 80점, 대물변제 관련자료 미제시 위반 유형 : 60점)

- ☞ 부당특약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함을 강제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행위를 하는 위반행위와 유사한바 행위의 고의성 및 죄질,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개정안 부과기준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대물변제 자료제공 의무 위반시에도 관련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 과징금 부과기준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함

- 벌점의 부과기준(강화)

- 개정하도급법(2013.7.2)에 신설된 부당특약 금지조항(법 제3조의4)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벌점부과에 필요한 위반유형을 정하고, 부당특약의 벌점 관련 위반 유형을 ‘그 밖의 위반’으로 설정

- ☞ 부당특약 금지라는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구체적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 벌점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당특약 금지조항은 서면관련 또는 부당납품단가 위반, 대금지급 관련 위반,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중 어디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밖의 위반’ 유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7, 강화 1)

- 영업지역 변경사유(신설)
 - 상위법에서 가맹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중 동일 업종 가맹점 등의 추가설치를 금지함에 따라, 개정안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 ☞ 가맹계약체결기간이 보통 5년인 점을 고려하면, 갱신계약시 경제·인구여건 및 제품의 수요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 질 수 있음이 예상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의 신뢰 및 경제적이익 보호 가능해지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징금 부과기준(신설)
 - 과징금 산출기준을 위반기간동안의 관련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정액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관련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액과징금 부과 경우 상위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바 규정의 타당성 성립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강화)
 -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예상수익상환 서면제공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및 보관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를 신설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 구두로 과장된 예상수익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가 2백만원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만큼 과태료 상향 필요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 의결함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영업시간대, 영업손실 발생기간(신설)
 - 상위법에서 심야시간대에 일정기간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영업손실 발생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1시~오전 7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기간을 6개월로 규정

- ☞ 상위법은 '심야 영업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 '06시~07시'가 통상적인 '심야'의 개념에서 벗어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1년의 절반 이상(4월~9월)의 기간 동안, 일출시간은 6시 이전으로 오전 6시 이후는 '심야'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나므로 제외되어 상위법 위임한계를 벗어날 소지 있어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1시에서 6시로 개선하고, 추후 가맹거래 형태 변화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 일몰(3년) 설정함.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기간은 매출액 분석결과 계절성 변동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관특성 검증 최소기간인 6개월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 예상매출액 범위 및 가맹점수 요건(신설)

- 상위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본부¹⁾는 가맹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²⁾ 및 산출근거를 서면제공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의무대상 가맹본부 기준을 가맹점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로 설정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1년간 예상되는 연간매출액(광역자치단체내 5개 이상 가맹점 존재시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양극단치를 제외한 차하위액·차상위액으로 확정)으로 정함

- ☞ 의무대상 가맹본부는 311개로 전체 가맹본부 3,311개(브랜드 수 기준) 대비 9.4%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는 점 등 고려, 원안동의함. 또한 예상매출액 범위에 대해서도 실제 가맹점간 매출비교 결과 매출차이가 대체로 1.5배이고, 최상·최하위 업체를 제외하여 극단적인 정보를 배제하여 예비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함

다만 직전사업년도 1년 미만 영업 가맹점의 실제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므로 시행령(별표)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권고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정도를 반영하여 재검토일몰(3년) 설정함

- 점포환경개선요구 허용사유,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신설)

-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점포환경개선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비용부담 항목과 비율을 위임

- ☞ 점포환경개선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점포 노후화,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로 한정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최소화하였다는 점과 가맹본부가 부담할 항목을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한정하였고, 부담비율도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범거래기준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안 동의하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대로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재검토일몰(3년) 설정함

-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신설)

- 상위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마련

- ☞ 다양한 유형의 위약금 부당성 판단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기존 대법원 판례 등 민사적으로 확립된 기준과 약관법 위반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요규제로 판단, 원안에 동의

-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유형 구체화(신설)

- 상위법에서 금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¹⁾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²⁾의 구체적 유형을 정함

- 1)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2)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허위과장정보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위반행위로 인정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후속조치가 수반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예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유형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 있음, 따라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유형 관련 기타 포괄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4. 관세청

서문수 사무관

(044)200-2436 sun61@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몰도래 재검토형 법령 등 1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강화 등 총 1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352회 예비심사 (2013.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352회 예비심사 (2013.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개정안	365회 예비심사 (2013.4.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7.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8.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9.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385회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0.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개정안	393회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1.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제462차 경제분과위 (2013.7.3)		
계	-	원안의결 10	강화 10, 비중요 10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출신고가격을 자율정정 제외대상에 추가(강화)
 - 수출신고서 신고항목의 자율정정 제외대상에 ‘신고가격’ 및 ‘총 신고가격’을 추가하여 수출신고의 정확도 제고
 - ▶ (현행) 수출 신고가격 및 총 신고가격 오류시 신고자가 자율정정
 - ▶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정정 신청하면 검토 후 세관직원이 정정
- ☞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서의 신고가격 오류기재시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해 왔으나, 신고가격 오류로 인해 통관절차 지연뿐 아니라 무역통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출신고서 작성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외에 규제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수출입 신고서의 중요 오류에 대하여 오류점수를 상향한 기 조치사항¹⁶⁾과도 부합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강화)
 - 기간이 만료(‘13.1.31) 되는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물품(5개)에 대해 기간연장(1년~3년)
 - ▶ 식품용 황기, 선글라스(1년, 2013.2.1 ~ 2014.1.31)
 - ▶ 식품용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3년, 2013.2.1 ~ 2016.1.31)
 -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신규 지정(3개)
 - ▶ 냉동옥돔, 작약(식품용), 황금(黃芩, 식품용) 등(3년, 2013.2.1 ~ 2016.1.31)
- ☞ 관세법상의 유통이력 신고제의 도입 취지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신고 및 자료보관 의무(1년)를 부과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16)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12.10.30. 예비심사 완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적신고 등(강화)
 - 환적신고 대상 확대
 - ▶ (현행) 환적신고를 적하목록 제출로 같음하고,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도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체 대장을 관리하는 경우 신고 생략
 - ▶ (개정)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및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 발급 요청시 환적신고 의무화
- ☞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환적화물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과정에서 원산지 위조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바뀌치기 사례가 적발되는 등 환적화물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동 규제 신설에 대해 선사 등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이행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보세사 직무와 의무규정 신설(강화)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보세사 직무와 의무규정을 「보세사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동
- ☞ 개정안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보세사의 직무와 의무규정을 「보세사 운영에 관한 고시」로 단순 이동에 불과한 법규정비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유보·지정기준 추가, 특례적용의 관리강화(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공인유보 사유 추가: 품목분류 등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인기준 추가: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에 따라 벌금형 선고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품목분류 등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질의 등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 특례적용의 관리 강화: 통고처분 및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벌금형 처벌시, 공인기준의 보완요구 및 개선계획 미이행시 특례정지 등 규정 추가
- ☞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최초 공인후에 지속적으로 공인기준을 충족(3년 주기)해야 인증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바, AEO 업체가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결정 등과 관련하여 관세당국과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심사 또는 질의 등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은 쟁점해소를 위한 필요한 절차적 규정이며 관계 법규위반 등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공인유보 및 지정제외,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¹⁷⁾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AEO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내외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금번 개정안은 2009년 3월 처음 도입된 AEO제도의 운영상 문제점¹⁸⁾을 보완하여 AEO 제도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AEO진흥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이행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인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원산지확인서 등 전자문서 서식 추가(강화)
 - 원산지확인서 등 전자문서 서식 3종 추가
 - ▶ (현행)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는 FTA관세특혜 원산지

17)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주요 사유(현행 규정상)

- 관계 법령위반(전자문서위변조)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개선계획의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18) 과세가격, 품목분류 결정 등 이견시 해소방안 미흡, 허위신고 등 법규위반에 따른 신뢰성 실추에도 공인지정 유보 또는 특례정지 등 규정 미흡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이나 종이서식만 지정되어 있고 전자문서 서식은 미 지정 상태

▶ (개정) 동 서식 3종에 대해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서식 표준 규정

☞ 전자적 방법의 문서처리를 위한 전자서식 도입은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종이서식을 유지하면서 전자문서를 병행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게는 오히려 서류제출의 선택폭을 넓히고 규제비용 대비 비용 및 시간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7)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및 갱신요건, 취소사유 추가(강화)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및 갱신요건 추가
 - ▶ (현행) 세관장은 보세사 채용인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세화물 관리 및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및 갱신시 신청기간 미규정
 - ▶ (개정)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일반/우수’로 구분하고 지정요건 별도 규정¹⁹⁾ 및 갱신 재신청시 만료 1개월 내에 신청토록 갱신요건 추가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요건 추가
 -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²⁰⁾ 목적은 보세구역의 자율관리를 통해 업체에게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되,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생략 등 인센티브 부여로 실시간 업무처리 등 물류비용 절감 효과 기대

19) (일반자율관리보세구역) 보세사 채용, 화물반출입 등 물품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비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 일반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 + 종합인증우수업체 + 보세공장의 경우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 이상자 및 기업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한 자

20) 보세구역 지정 현황 (‘13.1월 현재)

구 분	지정 보세 구역	특해보세구역					종합 보세구역	합 계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기타	계	사업장	
보세구역	107	603	572	182	48	1,405	63	1,575
자율관리	16	534	371	113	24	1,042	43	1,101
비 율	15.0%	88.6%	64.9%	62.1%	50%	74.2%	68.23%	69.9%

보세구역은 세관의 직접적 통제하에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나, 물류의 원활한 유통과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차등화함으로써 관세당국의 재량개입 개연성을 최소화하고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하였음. 또한 갱신 재신청시 만료 1개월 내 신청, 지정요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등의 규정은 그간의 법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규제수준도 기존 규제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강화)
 - 기간이 만료('13.8.22.) 되는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물품(5개) 중 3개 품목에 대해 기간연장(1년~3년) 및 2개 품목 지정 폐지,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신규 지정(3개)
 - ▶ 기간연장 : 식품용 구기자, 당귀(1년 6월, 2013.8.23 ~ 2015.2.22)
냉동조기(3년, 2013.8.23 ~ 2016.8.22)
 - ▶ 지정폐지 : 꽃감, 냉동송어
 - ▶ 신규지정 :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3년, 2013.8.23 ~ 2016.8.22)
- ☞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은 관세청장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관리²¹⁾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냉동고등어·냉동갈치·미꾸라지는 최근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가 빈발하여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집중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²²⁾ 있으며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21) '09년 제도 도입 이래 25개 품목을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13. 8월 현재)

22)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냉동고등어 108건, 냉동갈치 160건, 미꾸라지 32건으로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특히 일본 수입량이 많은 냉동고등어, 냉동갈치는 최근 일본 원전 사고 발생 후 수산물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 고조

(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신규 지정(강화)
 - 지정품목 : 3개 품목(명태, 가리비, 돔)
 - 지정기간
 - ▶ 명 태 : 2013. 9. 16. ~ 2016. 8. 22.
 - ▶ 가리비 : 2013. 9. 16. ~ 2014. 8. 22.
 - ▶ 돔 : 2013. 9. 16. ~ 2014. 8. 22.
- ☞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은 관세청장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수입 명태 등의 원산지가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되거나 미표시로 판매됨으로써 유통질서 문란과 부당이득 취득 사례 빈번²³⁾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에 추가되는 명태·가리비·돔은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인결

(10)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적화물 반출입 신고(강화)
 - 환적화물²⁴⁾의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세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환적화물에 대한 반출입 신고 의무화 및 동 제도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기간 설정²⁵⁾
- ☞ 2003년 이후 환적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물량유치 지원을 위해 환적화물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간소화 절차를 악용하여 원산지 세탁, 위조상품 위장 경유 사례 등 발생으로 환적화물 관리강화의 필요성 대두²⁶⁾되고 있으며 환적화물 반출입신고제 도입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23) 최근 3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 : 445건(거짓표시 66, 미표시 379)

24) 비행기 환승과 비슷한 개념으로 중간에 운송국가 및 운송수단(예, 홍콩 출발 → 부산에서 환적 → 미국 도착)을 변경하여 수송되는 화물

25) 재검토 일몰기간 설정 : 2014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1년)

26)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각 국은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적화물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최근 EU·미국과의 FTA체결로 특혜관세 등 세율차익을 노린 원산지 세탁행위 증가 우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으로 관세청, 국토부, 터미널운영사, 선사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 운영 실시한 결과 화물지체 미발생, 업체의 추가비용 미미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동 제도를 운영키로 하되 1년 시행 후 재검토하기로 합의²⁷⁾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6.30)에 도래하는 '수입물품 국내유통이력 신고' 등 총 1건의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 수입물품 국내유통이력 신고제는 농산물 등 수입물품의 이력추적을 통해 원산지 둔갑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인식과 시장환경변화 등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을 추가 또는 해제(주기적 검토)하는 것으로서 규제유지가 필요하고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설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수입물품 국내유통이력 신고	수입물품 유통이력을 세관장에 신고	「수입물품유통이력관 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27)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시범운영 추진 경과

- 2013.4.5.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합동평가위원회(국조실·해수부·관세청·사업자 등 포함 10명) 구성 운영
- 2013.5.11. ~ 16 시범운영 참여업체 의견수렴 및 프로그램개발 배포(관세청)
- 2013.5.28. ~ 6.30. 시범운영 실시(부산항 전체물량중 34%, 컨테이너 수량기준 83,737개)
- 2013.6.20. 시범운영 현장 점검(실무T/F팀 13명)
- ▶ 시범운영 결과
 - 전산오류발생률 0.3%(495/160,605건)로 미미한 수준이며 화물지체 미발생,
 - 인력(터미널사별 1명 소요), 개발비(5,000만원), 유지보수비(연 100~500만원) 등 발생
 - 환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환적항 변동가능성은 장기 추세분석 필요
- ⇒ 시범운영 결과 우려할만한 특별한 문제점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반출입신고 제도를 도입하되, 시행 1년 후 재검토기로 국토부·선사 등 이해당사자간 합의

5. 금융감독원

정재상 사무관

(044)200-2416 kkirri@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0건 강화 13건으로 총 2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3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나머지 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3.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3.22)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5.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제467회 경제분과 (2013.10.1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중요 2, 비중요 1
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제473회 경제분과 (2013.12.20)	원안의결 4	강화 4 중요 1,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22 개선권고 1	강화 23 중요 3, 비중요 20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기준 합리화(강화)
 - 현재 보증준비금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최저보증종류별 단일 기준에 따라 최저수준으로 적립되며 본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자체 추정한 보증리스크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증종류별 표준적립률 중 높은 쪽에 따라 보증준비금의 표준적립액을 산출
 - ☞ 본 규제 강화로 생명보험회사(변액보험 판매, 24개)는 변액보험에 대해 보증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나 그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저금리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질 경우에도 보험사가 추정한 보증리스크에 따라 최소한의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보험업계 및 보험개발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시 공시이율 가정 산출기준 마련(강화)
 - 현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지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
 - * 조정률(공시기준이율 $\pm 10\%$ 범위)은 직전 1년간 공시이율 결정시 적용한 조정률의 최고율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
 - ☞ 본 규제 강화로 보험회사(생보31개, 손보 13개)는 보험상품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시한 공시이율과 동일한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의무가 발생하나 향후 금리 역마진이 발생할 경우 책임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할 수 있게 되어 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 확보 가능하며 또한 공시이율을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에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확대를 위해 공시이율을 높게 설정하는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위험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보험계약 분류기준 개선(강화)
 - 보험상품의 위험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되는 부가급부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보장기능이 약한 상품은 보험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도록 함

☞ 본 규제 강화에 따라 보험사(생보 31개, 손보 13개)의 수입보험료 중 보험계약 비중이 하락하고 투자계약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성보험을 통한 보험시장 점유율 경쟁유인을 약화시키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시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상품을 예금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소비자 신뢰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실제경험률 추이를 반영한 표준위험률 조정(강화)

- 현행 표준위험률 수준을 담보별 실제경험률(3년간, '08.4월~'11.3월)을 반영하여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하고 손해보험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현행 1개(질병사망률)에서 6개(암보장 등 5개 추가)로 확대

* (생명보험) 남자의 경우 9개 담보 하향조정, 3개 담보 상향조정하고, 여자의 경우 7개 담보 하향조정, 5개 담보 상향조정, (손해보험) 질병사망담보의 경우 남자·여자 모두 하향조정하고 암 위험률 등 5개 담보는 표준위험률 신규 산출

☞ 보험회사(생보 31개, 손보 13개)는 최근 3년간 담보별 실제경험률 변화를 반영한 표준위험률에 따라 표준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됨에 따라 보장 담보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 표준책임준비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실제경험률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손해보험의 경우 적용대상담보를 6개로 확대하여 표준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나 위기발생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 강화를 위해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업무보고서 신설(전자금융업 영업실적 보고서)(강화)

- 대부분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 이외 다른 사업을 겸업함에 따라 전자금융업 고유의 영업현황 분석을 위하여 전자금융업만의 영업실적 분석을 위한 별도 보고서를 신설

☞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 관련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서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업 영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규제 신설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고의로 부실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기준 강화(강화)
 - 고의로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정지 건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상의 직무정지 건의 대상을 확대(고의 IV단계 이상 → 고의 V 단계 이상)
 - ☞ 공인회계사의 고의에 의한 부실감사를 차단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편익에 비추어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대규모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 기준 강화(강화)
 - 위법행위를 한 회사 및 해당 감사인의 위법 정도가 최소 조치기준의 64배 이상의 대규모 분식인 경우 1단계 가중 조치²⁸⁾
 - ☞ 대규모 회계분식을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편익에 비추어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위법행위를 한 비상장법인과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강화(강화)
 - 위법행위를 한 비상장법인과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 중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
 -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위법행위가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차입금 의존도 50% 이상인 법인 등
 - ☞ 규모가 크거나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 조치 감경대상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편익에 비추어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8) 현행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서는 위반 중요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소 조치기준은 회계분식금액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약 1%에 상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1%의 16배인 16% 이상인 경우 최고 단계의 조치(1 단계) 부과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금리역마진위험액 신설(강화)
 - RBC 제도 하에서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되는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역마진위험액을 추가하고 금리역마진위험액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이자율차(보험부채 적립이율 - 자산부채비율×시장금리)를 곱하여 산출
 - * ‘적립이율 < 시장이율’로 금리역마진위험이 없는 경우 ‘0’(zero) 값 부여,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금리역마진위험을 50%만 반영
 - ☞ 규제 신설로 보험사(생보 23개, 손보 9개사)는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역마진 위험을 반영할 의무가 발생하나 이에 따라 보험사의 RBC 비율이 하락(생보사 10.1%p, 손보사 7.1%p)하게 되나 평균 RBC 비율(315.6%, '12년말 기준)을 고려할 때 규제 준수의 부담은 크지 않으며 금리역마진 위험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사가 금리역마진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변액보험 보증위험액 산출방식 정교화(강화)
 - RBC 제도 하에서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되는 시장위험액 산출 시 변액보증위험액 산출 방식을 정교화
 - * 보장성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의 경우 보증위험액 산출기준을 CTE방식 및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을 사용하여 정교화하고, 보증위험액 산출의 신뢰수준을 상향(CTE90% → CTE95%)
 - *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의 경우 보증위험액 산출의 신뢰수준을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권고기준인 CTE95(VaR 99% 상당)로 상향하고, 일부 계수의 조정계수 구간을 세분화
 - ☞ 국제적 권고기준 등에 따라 보증위험액 산출의 신뢰수준 및 정교성을 제고한 산출방식에 근거하게 되므로 기존에 기초 데이터 부족 등으로 보험가격위험계수를 원용하여 보증위험액이 과소 산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변액보험 투자실적 악화에 따라 최저보증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보험소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업무보고서의 개정(강화)
 - 자동차보험 사업실적표(AI060) 및 온라인 자동차보험 사업실적표(AI186)양식의 책임 보험 항목에 이륜자동차 및 일반건설기계 실적란 추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금리역마진위험액 및 변액보증위험액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 및 LTV 구간별 잔액 현황 업무보고서 신설

☞ 자동차 및 온라인 자동차보험 사업실적표에 따라 책임보험 관련 현황(개인용, 영업용, 업무용)은 매월 보고되고 있으며, 책임보험 중 이륜자동차 및 일반건설기계 관련 현황만 추가하는 것으로 부담증가가 크지 않은 반면 책임보험영업현황을 명확히 감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가계주택담보대출 규모 및 연체율 증가에 따라 LTV한도 초과대출 현황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업무보고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업무보고서 신설(강화)

-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현황 업무보고서, 신용등급별 카드자산 연체현황(AC394) 및 신용등급별 신용카드 이용실적(AC395) 업무보고서, 직불형 카드 무실적 현황 업무보고서 신설

☞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점검 및 LTV 규제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동 보고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2011년 2분기 이후 카드사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카드 회원의 상환능력 약화는 저신용 취약 계층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저신용·다중채무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면카드를 제외한 발급·이용 현황을 통해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 과당경쟁을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강화)

- RBC 제도 하에서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되는 신용위험액 산출 시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기관의 위험계수 적용기준 설정

* (사회기반시설)정부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운영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전액 보증하거나 사업 해지시 대출 원금을 보증할 경우 무위험 적용(위험계수 0%)

* (공공기관 등)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중 일부만 결손보전하는 경우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익스포저에 한해 무위험 적용(위험계수 0%)

- ☞ 사회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만큼 이자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투자원본(元本)의 상환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위험의 과소평가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의 투융자금액을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 해석시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므로 해당 보험사의 투융자금액으로 의미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권고 (최저해지시 지급금으로 해당보험사의 투융자금액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한 경우로 명확화)
- ☞ 정부가 일부 결손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보험사 보유 익스포저의 위험은 결손보전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 상환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 일부보증 공공기관은 결손보전 대상사업과 비보전 대상사업의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는 만큼 비보전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 발생 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으므로 보험사 보유 익스포저가 결손보전 대상인지 여부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고 오히려 총자산 대비 결손보전 대상사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채권 발행기관의 상환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권고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관리 강화(강화)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독립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지점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지점을 폐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 ☞ 미등록지점은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불가능하여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험설계사의 교육의무 회피, 보험모집 준수사항 위반(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등 소비자의 피해발생 우려되며 현장점검시 상당수의 미등록지점이 확인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재수단 부재로 미등록지점의 확산 가속화되고 있으나 법률 및 시행령에 지점의 설치 및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임없이 고시(감독규정)에서 지점의 설치를 규정하고 감독원장에 지점의 설치 및 폐쇄를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제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원안동의하되 관련조항을 상향입법할 수 있도록 효력상실형 일몰(2년) 설정

• 업무보고서 등의 개정(강화)

- 보험상품 신고서식 중 회사자체 점검 항목에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추가하고 보험종목별·판매채널별로 유지율을 세분화하고 보험계약기간(최대 7년)까지 기간별 유지율을 산출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하였으며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
- ☞ 현재 보험상품 신고 시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관의 불공정성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각 판매채널별 유지율은 보험사별로 관리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타 분야에 비해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 재보험분야의 경우 상시감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업무보고서의 보강이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고시 등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신탁관련 업무보고서 신설(강화)
 - 특정금전신탁 내 회사채 및 전자단기사채의 발행회사, 신용등급, 편입금액 등 운용현황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 신설
 -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동일한 내용을 동시 개정
 - ☞ 특정금전신탁 내 CP 및 회사채가 가장 큰 비중(50%)을 차지함에 따라 회사채 편입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금융불안 징후 발생시 선제적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특정금전 신탁 CP 운용현황의 서식과 동일하며, 서식 내용은 기존의 영업자료를 이용하여 작성가능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시입출식 예금의 對고객 설명의무(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하여 수시입출식 예금상품 판매시 정보제공 및 상품설명을 의무화
 - * 기존 단일금리가 적용되던 수시입출식 상품이 예치기간 및 금액별 차등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화됨에 따른 조치
 - ☞ 수시입출식 상품의 경우 단일금리에 의한 일상적 거래의 특성으로 설명의무가 배제되어 왔으나 상품의 금리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이용자에게 상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설명이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기준 마련(강화)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대해 통계적 방법에 의한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을 산출할 때 위험단위를 6가지로 분류하고, 위험단위별로 과거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적용하고 지급보험금의 사고년도 구분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자나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의 경우 원인사고 발생일자(또는 장애확정일로부터 180일을 차감)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 5년간의 경과기간별 지급보험금 통계를 사용하고 지급준비금 진전추이 방식(CLM: chain ladder method)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최저한도로 설정
 - ☞ 보험회사들이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충실히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긴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경험통계 기간 확대(5년), 지급준비금 적립시점 명시(특히, 장애의 경우 원인사고 발생일자 기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최저한도 설정, 사후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IBNR 산출기준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금번 산정기준(안)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이 예상되나, 보험회사의 순이익 규모, 장애 관련 지급준비금 산출기준일의 시행시기 유예(2015부터 시행) 등을 감안할 때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강화(강화)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방법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
 - * 미래의 현금 유출·유입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적정 할인을 산출·대표(표본)계약의 대표성 검증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 대한 사후검증 기준을 신설
 - ☞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 및 할인을 산출에 필요한 기초 가정(사업비, 해약률, 위험률, 보험료 납입, 자산이익률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 및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므로 비중요 규제료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최적위험률 및 최적사업비율 심사기준 강화(강화)
 - 경험통계를 사용하여 위험률을 산출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통계 기간(3년)에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하거나 보험사고를 담보(擔保)하지 않는 기간(이하 '부담 보기간')을 제외
 - ☞ 부담보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보험료 산정에 이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할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통상 사업비 등 고정성 비용은 위험률 또는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하지 않는 바, 고정성 비용이 동반 인상될 경우 그 사유가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상품현황 업무보고서 신설(강화)
 - 보험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상품현황을 추가
 - ☞ 금번에 신설될 예정인 업무보고서는 「보험업 감독규정」(제7-53조 및 별지 제2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보고서이며 보험상품 현황 보고서를 시행세칙에 신설함으로써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전송하도록 할 경우 검사 및 감독 목적에 맞게 입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3절 | 산업·에너지 분야

1. 산업통상자원부

석진영 사무관

(044)200-2415

sjinyoung@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등 2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46건 등 총 4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8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4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업통상자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51회 예비심사 (2013.1.17)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1회 예비심사 (2013.4.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64회 예비심사 (2013.4.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6회 예비심사 (2013.5.3)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7회 예비심사 (2013.5.10)	원안의결 7	강화 7 비중요 7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61회 경제분과 (2013.5.10)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7.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안	제306회 본위원회 (2013.6.1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4회 예비심사 (2013.6.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7회 본위원회 (2013.6.2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1회 예비심사 (2013.8.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제381회 예비심사 (2013.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제465회 경제분과 (2013.8.16)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제387회 예비심사 (2013.9.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468회 경제분과 (2013.10.25)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강화 6 중요 2, 비중요 4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8.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0.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제395회 예비심사 (2013.11.2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70회 경제분과 (2013.11.2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3	강화 5 중요 3, 비중요 2
22.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3 개선권고 5	신설 3, 강화 45 중요8, 비중요 40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미래창조과학부 통계를 계상

■ 심사내용

-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는 경력 분야를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지식정보보안 관련 분야로 축소하고, 현행 변호사, 회계사, 특수 분야 경력자,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 완화된 경력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특례 기준을 삭제(강화)
- ☞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의 업무특성상 기술인력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 보유 유無가 핵심 사항이며,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경력기간의 50%를 지식정보보안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있어 합리적 기준이라 판단. 변호사, 회계사, 특수 분야 경력자의 경우 정보보안업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완화된 경력기간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여타 자격 기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제도 시행이후('00년) 변호사, 회계사, 특수분야 경력자의 취업실적이 소無하여 규제영향 미미함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시행령)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강화)

[과태료 상향 조정(안)]

위반횟수	현 행	개 정(안)	
1차 위반	1천만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미만
		3천만원	1천만원
2차 위반	2천만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미만
		7천만원	3천만원
3차 위반	3천만원	매출액 100억원 이상	年매출액 100억원 미만
		1억원	5천만원

- ☞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3천만원→1억원)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세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범위(1억원)내에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年매출액 기준으로 차등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시행규칙)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30일 전 예고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13.1.1)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① 예고 방법, ② 예고 내용)을 규정(강화)

[개설 계획 예고 방법 및 내용(안)]

예고 방법	예고 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m ²)

- ☞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는 피규제자 비용 부담 최소화와 중·소상인 등의 정보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며, 개설자, 매장면적 등의 정보는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취지²⁹⁾를 고려시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강화)

[산정기준 변경안]

현행 산식	$\frac{\text{다발당 추정비용} \times (1 + \text{물가상승률})^{\text{물가변영기간}}}{(1 + \text{할인율})^{\text{할인가간}}}$
개정 산식	$\frac{\text{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 \text{부담금 적립잔액}}{\text{미래발생량의 현재가치}}$

- ☞ 현행 산정기준은 지출만 고려한 계산 방식으로 부족금액 발생시 추가 부과하거나 과다 징수시 경감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담금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고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산정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기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한수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립된 산정기준이며, 중기·경쟁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9)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취지 : 관할 지자체, 인근 중소상인, 지역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조정 실효성 제고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LPG 충전소의 충전기와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를 도로경계선에서 4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 제품에 다기능보일러³⁰⁾ 추가(강화)

☞ LPG 충전기와 도로경계선 이격거리를 4m 이상 두도록 한 것은, 도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추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입법례와 해외사례를 고려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으며, 다기능보일러를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 제품에 추가한 것은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다기능보일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 및 해당 제품의 제조 및 보급 촉진 기대됨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유사 입법례]

- (국내 입법례) 현재 주유소 시설기준에서는 주유기를 도로경계선과 4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일본 입법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충전기는 도로경계선과 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 「일본 액화석유가스보안규칙 제8조」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계량기 설치 기준 강화(강화)
 - * 검침·교체·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한 곳에 설치
 - *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는 설치 금지
- ☞ 액화석유가스(LPG) 누출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스 검침시 세대 내부에 들어가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LPG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는 15L 이하의 용기에 '실내보관 금지'를 표시하여 공급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용기를 자신의 용기보관 장소에 보관해 주고, 이를 공급시 안내 하도록 규정(강화)
 - ☞ 캠핑용 LPG 용기를 실내 보관하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추가되는 규제비용³¹⁾은 과도하지 않으며, 피규제자의(한국LPG가스판매협회중앙회) 반대 의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0) 다기능보일러 :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여 난방 및 온수공급 이외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2014년 출시 예정

31) 1. 현재도 일반 LPG 용기의 경우 공급자가 용기외면에 도색으로 공급자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고 있어, 레저용 LPG 용기에 표시사항이 추가되어도 비용은 미미함.

2. 빈용기의 회수 및 지속적인 판매처 확보 등을 고려시 의무 보관에 따른 비용은 과도하지 않음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7)

■ 심사내용

-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에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을 추가(강화)
 -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업무 이관(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10.1.27)시 누락된 변경허가 기준을 보완하는 개정사항으로, 충전설비의 위치 및 충전능력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이며, 최초 허가시 일정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사항 역시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 도시가스충전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시 규제비용³²⁾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승인이 필요한 가스공급배관의 변경 사항에 ‘승인을 받은 최고사용압력을 올리는 경우’를 추가(강화)
 - ☞ 가스공급배관의 압력상승 운영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고사용압력을 올리는 행위를 관리(승인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안전 확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시 규제비용은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도시가스배관 건축물 내부 또는 매립 설치 기준 강화(강화)
 - * 노출 설치, 내부 설치를 선택적 사항으로 변경하고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의 설치의무 등 세부안전기준 강화
 - ☞ 최근 건축물 형태의 다양화(유리벽 등)로 가스배관을 내부에 매립설치 하고자 하는 업계의 요구에 대응한 개정사항으로, 현재 원칙적 외부 설치 - 예외적 매립 허용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시 가스 누출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 아울러 가스배관의 매립설치 활성화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개정안의 세부 안전 기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이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특정가스사용시설³³⁾에 ① 건축물 내 매립설치배관과 ② 액화천연가스(LNG)저장탱크 설치 가스사용시설을 추가(강화)
 - ☞ 건축물의 벽 또는 바닥에 매립설치 되는 배관은 최초 시공시 매립되면 사후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32) 변경허가에 따른 기술검토(4만 8천원) + 검사수수료(27만 4천원) = 총 32만 2천원

33) 특정가스사용시설 : 대용량 사용시설 등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설치·변경공사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적 검토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으로 관리

불가능하므로, 최초 설치단계에서 안전확보가 필수적으로 제3차(가스안전공사)에 의한 기술검토 및 설치 후 완성검사 등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저장탱크를 설치한 가스사용처는 배관을 통한 가스사용시설 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동 규제 강화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도시지역에 최고사용압력 0.1MPa 이상 1MPa 미만(중압배관)의 20년 이상 경과된 본관 및 공급관’을 정밀안전진단³⁴⁾ 대상에 포함(강화)

☞ 도시가스 중압배관은 대부분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피해거리가 약 40M 이상 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현행 외관위주 점검의 ‘정기검사’만으로는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 배관의 잠재적 위험성 탐지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피규제자(한국도시가스협회) 반대의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가스안전영향평가³⁵⁾ 대상에 ‘터널식 굴착공사’를 추가(강화)

☞ 최근 지하철 공사 등은 터널식 굴착 공법이 일반적이며, 이때 도시가스배관 주변에 많은 진동을 수반하여 가스사고 발생 가능, 지하철 공사 등으로 발생 가능한 가스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 시 규제비용(건당 약 195만원)은 과도하지 않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01명 사망, 201명 부상

- 개방형 가스온수기³⁶⁾의 설치를 금지하고,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의 주입설비를 갖추고 혼합하도록 규정(강화)

☞ 최근 5년간 개방형 가스온수기로 인한 가스중독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제품의 설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2011년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설치금지 규정 신설로 인한 규제영향은 미미함. 아울러, 부취제 주입설비 설치의무화를 통해 가스누출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현장에서는 이미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개정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4) 정밀안전진단 : 정밀검사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위험 요소를 진단·제거함으로써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안전관리제도

35) 가스안전영향평가 :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가스배관이 노출되거나, 배관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관리제도

36) 개방형 가스온수기 : 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개방형 가스온수기 사고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전체 사고 건수	2	4	-	1	2	9	
인명피해	계	2	9	-	1	5	17
	사망	2	4	-	1	-	7
	부상	-	5	-	-	5	10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자격요건(최소 외국인투자비율 및 유지기간)이 강화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위임된 ① 최소 외국인투자비율과 ② 계약 후 유지기간의 구체적 기준을 각각 30%, 5년으로 정함(강화)
 - ☞ 외투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1,000개사를 분석한 결과 778개사(78%)가 외투비율 50% 이상으로, 외투비율 30% 기준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우려가 크지 않으며,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다른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에도 동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의 자격 요건을 두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외투비율 30%, 5년간 유지’ 기준은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국·공유지 수의계약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제거하는 자격기준으로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자격요건 현황]

현금지원 대상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	조세 감면 대상
외투비율 30% 이상 * 「현금지원 운영요령」 산업부 공고 제2013-65호	외투비율 30% 이상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산업부 공고 제2013-45호	산출된 법인세액 등에 외투비율을 곱한 금액을 5년간 전액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지 수의계약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강화)
 - ☞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1천만원)에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6개월 내)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계약전력 5천kW 이상 시설(2,631호)의 전기사용량을 최대 15% 사용 제한, 전기 다소비 건물은 26℃ 이상, 공공기관은 28℃ 이상 실내 냉방온도 유지, ‘문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금지, 공공기관 및 에너지다소비건물(476개소)의 냉방기 순차 운휴(30분간격) 실시를 내용으로 한 에너지사용제한조치(신설)
- ☞ 2013년 하절기(공급)원전 3기 가동정지 및 (수요)하절기 냉방전력 급증 등으로 예비전력이 적정수준(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당면한 전력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수요관리 규제가 필요함에 원안동의함

(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시 △ 상권영향평가서와 △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13.1.23)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작성항목, △ 보완요청 사유 및 기간)을 규정(강화)

[작성 항목]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개설자, 개설지역 등) 3.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대규모점포 : 반경 3km/준대규모점포 : 반경 300m~500m) 4. 인구통계학적 현황 분석(거주인구수, 거주세대수 등) 5.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대규모점포, 전통시장 현황 등) 6. 상권의 특성 분석(상권내 주거형태, 상권내 교통시설 등) 7. 상권영향기술서	1. 해당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계획 2.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계획 3.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계획 4. 그 밖에 해당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사업의 계획

[보완요청 사유 및 기간]

보완요청 사유	요청기간
1. 특별한 사유 없이 작성항목을 누락한 경우, 2. 거짓으로 작성함이 명백한 경우 등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완요청 가능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상권영향평가서의 기재항목은 사업자가 접근가능하고, 지자체가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 자료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새롭게 도입되는 상권영향평가 제도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가 '실질적 허가제'로 전환·운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석유사업자(정제업자, 대리점, 주유소)의 수급·거래상황(거래회사, 재고량, 입·출하량 등)보고의무를 (현행)월단위 전자·서면보고에서, 日단위 자동보고로 변경(강화)
- ☞ 현행 月단위 보고는 수급·거래(재고량, 출하량, 입하량, 자기사용량 등) 이상징후 포착을 통한 가짜 석유 단속의 적시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고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으나, 日 단위 보고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週 단위 보고토록 개선권고하고, 석유사업자의 출하량 자동보고 방식은 데이터 수집방식의 간소화 등으로 수급·거래정보(재고량, 출하량, 입하량, 자기사용량 등)를 활용한 가짜석유 단속 실효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규제 수용성 측면에서 사업자의 선택적 사항으로 출하량 자동보고 방식을 우선 도입하되,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출하량 자동보고 방식 의무화 여부 재논의토록 개선권고함

(1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특정물질³⁷⁾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의 허가취소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강화)
- ☞ 특정물질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취소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하는 개정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특정물질 수출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고 의무(수출실적 등) 부과(신설)

* 특정물질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37) 특정물질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 ☞ 몬트리올 의정서³⁸⁾ 가입 국가로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 및 보고 의무를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 위반으로 인한 무역제재 및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 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흡입용도(방향제, 탈취제)제품에 일부원료(PHMG, PHG) 사용 제한, 안전관리 대상 제품 확대(스티커 제거제, 코팅제), 제품의 독성표시 및 성분표시 규정 강화, 분무식 형태의 방향제, 탈취제 폼알데하이드 기준 강화, 섬유유연제 안전 기준 강화(글루타알데히드 함량기준 신설)를 내용으로 한 안전기준 개정안(강화)
- ☞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함유된 유해성 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해당 물질의 위해성 조사 및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기준임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산업부 소관 37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 유지·폐지 여부 등을 심사(내용심사)
- ☞ 총 37건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강화(2건), 규제완화(4건), 일몰폐지(14건), 일몰 유지 (23건)를 의결함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심사결과
			산업부	총리실	
실량표시상품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이·질량·부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실량 표시 상품 26종류와 허용오차를 관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1,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별표	규제강화	규제강화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개선권고 일몰유지(3년)

38) 몬트리올 의정서 :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심사결과
			산업부	총리실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업종별단체에 자료제출 요청	대외무역법9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일몰유지 (3년)
신뢰성인증기관의 신뢰성 인증검사 실시	신뢰성인증의 유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신뢰성인증을 받은 기업 대상으로 공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제3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일몰유지 (3년)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요건으로 전담조직 운영, 신뢰성평가 및 분석능력 등을 요구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1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일몰유지 (3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자격, 입주허가 및 취소 등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 기준, 지원업종의 범위 등을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시 제8조	규제완화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전시사업자 등록	전시사업자의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시 재등록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절차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절차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제완화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개선권고 일몰폐지
가스의 성분 및 열량측정	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의 품질에 대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해야함		규제강화 (개정완료)	규제강화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일몰유지 (3년)
도시가스사업 허가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2항	규제완화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일몰유지 (3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방사성폐기물발생자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시정 및 조치명령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의무	방사성폐기물 실태조사 협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시 관리사업자에게 인도 의무 등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심사결과
			산업부	총리실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관리비용 부담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관리비용 부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방사성폐기물법 제14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입, 생산 승인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5조 내지 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시행령 제5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5조, 제31조내지 제33조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7조	규제완화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 및 개발, 실험의 허가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발, 실험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23조, 제26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시행령 제23조, 제31조 내지 제32조 시행규칙 제14조, 제17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기관 등 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는 등 사유가 있을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제출토록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17조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유통연수기관의 지정절차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절차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 제4항, 시행규칙 제10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전자무역기반사업자등의 보안의무 규정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7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최소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규정 등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내지 제11조 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 시행규칙 제3조내지 제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심사결과
			산업부	총리실	
지능형로봇 관련 법인, 단체 등 의무부과	로봇산업통계조사,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제도 실시 및 품질보장사업 감독, 지능형로봇 투자 및 투자 위험보증사업 운영 ·감독 등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7, 9, 12, 14, 24, 26, 27, 41, 42, 49조 시행령 제5, 6, 14, 19, 24, 31, 34조 시행규칙 제2, 3, 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일몰유지 (3년)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도시가스사업자는 지경부와 금융위가 협의한 회계기준에 따라야함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2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 설립에 필요한 지경부장관의 인가 요건(최소 발기인 수 10명/해당 업종 종사자 100명 미만인 경우 10% 이상)	산업발전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석탄광업자 등의 서류제출·검사	산업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석탄, 연탄의 품질기준 위반한 유통, 수급안정 필요시 서류제출 요구 가능	석탄산업법 제36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유통표준전자문 서 및 유통정보 보안 등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위작 또는 변작행위 및 위작·변작된 전자문서의 사용·유통금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2조, 시행령제8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이러닝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이러닝산업 공급 및 수요 부문 현황조사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전자무역기반사 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절차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개선권고 일몰폐지
보고, 조사 및 과태료 부과	관리사업자의 수수료 사용내역 보고, 조사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개선권고 일몰폐지
환경경영 인증기관의 기관 및 인증현황 보고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3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짓자료 제출자, 시정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1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심사결과
			산업부	총리실	
환경경영체제 인증 실태조사 자료 협조	실태조사시 자료제출 협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2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산단내 자동차 정비업체 입주 규제	산단내 자동차 정비업체 입주 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호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제완화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대기업공장 신·증설 규제 (규제등록시 삭제 후 40에 포함시켜야함)	대기업공장 신·증설 규제 (규제등록시 삭제 후 40에 포함시켜야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호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산업단지 예외입주 자격 승인 요건	유치업종이 아닌 업종의 입주를 산단 총면적의 3% 이내에서 허용	산업단지관리지침 제7조제2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장설립등의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공장설립 등의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회사명, 대표자 성명의 변경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동주택등 건축공사의 통합감리업무	공동주택등 건축공사의 전력 시설물 통합감리업무 제외 대상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2항, 제29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시스템에어컨 설치관련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의 규제)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 대상지역 안에서 별도의 열생산시설을 설립하고자 할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일몰유지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상위법에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을 동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① 산업단지이면서, ② △ 전업률 50% 이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 10개 이상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일 것으로 규정(강화)
 - ☞ 항공우주산업 업계의 산업 집적화 요청 및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항공우주산업의 특성(제조업)을 고려시 공장 설립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춰진 입지(산업단지)가 적정하며, 항공우주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지정 목적을 고려시 전업률 50% 이상 요건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100kW ~ 500kW 저압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대행범위 세분화(강화)
 - ☞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 개정에 따라 저압 공급범위가 100kW 미만에서 500kW 미만으로 확대('10년 11월)되었으나, 100kW ~ 500kW의 안전관리업무 대행범위 세부기준을 함께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대행범위 세부기준은 직접 이해관계자(피규제자)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단위가격표시 의무대상을 대규모점포에서 준대규모점포(SSM)로 확대하고, 가격표시 글자크기를 △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강화(강화)
 -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SSM)를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으로 포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판매·단위 가격표시 글자크기(10~15p)를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소비자 편익을 고려 시 과도하지 않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강화 6)

■ 심사내용

- 상위법에서 국내복귀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과 동일 제품을 생산 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정함(강화)
 - ☞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금번 신설되는 제도임에 일정기간 실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생산품 동일성 인정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없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일몰규제(재검토행 3년)로 설정토록 개선권고함
- 상위법에서 자금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지원대상,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지역)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기업규모)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 ☞ 해당 규정은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으로의 복귀를 불허한다는 입지제한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국내복귀지원책 중에서 자금지원(보조금 등)에 한해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기업환경 차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간 기업역량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역차별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함
- 상위법에서 지원신청시 제출 서류의 종류 등 세부 행정절차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로 국내복귀계획서, 각종 증명서류 등을 규정(강화)
 - ☞ 상위법에 근거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본적 행정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 법령상 규정된 지원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 상위법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신청내용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산업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변경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실질적 지배관계의 변동, 주요 생산제품 및 업종의 변경 등으로 규정(강화)
 - ☞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기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변경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변경사항을 지원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상위법에서 국내복귀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근거와 비협조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처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는 실태조사의 대상 및 과태료 세부 처분기준³⁹⁾을 규정(강화)
 - ☞ 자금지원 등 국내복귀지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국내복귀계획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는 불필요한 실태조사를 제한하기 위해, 조사의 대상 및 항목을 지원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상위법에서 2개 이상의 동종·유사 업종 기업이 동반 복귀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는 동종·유사업종의 세부기준 등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강화)
 - ☞ 동반복귀 지원제도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복귀’의 개념(동종·유사 업종)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의 개념범위 내에서 구체화하고 있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 접수 방식을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에 따른 개별 민원청구에서 (개정) 공고를 통한 공모제로 변경하고, 적합통보 이후 사업 진행상황 보고의무, 적합통보 취소 사유 등 사전심사 공모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강화)
 - ☞ 민원인의 신청(민원법 근거)에 따른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제는 카지노 난립 가능성 및 공익적 목적의 정책적 판단여지 축소 우려가 있어, 작년 규제개혁위원회(’12. 9. 13)에서는 ‘민원법’에 근거한 사전심사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제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규제강화건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자가 ‘관광진흥법’ 상의 결격사유⁴⁰⁾에 해당함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경영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처분 근거

39) 조세감면, 보조금 등 현금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 : 1천만원, / 그 외 기업 : 500만원

40) 「관광진흥법」상의 결격사유: 폭력단체 결성, 조세포탈,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마련(강화)

- ☞ 카지노 운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폭력단체 결성, 조세포탈 등 결격사유를 가진 자의 카지노 위탁 경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의 위탁경영 특례⁴¹⁾에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관리·감독규정으로 그간의 입법공백을 해소⁴²⁾하기 위한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8)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동차분야 5개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 확대(강화)

- ☞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로 해당 자동차 관련분야의 핵심기술을 보호하여, 해당 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대한 악영향 방지를 통해 국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지정범위는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 그룹인 ①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와, ②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③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한 생산공정 시설의 설치 허가와 관련한 허가신청 제출서류, 허가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강화)

- ☞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주된 규제(생산공정이용시설의 허가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편익(국민보건 향상)을 고려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1)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위탁경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

42) ‘관광진흥법’은 카지노허가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시 허가를 취소토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탁경영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규정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과 관련하여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강화)
 - ☞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주된 규제(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편익(국민보건 향상)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0)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해당기관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능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른 차등적 자율운영 권한 부여(강화)
 - ☞ 등급제 실시를 통해 기관별 전략물자 수출관리 능력에 따른 차등적 자율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주도의 수출관리 규제에서 기업 자율규제로 변화를 유도할 위한 규제합리화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상위법에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동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명단공표 기준과 △ 공표 내용을 정함(강화)
 - ☞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원산지위반자 공표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라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5)

■ 심사내용

- 상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업자의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 품질기준 적용 대상 에너지(시행령)와 △ 품질검사의방법 및 절차(시행규칙)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함(강화)
 - ☞ 신재생에너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품질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⁴³⁾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어('15.7.31)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 상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해당 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신설하고, 보험·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등 구체적 사항을 동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함(강화)

[시행령 개정 내용(보험·공제의 내용)]

기간	종류	대상	방법
설비 인증 유효기간 (3년)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설비 결함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공제	신재생에너지 인증 설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정함

☞ 산업부 개정안은 보험의 보장범위(보험의 종류)를 ① 해당 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② 설비자체 하자보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조물책임에 대한 일반적 규제체계(제조물 책임법)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기업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나아가, '설비자체 하자보증'까지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입법사례는 없는 점(산업부 미제시) 등을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자에게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의무가입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② 설비자체 하자보증은 제외토록 개선권고하고, '보상 한도액'을 해당 설비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손해규모와 무관한 기준으로 설비 제조업자에게 합리적인 규제가 아니며, 연간 매출액이 적은 설비 제조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권리구제에도 미흡할 수 있음에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최소 보상한도액을 정하도록 개선 권고함

- 상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 시행령에 공제규정의 구체적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는 공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강화)

☞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관리·감독 주무부처로서 일반적 지도 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규정까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01년 규제정비계획)에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규정 승인규정을 폐지토록 한 바 있음('01.1.1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을 고려하여 산업부의 공제규정 승인권을 삭제토록 개선 권고함

4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에너지 등)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게 하는 제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상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함)을 동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는 품질검사기관으로 ① 한국 석유관리원, ② 한국가스안전공사, ③ 한국임업진흥원을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④ ‘품질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강화)
 - ☞ ‘품질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호)하는 것은, 향후 품질검사기관 추가 지정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토록 개선 권고함
- 상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는 설비인증 신청시 첨부서류(설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 증빙 서류 등), 인증 재교부 절차 등에 대해 규정(강화)
 - ☞ 상위법에 근거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 행정절차를 규정한 개정 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및 중기·경쟁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2)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금지(신설)
 - 적용기간 : ’13년 12월 16일(월) ~ ’14년 2월 28일(금)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금년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작년 동절기와 비교시 최소화된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총 소비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 에너지수입국으로, 전력 사용의 지나친 낭비를 억제할 필요.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에너지사용 문화정착과 전력피크 감소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상위법령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세부 선정기준을 동 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함(강화)

구 분	내 용
1.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비율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축소(청산·양도가 아닌)한 기업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생산량의 축소 세부 비율을 동 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 그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함
2. 신청기한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일 또는 해외사업장 청산·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3.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	선정이후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하고자하는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3년내에 신증설을 완료
4.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기한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양도를 완료하고, 축소를 개시
5. 해외사업장 축소 및 기존 국내사업장 유지 기한	해외사업장 축소 국내복귀기업은 축소된 생산량을 3년간 유지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이 완료된 기업은 3년간 사업장을 유지

- ☞ 동 고시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 세부기준의 설정 근거는 일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규제는 영업·진입 규제(허가기준 등)가 아닌 지원을 위한 선정요건을 정하는 규제사무로서, 향후 일정기간 제도 운영을 통해 관련 자료가 축적된 이후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폴리염화비닐관(이하 PVC관)을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지정(강화)

- ☞ 전체 하수관의 50% 이상이 불량 PVC관으로 시공됨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PVC관에 대한 품질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품질표시대상은 현행 공산품에 대한 품질 규제 중에서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임을 고려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25)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인정(Accreditation)’⁴⁴⁾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인정’ 수수료 금액을 정하거나 변경 시,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강화)

☞ ‘인정(Accreditation)’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수수료 기준을 정할시 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수수료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열사용기자재 검사 수수료 인상(강화)

[수수료 인상(안)]

검사기기 \ 인상률	48.5%	58.5%	68.5%
- 보일러	3t 미만	3t~10t 미만	10t 이상
- 압력용기	1m ³ 미만	1m ³ ~10m ³ 미만	10m ³ 이상

☞ 2005년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하고 있어, 검사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정부예산으로 부족분(연간 약 36억원)을 보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수수료 현실화 필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7)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5% 혼합토록 한, 석유 정제업자에 대한 규제의 일몰기한 연장('13. 12. 31 → '15. 7. 30)(강화)

44) 인정(Accreditation) : 각종 검사·시험·인증기관의 능력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자격을 승인 / 인정을 받은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서는 국제인정기구(ILAC 및 IAF)의 동등성평가 승인에 의해 회원 국가 간 상호인정

☞ 동 고시상의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규제는 201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되었으며, 그 당시 위원회에서는 규제 법정주의 위배 소지 등을 이유로, 효력 상실형 일몰제('13.12.31까지) 적용하고, 향후 상위법을 개정하여 동 규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13.7.30)하여,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 다만,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전면 시행 前('15. 7. 30)까지 동 고시상의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규제를 존속토록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 이상의 개정 배경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중소기업청

석진영 사무관

(044)200-2415 sjinyoung@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개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13건 등 총 1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54회 예비심사 (2013.2.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운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제355회 예비심사 (2013.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63회 예비심사 (2013.4.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지침 개정안	제366회 예비심사 (2013.5.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1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안	제375회 예비심사 (2013.7.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제465회 경제분과 (2013.8.16)		
9. 전통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세칙 제·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4	신설 1, 강화 13 비중요 14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12. 1월 개정 이하 중소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 지정취소 기준 마련(강화)
 - * 거짓이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 이외 다른 위법성 시정 수단이 없으므로 타당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정기관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민주택 등에 우선공급의 대상이 되는 제조·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근속자 확인을 위한 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강화)
 - ☞ 제조·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인지 여부를 확인키 위한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재무제표는 신청인의 소속 기업의 주된 업종이 제조·지식기반업인지 및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 전월부터 12개월 간)는 상시 근로자 수 파악 및 소기업 종사자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은 휴·폐업 여부 확인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조달사업금액별로 입찰 가능한 기업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신설)
 - (1억원 미만) 제조 소기업 등(소상공인, 소기업)에 한해 제한경쟁입찰
 -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한해 제한경쟁입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상위법상 시행령에 위임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한경쟁입찰대상 조달사업의 상한액을 2,3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센터 운영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센터'의 평가지표를 인프라 중심(추진역량)에서 업무성과 중심(사업추진실적)으로 개편(강화)
- ☞ 산·학·연 협력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업무성과 중심(지식재산권 출원 실적 등)으로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3개 이상의 소상공인, 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공공조달 입찰시 해당 기업에 한해 제한입찰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 동 시행규칙에 위임된 공동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① 협업사업, ② 공동상표, ③ 공동특허, ④ 공동 기술개발로 정함(강화)
- ☞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소기업간 제품개발(공동특허, 공동 기술개발) → 생산(협업사업) → 판매(공동상표) 등에서의 협업을 촉진하여 제품 및 가격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입법예고 시 반대의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정부지원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위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평가기준의 기본 사항으로 ① 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②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③ 그 밖에 중기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평가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근거 마련(강화)

☞ 정부 재정집행(R&D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와 환류를 통한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기술혁신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제한사유를 추가하고 제한기간과 출연금 환수범위를 정함(강화)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 범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	해당금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전액 이내

☞ 상위법의 위임범위내(5년 이내)에서 참여제한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_미래창조과학부)]

- 시행령 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시행령 별표 2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환수사유	환수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7)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강화 1)

■ 심사내용

- 출자금이 '중기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탁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고시에서 '중기청장이 정하는 규모'를 10억원으로 규정(강화)

☞ 최근 개인투자조합 결성 증가 추세⁴⁵⁾로, 개인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하며, 현재 10억 원 이상 개인투자조합은 전체의 12% 수준으로 동 규제안의 적용대상이 제한적임, 아울러, 타법의 투자조합·회사 등의 경우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신탁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규제안은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중기청 소관 7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 유지·폐지 여부 등을 심사(내용심사)

☞ 총 7건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완화(1건), 일몰폐지(5건), 일몰 유지 (2건)를 의결함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심사결과
			산업부	총리실	
교육명령 대상기업의 기준	법제27조 또는 제28조의 동일한 조사 또는 동일한 분쟁조정 사항에서 부과되는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와 벌점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명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의4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한국장애인경제인 협회 유사명칭 사용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경제인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17조, 제21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의 설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보증추천,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사업수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10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45) 개인투자조합 등록 현황 : ('11년) 71개 → ('12년) 78개 → ('13년) 86개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심사결과
			산업부	총리실	
한국장애인경제인 협회의 설립	장애인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설립/협회 최소 발기인수 및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11조1항 시행령8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협회의 정관	정관 기재사항 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9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등록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47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법률 제50조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17조	규제완화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협업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청장의 승인요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법률 제37조 시행령제3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상위법에서 (a) 온누리상품권의 종류와 (b) 권면금액을 동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a)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b) 권면금액은 종이상품권(5천 원, 1만원), 선불전자지급수단(5만원, 10만원,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의 한도액은 중기청고시로 정함)으로 정하고, 담배 도매·중개업(소매업은 제외), 귀금속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안마시술소, 다단계 방문판매 등 41개 업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으로 규정(강화)

☞ 종이상품권 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도 허용하여 다양한 상품권 수요 충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은 점포별 1회 결제금액이 소액으로 고객권보다 소액권(5천원, 1만원) 수요가 많음을 고려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됨. 아울러 동 시행령상 기준은 현재 운영 중인 발행기준⁴⁶⁾을 법령에 이기(移記)하는 작업으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6)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운영세칙」(시장경영진흥원)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상위법에서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으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신설하고, 구체적 내용을 동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함(강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최근 3년간 창업지원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창업지원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 최근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부정거래·주가조작·자금횡령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벤처 캐피탈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의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금융 관련업의 일반적 규제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업종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규제하고 있으며, 창업투자회사 역시 금융업의 일종으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일정 자격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동 시행령상의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거나 일부 완화가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부담금 면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⁴⁷⁾를 규정(강화)
 - ☞ 동 개정사항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부담금 면제 업무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상 제출서류를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합리화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상위법에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기준을 동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운영 실적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3회 연속 부진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47) 동 시행령 제2조(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정부 예산('13년 250억원)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운영하므로, 운영실적 평가를 통한 예산 지원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안에서는 지정취소 기준을 3회 연속 부진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자체 개선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세칙 제·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상위법에서 중기청장의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동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함(강화)
 - ☞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5천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조정 대상의 되는 대기업의 사업규모⁴⁸⁾를 고려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을 마련(강화)
 - ☞ 동 시행세칙은 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적 성격으로 대기업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8) 예 : 대형마트 점포 1개 개설비용은 약 1,000억원(서울 홈플러스 합정점)

3. 특허청

서문수 사무관

(044)200-2436 sun61@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발명진흥법 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일몰도래 재검토형 법령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강화된 총 1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396회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400회 예비심사 (2013.12.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400회 예비심사 (2013.12.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제462차 경제분과위 (2013.7.3)		
계	-	원안의결 13	신설 13, 비중요 13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제출원 방식의 제한(신설)
 - 디자인권의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을 특허청을 통하여 제출할 경우 출원서 등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규정
 - ☞ 국제출원 방식의 언어요건에 대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디자인의 국제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제규범인 「헤이그 협정⁴⁹⁾」의 언어요건⁵⁰⁾을 준수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어 사용 능력 및 학습기회를 고려할 때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며, 대한변리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8)

■ 심사내용

-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취소 등 처분기준(신설)
 - 연구노트전문기관⁵¹⁾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등 기준(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위임)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하는 등 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 ☞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운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과 관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국가연구

49) 하나의 출원서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여러 체약당사자에서 산업디자인을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13.9월 현재 45개 체약당사자 가입, 우리나라는 '14년 상반기 가입 예정)

50) 직접 국제출원을 할 경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제출원을 할 경우에는 그 관청이 특정한 언어를 지정할 수 있음.

5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기관(발명진흥법 제9조의2)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개발사업의 효율적 활용과 촉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사례⁵²⁾와 비교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신설)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 또는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업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지정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기준이 유사사례⁵³⁾와 비교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으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특허기술정보센터 등록말소 등 처분기준(신설)
 - 특허기술정보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거나 업무 또는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처분기준을 정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⁵⁴⁾와 비교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말소 등 처분기준(신설)
 - 지역지식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거나 업무 또는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 ☞ 산업재산권과 관련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지식센터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⁵⁵⁾와 비교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52)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지정요건 및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며 디자인권의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을 특허청을 통하여 제출할 경우 출원서 등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규정

53)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

54)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

55)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

원안의결

•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신설)

- 발명의 평가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 사유발생시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업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지정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사례⁵⁶⁾와 비교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신설)

-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 또는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업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지정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사례⁵⁷⁾와 비교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 등 처분기준(신설)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⁵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전문인력 및 조직,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등 기준(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위임)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업무 또는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의 기준을 정함.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⁵⁹⁾와 비교해 규제내용

56)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

57)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

58)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의 9호)

이 과도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 등 처분기준(신설)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⁶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등 기준(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위임)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거짓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업무 또는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의 기준을 정함.
 -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은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우리 기업의 지재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⁶¹⁾와 비교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원본증명기관 지정기준·절차 및 준수사항(신설)
 -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 인력 및 설비 등의 요건⁶²⁾을 갖추고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규정
 - ☞ 원본증명업무의 특성상 원본증명기관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원본증명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므로 소정의 설비와 장비, 전문인력의 구비가 필수적이며 원본증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원본증명제도의 신뢰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⁶³⁾와 비교해 규제내

59)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지정요건 및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

60)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을 할 수 있고 동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음(발명진흥법 제50조의2)

61)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지정요건 및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

6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최소한의 전문인력,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 원본증명업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컴퓨터 등의 전산설비, 출입통제 설비 등 구비

63) 공인전자문서센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보관 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한 지정기준 등을 규정

용이 과도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원본증명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신설)

- 원본증명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업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물론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지정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사례⁶⁴⁾와 비교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신설)

-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특허법인(유한) 제도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13.7.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설립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법인(유한)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인가제는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 타 자격사제도와 유사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특허법인(유한) 출자제한 및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신설)

-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를 보증한 금액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특허법인(유한)은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손해배상준비금은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금액 평균의 100분의

6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상표법시행령 등 입법례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

-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함.
-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 남은 보상한도액은 3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특허법인(유한)은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과 달리 출자 금액 한도내에서 유한 책임만 지므로 소비자보호에 취약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자제한 및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변리사법에서 특허법인(유한)에 대해 출자제한 및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를 두었으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개정안의 출자제한, 손해배상준비금 등의 규정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 전문자격사 관련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타 자격사 입법례]

구 분	종 류	변리사(개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타법인 출자제한 등	타법인 출자제한	○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채무보증 제한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손해배상 준비제도	손해배상 준비금	○ (총매출액의 100분의 2)	○ (총매출액의 100분의 2)	○ (총매출액의 100분의 2)	○ (총매출액의 100분의 2)	○ (총매출액의 100분의 2)
	보험 가입	○ (손해배상준비 금 또는 보험)	○ (보험 또는 공제)	○ (보험 또는 공제)	○ (손해배상준비 금 또는 보험)	○ (손해배상준비 금 또는 보험)

(5)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6.30)에 도래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총 4건의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건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진단사업이 폐지('04.12)되어 '특허종합지원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별도의 진단기관 지정제도가 필요하지 않아 규제폐지의 원안에 동의하고, 지역지식센터 등록 등 3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지식센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설치여부 재검토 필요 등에 따라 일몰설정을 유지하는 원안에 동의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 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일정한 요건(보유인력, 실무경험 등)이 충족될 경우 지정할 수 있음	발명진흥법 제36조, 제37조, 시행령 제19조	규제폐지	원안동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함	발명진흥법 제 23조 제4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별표2,	규제유지 3년 재검토	규제유지 3년 재검토
특허기술정보센터 등록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함	발명진흥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 제2항 별표 1	규제유지 3년 재검토	규제유지 3년 재검토
금지예방 청구권 행사기간 제한 및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행사기간의 소멸시효 3년, 제척기간 10년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 제1항	규제유지 3년 재검토	규제유지 3년 재검토

제 4 절 | 국토·해양 분야

1. 국토교통부

김성찬 사무관
(044)200-2420 lchanibo@pmo.go.kr

심예보 사무관
(044)200-2424 shim105@pmo.go.kr

추대운 사무관
(044)200-2423 boriboa1@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건축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철도사업법 개정안 등 국토교통부 관련 98개 법령에 대해 신설 119건, 강화 94건 등 총 21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13건 중 1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부대권고 2건 포함)하고, 1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하였으며, 19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9회 예비심사 (2013.1.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제351회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 10	신설 6, 강화 4 비중요 10
3.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제355회 예비심사 (2013.2.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2015 세계물포럼 자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355회 예비심사 (2013.2.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57회 예비심사 (2013.3.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357회 예비심사 (2013.3.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제357회 예비심사 (2013.3.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59회 예비심사 (2013.3.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64회 예비심사 (2013.4.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460회 경제분과위 (2013.4.3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366회 예비심사 (2013.5.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제304회 본위원회 (2013.5.10)	원안의결 4 개선권고 4	신설 8 중요 4, 비중요 4
13.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정안	제367회 예비심사 (2013.5.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5 비중요 6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9회 예비심사 (2013.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369회 예비심사 (2013.5.24)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2.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4. 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6	강화 6 비중요 6
2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8	강화 8 비중요 8
2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농작물실제소득인정 기준 개정안	제371회 예비심사 (2013.6.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개정안	제373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운항기술기준 개정안	제373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개정안	제373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제373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개정안	제373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제374회 예비심사 (2013.7.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1차)	제462회 경제분과위 (2013.7.5)		
36.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2차)	제463회 경제분과위 (2013.7.9)		
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76회 예비심사 (2013.7.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고시 제정안	제464회 경제분과위 (2013.7.24)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39.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3차)	제464회 경제분과위 (2013.7.2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09회 본위원회 (2013.8.19)	원안의결 13 부대권고 1	신설 14 중요 2, 비중요 12
4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안	제309회 본위원회 (2013.8.2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42.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4차)	제465회 경제분과위 (2013.8.20)		
43. 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 제정안	제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4.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개정안	제383회 예비심사 (2013.8.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5. 운항기술기준 개정안	제383회 예비심사 (2013.8.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6.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3회 예비심사 (2013.8.30)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80회 예비심사 (2013.8.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9.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0.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87회 예비심사 (2013.9.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안	제387회 예비심사 (2013.9.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7회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387회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89회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제389회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6.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제389회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389회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390회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59.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	제390회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0.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	제390회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1.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0회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90회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63.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	제391회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제391회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5.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6.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8.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6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7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69회 경제분과위 (2013.11.1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72.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73.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7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16회 본위원회 (2013.11.26)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7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396회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77.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96회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8.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	제396회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79.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82.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5. 철도사업법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8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471회 경제분과위 (2013.12.9)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1, 비중요 2
8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7회 본위원회 (2013.12.12)	원안의결 7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8 중요2, 비중요 7
88.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2.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3.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9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318회 본위원회 (2013.12.19)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9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7.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473회 경제분과위 (2013.12.26)	원안의결 1 부대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101.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원안의결 199 개선권고 11 부대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119 강화 94 중요 16, 비중요 197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노외 및 부설 주차장 내 조도기준을 주차장 위치별로 세분화하여 전반적으로 조도기준을 완화하되 주차장 출·입구의 기준은 강화(신설 2)
 - (현행) 주차장 모든 구역에서 평균 70럭스 이상 조도 상시유지
 - (신설) 주차구획 및 차로 : 10럭스 이상,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 50럭스 이상, 주차장 출구 및 입구 : 300럭스 이상
- ☞ 주차장 출·입구의 조도기준은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인 주차장 조도기준은 완화이며, 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등 편익이 더 크며, KSA(한국표준협회)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의 주차장내 조도기준도 위치별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주차협회, 주차장설치자 등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및 차량훼손 방지 등을 위해 중형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너비를 확대(2.1m → 2.15m)(강화)
 - ☞ 최근 승용차의 ‘중·대형화’로 차량의 너비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기계식 주차장 주차구획의 너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2010년 중형기계식 주차장에 수용될 수 있는 차량의 너비 기준은 확대(1.80m → 1.85m)되었으나 주차장 주차구획의 너비는 1993년 이후 2.1m로 동일해 차량의 중·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함. 너비 확대폭이 5cm²에 불과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안전도심사의 용의를 위해 주차구획을 2.15m로 적용·설치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신설 6, 강화 4)

■ 심사내용

- 노선버스의 소화물 운송을 허용하되, 운송 가능한 소화물의 범위를 부령으로 정하고, 여객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위 운송 허용범위를 위반하여 운송하거나 운송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범죄 관련 물품이나 인화성 물질 등 승객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소화물의 종류, 규격, 종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부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교통사고 관련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운수종사자의 부정행위 금품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사업정지나 면허취소, 자격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범죄 가담 예방과 가담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타 업종 종사자의 경우 보험범죄 가담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의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알선된 운전자의 금지행위를 규정(신설)
 - 자동차 임차인에게 적정 운임(인건비, 통행료·유류비 등) 외의 금전적 대가 요구 금지, 불법 유상운송행위(유사 택시영업 등) 금지 등
 - ☞ 알선된 운전자의 금지행위가 부당한 금전적 대가 요구 금지 등 통상적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다르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렌터카 이용자 보호 및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준수사항 위반시 면허취소 등 처분(신설)
 - 알선 운전자 이용 강요 금지, 운전자 알선시 알선 운임 등의 고지의무, 보험가입 의무, 자동차대여가맹점 가입시 신고 의무 등
 - ☞ 자격미달 운전자 알선, 부당 요금 청구,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렌터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을 규정한 취지가 인정되고, 그 내용들이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당연사항들이며,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준수사항 및 처분규정을 규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자동차대여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가맹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함(강화)
 - 면허를 받은 자는 대여가맹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 자동차대여가맹사업은 제도 도입 초기로 운송질서 문란과 이용객의 피해예방을 위해 면허제

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경우에도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송가맹약관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자동차대여가맹사업의 질서확립과 고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가맹약관변경 등의 개선명령과 일정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강화)
- ☞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업정지명령 등은 일반적인 행정 실효성 확보수단이며, 유사사례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 및 방식으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시행령에서 정한 에너지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연도별 시행대상 지역 및 거래범위를 고시(신설)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별표 1)]

구 분	에너지평가서 제출 대상지역 및 거래범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2013년 2월 23일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매	서울특별시 소재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2014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매·임대	수도권 소재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임대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매·임대	전국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임대

- ☞ 대상 건축물 전체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행할 경우 부동산 거래지연 등 국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에서 무료로 평가서를 발급하므로 별도의 비용은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에너지평가서에 표시되는 내용은 에너지효율등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사용량임
 - ‘에너지효율등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결과를 기재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선택사항)

- ‘에너지 사용량’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면적의 단위세대의 사용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기재(의무사항)
 - ☞ 에너지 사용량은 「국가·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므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개별 세대가 아닌 단지별 동일평형의 평균 사용량을 기재하며, 동 평균 사용량은 인터넷 포털(네이버)에서도 이미 공개한 사항이며,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의 경우 건축주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하므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2015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동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이와 유사한 국제행사 지원 법령⁶⁵⁾의 과태료 수준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건설기계 27종 중 18종 126항목 보완·신설(강화)
 - 건설기계 전체에 공통적용⁶⁶⁾되는 안전기준(38항목)과 개별건설기계의 작업장치별 안전기준(64항목)을 보완하고, 관련 용어⁶⁷⁾(24항목) 신설

65)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66) 조향·유압·환기장치, 조종사 보호구조, 조종실 내장제의 내인화성 등

67) 낙하물보호구조, 토공건설기계, 트럭적재식 건설기계 등

[개별건설기계의 작업장치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건설기계 종류	개 정 내 용
불도저	후방원치(보호스크린) 등 2항목
굴삭기	좌우 안정도, 버킷 흘러내림량, 선회 주차브레이크 등 8항목
로더	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등 3항목
지게차	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조종사 보호구조 등 6항목
덤프트럭	유압실린더 변위량, 덤프트럭의 안정도 등 3항목
기중기	로프의 안전계수, 안전장치, 선회주차브레이크 등 13항목
모터그레이더	블레이드 등 2항목
롤러	진동장치 등 2항목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구동방식, 안정도 등 4항목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호퍼, 토출량 등 4항목
아스팔트피니셔	스프레더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의 재질 1항목
쇄석기	표준생산능력, 피더 등 3항목
공기압축기	자동멈춤장치 등 3항목
천공기	공기소비량 등의 표시 등 3항목
항타 및 항발기	오거장치
사리채취기	컨베이어 등 3항목
준설선	커터 등 2항목

- ※ 수·출입이 빈번한 건설기계의 특성상 유럽, 미국 등 주요국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국내·외 기준의 통일성 확보하였고, 국내 제작사의 경우 건설기계 수출시 이미 국제기준에 맞추어 생산. 또한 개정안은 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및 검사단체(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과 협의를 거쳤으며, 소규모 건설기계 제작사를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신설)
 - ☞ 건축물 사용에 따른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경우 재인증시 추가 수수료⁶⁸⁾가 발생하나 미미한 수준이고 수혜⁶⁹⁾를 위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해외사례를 준용하여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을 5개 → 10개 등급으로 세분(안 제9조)(강화)
 - (현행)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5개 등급(1~5등급)으로 구분
(개정) 모든 신축, 기존 건축물에 대해 10개 등급(1+++ , 1++ , 1+ , 1~7등급)으로 구분
 - ☞ 현행 규정의 경우 각 인증등급 내에 에너지 소요량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등급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개선한 사항이며, 자율적인 인증제도의 등급단위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고시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⁷⁰⁾을 추가로 정함(강화)
 -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전망치 대비 26.9%)를 달성하여 국가 에너지 절감정책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열(열관류율)기준을 현행 대비 평균

68) (주거용) 최소 50만원(85㎡ 미만) ~ 최고 1,320만원(120,000㎡ 이상)

(주거용 이외) 최소 190만원(1,000㎡ 미만) ~ 최고 1,980만원(60,000㎡ 이상)

(예) 국회의사당(81천㎡)의 경우 최고액인 1,980만원

69) 지방세 감면(취·등록세 5~15% 감면), 건축기준(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완화(4~12%), PQ심사 가점,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20~50%)

70) 냉난방을 설치하지 않는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22% 상향 조정

- ☞ 개정안에 따른 경우 2020년 신축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2,070천tCO₂eq)의 22.7%(391천 tCO₂eq × 7년 = 2,737천tCO₂eq) 달성가능하며, 단열기준을 강화할 경우 추가 공사비(연간 8,205 억원)⁷¹⁾가 소요되나, 에너지 절감금액은 연간 약 1,121억원⁷²⁾으로 7.3년 후 투자비 회수, 건물 수명을 30년으로 가정 시 3조3,630억원의 편익 예상이 되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에너지소비총량평가서 제출 대상 건축물을 현행 10,0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 3,000㎡ 이상으로 확대(안 제21조)
 - ☞ 현행 총량평가 대상이 극히 한정적임(전체 허가건수의 0.08%)에 따라 총량평가 제출대상을 확대(0.21%)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할 필요가 있고,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기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을 위한 입력값으로 평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음. 또한 에너지소비총량평가의 경우 의무적인 평가기준은 없으며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향후 에너지성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는 건축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음. 따라서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가 현행 60점 이상 → 65점 이상으로 상향(안 제14조)
 - ☞ 기준 강화시 2020년 신축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2,070천tCO₂eq)의 30.3%(522천tCO₂eq × 7년 = 3,654천tCO₂eq) 달성 가능하며, 허가기준을 강화할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비 상승(연간 약 16,062억원⁷³⁾)이 수반되나, 연간 약 1,496억원⁷⁴⁾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 10.7년 후 초기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기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결과 평점합계 평균이 69점으로서 개정안에 따른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1) $9,450\text{원}/\text{m}^2 \times 86,823,692\text{m}^2$ (5백㎡ 이상 연간 건축물 허가면적)72) $167,346\text{toe}(\text{절감량}) \times 669,964\text{원}(1\text{toe당 단가})$: 2012 에너지·기후편람(에관공)73) $18,500\text{원}/\text{m}^2 \times 86,823,692$ (5백㎡ 이상 연간 건축물 허가면적)74) $223,314\text{toe}(\text{에너지 절감량}) \times 669,964\text{원}(1\text{toe당 단가})$

(8)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인증기관⁷⁵⁾ 지정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현행은 없음)(신설)
 - ☞ 민간이 포함된 인증기관의 심사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국가 공인인증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친환경농업인증 등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건축물의 분양신고 후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 의무화(신설)
 - ☞ 건축물의 분양신고 후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신고의 규정이 없는 현행제도의 미비점⁷⁶⁾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분양사업자의 편의도모⁷⁷⁾를 위한 적절한 규제 로 보아 원안의결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강화)
 -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변경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1억원 이하)하는 것으로, 동법 같은 조항의 과태료 부과내용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 분양대금의 납입기준을 위반한 경우

- * 계약금 : 계약시(20% 이내), 중도금 : 공사비 50% 이상 투입시(70% 이내)
잔 금 : 사용승인일 이후

2. 시정명령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75) (공공 6개)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민간 5개)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 (주)크레비즈큐엠,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76) 현행은 분양신고 후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사항을 철회하고, 다시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발생

77) 변경되는 사항만 신고토록 하여 분양사업자의 편의 도모

(1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⁷⁸⁾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강화)

☞ 고층건축물은 하자 발생 시 보수·보강이 어렵고 붕괴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므로 시공 시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건축법 제67조 제4항)에서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 시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건축구조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또한, 규제이행 비용은 연간 약 223억원⁷⁹⁾(총 공사비의 0.3%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구조분야 감리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을 건축구조기술사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비용이 상쇄되어 순수한 비용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불공정 하도급 행위⁸⁰⁾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설정(강화)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현행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등 처분기준’과 동일하여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료 보아 원안의결

(12)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신설 8)

■ 심사내용

- 시·도지사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로 적정한 면허총량을 산정하고 그 총량을 초과하는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신규면허 발급,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신설)

78) 현재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사, 감리전문회사가 시행

79) 연평균 허가면적(7,454,372㎡) × 3천원(㎡당 구조감리비 단가) ≈ 약 223억원

80)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사업구역간 형평성 논란, 여객운수사업법과의 충돌,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소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양도·양수를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가능연령을 70세로 하되,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75세까지 연장 가능(3년 유예기간 설정)(신설)
 - ☞ 동일 업종인 버스기사 등과 형평,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등 규제의 합리성이 결여. 따라서 청년규정 삭제, 안전운행 장치로 70세부터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의무화 도입을 개선권고
- 택시운전자 준수사항(합승·승차거부 금지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현행의 10배, 5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신설)
 - ☞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교대시간에 따른 승차거부 등)하는 현실, 택시운전자의 낮은 수입수준(월 150~180만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가 과도함. 따라서 과태료를 현행의 2배(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누진제 도입을 개선권고
-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 기준미달 사업자 및 동법에 의한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신설)
 - ☞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범위반으로 운전자 및 사업자로써 처분을 받아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택시의 대리운행 등 사업자로써의 행위에 대해 처분하도록 개선권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벌점을 바탕으로 택시법에서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음. 따라서 삭제 권고
- 사업자 의무사항으로 유류비, 세차비 등 차량 운행비용의 전가금지, 차량의 도급제 운영 금지,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규정(신설)
 - * 사업자가 자신의 피고용자가 아닌 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받고 택시 차량을 대여하고 운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임하는 형태
 - ☞ 사업자의 차량운행비용 전가 금지의 경우 관련 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있는 도급제 운영 금지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된 사항은 아님. 또한,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선언적 규정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 택시 운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동의없이 관련 차량운행

정보를 수집·이용토록 함(신설)

☞ 운행관리시스템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공단내에 구축하는 것으로 택시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없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이용코자 하는 정보도 차량의 위치·운행경로 등 공공목적을 위한 여객수송수단으로서의 택시운행정보이므로 개인정보와는 거리가 있음. 따라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사업자단체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신설)

☞ 택시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현재 복지향상을 위한 수단이 없어 그 수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기금의 관리·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제정시 심사할 사항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행정처분 내용](신설)

위법행위	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안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법)
1. 택시운송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운송 비용 전가 2. 택시사업자가 도급 택시 운영	① 택시사업 면허취소, 6개월 이내 면허정지 또는 감차명령 ② 1차: 사업일부정지(90일), 2차: 감차명령	① 택시사업 면허취소, 6개월 이내 면허정지 또는 감차 명령 ② 상동

☞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했을 경우 현행 관련 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도급택시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도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따라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 평가항목 및 제외대상 신설(신설)
 - (평가항목) 1. 지적측량기술자, 2. 측량장비, 3. 최근 3년내 지적재 조사측량 수행실적, 4. 재정상태 및 신용도, 5.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6. 측량·조사 대행계획서, 7. 기타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별첨 참조)
 - (제외대상) 1.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변조, 허위 및 청탁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부정 대행 신청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대행자 결정을 취소,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 지정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항목과 지적재조사사업간의 관련성이 높고, 지적소관청(시·군·구청장)이 선정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여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률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⁸¹⁾’ 관련 세부사항(보증금액, 계약이행보증제, 면제사유, 통보사항)을 정함 (신설)
 - (보증금액(제1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금액과 동일하게 4개월분
 - (계약이행보증(제1항))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대여대금지급보증에 대응 하는 계약이행 보증 가능 근거 마련
 - (면제대상(제2항)) 장비대금 지급이 확실히 보장되거나, 보증서 발급 실익이 적은 경우 보증서 발급면제
 - (통보사항(제3항))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건설산업종합 정보망,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에게 통보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동일하게 보증금액을 설정하고, 기계대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이 가능하여 보증서 발급주체인 건설업자의 규제이행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15)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경우, ‘부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을 ‘거절된 이후 6개월’로 규정(신설)
 - ※ 임대주택은 임대임대기간이 지난 후에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신청 가능
 - ☞ 동 개정안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임대사업자가 위법상태를 치유할 기회를 잃게 되고 길게 하면 임차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용자금 이자를 6개월 연체 시 ‘부도 등’으로 간주(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하는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도록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사용검사 전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현재의 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사후 적발 및 처벌 제도에 비해 보증가입의무의 실효성 제고에 더 효율적이고, 보증가입이 의무화 된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⁸²⁾하는 경우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해당주택의 재무정보 및 고지절차를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증액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및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등 임대보증금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우편 등 일반적인 정보제공방법을 규정하여, 사업자에게는 추가 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반면, 임차인과 사업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로 임차인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임대조건 신고 시기를 ‘입주 예정일 10일 전’에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강화)
 - ☞ 동 개정안은 임대조건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 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일 기준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절차를

82) 주로 보증금 증액 대신 월 임대료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는 자금확보, 임차인은 월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환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따르는 매입임대주택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임대조건이란 계약의 내용이므로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현실에 적합하므로 신고시기의 변경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5% → 10%)(강화)

[(현재)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공급 대상	주택 유형별		비고(현행)	
	국민주택등 ⁸³⁾	민영주택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국민) 10% → 제한없음 - (민영) 10% → 15%(수도권), 20%(비수도권) 	
개인 신청	신혼부부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단,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다자녀가구	10%	5%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20%	-	
	국가유공자	5%	-	
계	65% 이내	28% 이내	-	

- ☞ 동 개정안은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해당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나머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므로 사업자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로 혼인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10%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3) 국민주택 등 :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되거나, 국가·지자체·내·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 이하 주택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5)

■ 심사내용

- 법률개정⁸⁴⁾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취득가능 수단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추가되어 교육과목, 이수기준 및 신청절차를 규정(강화)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교육(5), 기본주행(2.5), 긴급제동(1.5), 특수주행(1), 위험예측 및 회피(1.5), 미끄럼(1.5), 일반주행(1), 종합평가(2)
이수기준	교육 총16시간 중 14시간 이상 참여, 종합평가 총점 6할 이상
신청절차	필기시험 응시절차와 동일하게 신청서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 ☞ 법률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통안전체험교육은 필기시험 대체수단으로 임의적 성격이 강함을 감안할 때 교육이행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견인차 등)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 고장·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난 금지의무 추가(강화)
 -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규제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이 없으며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운송사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 규정(강화)
 -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강화 (운영정지 10일 → 30일)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난 금지 위반시 사업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 ☞ 신설되는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콜벤 사업자의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사례 등을 방지하려는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중 적용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으며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84) 그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방법으로 필기시험 합격만 존재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의한 취득 방식이 새롭게 추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등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준수사항 위반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강화)
 -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5~10만원 → 15~30만원)
 - ☞ ‘화물자동차(주로 콜밴) 부당운임 수수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부과액을 설정하였으며, 법령준수 시 규제강화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음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강화)
 -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강화(운영정지 10일 → 30일)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난 금지 위반(1차: 사업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정지 20일, 3차: 사업전부정지 30일)
 - ☞ 신규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콜밴 사업자의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사례 등을 방지하려는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위반횟수 별로 처분수위를 상향식으로 적용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 유지하여야 하는 운송실적 기준(신설)
 -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
 - ☞ 법률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진입제한 성격이 없으며,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5% 수준은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준수하기에 큰 무리가 없음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신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당 1대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 전용면적 120㎡당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0.6대 이상 -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세대당 0.5대

☞ 2009년 이후 원룸주택이 폭증하면서 원룸 인근지역까지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당 1대 기준인 일반주택에 비해 원룸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세대당 0.2~0.3대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완화된 측면이 있고, 원룸거주자의 차량보유율은 54.4%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주차장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이 현행 일반주택 주차장 기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완화된 기준이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참고 : 현행 주차장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원룸형 주택	단지형 주택	일반 주택
60㎡당 1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세대당 1대 (60㎡ 미만 0.7대)	세대당 1대 (60㎡ 미만 0.7대)

(1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지자체 장이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⁸⁵⁾이라면 어디서나 원룸형 주택 건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시·도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

☞ 원룸주택 공급과잉⁸⁶⁾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공급조절 정책이 요구되고, 동 개정안이 일률적인 원룸주택 입지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85)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86) 2012년 7월 전체입주를 69.8%(수도권 64.9%) → 2013년 3월 전체 입주율 54.2%(수도권 51.6%)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원룸이 아닌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⁸⁷⁾의 건설은 가능하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률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외부장치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제도’ 대상 외부장치의 범위⁸⁸⁾를 정함(안 제1항)
- 외부장치용 자동차등록번호판 신청·발급 절차 규정(안 제2항~4항)(신설)
 - 신청서식(별첨) 및 자동차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해당자동차를 제시하고 일반 자동차등록증 발급기준을 준용하여 발급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일반 자동차등록번호판 신청·발급절차와 유사한 수준이며, 규제대상이 외부장치를 설치한 자에 한정되고 규제비용(서울 기준 3,250원)이 작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한 ‘자기관리리츠⁸⁹⁾’ 설립보고서 내용에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구성,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발기인총회의 의사록, 발기인 및 임원의 경력증명서,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87)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부대복리시설(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설치 등 건설기준이 일반주택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있음

88)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차실 및 적재장치에 운반이 불가능한 자전거 등 레저용 기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을 것

4. 제4항제2호에 따른 레저용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자동차의 뒤쪽에서 가려지지 아니할 것

89)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로 2011년 임원비리, 가장납입 및 추가조작 등 3건의 금융사고가 자기관리리츠에서 발생(다산·골든나래·삼우 리츠)하여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설립보고서 제출 3개월 후 제출해야 하는 현황보고서에도 위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신설)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설립보고서의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영업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에 따른 비용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중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⁹⁰⁾, 대상⁹¹⁾, 규모(개발면적 또는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및 사업계획의 취소를 규정(신설)

☞ 동 개정안은 중요한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투자자 의견 반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으로, 그 내용이 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⁹²⁾인 사업계획의 확정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종류, 대상 등의 변경 및 계획취소에 한정하고 있고, 총회개최 비용은 경미함에 반해 투자자의 권리보호라는 편익은 중대한 점, 투자회사의 종류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등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감독이사⁹³⁾가 될 수 없는 자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그의 특별관계자⁹⁴⁾를 규정(신설)

☞ 해당 리츠의 주식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등은 직접 이해관계자이므로 감독이사로서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감독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추천기관으로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⁹⁵⁾를 규정(신설)

90) 토지를 택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 등(법 제2조 제4호)

91) 토지, 공유수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92) 해당연도 사업계획 확정,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등(법 제12조 제1항)

93) 법인이사(위탁관리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자

94) 배우자, 6촌 이내 부계혈족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 등의) 공동소유자

9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감정평가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유일하고, 현재 감정평가사 자격자(3,656명)의 99.1%(3,623명)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동 개정안은 리츠가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하기 위해 평가업자를 추천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로 정하는 것인데, 한국감정원은 국유 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된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에 의해 주택가격의 공시를 담당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고, 부감법 제40조에 의해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현재 거의 모든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 등 공공기관에 평가업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므로, 두 기관 모두 특정 업자에 편향되거나 리츠와 유착될 가능성이 낮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추천 기관으로 정함으로써 추천기관 간 담합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리츠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 해당 사업연도말 10일 전까지 배당여부 및 배당예정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부동산의 규모를 총자산의 10% 이상으로 함(신설)

[참고 :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동 제도 도입 배경]

-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은 분할성이 없는 대규모 자산이므로 매각하여 배당하는 경우 기업가치의 큰 변동이 발생
 - 통상 주식시장에서 배당 전에는 배당이익이 반영되어 주가가 높고, 배당 이후 다시 원상회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 주주명부폐쇄* 당시 주주가 아닌 이후의 투자자들은 부동산 매각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데 배당의 권리는 없으므로, 대규모 배당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하락만 감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명부를 결정하는 일로 통상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이루어짐

-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전일 대비 10% 변동하는 경우를 이상신호로 보아 서킷브레이크⁹⁶⁾를 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6) 주가의 이상 변동시 주식시장의 혼란 및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

(22)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호객행위로 적발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규정(별표)(신설)
 - ☞ ‘호객행위 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호객행위 근절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시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 시 적절한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기준을 12㎡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 (강화)

현행	개정안
•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최소 주거전용면적: 12㎡	•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최소 주거전용면적: 14㎡

※ 주택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최저주거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1-490호, 2011.5.27)]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거실 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동 개정안은 원룸형 주택의 주거전용면적기준을 주택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⁹⁷⁾이 청구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에 대하여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 등)는 3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도록 규정(신설)

☞ 동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심사청구한 하자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인데, 주택법은 위원회의 하자판정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⁹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이행 기한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한 것은 ‘하자보수 청구 접수 3일 이내 보수’하도록 정한 같은 조 제3항의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4) 사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6)

■ 심사내용

- 사도의 개설허가 및 사용료 징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하도록 규정(시행령 제2조 제2항)하고,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규정(시행규칙 제2조)(강화)

의무제출 서류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제출요청 서류	1. 공사계획서, 2. 경비예산명세서, 3. 설계도 4.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경우) 7. 사용검사전 사도 이용계획(사용검사전 도로를 이용하려는 경우)

97)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 포함

98)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9호: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한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도의 개설허가를 위한 신청절차와 허가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관련 조항으로 이동(제5조 → 제2조제2항)하여 배치하고,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허가절차 및 첨부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 반영하는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사도법 시행령 제5조 (표지) 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사용검사 전 사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허가 신청 시 함께 허가를 받도록 규정(시행령 제3조)하고, 사도의 사용검사를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시행규칙 제5조) (강화)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사도의 사용검사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축·증축·변경 공사의 경우에는 통행에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설허가 등의 신청 시에 ‘사용검사 전(前) 사도의 이용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개설자 및 통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사용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사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을 하도록 규정(시행령 제4조) 하고, 허가신청을 위한 제출서류⁹⁹⁾ 등을 구체화(시행규칙 제6조)(강화)

☞ 사도의 보전(保全) 또는 통행상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통행제한·금지를 위한 허가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법제화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사도법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

•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 제6조), 허가신청을 위한 절차 및 서류 등 규정(시행규칙 제7조)(강화)

* 첨부서류 : 1. 사도의 유지 및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빙 자료

☞ 사도의 개설자가 다른 사용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의 총당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며, 첨부서류 등의 세부사항은 현행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9) 첨부 서류 - 통행제한(금지) 사유의 확인을 위한 서류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사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강화)
 - ☞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¹⁰⁰⁾를 감안 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면범위 규정(강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3호	300만원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4호	30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5호	300만원

-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부담완화를 위해 감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유사 입법례¹⁰¹⁾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호객행위¹⁰²⁾로 적발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세부부과기준 규정(신설)
 - ☞ ‘호객행위 금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1천만원)에서 부과액을 규정한 사항으로 영업정지(3개월 이상)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성격 및

100)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권리·의무승계 신고) 30일 이내 신고

101) 각건축법 제110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도로법 제97조 등

102)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시 적절한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자동차제작·판매업 및 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강화)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제작증 정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법 제8조제3항 위반) : 10만원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8조의2 위반) : 100만원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법 제58조제8항 위반) : 10만원
- ☞ ‘자동차정보 전송제 및 반품사실 고지 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50~100만원)에서 부과액(10~100만원)을 규정하여 적절한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또한, 피규제자가 소수(정비사업조합회원 18천여명)인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강화 8)

■ 심사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규정(1대 사업자¹⁰³⁾는 제외)(강화)
 -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부담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 할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의 범위 확대(강화)
 -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상주하여 영업하는 경우,

103) 소유 대수가 1대인 사업자는 주사무소 소재 시·도 및 이와 맞닿은 시·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 영업을 금지됨 /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 추가

- ☞ 화물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관련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는 정책¹⁰⁴⁾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 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강화)
 - ☞ 화물운송 종사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관련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는 정책¹⁰⁵⁾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례(한국마사회법 제11조) 등을 감안 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여 영업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규정(강화)
 -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피규제자의 추가적 부담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상주하여 영업하는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강화)
 - ☞ 운송주선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가 있고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평가(공정위, 중기청)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여 영업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규정(강화)
 -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 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상주하여 영업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규정 추가(강화)

104) 국무총리실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10.12월)」 반영

105) 국무총리실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10.12월)」 반영

☞ 운송가맹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평가(공정위, 중기청)시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운수사업자 등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추가(강화)

☞ 운수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평가(공정위, 중기청)시 이견이 없었음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일명 '택배')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신설)

☞ 택배 전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타 운송사업 종사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등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택배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고시)'을 통해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공고되었고 본 건에 대하여 1년 후에 계속 시행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8) 농작물실제소득인정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실제 경작기간에 한해 실제소득으로 인정 및 소득률 적용 기준을 합리화(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은 당해 토지에서 이전 2년간의 연간 평균총수입을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경작기간의 <u>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u> 보상액을 산정(제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소득 산정방법: 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제3조) 보상액 산정시 소득률은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¹⁰⁶⁾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작물별 소득률이 없는 작물은 <u>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을 적용</u>(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은 당해 토지에서 이전 2년간의 연간 평균총수입을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경작기간에 한해 <u>실제소득을 기준으로</u> 보상액을 산정(제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소득 산정방법: 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제3조) 보상액 산정시 <u>소득률¹⁰⁷⁾은</u>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농축산물 <u>소득자료집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u>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별 작물별 소득률이 없는 작물은 <u>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을 적용</u>(제5조)

[적용사례 : 경기도의 100㎡ 농지에서 1년간 참외경작으로 500만원 판매실적 입증시]

현행	개정안
보상액 : 5,880,000원	보상액 : 3,083,400
계산식: 5,000,000원/100㎡ × 58.8(%) ¹⁾ × 2년	계산식: (5,000,000원/100㎡ × 59(%) ²⁾ × 1년) + (1,334원 ³⁾ × 100㎡ × 1년)

- 주 1) 참외의 전국 소득률
- 주 2) 참외의 경기도 소득률
- 주 3) 경기도 단위면적당 참외의 평균수입

☞ 현행 기준은 경작기간에 대한 소득입증 자료를 보상을 받는 농민이 제출하고, 당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로 연간평균총수입을 산정하여 그 수입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농민이 소득이 많은 기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제출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동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농민에게 별도의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소득률의 적용기준을 도별 또는 유사작목군 소득률로 변경하는 것은 실제소득 산정을 위한 비교범위가 좀 더 구체화되어 실제소득에 더욱 근접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6) 농작물 생산 총수입/생산비×100

107) 농작물 생산 총수입/생산비×100

(2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13.2월)으로 초경량비행장치(자체중량 115kg이하인 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헬기), 무인비행선) 조종자도 국가자격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교관, 시설·장비, 교육과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신설)

교관자격	만 20세 이상으로 지도조종자 자격을 소지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교재시설	기본교과서, 훈련용 무인 동력비행장치 및 모의비행훈련장치 각 1대 이상, 강의실 등
교육과정	학 과 : 항공법규·항공기상·항공역학·비행운용 이론 등(20시간) 실 기 : 20시간 이상

-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요령의 유인비행장치 조종 전문교육기관 지정 요건과 거의 같은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0) 운항기술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중 아래 사항을 추가(강화)
 - (조종사 관련) 비행교관에 대한 국제기준 추가, 야간비행을 하려는 자가용조종사 및 사업용조종사는 일정한 야간비행훈련을 이수하거나 비행증명을 소지해야 함
 - (회전익 항공기 관련) 계기비행 하는 회전익 항공기의 비상전력 장치 및 구명보트 운영, 전방시현장치 사용 및 승무원 훈련에 관한 국제기준 도입
 - (기록장치 관련) 해상비행 사고시 위치추적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수중위치전파발생기 장착, 비행자료·조종실 음성·데이터링크 기록장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도입
 - (운영자 관련) 항공기 운영자는 운영기지 소재지와 항공기 등록국이 다를 경우 기지 소재 국가에 통보, 항공기운영교범을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 정비기록의 유지, 항공기 성능 운용 제한을 준수할 것 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기타) 폭발물 최소화, 불법 방해 행위 보고 의무 등
- ☞ 최근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ICAO부속서의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항공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규제영향평가(공정위, 중기청) 및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은 없으므로 원안동의

(31)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가스요금 단가 및 산정방법 신설(안 제5조 및 제6조)(강화)
 -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¹⁰⁸⁾의 ‘일반용 1’ 적용
-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 대상 시험종목 확대(안 별표)
 - (현행) 286개 종목 ⇒ (개정) 2,153개 종목
 -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KS규정의 변경내용과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본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은 기 시행되고 있어 규제이행 비용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32)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제항공노선 ‘승무원의 선량한도’는 연간 50밀리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 5년간 100밀리 시버트 이하로 정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로서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탑승횟수 제한, 노선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승무원에게 피폭 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연간 피폭 방사선량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보고, 그리고 5년 이상 기록을 보관할 의무 규정(신설)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승무원의 선량한도는 ‘생활주변

108) 요금종별 : 주택용, 일반용 1(식당 등 소규모 업체), 일반용 2(목욕탕, 수영장 등), 산업용 1(소규모 공장), 산업용 2(대형 공장, 사용량이 100만㎥ 이상) 등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와 동일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조사·분석 및 기록의무와 피폭방사선량 감축 조치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사·분석결과와 보고 및 기록보관에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하여도 5년 이상 기록보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3)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슬러지 수의 농도에 대한 시험빈도 강화: 생산개시 전 1회/일 이상(강화)
 - 굳은 콘크리트 시험종목에 휩 강도 추가
 - 그라우트 시험빈도 강화: '작업개시전 1회'에서 '당일 작업개시 전 1회/일 이상' 등
 -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하여 시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을 시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본 지침은 기 시행되고 있어 규제이행 비용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4)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항공기용 장비품 및 부품 등의 감항(堪航)승인¹⁰⁹⁾ 수수료 및 부가형식증명¹¹⁰⁾승인 수료를 신설하고 납부대상자를 신청자에서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로 확대(강화)

항공기 엔진, 장비품·부품의 감항승인 수수료	품목당 2,000원
부가형식증명승인 수수료	18만원 (부가형식증명 수수료의 약 50%)

109) 개별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확인

110)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증명(형식증명)된 항공기에 대해 중대한 설계변경 또는 장비품 등을 추가 장착하는 경우 부가형식증명이 이루어짐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항공기 장비품·부품 등의 수수료와 부가형식증명 승인 수수료는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수수료)의 개정('13.2.15)에 따라 승인업무가 추가된 항목으로, 장비품·부품 등에 대한 감항승인 건 수가 연간 1,000여건(수수료 약 200만원), 부가형식증명승인 건 수는 10여건(수수료 약 180만원)에 불과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경미하고 항공법(제17조 제1·2항)에 따라 형식증명 변경시에도 형식증명과 같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증명을 발급하므로 형식증명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과도하다 할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5)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1차)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설정된 일몰규제 중 금년도에 도래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기준 명확화' 등 총 22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다음과 같이 심사(개선권고1)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기준 명확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주택법 제21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의2	규제폐지	원안의결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함	주택법 제21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경로당 시설기준 개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로당 설치 의무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2항	규제완화 (일몰 3년 연장)	원안의결 (3년연장)
문고의 설치기준 명확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작은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		
보육시설 설치대상 확대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거나(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규정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규제강화	원안의결 (3년연장)
			일몰 3년 연장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의 주재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주사무소 3명, 분사무소 2명)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시행령 제70조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 폐지	개선권고 (3년연장)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골재채취를 일정기간 금지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규제폐지	원안의결
개발구역지정의 해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해제 가능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 시행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2조	규제폐지	원안의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수도권·광역시 등은 기업도시 입지를 제한하고, 유형별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 제9조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폐지	개선권고 (3년연장)
선수금	시행자는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폐지	개선권고 (3년연장)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지역 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제2항	규제폐지	원안의결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운수종사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폐지	개선권고 (3년연장)
자동차의 정기점검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61조, 제137조	규제폐지	원안의결
자동차 제작의 등록 신청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2항,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완화	원안의결
			일몰폐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에 준함	사도법 시행령 제6조	규제완화 일몰폐지	원안의결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	도시철도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규제폐지	원안의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품질인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한다)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실시	철도안전법 제28조 시행령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규제폐지 (일몰폐지)	원안의결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정밀진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토록 규정	철도안전법 제37조, 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제폐지	원안의결
종합물류망의 구축운영 및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자의 지정 등	종합물류망의 구축운영 및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제폐지	원안의결
국가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 설치·운영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제완화 일몰 3년 연장	원안의결
시설 부담금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	규제완화 일몰 3년 연장	원안의결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절차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승객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공항의 피해구제접수처를 통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제폐지	원안의결

(36)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2차)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설정된 일몰규제 중 금년도에 도래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총 74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다음과 같이 심사(개선 권고1)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부처의견	규개위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20호(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 필요	주택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등	시장·군수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회계감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용의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부처의견	규개위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자료의 보존, 공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등사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임대주택의 건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 이내 임대주택을 공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협회의 보고의무	총회의 의결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자격의 정지	시·도지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일몰삭제)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의 적정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영업정지 등	영업정지 사유 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일몰삭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등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에 등록제 도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자격사, 건설기술자 등으로 전문인력의 범위 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9조,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부처의견	규개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내지제4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일몰삭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상 명령	감독관청이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주주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토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예치, 국공채의 매입 등으로 운용하여야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2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50인 미만 법인의 공시업무 제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7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공동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절차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주택건설업자의 공익성,사업성 판단내용 법령으로 규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3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택지의전매행위 제한등	택지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허용특례를 제외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시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 규정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2조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 3, 제9조의2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택지개발실시계획 제출서류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으로 규정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정리하거나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시행령 제68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부처의견	규개위
물,수자원개발시설 등의 사용계약 미계약 사용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31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지하수조사, 지질조사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시 사전에 신고토록 함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일정규모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함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에게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보고·조사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요건, 법령위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발생시 시공업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지하수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지하수오염방지 명령 등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지하수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5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유출지하수 이용신고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로 인해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감소대책 수립 및 이용계획 수립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원상복구 명령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를 명함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5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수질측정 의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오염방지 조치 및 오염관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이주자의 취업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시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부처의견	규개위
원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 일부를 원 토지소유자에게 양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과태료 부과	위법 또는 불법 행위 등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0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등	산업단지 지정요청 할 수 있는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토지주택공사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다만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의 범위 내로 할 수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7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지정제한비율 - 국가산업단지: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상 - 일반산업단지: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별로 면적 330만제곱미터이상 또는 미분양비율 30퍼센트 이상 - 농공단지: 시·군·자치구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 제곱미터까지의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개발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비율 30퍼센트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사업시행자 교체요건 구체화	사업시행자 교체요건 규정(토지의 소유권 확보기준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7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시 아파트형 공장건축을 포함할 경우 의무임대비율을 설정	산업단지 개발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함 - 수도권 : 100분의 10 - 수도권외의 지역 : 100분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6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부처의견	규개위
개발구역 지정	개발구역 지정 신청시,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도위 및 기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 지정 가능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과태료	거짓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87조 내지 제89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용량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 및 용적율 등 개발밀도를 강화하여 난개발 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시행령 제62조, 6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킴	도시개발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제폐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사용방식과 혼용방식으로 시행 가능	도시개발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제제외 요청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별표1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에서의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 별표2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의 출입제한 등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공원법 제33조 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부처의견	규개위
온돌 및 난방설비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함	건축법 제63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교차의 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고속국도와 도로 등 기타의 시설을 상호교차시 입체교차로 건설	고속국도법 제7조 시행령 제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건설과 운영의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도시철도법 제15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궤도건설의 안전검사 및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안전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안전검사업무 위탁 시에는 위탁받은 자)에 제출해야 하고, 안전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시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를 받으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함	철도안전법 제69조제3항 시행령 제60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을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으로 탁송 또는 운송을 금지함	철도안전법 제43조 시행령 제44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내부규정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 및 절차의 시행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하여 이를 준수	철도안전법 제26조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교육훈련 기관 지정 및 취소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철도안전법 제16조 시행령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원안의결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실시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철도안전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제1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삭제	개선권고
토지의 직접사용	시행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제17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부처의견	규개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국토부장관이 하며, 지정제안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선수금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20조 시행령 제18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조성토지 등의 공급시 승인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건축물 등의 공급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 시행령 제1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 국토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행위 등의 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사업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1조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원안의결
개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변경포함)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3년 연장	개선권고

(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항소음부담금¹¹¹⁾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되,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를 준용함(강화)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개정안은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산금의 요율 등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요로 보아 원안의결

(38)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이 된 경우 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급여의 수준 등 기준을 정함(신설)
 - 특별시·광역시 지역 : ① 전년도 예산규모 29억원 이하, ② 조합원 수 1만4천명 이하, ③ 당해 조합의 상근직 임원 수(급여수령 여부와 관계없음) 18명 이하인 조합의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상근직 임원
 - 도 지역 : ① 전년도 예산 8억원 이하, ② 조합원 수 8천명 이하, ③ 상근직 임원 수 27명 이하인 조합의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상근직 임원
 - 시·군 지역 : 전년도 예산 1억원 이하인 조합의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상근직 임원
- ☞ 동 제도는 생계유지를 위해 배려가 필요하거나, 정부 위탁업무 또는 사회봉사(모범운전자 단체) 등을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입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수준을 대리운전 허용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조합규모 등 다른 기준은 제도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음. 그리고 급여수준은 대리운전 허용기준에 해당(59명)됨에도 다른 기준에 의해 대리운전을 할 수

111)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5~3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부과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없게 되는 임원(18명)이 발생하게 되어 동일한 급여수준의 임원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됨. 또한, 조합규모(예산)가 크고 조합원 수가 많으면서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업무량은 많은 반면 수입보 전 수단인 대리운전은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동 고시 제정안에서 조합규모, 조합원 수, 상근직 임원수 기준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하고,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 조제1항제2호 단서는 이중규제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부대권고함

현행	개선안(부대권고안)
<p>〈시행규칙〉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p>〈시행규칙〉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39)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3차)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설정된 일몰규제 중 금년도에 도래하는 '등록사업자의 영업실적 등 제출' 등 총 71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다음과 같이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등록사업자의 영업실적 등 제출	등록사업자는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주택법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택지의 우선공급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이 소유하거나 개발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함	「임대주택법」 제10조제3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 매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무기간이 경과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임차인 등에게 우선분양 전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체 등에 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주택법 법률 제91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당첨자의 명단관리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함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입주금 납부	입주금 중 계약금은 20%, 중도금은 60% 범위 내에서 받되, 중도금 납입횟수는 4회 이상으로 제한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급질서 교란금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을 양도·양수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주택공급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음	주택법 제39조, 시행령 제4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동주택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 점검 실시	주택법 제50조, 시행령 65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청약저축의 납입기간 산정기준	주택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 총일수 및 선납총일수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 일을 산정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방법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 총액이 많은 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민영주택의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청약예금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 등에서 지역거주자 우선으로 민영주택공급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노부모부양자 등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의 공급계약	주택공급계약서 포함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주택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체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	주택법 제101조, 시행령 제12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재당첨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대하여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투기과열지구외의 지역에서의) 주택의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부양자,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실시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 또는 위탁관리를 결정	주택법 제43조, 시행령 제50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임대주택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함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보고·검사 등	지자체장은 사업주체등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음	주택법 제90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함	주택법 제51조, 시행령 제6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기준 등	세대주 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으로 하고, 세대주 변경시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입주자 모집승인 및 절차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 공개모집하여야 함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의 전매행위의 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1~10년)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	주택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 대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주택법 제41조의3, 시행령 제45조의3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말소	주택법 제54조제1항, 시행령 제70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 신고	공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	주택법 제16조제7항,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건설공사 시공사업자의 제한	사업주택건설공사의 시공업자의 시공자격을 제한	주택법 제20조제1·2항, 시행령 제20조제1·2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감리자의 지정 취소 및 제한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감리자 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	주택법 제24조제7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작성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를 주택감리자에게 제출	주택법 제24조의2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부실감리자의 자격취소 등의 조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감리자에게는 등록말소,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주택법 제24조의 3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주택건설사업 등의 완료 후 사용검사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도록 함	주택법 제29조제1·2항, 시행령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사용검사 이전의 사용제한 및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을 제한함	주택법 제29조제4항, 시행령 제3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사업주체의 행위제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함	주택법 제40조, 시행령 제44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사업주체의 공동주택의 관리	입주자의 과반수 입주 전까지는 사업주체에서 공동주택을 관리	주택법 제43조 제1·2·5항, 시행령 제48조, 제49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주택관리방법의 신고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지자체에 신고	주택법 제43조제3항,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주택법 제43조제4항, 시행령 제5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	주택법 제46조제4항, 시행령 제6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동주택 관리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임, 위탁된 기관에서 관련교육 이수	주택법 제4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관리업의 등록	자본금 2억 이상, 일정 기술인력 등을 구비한 경우 주택관리업 등록	주택법 제53조,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시행규칙 제31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일정교육 이수 의무	주택법 제58조, 시행규칙 제35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동주택관리등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의 효율화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보고, 명령, 사실조사, 서류조사 등의 감독권 행사	주택법 법률 제59조, 시행령 제8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관리사협회의 공제사업의 승인	주택관리사협회의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공제사업 지도감독	주택법 제81조의2제4항, 시행령 제107조의 4, 제107조의5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주택관리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의 경우 매년도 공제사업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에 공시	주택법 제81조의2제5항, 시행령 제107조의6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관리사협회의 설립인가	주택관리사단체 등은 협회를 설립하려면 일정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승인받아야 함	주택법 제8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관리현황의 공개 및 통지사항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또는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입주자에게 공지해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관리사무소장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장(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출해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관리사보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로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제한	주택법 시행령 제80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공동주택의 배치	공동주택은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함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 홈네트워크 유지비 추가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관리비 항목에 추가	주택법 제45조, 시행령 제58조제1항제5의2호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홈네트워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시	주택법 제46조, 시행령 제59조 별표6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 마련	홈네트워크 설비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주택관리사의 의무고용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함	주택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7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기준 명확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주택법 제21조의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확대	10층이상의 공동주택은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건본주택 건축기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건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고, 전사용 마감자재 등은 공급가격을 표시해야 함	주택법 제38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등록사항의 정정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오류정정 신청 의무 부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시행규칙 제93조	규제유지	개선권고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측량기준점표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30일 전까지 이전을 신청하여야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측량성과 활용 간행물 심사시 서류제출	측량성과를 활용한 간행물을 판매하거나 배포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심사받아야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개선권고
협회설립기준 및 절차 마련	측량협회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유지 (3년)	원안의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5조의2(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하여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국공항공사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없이 영업, 무단 점유,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규제 및 이의 위반시 제지나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음	항공법 제106조의2, 제182조 시행령 제39조의2 시행규칙 제270조의2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상속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항공법 법률 제126조 시행규칙 제294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자체 보안계획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승무원·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대책 수립 필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우발계획의 수립	공항운영자 등은 민간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발계획 수립·시행 필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감독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억제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 지속 관리 필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탑승거절 대상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탑승거절 의무 부여 및 승객의 항공기 탑승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포함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규칙 제1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기장 등의 권한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기장이 해당승객 체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 부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검색기록의 작성 등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및 항공안전보안장비 운용 등에 관한 기록유지로 민간이 준수해야 할 규제 포함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규칙 제16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비행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15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원안의결
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체계 확립을 위해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기준 제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규칙 제15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개선권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신고를 지적소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83조	규제유지	원안의결
			일몰폐지	개선권고

(4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4)

■ 심사내용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¹¹²⁾을 정함(신설)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의 내용¹¹³⁾을 정함
 - ☞ 상기 규제는 종합개발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그러나, 본 규제는 지정권자가 신청자 중 특정사업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고, 종전 새만금사업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서도 현재의 새만금지원법 및 시행령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시행해오고 있었으며, 이와 유사한 개발 관련 법령에서는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규제임. 따라서 법제처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자구 수정을 할 것을 부대권고 함
-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¹¹⁴⁾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¹¹⁵⁾을 정함(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을 이와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및 그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기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 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할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종전 새만금사업 촉진법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을 이와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및 그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¹¹⁶⁾’에 다음 행위를 추가(신설)

112) ①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사업자, ③ 부동산투자회사 중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인 사업자 등

113)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목적 및 방법,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 등

114) 도시방재계획, 도시정보화계획,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등

115) 개발면적의 5% 또는 100만㎡ 이하 증감, 개발면적의 10% 이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116)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허가대상 행위는 종전 새만금사업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법, 내수면 어업법 등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인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관련 서류¹¹⁷⁾를 개발청장에게 제출(신설)
 - ☞ 상기 규제는 사업시행자가 일부 공사완료 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절차를 정한 것으로, 규제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법제처 심사시 자구 수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 함
- 사업시행자가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원형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목적 등을 적은 공급계획서와 지형도면 등 제출(신설)
 - 원형지개발자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개발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에게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공급 가능
 - 원형지개발자가 착수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 2회 이상 시정요구 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 해제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원형지개발 방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민간공급 사례가 없고, 원형지개발자를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뿐만 아니라,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를 동 제정안과 같은 경우에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한 행복도시특별법과 그 시행령, 공급계약 해제사유를 동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과 그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의 요건, ② 절차, ③ 선수금을 받은 토지 또는 원형지 등의 담보제공 금지, ④ 선수금 인수 후 사업 불이행 또는 이행능력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환불 조치사항을 정함(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의 수령 요건 및 담보제공 금지 등을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선수금 수령 절차 등을 정한 행복도시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⑦ 죽목의 식재 및 벌채

117) 준공 전에 사용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을 밝힌 서류, 관련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및 사용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감리자·공사감독관 의견서 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집행 등의 구체화(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포함될 대상의 구체화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 부여(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기업 우대 사항을 정하고 있는 「평창올림픽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 사업지역 내 민영주택 공급시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특별공급을 하는데 그 대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나열(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하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교원 등의 임용 자격, 계약 기간 및 외국인교원의 의무 등을 정함(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필요한 자본금 등 그 요건을 정함(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종전 새만금사업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외국법인 설립요건 등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요건, 신청 서류, 영업 장소, 영업개시 등(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삭제 및 조정 하였으며,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준하여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을 새만금사업 전 지역으로 하고, 운용 가능한 채널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 채널별로 해

당 채널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함(신설)

- ☞ 동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동 고시의 적용대상을 종합공사업 중 토목건축 업종 하나에서 5개 업종¹¹⁸⁾ 전체로 확대 하고,
 - 적용대상 업종별 공사의 하한금액¹¹⁹⁾ 및 하한에 해당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건설업자의 규모¹²⁰⁾(시공능력평가액 기준)를 규정(강화)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업 종	토목건축	토목건축/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규제대상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200억원 이상	좌동	41,0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상
도급공사금액 하한의 상한 (지자체·공기업 등)	200억원	좌동	180억원	20억원

- ☞ 현행 고시는 대형건설사의 수주 집중도가 높은 산업환경설비업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현실과 괴리된 면이 있으며,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토건공사뿐만 아니라 조경공사 등에도 대형건설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고시 적용 제외 업종의 중소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따라서, 동 고시의 적용대상을 종합공사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안동의. 또한 동 개정안의 산업·환경설비(180억원) 및 조경공사(20억원)에 대한 하한금액은 현행 토건업종(200억원)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나,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공사에 대해 현행 토건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하한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따라서, 원안동의하나 하한금액의 기준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 일몰 적용(2년)할 것을 부대권고

118)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업종 :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119) 하한금액 이하 공사금액 총액이 전체 공공공사 중 30% 정도에 해당

120) 해당 업종의 등록업자 총 수 중 상위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가 적용되도록 규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42)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4차)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설정된 일몰규제 중 금년도에 도래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총 64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다음과 같이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원안동의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건설공사 현장에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폐지
해외공사 상황보고	해외공사 수행시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3년)	원안동의
대리시공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시 다른 해외건설업자에게 그 공사를 대리시공하게 할 수 있음	해외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3년)	일몰폐지
건설기계소유자들의 건설기계자가정비 범위 등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비를 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16조의2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3년)	원안동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7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3년)	원안동의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책임감리원 배치시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시행령 제79조 내지 제81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기술자격취득의 인정기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을 등록분야별 기술자격등급 및 인정종목을 제한하고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분야별 관련학과로 제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등록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시행령 제10조의2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관리주체 부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폐지
시설물의 범위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범위지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에 내용 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시행령 제18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폐지
실태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시행령 제25조의2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하도급 제한 등	총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허용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시행령 제10조의3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구조상의 주요부분	구조상의 주요부분에 대해 명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제1항·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4)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건설기술자가 다음의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수행 정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시행규칙 제10조·제11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공동운수협정	차고지, 수송력 공급증대를 위해 공동운수협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시행령 제9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차령연장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차령조정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4조·시행령 제17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폐지
자동차 유상운송의 금지 및 사용제한 등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83조·시행규칙 제103조 내지 제105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폐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시행규칙 제2조의 10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자동차의 운행제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시행규칙 제7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3년)	일몰유지(3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	교통안전법 제39조·시행령제32조·시행규칙 제10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결격사유	한정차산자 등의 요건 해당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불가	교통안전법 제41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일정요건을 갖춘 교통수단운영자 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교통행정기관에 제출	교통안전법 제21조제1항·제5항·시행령제16조 내지 제18조·시행규칙 제4조·제5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교통안전진단 실시	일정요건에 갖춘 교통수단운영자 등은 교통안전진단 및 결과보고서 제출	교통안전법 제34조 내지 제36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	교통안전법 제54조1항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폐지
운행기록의 보관	교통수단운영자는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에 보관 및 교통행정기관에 제출	교통안전법 제55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교통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위반의 경중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교통안전법 제65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폐지
자동차의 운행제한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처, 극심한 교통체증지역 발생예방·해소, 대기오염 방지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폐지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의 지급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에 대해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제2항·시행령 제10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보험사업 종사자들의 비밀누설금지	보험사업 종사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지득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2항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	1.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 자동차 사고 후 유장애인단체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제1항·시행령 제25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납부	자동차운행자 등은 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납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보험회사 등이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에 대하여 심사의뢰하지 아니하고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보험회사등에게 과태료 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재물을 훼손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시행령제18조·시행규칙 제10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포함) 영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시행규칙 제4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보험사업자등의 의무보험 가입관련 통지 의무	보험회사등은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로 정하고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시행령 제12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련 자료제출의무	국토부장관은 지자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시행령 제6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 명시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시행령 제35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요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국제물류주선업협회 설립	설립요건 명시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31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전담기관을 지정한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운영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전자문서의 이용·개발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2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시행령 제26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물류공동화·자동화촉진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행위제한 등	물류단지 안에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시행령 제28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보고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시행규칙 제30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선수금	시행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시행령 제33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시행규칙 제25조 내지 28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권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등록의 취소 등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행규칙 제13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시행령 제13조·14조·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인가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행령 제10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경영지도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운송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시 개선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화물운송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9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운송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을 위해 허 가취소, 사업정지, 감차조치 사항을 규정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2조· 시행령 제9조의4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감독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 의 제출, 업무·회계상황 조사,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4조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등록기준(자본금) 기준조정	건설업 등록을 위해 일정 자본금 충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10조 별표2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업종별 등록기준 상호인정	자본금 등록기준 중복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1호	규제유지	원안동의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43) 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항공기 운영자가 항공기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자체 정비프로그램의 제·개정시 준수사항, 주기조정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신설)
 - (제정시 준수사항) 항공기 제작자 및 제작국가의 정비프로그램 및 감항성 유지정보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항공당국의 승인 취득

- (개정시 준수사항) 제작사의 정비프로그램 개정 또는 운영자의 신뢰성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점검주기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하며, 개정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항공당국에 입증
 - (주기조정 기준) 최소 1년 이상의 운영경험, 가능한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표본항공기로 선택, 주기조정을 위한 입증자료는 공인된 회의체의 승인을 받을 것 등
 - (주기조정 제한) 항공기 안전성에 영향이 큰 감항성 개선지시에 의한 주기, 항공기 형식증명 자료에 명시된 사용한계부품, 감항성 한계품목 등은 주기 연장 제한
 - (신뢰성 분석) 항공기 운영자는 정비프로그램 점검요목, 점검주기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분석하는 신뢰성프로그램을 운영
 - (기타) 항공당국은 항공기 가동률, 결함의 발생 경향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¹²¹) 부속서, 미국 FAA Order,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정비프로그램 등을 반영(참고 참조)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44)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관리기준 적용대상 차종 확대(강화)
 -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승합차, 경형·소형화물차
 - 측정대상 물질의 종류 확대 및 권고기준 강화

(단위 : $\mu\text{g}/\text{m}^3$)

구 분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아크로레인
현 행	250	30	1,000	870	1,600	300	-
개정안	210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1,000	220	50

- 조사·공표주기를 매 2년에서 매 1년으로 강화

☞ 동 고시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을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적절히 관

121) 국제민간항공의 항공기술·안전운송·시설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발전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회원국(191개, 우리나라는 52년 가입)은 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속서 1~18권을 이행해야 함

리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적용대상 차종을 현행과 같이 승용차로 한정하기보다 확대하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측정대상 물질의 종류 및 권고기준을 본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유사 입법례와 유해물질 조사는 정부(국토부)가 신차안전도 평가를 위해 구매하는 자동차를 이용,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참고5 참조)하므로 자동차제조사 등은 조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정부의 부담비용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5) 운항기술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중 아래 사항을 추가(강화)
 -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요인의 보정 : 보정연료 기준 반영
 - 연료탑재 요건(신설) : 연료 최저치 및 운항조건 등 안전기준 반영
 - 비행중 연료관리(신설) : 연료탑재시 확인 및 운항사항 반영
 - 회항시간 연장운항 이륙교체비행장(신설) : 비행장의 거리기준 반영
 -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항공기의 착륙가능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거리기준 반영(신설)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위한 기준 반영(신설)
 - 회항시간 연장 운항을 위한 교체비행장의 기상조건 등 반영(신설)
 - 운항연료의 3퍼센트를 보정연료로 탑재하는 요건(별표)
 - 터빈엔진항공기의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하는 항로교체공항으로 운항을 하기 위한 요건(신설)
- ☞ 최근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ICAO부속서의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범위 내에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부속서의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6) 지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¹²²⁾ 규정(강화)
 - ☞ 신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내용이므로 원안동의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¹²³⁾ 규정(신설)
 - ☞ 신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정으로 유사 입법례¹²⁴⁾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신고의무(법 제9조의2제1항)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강화, 시행령안 제44조 별표7)하고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법 제11조제3항)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규정(강화, 시행령안 제44조 별표7)(강화)

구 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1차	2차	3차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신고의무 불이행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무 불이행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¹²⁵⁾ 이내이고 유사한 성격의 같은 법 제8조제1항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불이행 및 같은 법 제7조제7항 승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 하여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2) 신고서에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및 감소대책 등을 첨부

123)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24) 하천법 제5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 시행규칙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125)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신고의무 불이행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무 불이행자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할 사항 및 전송 시점 구체화
 - 매매업 :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중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
 - 정비업 : 점검·정비명세서 중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
 - 해체재활용업 :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
 - 시기 : 이전등록 시점(매매업), 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정비업) 등
- ☞ 자동차에 대한 정보(이력)를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에게 제공,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자료의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료의 전산입력 및 전송을 위한 인터넷통신선 사용료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어린이집 및 학원·체육시설(13세 미만 이용자)의 자가용 자동차도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고, 허가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차령 3년 미초과 등을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차령 3년 미초과 등의 허가요건은 유치원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9)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주요 연료장치인 수소내압용기의 제조 및 장착 세부기준과 시험 방법 및 절차를 정함(강화)
 - (내압용기 및 부속품 제조 관련) 수소 내압용기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수소 가스 반복기압·피열·화염시험 등 각종 시험방법·항목 및 절차 규정

- (내압용기 장착 관련) 제조된 수소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할 때 용기와 배관의 설치 방법, 가스누출여부, 부식·흡의 확인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
- ☞ 동 개정안은 유럽규정 EU406/2010(수소차 형식승인 기준)과 최근에 제정된 GTR No.13(GTR on hydrogen and fuel cell vehicles, 2013.6.27) 기준을 반영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내압용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50)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종합물류기업¹²⁶⁾ 인증요건 중 3자물류 매출액 기준 가운데 ‘연간 3자물류 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 규정을 삭제함(강화)
- ☞ 3자물류(3PL)¹²⁷⁾ 활성화를 통한 물류기업의 전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국가정책과 부합하며, 현재 3PL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이면서 3PL매출액 비중이 40% 이하인 기업은 한 곳도 없는 상황으로 동 개정안과 같이 인증요건을 삭제 강화해도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1)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금지 등『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성실의무 등 일반원칙을 감정평가업자의 윤리로 규정하고, 감정평가 절차, 원칙¹²⁸⁾ 및 방식¹²⁹⁾,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을 평가대상 물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토지·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 외에 보상·담보·경매재무보고 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신설)

126) 화물운송업·물류시설 운영업·물류 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물류 전문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6년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시설 우선입주, 통관업 허용 등 지원

127) 화주기업이 자신의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1PL) 계열사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2PL)이 아닌, 물류전문기업에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형태

128)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

129)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감정평가업무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¹³⁰⁾ 등이 있음에 비추어 동 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그 내용 중 품위유지 의무, 위법한 목적으로 의뢰된 평가의 수입거부 등을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윤리규정 및 의뢰와 수입 규정은 감정평가업자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한 일반원칙, 물건별 감정평가 절차·방법, 감정평가서 작성방법 등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실무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준공 인가 전이라도 일정요건 등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강화)
 - ☞ 준공인가 전에 일부 완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일정요건 등은 제도의 이행에 꼭 필요한 점검사항으로 부담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유사 입법례¹³¹⁾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수익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100분의3) 징수(법률안 제37조제2항)하고 가산금 납부를 독촉 받은 자가 기한 내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법률안 제37조제3항)하도록 규정(강화)
 - ☞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범위 안에서 해당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며, 「부담금관리기본법」(제5조외3)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강제징수 규정을 본 법률에 둘 수 있음. 따라서 위 규제안은 수익자부담금의 체납방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며 그 금액 역시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체납액의 100분의3)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및 「국민건강진흥법」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0) 감사원은 2011년 7월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이 감정평가사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

13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④ 준공인가 전에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 국무총리실의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12.7.27.)에서 수익자부담금에 대해 가산금 또는 강제 징수 규정 미비 건으로 분류하여 제도개선 권고

(5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¹³²⁾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¹³³⁾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신설)
 - ☞ 본 규정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난개발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 그 규제의 정도가 과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타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 설치 시 비용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정(裁定)신청을 할 경우, 특정원인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자료¹³⁴⁾를 구체화(강화)
 - ☞ 제출해야 할 자료 등은 원인행위자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때, 중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특정원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특정원인자 2인 이상인 경우 설치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고려해야 할 내용과 동일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도시농업시설에서 목적(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의 사용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법 제49조제1항제5호)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부과기준(7만원) 마련(강화)

132)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대상지역으로 다음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①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②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③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133)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⑦ 죽목의 식재 및 벌채

134) 시설부지 면적, 주변 지역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과태료 금액(7만원)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10만원 이하) 이내로 도시농업시설의 질서유지 및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한 관리대책으로써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동법 제49조제2항제1호(도시공원에서 행사·노점에 의한 상행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 신청자¹³⁵⁾는 관련 주요 구성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거나 품질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신설)
- ㉡ 성능인정을 위한 표준시험실¹³⁶⁾의 조건을 실제 건축물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건축 조건 강화(측정대상 음원실과 수음실 바닥면적 14㎡ 이상 → 20㎡ 미만 및 20㎡ 이상 각각 2곳, 수음실 상부 천장은 슬래브 하부에 15~20cm의 공기층을 두고 천장마감(신설))
- ㉢ 시험조건 강화(신설)
 - (표준시험실)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의 구분없이 2개 이상 세대에서 측정(예 : 85㎡ 1개동 3개층의 1·2층에서 소음 측정) →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개 세대에서 측정(예 : 59㎡ 1개동 2개층의 1층에서 측정 + 85㎡ 1개동 2개층의 1층에서 측정)
 - (현장 시험) 연속된 3개 세대를 대상구조로 시공한 후 2개세대 이상에서 소음 측정 → 2개 동에서 각각 1개 세대씩 시공한 후 소음 측정
- ㉣ 성능인정기관에게 성능인정 관련 내용의 기록·관리의무 부여(신설)
- ㉤ 성능인정기관에게 성능인정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확인(매년 1회 이상) 및 관련기록 보관·유지 의무 부여(신설)
-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간 분쟁¹³⁷⁾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를

135) 차단구조물을 개발·생산하여 주택 시공사 등에 공급하는 자로서 현재 국내 86개 업체가 261개 성능인정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136) 성능인정 기관이 실제 건축되는 주택과 동일한 조건의 건물을 건축하되, 바닥은 충격음 차단구조만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바닥 슬래브 위에 차단구조물을 설치하여 시험을 실시

137) 환경분쟁위에 접수된 상담민원 : '06년 199건에서 '11년 350건으로 증가했고,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같은 기간 24건에서 31건으로 증가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위한 시험조건을 실제 주택에 근접하도록 하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성능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규제자의 비용부담도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되는 바,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㉓ 관련) 자신의 제품에 대해 성능인정을 받은 자가 당해 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또는 품질관리 능력 보유는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음
- (㉔ 관련) 바닥충격음은 음원실(충격음 발생 장소)과 수음실(충격음 측정 장소)이 넓을 수록 적게 측정되므로 2가지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음실의 천장구조는 실제 건축물¹³⁸⁾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임
- (㉕ 관련)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평면형태에 따라 충격음의 전달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조건에서 시험하는 것이 시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표준시험실 증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부담하게 되나 그 비용이 크지 않고, 인정신청자의 경우 추가되는 비용부담이 없음
- (㉖ 관련) 차단구조는 인정 후 약 10년 이상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며, 공동주택은 건설 후 30~50년 이상 존속되는 건축물로 존속기간 동안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인정 내용 기록 관리가 필요
- (㉗ 관련) 완충재 등 차단 구조물의 재료 및 생산방법 등이 인정 신청 시와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매년 검사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면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 주므로 유효기간(5년) 만료 시 재인정을 받기 위한 시험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신청자에게 주는 부담이 크지 않거나 감소될 수 있음

[참고 : 인정시험시 신청자의 부담 비용]

구분	창호 포함 설치시		바닥만 설치시	
	59㎡	84㎡	59㎡	84㎡
인정시험체 설치	1700만원	2000만원	950만원	1400만원
인정수수료	420만원	321만원	420만원	321만원
합계	2120만원	2321만원	1370만원	1721만원

138) 실제 천장에는 전기배선 등의 설치를 위해 슬래브 하단과 어느 정도의 공간을 설치되는 것이 보통임

(56)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시공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신설)
- ㉡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사용 설명서를 작성·배포(신설)
- ㉢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사업주체는 확인서를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신설)
 - ※ 현행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자체평가서(해당 사업계획이 동 기준에 부합함을 스스로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이행여부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음
- ㉣ 실내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치(7일 후 TVOC¹³⁹⁾방출량 0.10mg/m²·h, HCHO¹⁴⁰⁾ 방출량 0.015g/m²·h 등) 설정(신설)
- ㉤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및 붙박이 가구의 TVOC 및 HCHO 방출허용 기준 강화(신설)
- ☞ 2010년 12월부터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음에도 신축주택 실내공기질 조사결과¹⁴¹⁾ 조사대상 중 약 15% 정도가 오염물질 허용 권고치¹⁴²⁾를 초과하고, 새집증후군 등이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어린이아토피 유병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¹⁴³⁾ 등을 감안하였을 때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 강화내용 내용 중 ㉠·㉡는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이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감리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감리자의 당연한 업무에 해당하고, ㉣·㉤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¹⁴⁴⁾’에서 적용하던 내장재와 가구류의 허용기준치를 준용하고,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최근 국내 빌트인 가전제품의 방출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가전제품 생산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것이므로 그 정도가 과도하다 할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140) 폼알데하이드

141) 환경부 조사결과로 '11년 신축 공동주택 389단지 중 57단지가 권고치를 초과

142) 폼알데하이드 210 μ g/m³ 이하, 벤젠 30 μ g/m³ 이하, 톨루엔 1,000 μ g/m³ 이하 등(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43) 보건복지부 자료('12.9월) : 13.2%('95), 19.0%('00), 33.5%('10)

144) 입주자가 주택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시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간에 공급계약 해제사유¹⁴⁵⁾ 발생 시 그 절차에 대해 규정(신설)
 - 계약 해제 절차의 세부내용으로, 사업시행자는 2회 이상 시정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 해제(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정요구에 대해 의견개진)
 - ☞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절차)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의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비합리적 해제요구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불이익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해제절차를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과 그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¹⁴⁶⁾를 법률로 상향 조정 입법(강화)
 - ☞ 법제처의 법령정비 과제('12. 11, 참고1) 중 하나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 정비하는 것임. 시행령에 규정,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 조정 입법(강화)
 - ☞ 법제처의 법령정비 과제(2012.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 조정(강화)
 - ☞ 법제처 법령정비 과제(2012. 11)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45) 원형지개발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은 토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6)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 신고 등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9)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준 반영, 항공기 기술기준 정비(강화)
 - 항공기에 사용되는 자재, 부품 등은 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승인된 설계자료에 따라 제작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형식설계 자료의 소유자 및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술자료를 보관·유지 의무 준수
 - 부가형식증명 소지자는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 감항성 유지 및 사고방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 및 조치
 - 국외에서 감항증명을 받으려면 15일 전에 신청하거나 사전 협의
 - ICAO 국제기준에 따른 환경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인 할론가스 항공기 소화계통 사용금지
 - 수송급 항공기의 조종실 출입문은 기존의 침입방지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폭발물, 방화에 의한 화재,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요구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한·미간항공 안전협정(BASA) 체결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규제영향평가(공정위, 중기청)와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0)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항공안전기술원¹⁴⁷⁾ 업무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의무(신설)
 - ☞ 항공안전기술원 설립·운영(2014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술원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금지, 다른 용도사용 금지의 의무를 부과한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며, 유사 입법례¹⁴⁸⁾도 많이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47) 민간 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의 안전성 인증, 국가공인 비행시험, 항공안전기술 표준화 연구, 항공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 지원하는 전문기구(2014년부터 설립 운영계획)

14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1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5조, 교통안전공단법 제31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신설)
 - ☞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혼란방지, 민간 항공기 안전 관련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구로서의 국제적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유사 전문기구의 입법사례¹⁴⁹⁾가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항공안전기술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 특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전문기구의 경우 대부분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와 이의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과태료 부과기준¹⁵⁰⁾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1)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보증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¹⁵¹⁾ 그 거래내역 관련 증명서, 보증금 세부사용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규정(강화)
 -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보증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개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에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설치 및 주거전용 면적은 14㎡이상으로 하되, 세대 간에는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 필요시 통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에 건설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호수(戶數)는 전체 호수의 1/3 이하이고,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14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0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6조 등

15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1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법(300만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300만원)

151) 시행령 제60조의3제2항 및 제58조제7항을 준용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의 1/3 이하일 것으로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소형임대주택(1~2인 가구) 공급확대를 위하여 법률에 도입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별 주택의 건설기준은 세대 간의 독립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별도 현관 설치 및 동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서 정하고 있고,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수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호수 및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설의 부족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하고 또한, 호수제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가장 부족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¹⁵²⁾하였고, 면적제한이 없는 경우 구분공간이 1~2인이 아닌 3~4인 가구가 되어(거주인구 증가 초래) 부대·복리시설 등의 부족문제(현행 복리시설 설치 기준 : 세대당 가구원수 3.7명)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세대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여 구분사용 및 통합사용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완화 성격이 있음

■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 : 일반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은 세대당 0.5대 이상

■ 공동주택 100세대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시 주차장 설치 비교

① 세대구분형 주택의 제한이 없을 경우

- 전부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건설시 실질적으로 200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나, 100대만 주차장 설치 ⇒ 주차장 설치율은 세대(실질적으로 거주)당 0.5대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수준에 불과함

② 세대구분형 주택 호수의 1/3 제한이 있을 경우

- ①과 주차장 설치 수는 같지만 33세대만 세대구분형으로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3세대가 거주가능 ⇒ 주차장 설치율은 세대(실질적으로 거주)당 주차장은 0.75대

☞ 따라서, 1/3 제한을 두는 것은 현행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기준을 세대당 0.7대까지 완화하고 있는 규정¹⁵³⁾을 감안할 때,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 할 수 있음

-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 사업이행 계획(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② 사업비 조달 계획(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③ 이해관계 사항의 처리 계획(관련 소송 등)을 규정(신설)

152) 예) 주차장 설치 시뮬레이션

153) 일반 공동주택이라도 60㎡미만 주택은 세대당 0.7대로 완화 규정함

- ☞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사업 정상화 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예시한 사업이행 계획과 사업비 조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고 있고,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정상적인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적분쟁 등에 의한 이해관계 사항의 처리계획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용도로서 법원 판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¹⁵⁴⁾의 결정(조정결과 포함)에 따른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사업주체(보증금 예치기관 포함)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협의결과 또는 사업주체의 보수계획에 따른 하자보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보증금 사용 시(2,000만원 이하) 및 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의무 위반 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신설)
- ☞ 동 개정안은 하자보수보증금이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용도를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 법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결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하자로 진단한 경우, 사업주체가 스스로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를 대부분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과태료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조사 방법, 보수비용 산정 기준 등¹⁵⁵⁾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정함(신설)
-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실사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 수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공동주택입주자와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대상 규정 및 평가결과 공개기준 마련¹⁵⁶⁾(신설)
- ☞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그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 및 공개를 하도록 하여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50세대 이상이 참여하되 전체 입주자 등의 10% 이상이 참여한 경우에만 공개하

154)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 사무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위원회

155) 조사방법 : 현장실사 원칙 + 설계도서와 조사부위를 비교·실측

보수비용 : 실제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 + 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하자판단 기준 : 균열, 침하, 파손 등의 정도에 따라 판단

15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서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되, 단, 50세대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도로 하여 소수자의 평가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013.6월 주택법 개정('14.8. 시행)시 추가된 주택관리업자의 범위반 행위¹⁵⁷⁾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신설)
 -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처분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3)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누구든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고속국도 및 고속국도와 연결된 시설의 범위(신설)

1.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2.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3.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4. 정류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로 예정된 부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한 진·출입로

- ☞ 그동안 고속국도시설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도로법(법 제38조, 시행령 제28조)을 준용해 왔는데, 고속국도의 특성상 현행 도로법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현행 단속행위 범위와 동일하며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평가(공정위, 중기청)시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7) 부정한 이익취득 또는 제공,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용도 외로 사용, 등록증 대여

(6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개발비용의 산정·검증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과다산정하는 등 부정당행위를 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자체 계약법에 따라 개발비용산정 연구용역 입찰참자자격을 제한(2년)도록 규정(강화)

※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명세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개발비용산정 업체에 검증용역을 의뢰(계약)하여 검증함

- ☞ 동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수법 위반이 확정된 개발비용의 산정·검증업체에 대해 국가 계약법 또는 지자체 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국가사무로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어 동 조항이 없더라도 부정당행위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라 제재를 해야함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5)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민간소형항공기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민간항공기 엔진부품 등에 대한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기준 마련(신설)

- 왕복엔진을 장착한 소형항공기 운영자는 감항성(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엔진 등 기계 상태)을 유지할 책임과 감항성이 있음을 입증할 책무
- 상태감시프로그램은 제작사 권고 엔진 오버홀 주기(TBO)¹⁵⁸ 중 날짜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
- 항공기 검사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업무한정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정비업체가 수행
- 왕복엔진 중 엔진케이스 부분, 실린더 부분, 보기류 부분 등 적어도 3부분은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상태감시프로그램 : 항공기 엔진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는 프로그램

158) 오버홀주기(Time Between Overhaul) : 엔진성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용한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민간보유 왕복엔진 소형항공기(2013년 10월 기준 314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고예방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적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10만원 내외 추산)이 크지 않고,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도며, 왕복엔진을 장착한 민간보유 소형항공기의 연장사용 허용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6)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¹⁵⁹⁾를 직접 제출토록 함(신설)
 - ☞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등록신청자 및 대상주택의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에 한정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규정(신설)
 - ☞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참고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규칙]

- 법 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과 동일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에 있는 주택 중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 이하로 규정(신설)

159)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외국인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여권정보) 및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부담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임대료도 주변의 유사한 주택 임대차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가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비해 계약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수도권에서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기 위한 주택 물량 중 이전기관 종사자의 청약 후 남는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법인)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분양받은 주택을 직원 숙소 등으로도 사용가능하도록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도권의 공공기관 중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기관이 종사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을 줄여 분양희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대상이 확대되어 유리해짐), 지방혁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서의 통근이 불가능하고, 이전 공공기관 인근의 주거여건도 좋지 않아 종사자들의 주거지 부족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8)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준공공임대주택¹⁶⁰⁾의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택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보증금·임대료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중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임대료의 상한도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만 정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신하여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0)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주택 매입 및 개량 자금 저리(연 2.7%) 융자, 조세감면(40㎡ 이하의 경우 재산세 면제 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한 등 의무부여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¹⁶¹⁾의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신설)

☞ 동 개정안은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고지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환할 때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면서 동 개정안과 같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일반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제출하는 서류¹⁶²⁾에 토지매입증명서류, 토지사용권 증빙서류 등을 추가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일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합쳐서 규정(신설)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일반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제출서류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특성상 더 필요한 서류¹⁶³⁾만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현행 일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산정기준에 통합(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시 건설원가에서 택지비 제외 조항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입주신청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는 임대주택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도록 규정(신설)

(현행)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개정) 기존 임대주택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 개정안은 임대주택법 외 법률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신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입주신청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¹⁶⁴⁾을 통해 신청자의 입주

161) 종래 건설임대주택은 반드시 택지를 매입하였으나, 택지비 부담 완화, 도심내 자투리땅 활용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의무를 배제한 임대주택

162)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 명단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163) 임대주택법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입증명서류가 필요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공급 촉진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분양자는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방법을 통일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임대주택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자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신축/리모델링)에 기숙사 포함하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대상 확대(강화)
 - ☞ 본 개정안은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 적절한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냉방설비의 배기구 및 배기장치를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강화)
 - ☞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냉방시설 배기구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고 보행자의 위협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방재지구로 지정해야 할 지역을 구체화(강화)
 - 연안침식·침수·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구분
 -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旣 지정된 법정 위험지역·지구 중에서 10년 이내 2회 이상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한하며 본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제의 정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4)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가 연결되어 복지사업 신청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 가능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및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강화)
 - (대상지역) 유보(留保) 용도지역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시가화 예상지역, ②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또는 예상되는 지역, ③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 (수립내용) 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④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등
 -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유보용도에 한정하였으며, 수립내용 또한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 대상을 ①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②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는 제외함(강화)
 - ☞ 본 개정안은 60년대부터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 대상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① 현재 내화구조가 일반화 되고, 방화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의무대상이 확대(건축법)됨에 따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 ② 또한, 건폐율 설정 목적 중 하나가 지면에 최소한의 공간을 남겨 화재·비상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가로 모퉁이 대지라는 이유만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도 불합리(화재 예방, 피난 등에 오히려 장애)

- 준주거지역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였던 축사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입지 제한)(강화)
 -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및 상업·업무기능이 밀집된 도심에 지정 되므로, 주거환경 보호 및 도시 지역의 이용 특성을 고려할 때 축사의 입지 제한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관)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거 밀집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거 지역을 축사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최근 5년 내 준주거지역에서의 축사 허가건수는 없어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 건축이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강화)

-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공장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제조되지 않은 것에 한정)을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 단, 도축업·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얼음 제조업·생수 생산업은 입지 제한
- 식품공장을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으로 확대하였으나, 입지제한 업종을 명시하고, '직접' 문구를 '해당지역에서 생산된'으로 제한함
- ☞ 본 개정안은 식품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 인·허가시 혼란 방지 및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축업·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은 현행에서도 생산관리지역 등에는 입지가 제한된 공장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입지 제한을 받는 식품공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한정하는 규정은 제한적인 개발만이 허용되는 생산관리지역 등의 지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법규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법규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위임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중개사무소의 명칭·등록번호·소재지·연락처 및 중개업자 성명을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중개업자의 광고실명화를 통하여 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광고시 매매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였을 때,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심의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심의사항 등¹⁶⁵⁾을 규정하고, 협회가 준수해야할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규정(신설)

- ☞ 개정안의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부동산 거래의 이해관계자인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국토부 공무원의 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독립적인 인사이므로 협회 임원 수의 제한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으며, 협회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법 취지를 살리려면, 위원 중 협회 임원의 수를 좀 더 줄이는 것이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

〈당초 개정안〉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2. 협회의 회장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자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금융·보험·회계 분야를 전공한 자
 -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개선권고(안)〉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165) (운영위원) 협회 임원, 관계 공무원, 부동산·금융·보험 등 분야 전문가 (운영방법) 임원 임기 2년, 위원장은 호선, 위원장이 회의 소집 등 (심의사항)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예·결산 사항 등

4. (당초 개정안과 동일)

가~라. (당초 개정안과 동일)

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추가)

(72)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준서에 수중위치 표시 장치(KTSO-C121b), 자동비행 유도 및 조정시스템 등 3개 품목 추가 신설(강화)

표준품 번호	기술 표준품 명칭
KTSO-C121b	수중 위치표식 장치(음향식, 자체전원) (Underwater Locating Device(Acoustic, Self-Powered))
KTSO-C166b	1,090MHz 무선 주파수에서 운용되는 확장 스퀴터 방송형 자동종속감시(ADS-B) 및 방송형 교통정보서비스(TIS-B) 장비 (Extended Squitter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ADS-B) and Traffic Information Service - Broadcast(TIS-B) Equipment Operating on the Radio Frequency of 1090 Megahertz(MHz))
KTSO-C198	자동 비행유도 및 조종 시스템 (Automatic Flight Guidance and Control System(AFGCS) equipment)

- ☞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을 민간국제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춰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으며, 신제품 생산에 앞서 명확한 기준제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항공기 부품제작사 51개 업체에 적용되며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 평가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이견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73)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정내용과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자체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거리측정시설의 지속파 시간(일정한 진폭과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자기파 시간) 및 에코(전파를 송신하여 되돌아오는 잡음파장) 억제기준 추가
- 항로용 일차 감시레이더의 탐지 확률은 탐지 범위내 표적 80% 이상 탐지하고 원격 정비감시기능 등을 갖추도록 명시
- 전술항행표지시설의 처리능력 등 세분화(시간지연은 Y채널에서는 $56\mu s \pm 0.25\mu s$, 수신기 휴지기간은 X채널에서는 $60\mu s$, Y채널에서는 $72\mu s$ 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체적 명시)
- 2014년부터 적용될 위성항법시설(GNSS) 구성요소(최소 고도각은 지면 근처 사용자를 위해 5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명시 등) 추가 등
 - ※ 항행안전 무선시설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 거리측정시설, 레이더시설, 전술항행표지시설, 위성항법시설, 무지향표지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2,074개소에 설치
- ☞ 항행안전 무선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용역결과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이미 장비구입시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추가 비용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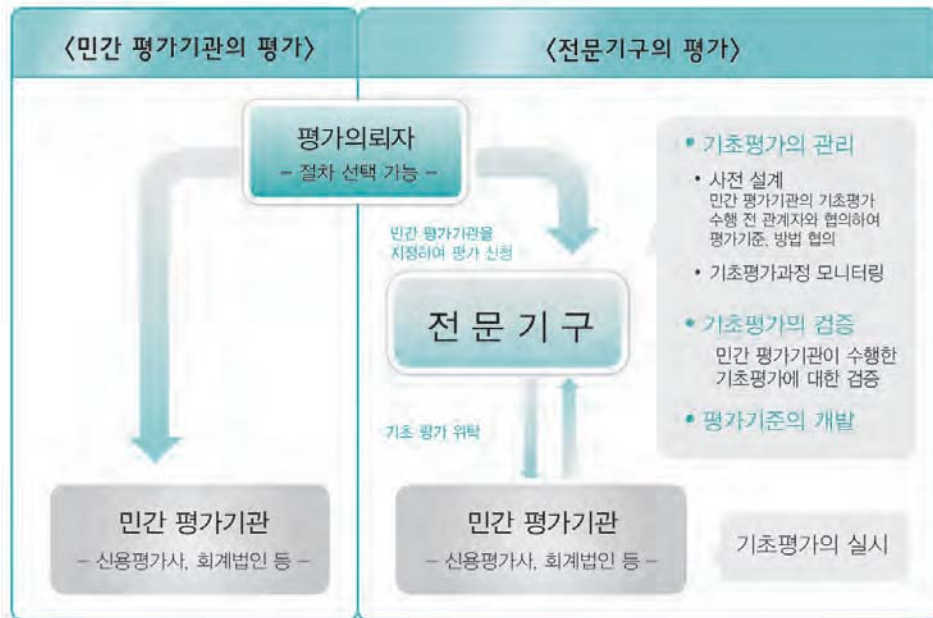
-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 제정(신설)
 - 자동차(사고차량) 소유자(또는 운전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국토부장관 및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작사 등은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함
 -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정보제공대상자를 사고의 책임소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및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보를 추출하는데 소요 되는 기간이 3~4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15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제작사 등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여부 결정 항목에 좌석안전띠 유·무, 손상·훼손여부를 추가(강화)
 - ☞ 자동차의 좌석안전띠는 교통사고시 탑승자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이므로 손상·훼손 되거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자동차용 내압용기 중 압축천연가스와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외면에는 사용연한(연·월) 및 승인된 밸브와 안전장치만 부착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표시(강화)
- ☞ 동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압축가스에 대한 사용연한 및 경고문구 표기 규정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검증·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평가기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구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여 수행하는 개발사업(일명 ‘공모형 프로젝트’)의 평가는 전문기구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신설)
- ※ 전문기구는 그 밖에 평가기관 등록, 평가신청 접수, 수수료 수납 및 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
- ※ 다만, 현재(아래 그림의 민간평가기관 평가만 존재)의 평가시스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시스템과 전문기구를 통한 시스템이 공존하게 됨



※ 2013년 현재 민간 평가기관 : 4개 신용평가사* 및 회계법인이 있음

*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전문기구를 도입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사업 착수와 그 자금마련을 위한 PF 대출의 부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토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 개발사업의 난립과 부실한 PF대출 등의 원인은 먼저 현 제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관리감독 등의 소홀이 일차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제도가 도입된 후 전문기구가 사업성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진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분야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제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철회권고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볼 것을 권고

(7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리츠¹⁶⁶가 영업인가를 받기 위하여 대상사업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추천기관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동 시행령 제16조는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으로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¹⁶⁷를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한국감정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된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에 의해 주택가격의 공시를 담당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고, 부감법 제40조에 의해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현재 거의 모든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 등 공공기관에 평가업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므로 두 기관 모두 특정 업자에 편향될 가능성이 낮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추천기관으로 정함으로써 추천기관간 담합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자기관리 리츠의 주요 출자자¹⁶⁸에 대한 적격성¹⁶⁹을 심사하기 위해 확인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¹⁷⁰의 상세내용을 규정(신설)

166)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리츠(REITs))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총 자산의 70%이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16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감정평가사들이 설립한 단체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유일하고, 현재 감정평가사 자격자(3,656명)의 99.1%(3,623명)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

168)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등 리츠의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169)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 소유하는 자(법 제11조)

170) (내국법인) 자기자본이 출자액의 2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일 것 등
(내국개인) 발기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 동 개정안은 주요 출자자(주식 총수의 5% 초과 보유자)의 재무여건 악화로 리츠가 부실화되어 일반 출(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이와 유사한 제도인 자본시장법의 대주주(주식 10%이상 보유자) 및 은행법의 한도초과보유주주(주식 10% 이상 보유자)의 적격성 심사요건의 유사 입법례(참고 참조)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최저자본금 준비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인가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법 제42조 제1항 제7호), 이 운영자금의 내용을 재무제표¹⁷¹⁾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규정(강화)

※ 참고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일반기업회계기준)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 한국은행권, 외화 • 통화대용증권 :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국고환급증서, 대체저금환급증서 등
현금성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 입출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 당좌예금 : 기업이 은행에 현금을 예입하고 필요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결재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 • 가입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및 신탁예금 •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CD, CMA, CP 등 •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사채, 상환우선주 • 3개월 이내에 환매조건으로 취득한 환매채 • 초단기수익증권 등

☞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자금의 성격이 필요한 경우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보이고, 동 개정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이에 맞는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외국기업) 자기자본이 출자액의 2배 이상,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등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최저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함

17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포함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되고 있음

(77)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한-EU FTA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강화)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안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2, 제87조, 제91조, 제111조, 제111조의5)
 - 대형승합자동차(버스)의 보조제동장치 성능기준 강화
 - 천정개방 2층 대형승합차의 제작·운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 동 개정안은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한 것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 및 천정개방 2층 대형버스의 도입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및 산간지역 내리막길에서의 제동장치의 과열이 최근 발생한 대형승합차 전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남에 따라 보조제동장치의 성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동장치 강화 등 규제강화에 따른 피규제자의 추가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8)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민간사업자)가 경관사업을 하려는 경우 승인 주체를 사업의 종류 및 대상지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신설)
 - 경관사업의 대상이 국도·국가하천·국립공원일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장, 지방도·도시공원·지방하천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 ☞ 상기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민간사업자가 경관사업 추진시 승인 주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세분하여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및 경관협정의 인가(또는 폐지의 인가)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신설)
 - 경관협정 구역이 하나의 기초지자체일 경우 관할 지자체장, 둘 이상일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장, 둘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장
- ☞ 본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경관협정 구역이 둘 이상의 지자체 걸쳐 있는 경우 경관협정의 인가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

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사회기반시설 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발주청이 받아야 하는 경관심의 사업 규모¹⁷²⁾ 및 심의 시기·주체 등을 규정(신설)
 - (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시행자가 받아야 하는 경관심의 대상·시기¹⁷³⁾ 및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대상¹⁷⁴⁾ 규정
 - (건축물) 경관심의 시기·절차 및 건축기준 완화 방법을 규정
-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타입법례의 기준을 차용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경관심의를 위한 용역 비용은 전체 설계비의 2% 수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심의절차는 도시계획심의·건축심의 등과 동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종전에 비해 추가되는 시간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심의기준은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법률 근거) 사업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며 경관심의 별 심의기준·심의절차·심의서류 등은 고시에 위임, 추후 규제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므로 본 개정안은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9)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희망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시장 등은 등록증을 교부(시행령)하도록 하면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限), 자본금 증빙서류(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전문인력 자격 증명서, 사무실 확보서류 등을 규정(신설)
- ☞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등록신청자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에 한정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72) 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사업, ②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시설사업, ③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173) 도시개발법 등 28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도시: 대지면적 3만㎡ 이상, 비도시: 30만㎡ 이상)으로 각각에 대하여 심의 주체 및 심의시기를 규정(별표1)

174) 대지면적 30만㎡ 이상 또는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개발사업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콜밴¹⁷⁵⁾ 등 화물자동차에 택시유사표시행위¹⁷⁶⁾ 금지 의무를 위반한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1차 : 운행정지 60일, 2차 : 감차조치)하여 정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기준을 교통사고 후 72시간 이내 사망에서 30일 이내 사망으로 조정(강화)
- ☞ 동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의무 및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법 개정 '13년 7월) 하면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다른 처벌기준¹⁷⁷⁾에 비해 과중하지 않으며 그동안 택시유사표시행위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단속과 법적용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기준은 OECD 국제기준 적용
-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위 내용과 동일(강화)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불법행위로서 '택시유사표시행위의 범위' 구체화(신설)

1. 택시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외부 표시 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 ☞ 법률에서 위임한 택시유사표시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콜밴)을 여객자동차(대형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참고하여 정한 것이며, 그동안 단속 및 행정처분

175) 1990년부터 외국관광객 편의제공 등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등록허용(6,300대)

176) 1) 택시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외부 표시 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시행규칙 제21조의2)

177) 화물운송 사업자의 여객운송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조변경 개선명령 미이행(1차 : 영업정지 60일, 2차 : 감차처분), 운송시설 개선명령 미이행(60만원 과징금) 등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던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2)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설공사에서 측량기술자가 수행하는 측량의 절차, 방법, 기준, 측량성과 보고서 작성 및 기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신설)
 -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측량은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로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 제정안은 기존 건설공사 관련 시방서 및 설계기준에서 개별적·산별적으로 운영하던 건설공사측량을 종합화·체계화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서 정보 제공 기준 및 절차,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 대책 수립·시행 등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의무 규정(신설)
 -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민간기관이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 불법 복제 방지, 목적 외 사용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판단됨. 또한, '자료를 제공 받은 자의 의무'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등 타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 사항에서 제외) 자동차 문의 개폐 방식 변경(강화)
 - (변경금지 사항 신설) 구조변경으로 추가되는 장치의 무게만큼 차량 중량을 줄이기 위한 적재함 및 차대축소, 적재함 문짝 제거 또는 축소,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또는 소음 방지장치 제거, 누전방지 장치 없는 활어운반자동차로의 변경, LPG 사용 승용차의 승차정원을 줄이는 변경 등

- ☞ 동 개정안은 자동차의 안전 및 주행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피규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또한 ‘적재함 및 차대축소’는 「자동차 안전기준」(제19조)에 따르면 ‘차대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여야 하고,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적재함을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은 차축의 추가와 함께 과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금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85) 철도사업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현행 철도사업 면허제도를 노선별로 사업범위·기간 등을 한정하여 면허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정비하고 신규개통 노선의 경우, 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신설(강화)
 - ☞ 국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철도산업기본법 제20조)하고 있으므로 철도사업면허란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유인 철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특허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시설이용권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철도사업이 여객 및 화물 운송으로 대별되고 다시 차종(고속, 일반, 광역 등) 등에 따른 사업의 범위가 구분되므로 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철도사업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로 공공성과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부담을 질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부담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 규정’¹⁷⁸⁾ 하고 있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철도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용 철도노선 또는 2개 이상의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노선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 경리하도록 함(강화)
 - ☞ 공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별, 분야별 회계구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 도로 등 공공서비스 제공관련 법령은 사업자에 대해 노선별 사업별 회계를 구분토록 정하고 있음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78) 면허를 받아야 하고 철도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5조)

(8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보금자리주택 및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85㎡이하)에 대한 다자녀 가구 또는 노부모부양 가구 특별공급 대상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기준¹⁷⁹⁾을 정함(신설)
 - ※ 동 개정안에서는 소득기준만 규정하고 자산기준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안 제19조제16항)한 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자산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가구의 경우에도 적용코자 함
 -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건설하는 것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에 비해 그 기준을 강화(자산기준 추가)
- ☞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 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요건의 하나로 자산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권고
 1. 제20조의2(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나머지 항은 현행유지
(신설) ⑦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9조제6항, 제7항, 제10항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정하는 입주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 그 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제20조의3(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대상 등에 관한 특례) :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나머지 항은 현행유지
(신설) ⑤ 보금자리주택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9조제6항, 제7항, 제10항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요건과 그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179) (보금자리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538만원, '12년 기준) 이하 이면서 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 2,766만원 이하인 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538만원, '12년 기준) 이하인 자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규정(신설)
 -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취지에 맞게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하여 소형보금자리주택 입주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수준이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심사가 필요하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검증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규칙 제19조 제16항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¹⁸⁰⁾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등¹⁸¹⁾을 규정(신설)
 - ☞ 동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지원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주거약자용 주택¹⁸²⁾에 대한 입주자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은 동 규칙 제31조를 준용하되 저소득자를 우선 순위로 정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은 동 규칙 제32조¹⁸³⁾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영구·국민임대 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주거약자용 주택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부이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 영구·국민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이 50년, 30년인 임대주택으로 의무기간 경과 후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

(8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8)

■ 심사내용

-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설계·CM등을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일반’은 수행 업무별로 ① 건설사업관리, ② 설계 등 용역, ③ 종합 분야로 구분,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규정(강화)

180)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에서 상사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81) (입주자격)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일 것
(우선순위) 동 규칙 제31조 및 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순위에 준하여 규정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31조의 내용 중 저소득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182)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 이상, 그 외 지역은 5% 이상 의무건설(주거약자 지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

183) 저소득자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음

- (등록요건) 3개 분야별로 특급기술자 등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갖추어야 함
- (업무범위) 설계 등 용역 분야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설물 검사 등을 수행, 종합 분야는 건설사업관리까지 모두 수행

☞ 건설사업관리 및 종합 분야의 인력요건은 현행에 비해 완화되었으나, 설계 분야의 등록요건은 일부 강화. 개정안의 인력요건은 설계업체가 통상 3개 이상의 분야(토목, 건축, 조경, 기계 등)를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으로 타입법 사례를 볼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그러나 자본금 요건은 현행 규정에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일부 업종에 대해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은 문제가 됨. 설계업자와 CM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업체는 자본금 추가 확보 부담이 발생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함

구 분	개정안	권고(안)
종합분야	3억	2억
설계 등 용역분야	1억	5천만
건설사업관리 분야(감리·CM)	2억	1억5천만

-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최초교육훈련'의 시기를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 받으려고 할 때로 규정 (강화)

☞ 본 개정안은 교육시기를 '건설기술자가 되기 전'으로 앞당겨 규정하여 최초교육훈련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훈련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현행 3주), 교육 방식의 다양화를 병행하여 기술자의 부담 완화 및 편의성을 제고한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교육훈련시기를 '최초로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을 받으려 하는 때'로 규정하여 사실상 등급신청 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자의 요건을 갖춘 자일지라도, 최초교육 미 이수시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함

현 행	개 정 안	권 고(안)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 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최초로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건설기술자가 최초로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다만 나목 1), 다목 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법 제31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을 시, 그 세부부과기준 규정. 또한 발주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영업정지 세부부과기준 규정: 1차(3개월), 2차(6개월)(강화)

세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주요구조부의 붕괴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12개월		
(2)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3)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4) 타당성 조사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12개월		
(5) 타당성 조사시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6)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행정처분의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정처분의 세부 항목은 현행 업무정지의 내용과 유사하나, 그 기간은 종전에 비해 강화된 부분이 있음. 그러나 해당 위반행위의 전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인명상의 피해로 한정하였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법 제31조제1항제8호¹⁸⁴⁾의 사유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강화)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취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사업자가 입는 타격 및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상기의 사유처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위반행위(인명피해·부실공사)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부실시공 등에 따른 대형재해 발생 시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상기 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했을 때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184)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 초래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관리가 부실할 경우 다음과 같이 벌점부과(강화)
 - ① 불법하도급을 묵인할 경우(3점), ② 하도급 관련 제출서류 검토 부실로 건설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3 또는 2점), ③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1점)
 -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하도급계약 등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벌점 부과 항목은 불법하도급 묵인 등 불법행위나 타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도록 의무 규정(강화)
 - ☞ 본 개정안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시설물 공사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① 발주청 자체심사의 경우 전문 기술인력 부족 등 전문성 한계,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피검토키관(시공사)에게 용역을 수수하는 입장이 되어 충실하고 공정한 검토에 한계, ③ 민간업체의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평가 제도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점검이 지속 발생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또한, 검토 수수료는 건당 5만원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대상 확대(1년 이상 방치된 현장에서 공사재개시)(강화)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현행 안전점검 대상) 이외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도 공사 재개 시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향타 및 향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공사 등
 -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안전점검 실시 확대 대상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과 동일)로 한정하여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또한, 상기 개정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당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 등의 정책적 편익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간의 공제조합 제도가 신설(건설기술진흥법 제74조 13.5월)됨에 따라 정관내용·설립절차 등 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
 -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상기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법률에서 정한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규정(강화)
 -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250만원), 2차(375만원), 3차(500만원)
 -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미반납 시: 50만원
 -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품질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1000만원 이하) 이내로 유사 성격의 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 계상의무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영업정지 처분 후 건설기술경력증 미반납시 과태료 금액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300만원 이하) 이내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8)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 특성을 검사하는 인성검사 방법 개선(강화)
 - 음주습관, 정신질환 가능성 등 운전기능 감쇄 요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성 및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추가
 - 특별검사에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시뮬레이터 방식의 검사 및 운전상황에서의 위험판단 능력 평가를 위한 상황인식검사 도입 등
 -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최근 발생한 버스사고(참조: 참고2)의 원인이 기사의 조율증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검사기관은 운전시뮬레이터의 도입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하나, 대부분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루어지므로 민간 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증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참고1)로부터 분쟁조정회의에 참석을 통보받고 조정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강화)
 - 1차 불참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 ☞ 동 개정안은 건설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최근 5년간 건설분쟁 조정사례(참고2)를 확인한 결과, 조정 당사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 건설공사 관계자로 한정되어 실제 운영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가 일반국민 등 경제적 약자에게 조정 참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과태료 부과수준도 다른 입법례에 비해 과중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다음의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신설)
 - △ 2미터이상의 절·성토, △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형질변경
 -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농지전용(轉用)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의 부지에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
- ☞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허가 제외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음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 ① 2미터 이상의 절토는 객토와 같은 농지개량(경작을 위한 행위)의 범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
 - ②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과도한 성토로 인한 인근 영농 피해 및 성토 후 가설 건축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정
 - ③ 축사의 부지(농지)는 관계법률(농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 부지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농지전용(轉用)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이외의 목적을 위해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행위이므로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함
-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계획기준, 환경 및 경관기준, 방재기준 등으로 나누어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규정(강화)

- ☞ 건축법 및 산지법 등 관련 기준보다 완화하거나 합리적인 규정을 도입하였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¹⁸⁵⁾(강화)
- ☞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평가 절차, 시기, 방법과 공개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 및 공개를 하도록 하여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2)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해 벽체접합부, 창호(창, 출입문)에 대해서 결로방지 성능(온도저하율 값¹⁸⁶⁾)을 갖추어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결로방지 성능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¹⁸⁷⁾, 사업주체가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하는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 내용에 관한 사항을 표준상세도의 형태로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신설)
- ※ 그 성능은 실내온도 25℃, 실내습도 50%, 외기온도 -15℃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저하율 값 0.28을 기준으로 지역별, 부위별로 차등

185) 만족도 평가는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는 7월에 공개, 매년 4월 30일 현재 해당단지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만족도 평가(공동주택 1세대당 1명만 평가), 평가결과 전국 평균 점수와 단지별 평균 점수 공개

186) 온도저하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e = $\frac{\text{실내온도}-\text{내벽표면온도}}{\text{실내온도}-\text{외기온도}}$)은 낮을수록 우수

(0~1의 값의 가짐)하며, 온도저하율 값에 맞춰 구조체 사양(두께, 재료 등), 시공방법 등을 정함

187) 사업주체는 해당부위에 대해 성능평가(물리적시험 또는 시뮬레이션)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평가서 제출 → 사업계획승인권자 확인

-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최근 공동주택의 결로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보수비용이 막대¹⁸⁸⁾하다는 점 및 외국에서도 자국의 자연환경에 따라 결로방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참조: 참고1) 등을 감안할 때 동 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현재 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고 있는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같도록 규정(참조: 참고2)하고 있고, 재검토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참고: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09년부터 운영) 사건 추이]

년도	'10년	'11년	'12년	'13년 10월말
결로사건	26건	64건	572건	802건
전체사건	69건	327건	836건	1,784건

(93)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¹⁸⁹⁾(이하 '자산기준')의 적용대상에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을 추가 규정(강화)
 - ※ 감사원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가구가 하더라도 고소득자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13.4월)
 - ☞ 동 개정안은 그 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시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시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주택공급규칙)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위(제471회 경제분과위, '13.12.6) 회의에서도 인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88) 결로하자 보수 비용 : 외기에 면한 창호는 결로 하자 보수를 위해 세대당 100~500만원(덧창설치 등)이상 발생, 벽체 결로는 근본적 치유 불가능

189) 현재 동 기준은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9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측량업 등록시 기술인력 보유 요건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정하고, 장비보유 요건 확인을 위하여 소유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동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업 등록 기준(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적합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지적측량업자의 측량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¹⁹⁰⁾ 의무규정(강화)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지적측량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은 측량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경과한 후 발생¹⁹¹⁾하는데, 현재 보증보험가입의무의 내용으로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의무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며, 동 개정안에 따라 개별 측량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160만원(전체 약 2억5천만원 : 약 160만원 × 156개¹⁹²⁾ 업체) 정도로 많지 않은 반면, 손해배상금액은 건당 약 4천3백만원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현 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액 : 1억원 보증기간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액 : 1억원 보증기간 : 10년 이상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지적측량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은 측량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경과한 후 발생¹⁹¹⁾하는데, 현재 보증보험가입의무의 내용으로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의무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며, 동 개정안에 따라 개별 측량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160만원(전체 약 2억5천만원 : 약 160만원 × 156개¹⁹²⁾ 업체) 정도로 많지 않은 반면, 손해배상금액은 건당 약 4천3백만원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참고 : 대한지적공사의 최근 손해배상 현황]

(단위 : 건)

측량연도 배상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10	6		1		1	1				1	2				12
'11			1	2	2				1	1					7
'12	1	2	2		2		2	1	1	1	2	4			18
'13	1		3					1	1		1	2			9
합계	8	2	7	2	5		2	2	3	3	5	6			46

190) 측량업자가 자신이 수행한 측량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 등에 가입하는 보험

191) 대한지적공사의 최근 4년간 손해배상건(46건) 중 28%(13건)가 지적측량일로부터 10년 경과, 65%(30건)가 5년 이상 경과

192) 2012년말 현재 등록된 지적측량업체 수

(9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교통유발부담 산정 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 액수를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다만, 시설물 규모별로 차등 인상)(강화)

현 행	개정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연도별 적용 단위부담금(단위 : 원/m ²)						
		'14	'15	'16	'17	'18	'19	'20
단위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1m ² 당 350원	3천m ² 이하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천m ² 초과~ 3만m ² 이하	350	400	450	500	550	600	700
	3만m ² 초과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 현재 부담금 산정의 기준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위부담금은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물가상승 등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유발계수 또한 시설물의 종류 및 도시의 규모별 계수만 정하고 있을 뿐, 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시설물 규모에 따른 유발교통량의 차이 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또한,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물가상승분 등 변동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우 관련 업계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위험에 따른 단계적 인상 및 교통유발정도의 차이에 따른 시설물 규모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그 수는 적지만 교통유발량은 많은 3만m² 초과 시설물, 수는 많으나 교통유발량이 적은 3천m²이하 시설물, 그리고 그 중간영역으로 시설물을 3단계로 구분한 것 역시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하나 부담금 산정기준에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단위부담금액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재검토 일몰 설정을 권고. 또한, 경제여건 변동 등을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다른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부담금 부과기준은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재개정할 것을 부대권고함

(9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을 위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그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함(강화)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기준]

구 분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1호)	허가등 취 소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법 제31조제1항2호)	공사중지 변 경 등	허가등 취 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등(법 제31조제1항3호~10호)	시정명령	공사중지 변 경 등	허가등 취 소

☞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법률이 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나 도시계획심 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지정권자와 시행시간 법적 다툼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와 유사한 다른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비해 과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7)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반영 항공조종사 및 정비사 등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항공안전장애 범위 확대(신설)
 - 비행중 발동기 연소중지, 항공기 및 발동기 외부손상, 외부물체 유입 및 결빙, 대수리가 요구되는 구조손상 등 11개 항목 추가
 - ☞ 항공기 고장, 기능불량 등 항공기사고 요소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항공기 사고예방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요구하는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 항공기안전장애 :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항공법 시행규칙 별표6)
- 국외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할 운항규정에 '출·도착 공항의 최저 구조·소방등급 정보와 운항 적합성에 대한 평가방법' 추가(신설)
 - ☞ 운항안전과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이미 해당 항공사(대한항공 등 8개사)가 준수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며, 추가 비용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항공기 입출항신고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출시기를 정함(신설)
 -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항하는 자도 출발준비가 끝나는 즉시 입출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추가 확대하고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는 출항의 경우 출발준비가 끝나는 즉시, 입항의 경우 국내 공항도착 예정 2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의무조항 신설
 - ☞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입출항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탑승 승무원과 승객의 보건상태 신고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그 신고시기와 내용 등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안 흡연 전면금지(현행은 여객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흡연 금지)(강화)
 -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흡연을 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불편을 줄 수는 있으나, 동 규제로 인하여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다음의 설계변경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강화)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설계도서(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변경
 - 공사 중에 측정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가 구조계산을 수행할 때와 차이가 있는 경우
 -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설계도서와 별도로 상세한 구조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고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품질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또한, 고층건축물 모든 설계변경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한정하여 과도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 따라서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심사내용

- 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②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등의 욕실·화장실·샤워실·탈의실의 바닥 마감재료는 한국산업표준¹⁹³⁾(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신설)

구분		기준
동적 마찰계수	습윤	0.40 이상

☞ 그간 화장실·욕실 등의 바닥 마감재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생활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 미끄럼 방지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또한, 동 개정안의 바닥 마감재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은 전문기관인 기술표준원의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바닥타일 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마감재 가격은 마찰계수보다는 디자인 등에 따라 좌우돼 본 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 상승 및 공사비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 바닥 마감재 설치 건축물은 생활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목욕장업, 학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위법에서는 바닥 마감재 미끄럼 방지 기준만을 위임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할 ‘대상 건축물’까지 규정하여 상위법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것은 문제. 따라서 본 개정안(제24조제6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동의하나,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법률 개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재검토형 일몰(2년)을 부대권고 함

- 소규모(1층 이하, 연면적 1천㎡ 미만) 공장 중 내부 마감 재료로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강화)
 - 현재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은 난연성 재료 의무 사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축소(68개 → 51개)
 - ☞ 최근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으로 분류되었던 공장시설 화재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동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부담 비용은(대상 공장 건축물의 전체 공사비 증가율) 1% 내외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93) 욕실 등 바닥타일 등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01)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피해자 지원 사업 선정 대상을 소득·재산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서 국민기초생활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비교]

구 분	현 행(국토부)	개정안(복지부 방식과 동일)
대 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재산 조사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1,495,550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일정수준(수도권 9,000만 원, 그 외 지역 8,300만 원) 이하인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대상자 소득인정 액 산정방식	①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징구 ② 소득·재산 조사자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산정하고, 이와 별개로 '가구당 재산'은 1. 주택등 미소유자(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의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등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주택의 가격과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②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자동차 등 ⇒ <u>소득인정액 = ①+②</u>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고 피해자 가족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동차 및 금융자산 등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등의 타입 법령을 준용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또한,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으로 인한 기준 수혜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함. 따라서 본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등 지적기술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2년 이내) 기준¹⁹⁴⁾ 구체화(신설)
 -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위반사항과 처분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측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신고시 제출서류에 입·퇴사자의 재직·퇴직 증명서를 추가¹⁹⁵⁾(신설)
 -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측량업자가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94) 경력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

195) (現行) 입·퇴사자 명단, 입사자 경력증명서 제출

2. 해양수산부

오세광 사무관

(044)200-2425 sgo2101@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항만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51개의 법령·고시에 대해 신설 47건, 강화 49건 등 총 9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6건 모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제정안	제351회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선박직원법 개정안	제351회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3.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52회 예비심사 (2013,1,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제355회 예비심사 (2013,2,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55회 예비심사 (2013,2,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355회 예비심사 (2013,2,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제355회 예비심사 (2013,2,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58회 예비심사 (2013,3,1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58회 예비심사 (2013,3,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71회 예비심사 (2013.6.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74회 예비심사 (2013.7.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2013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 심사안	제462회 경제분과 (2013.7.5)		
19. 2013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 심사안(2차)	제463회 경제분과 (2013.7.12)		
20.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제377회 예비심사 (2013.7.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2013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 심사안(3차)	제464회 경제분과 (2013.7.24)		
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3.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개정안	제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선박구획기준 개정안	제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정안	제383회 예비심사 (2013.9.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제383회 예비심사 (2013.9.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수산자원의이식승인대상품종의규격등승인기준 제정안	제384회 예비심사 (2013.9.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385회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항만법 개정안	제385회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30.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개정안	제390회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4. 어촌·어항법 개정안	제390회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해사안전법 개정안	제390회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7	신설 4, 강화 3 비중요 7
38.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8	신설 1, 강화 7 비중요 8
39.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수산업법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1.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4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95회 예비심사 (2013.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5회 예비심사 (2013.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정안	제395회 예비심사 (2013.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5.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96회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7.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8. 우수천일염·생산방식인증천일염·친환경천일염의 생산기준 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9.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1.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5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5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계		원안의결 96	신설 47, 강화 49 비중요 96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가스연료의 안전한 저장·공급을 위한 가스 저장탱크 및 공급관의 설치방법과 가스 누설 방지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가스수급장소 및 탱크실 등 가스누설의 위험이 많은 구역에 고정식 분말소화장치 및 가스탐지·경보장치를 설치, 위험구역 내 전기설비 설치 금지 및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국제표준규격(IEC)에 부합하는 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가스 저장탱크 및 가스공급관의 손상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설비의 자동차단, 원격작동밸브 등의 설치요건을 마련, 가스 압축기의 배치와 설계, 가스 연료기관 내 가스의 완전연소 및 불완전 연소에 따른 폭발방지 수단 등 안전운전 요건 마련하고 고압의 가스탱크 및 관장치의 제작 또는 설치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시험방법을 정함(신설)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가스 연료 추진선박의 설비기준¹⁹⁶⁾을 국내 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선박직원법 개정안(신설 1, 강화 2)

- ①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어 시운전 하고자 하는 선박을 법 적용(제11조, 제13조~제15조)대상에 포함(선박직원 승무의무 부과) (신설)

☞ 시운전 선박의 해양사고¹⁹⁷⁾ 방지를 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시운전 선박에 대한 해기사의 승무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운전 선박의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사례¹⁹⁸⁾ 등을 감안 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해기사 면허의 직종에 ‘전자기관사’를 추가(강화)

☞ 2010년 개정(2012.1.1 발효)된 STCW 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 규정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해기사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한 개정협약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196) “가스연료 선박 잠정지침(Interim Guideline for Gas-fuelled Vessel)”, IMO Res. MSC. 285(86)/ '09.6월 제정

197) 시운전 선박 사고현황(사망자) : '09년 2척(0명), '10년 3척(1명), '11년 1척(11명)

198) 해외사례(시운전 선박 관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③ 선박직원의 직무에 '전자기관사' 직무를 추가하고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 전자설비 및 자동제어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강화)

☞ 해기사 면허에 추가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협약의 내용에 따른 전자기관사의 기본요건, 훈련 및 해기능력의 기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운영자 등에게 기금의 관리·운영 및 체불임금 지급현황 등을 보고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신설)

☞ 기금운영자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원 체불임금의 지급 보장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제로, 규제대상은 소수(4개 기금운영자)로 한정되고, 유사사례를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상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고시)'에서 정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신설)

☞ 현행 항만법 시행령 위임을 근거로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실적평가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배후단지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 평가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5)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선박의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¹⁹⁹⁾를 받지 않고 시운전이 가능한 선박 중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계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규정을 마련(강화)

☞ 수면비행선박의 시운전 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고속(시속 150~200km)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과 사고발생 사례²⁰⁰⁾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 대상은 소수(2개 제조사)로 한정되며, 규제이행 비용도 크지 않은 점(인증심사 비용 약 300만원 소요)을 감안 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선박용 물건 중 커튼류, 가구류, 침구류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추가하고 형식승인 검정항목을 추가(강화)

- (커튼류)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표준화재시험(시험편, 시험절차 등), 세탁 및 풍화절차 등 화재시험 요건 및 판정기준 신설

- (가구류) 외관검사, 치수 및 밀도검사, 화재시험(시험편 등) 요건 및 판정기준(연소시간, 잔열시간 등) 신설

- (침구류) 외관검사, 치수 및 밀도검사, 화재시험(시험편 등) 요건 및 판정기준(시험편 발화여부, 연기연소 발생 여부 등) 신설

☞ 선박용 물건 중 형식승인 기준이 없던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으로 형식승인 시험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화재시험절차 코드(FTP Code²⁰¹⁾)를 적용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대상은 소수(5개 제조업체)로 한정되고,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²⁰²⁾는 품목당 약 150만원으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99)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인증을 받고 시행하도록 규정

200) 사고발생 사례 : 경남 사천시 향기도 앞바다 시운전 수면비행선박 추락사고('12.7.8일, 1명 사망, 3명 부상)

201) FTP Code : International Code for Application of Fire Test Procedures,

[Part 1~11편 중 Part 7(커튼류), 8(가구류), 9(침구류) 수용]

202) 수수료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에 의거 지정시험기관이 산출

(7)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특정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기준은 제13조 제3항을 준용하게 함(신설)
 - ☞ 상위법의 위임으로 정부의 대항조치²⁰³⁾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선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사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운산업을 보호하려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와 유사 입법례를 감안 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① 일부 연안어업의 허가정수를 현행 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허가건수가 정수보다 작고 초과어획강도가 낮은 업종은 현 허가건수를 정수로 설정하고 어업갈등 유발 업종은 허가건수에서 초과어획강도 만큼 감축하여 정수로 설정하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감척 최소화 업종은 허가건수에서 초과어획강도 최소 수준의 50%를 감축하여 정수로 설정(강화)
 -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적정 어획강도를 초과하는 일부 연안어업의 허가정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현재 어업종사자는 허가정수 축소와 관련 없이 어업을 영위할 수 있어 별도의 조정비용은 없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²⁰⁴⁾의 심의·의결('12.5.9)을 거쳐 수산자원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허가정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새우조망·패류형망은 현재 허가건수에서 평균 초과어획강도 만큼 감축, 실뱀장어안강망은 2011년 허가건수를 정수로 설정하고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 정수를 2011년 허가건수를 정수로 설정(강화)
 -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적정 어획강도를 초과하는 이동성·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축소·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어업종사자는 허가정수 축소·신설과 관련 없이 어업을 영위할 수 있어 별도의 조정비용은 없으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12.5.9)을 거쳐 수산

203) 대항조치 : 국내 해운업자가 해운관련 외국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에 반하는 불이익(집나르기 금지, 입항금지 등)을 받을 경우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204) (구성원 19인) 위원장(농식품부 차관), 부위원장(농식품부 고위공무원), 수협중앙회장 지명 1인, 농식품부 장관 지명 5인, 시도지사 추천 지역어민 11인

자원평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허가정수를 정한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적용 개조 선박의 개조 범위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허용값 적용 대상선박을 규정(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허용값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 선박과 허용값 등은 국제협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소수(연간 약 18척)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대상 선박의 범위를 규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규정(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해야 하는 선박의 범위와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선박의 범위와 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은 국제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약 1,027척)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③ 에너지효율 검사를 위한 검사신청 시기와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에너지효율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을 정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선박에너지효율 검사의 신청시기, 제출서류 및 검사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협약 상의 검사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약 1,027척)이 많지 않고, 규제이행 비용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의무이행기간의 구체적 기간을 정함(신설)
 - 3개월 이내
 - ▶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꺾꽂이는 행위, 마리나항만구역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 1개월 이내

▶ 폐선을 방지하는 행위,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지하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제31조 각 호²⁰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상위법은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내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간은 시행령이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지된 폐선 제거 등을 1개월 이내로 한 것과 관련 지나치게 짧게 규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폐선·장애물 방지, 무단점유 등은 단순위반 행위로 즉각적으로 원상회복·제거가 가능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11)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동차를 유해성물질로 분류하여 컨테이너 수납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험물 수납 용기의 종류별(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금속용기) 낙하시험, 압력시험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위험물 관련 자동차 등 20개 품목 신설, 373개 위험물의 운송요건 개정, 28개 특별요건 신설, 18개 용기표 개정으로 안전수송요건 적용대상 확대하였으며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방화장치 등의 종류 및 기준을 강화(강화)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시 자동차를 위험물(제9급: 유해성물질, 유엔번호3166)로 분류하고 그 운송요건을 정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자동차를 수납한 컨테이너를 해상 운송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위험물컨테이너검사 대상에 자동차 추가가 필요하고,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위험물 수납 용기의 종류를 소형용기(드럼, 상자, 포대 등), 중형산적용기(대형포대, 대형상자 등), 대형금속용기(탱크컨테이너)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낙하·압력시험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용기 시험요건에 대한 상세규정은 지정검사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운용하였으나, 국제기준 변경을 수용하고 기간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키 위해 고시 개정이 필요, 또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에 따라 표찰, 용기, 적재·격리 등의 안전운송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위험물 운송과정에서 폭발, 오염 등을 방지하여 선원, 선박, 화물 및 환경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이 필요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화재탐지 및 소화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 해상운송에서 해당 요건을 갖춘 선박만이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인결

205) 1. 정당한 사유 없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8)

■ 심사내용

- 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특화어촌위원회를 추가하고 동 위원회의 사업 시행을 지역주민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간의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으로 한정(신설)
- ☞ 특화어촌위원회는 어촌 주민들로 구성되어 어촌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시행자로 이를 추가하고 동 위원회의 사업 시행을 지역주민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간의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요로 보아 원안의결
- ②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²⁰⁶⁾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신설)
- ☞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건축·공작물 설치 등을 제한이 필요하며, 시행령에서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 구체적인 제한행위를 규정한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등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당해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요로 보아 원안의결
- ③ 사업 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시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등 7종의 서류²⁰⁷⁾를 제출토록 함(신설)
- ☞ 준공검사시 설치된 시설물이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 지원금의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중요시설물의 유지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의 유형은 이러한 확인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준비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농어촌정비사업 등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므로 적정하므로 원안의결
- ④ 어촌특화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이 아닌 토지와 물건 등(이하 토지 등)의 매각 등의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토지 등의 임대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수의계약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순위 등을 규정(신설)
- ☞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여 임의로 매각·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키 위해 필요하고 구역 밖으로 이전하게 된 자에게 우선순위 가중치를

206)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야적, 죽목 벌채 및 식재 등

207)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사업비 명세서, 시설물 배치 현황도,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준공도서, 사업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사업 시행 후 시행자 취득 재산과 국가 등 귀속 재산 명세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부여하는 것은 어촌의 자생적 발전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과 생활터전의 변화없는 재정착을 유도키 위해 필요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⑤ 어촌특화시설관리자²⁰⁸⁾가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관리자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어촌특화시설관리자에게 당해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당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보수의무를 부과하고 재난피해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손괴 및 점유 등이 필요한 사유를 열거(신설)

☞ 상위법에서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안전점검·개보수 의무가 부여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위임범위 내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시설 및 시설관리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특화시설 관리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⑥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사용기간은 공용인 경우 3년, 그 이외인 경우 1년 이내로 하고 경비 사용처를 시설의 유지·관리, 개보수, 시설손괴대비 적립금으로 한정(신설)

☞ 특화시설을 공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다소 짧게 설정하였으나, 당해 기간을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기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촌종합개발시설 등 유사사례에서도 공용목적외인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⑦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절차에 있어 지역주민 10명 이상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칭, 구역, 회원자격 등을 1주일 이상 공고토록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의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원회 설립인가를 신청하며, 정관·창립총회 의사록·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및 회원 명부, 회원의 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첨부토록 함(신설)

☞ 상위법 위임범위 내에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 대표성을 보장하고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⑧ 어촌특화시설의 불법 점용·사용시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임대하였을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신설)

☞ 어촌특화시설의 불법점용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질서위반 행위 발생을 억제하여 어촌특화발전사업의 성공을 담보코자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08)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어촌어항협회, 지방공사, 특화어촌위원회

(13)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제조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기준에 적합할 것, 해당 항만을 통한 원료·제품 운송 비율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 신청요건을 규정(강화)
- ☞ 항만법 개정에 따라 항만구역내 제조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되, 오염배출 정도 등 구체적 입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위임범위 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항만구역내 제조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국유재산 관련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은 사용료 미납과 관련 납부기한을 최초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수입 증대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침몰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위해도(危害度) 저감대책의 실행비용을 침몰선박·연료유·화물의 인양·회수 비용으로 함(신설)
- ☞ 침몰 선박은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침몰선박·연료유·화물의 인양·수거·회수 비용 등을 고려 체계적인 관리와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이 필요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적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대피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신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소말리아 등 해적출몰 해역에서의 안전 항행을 위해 선원대피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해운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원대피처 설치를 해적위험해역 항행선박에 한해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① 위해도 저감대책 비용은 침몰선박의 위치, 주변환경(수심·저질상태·계절·수온·조류 등), 선체 종류 및 상태, 화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침몰선박 소유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한 독촉장을 발부토록 함(신설)
 - ☞ 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내에서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부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업무 대행기관에게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대행업무 처리실적의 제출 의무를 부과(신설)
 - ☞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입기관의 업무수행의 재량을 제한할 수 있어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양식장 管理舍²⁰⁹⁾에 밀폐식 화장실·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 및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기록부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가축(개·고양이 포함) 사육을 금지(강화)
 - ☞ 가두리 양식장 관리사의 오폐수 등 위생상태 강화는 미 FDA 지적사항 이행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규제대상이 소수(745개 가두리 양식장)에 한정되며, 규제 이행과 관련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비로 75억원²¹⁰⁾이 소요되나, 수출 중단시 발생하는 양식어민 피해²¹¹⁾의

209) 사료보관, 사료가공 및 양식물 선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관리시설, 냉동·냉장시설 및 창고 등의 부대시설

210) 화장실(개당 200만원) 15억원, 생활하수처리장치(개당 800만원) 60억원

211) 2012년 수출중단시 피해(795억원) : 리콜비용 453억원, 수입중단에 따른 미채취 손실 340억원

예방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8) 2013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 심사안(제1차)

■ 심사내용

- 2013년 도래 일몰규제건수는 총 111건으로 금회심사 대상은 임원의 결격사유 등 8건으로 6건은 규제완화 및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처 검토의견이 타당하여 동의 다만 대선 기간 및 보장계약증명서 신청서 제출과 관련 일몰폐지를 요청한 2건은 재검토 3년으로 연장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임원의 결격사유	지구별 수협 임원의 자격 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규제완화 일몰폐지	규제완화 일몰폐지
동일명칭 사용금지	항만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항만공사법 법률 제9조, 제45조 시행령 제30조	규제완화 일몰폐지	규제완화 일몰폐지
대선 기간	선박투자회사는 소유 선박을 선박운항 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토록 함	선박투자회사법 제26조 제1항	규제완화 일몰폐지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사업연도	한국해운조합의 사업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함	해운조합법 법률 제31조	규제폐지 일몰폐지	규제폐지 일몰폐지
선박보안심사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보안심사 수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규제완화 재검토 3년
보장계약증명서 신청서 제출	유류오염사고 시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18조, 제49조	규제완화 일몰폐지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선박안에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유류오염사고 시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20조, 제50조	규제완화 일몰폐지	규제완화 일몰폐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 영향평가	해양을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면허, 허가,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허가 등의 처분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및 해역이용적정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84조, 제85조 시행령 제61조 ~ 제64조 시행규칙 제48조 ~ 제53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9)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2차)

■ 심사내용

- 2013년 도래 일몰규제건수는 총 111건으로 금회심사 대상은 51건으로 대부분이 규제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처 검토의견이 타당하여 동의하였으며 다만, 일몰폐지 및 3년 재연장과 관련, 일몰폐지를 요청한 37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25건은 일몰폐지, 12건은 3년 재연장, 일몰 3년 재연장 요청한 14건에 대해서는 7건 재연장, 재검토 필요성이 없는 7건은 일몰폐지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내수면 과태료	내수면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내수면 어업법제2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감사위원회	중앙회에 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출 요건(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 임원과 간부직원의 직무관련 영리목적 사업 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사무소의 구역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지사무소 설치 및 중앙회의 구역을 전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로 구분하고 각각의 직무범위 지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원금 5년, 이자 2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명칭사용 위반 등 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절차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0조 시행령 제7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어촌계의 사업	어촌계의 사업수행 범위를 정관에 규정하여 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여신자금의 관리 등	여신자금에 대한 감사, 압류금지대상 자금의 범위 설정, 거래조건을 타 신용사업에 비해 우대 금지 등 여신자금에 대한 관리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자만이 행사할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이사의 직무	중앙회의 소관사업 부문별 상임이사의 담당 직무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지구별 수협의 임원의 정수 제한 및 선출 방법, 상임이사의 자격제한 등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장기대출	중앙회의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 자금 범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등에 대해 조합원 등의 검사청구 요건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조합원의 자격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이 있는 어업인 등)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시행령 제14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범위 규정 - 조합장: 수협을 대표, 총회와 이사회회의 의장 - 상임이사: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부대사업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할 수 있는 대상(국가 또는 공공단체, 어업인 등)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4조 시행령 제4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중앙회 회원의 출자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죄수 이상으로 출자를 하여야 함(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중앙회의 결산 등	중앙회는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및 제출 기한(3개월)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중앙회의 임원	중앙회의 상임임원 규정(회장 1명, 사업전담대표이사 2명, 21명의 이상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지도감독	지구별 수협조합장이 해당 조합구역의 어촌계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채권의 권면액 및 형식	수산금융채권의 권면액(1만원 이상) 및 형식(무기명 원칙) 제한 요건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3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회장의 직무	회장의 직무(중앙회를 대표, 회원에 대한 감사, 중앙회사업 및 부대사업, 대외활동 등)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관리기관의 업무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기관(상호금융예금 자보호기금의 관리) 업무 감독 규정(필요한 명령,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예금자보호를 위한 조합의 각종 이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령 제2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3년
보험사고 관련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중앙회는 보험가입자, 어선원, 회원조합에 대해 보험사고 관련 보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어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지진에 대비하여 어항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함.	어촌어항법 제24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공제사업규정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경우 공제 사업규정(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사항, 책임준비금, 준비금적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영업조합법 제33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사용료 등의 신고	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요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함	항만공사법 제30조제3항, 시행령 제13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토지 등의 수용	항만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항만공사법 제26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통관절차가 끝난 장기체류 화물에 대해 반출 통보 및 미 반출시 공고 후 매각, 폐기 또는 국가에 귀속하는 절차 등을 규정	항만공사법 제3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항만공사의 지도감독	항만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규정	항만공사법 법률 제37조시행령 제29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비밀누설 등의 금지	항만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항만공사법 법률 제39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통계, 행정조치 등을 위한 조사 및 보고	해운업자 또는 화주의 금지행위 위반 조사, 특정행위 이행여부 확인, 해운정책 수립과 관련한 통계작성 등 규정	해운법 제50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해운법 위반시 행정처분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을 공표할 수 있음	해운법 제55조 및 해운법 시행령 제28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단체협약 체결의 신고 및 단체협약의 게시	선박소유자 등은 외국인선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내용을 선박안의 알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함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한정면허	선박의 종류, 수역 등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허가사 면허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관련 업무 자료를 제출·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음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 제1항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한도	선박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제한 함.	선박투자회사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음.	선박투자회사법 제10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해원의 징계	해원(선장을 제외한 선원)이 선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선원법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6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해당선박 선원에 대해 재해 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선원법 법률 제98조 시행령 제32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일몰 폐지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선원은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선원법 법률 제129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일몰 폐지
근로시간 및 휴식	선원의 기준근로시간을 한정(1일 8시간, 1주 40시간)하고, 선주와 선원 합의하에 1주간 16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선원법 법률 제60조 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임금의 지급	선원의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지급	선원법 법률 제52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일몰 폐지
일시보상	선원들의 질병이나 부상이 장기화될 경우 일시 보상	선원법 제98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일몰 폐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유지품 유실보상	해양사고 등으로 선원들의 소지품을 유실할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금전 보상	선원법 제102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선원법 위배시의 항해정지 및 입항 항구 지정	선원법 위반시 선박소유자와 선원에 대해 항해를 정지시키고 선박이 입항해야 할 항구를 지정	선원법 법률 제124조 제2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일몰 폐지
서류보존	선박소유자에 대한 서류보존(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의무(3년간)	선원법 법률 제153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선원의 직업안정의 의무	선원 인력의 확보와 직업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 규정(선원의 효과적인 취업알선·모집 및 지원,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 업무, 선원의 적성검사 업무 등)	선원법 법률 제108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일몰 폐지
선장의 의무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선장의 의무(출항전 검사 의무, 항로에 의한 항해, 재선 의무, 선박위험시 조치 의무 등)	선원법 법률 제7조 내지 제13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일몰 폐지

(20)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총톤수 4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²¹²⁾의 계산방법을 마련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대상 선박 추진기관의 최소출력 평가기준과 선박 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대상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의 방법을 규정(신설)
- ☞ 해양환경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술 규제영향분석(기술표준원 실시) 검토 결과 IMO 결의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12) 선박이 1톤 화물을 1해리(海里)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한 지표

(21) 2013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 심사안(3차)

■ 심사내용

- 2013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건수는 총 111건으로 기심사 59건을 제외한 금회심사 대상은 52건으로 규제유지 47건, 규제개선 4건(규제완화)에 대한 부처의견이 타당하여 수용, 다만 규제유지 1건에 대해서는 규제로 볼 수 없어 폐지하고 일몰폐지 및 3년 재연장과 관련하여 일몰폐지를 요청한 41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6건은 일몰폐지, 35건은 3년 재연장하고 일몰 3년 재연장 요청한 11건에 대해서는 모두 재연장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임원의 임기	조합장·이사(4년) 및 감사(3년)의 임기 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	규제완화 일몰폐지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직원의 임면 등	직원의 임면 권한 규정(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시행령 제27조	규제완화 일몰폐지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선박투자회사 존립기간 중 주식환매청구 금지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음	선박투자회사법 제15조 제3항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한국해운조합 사업	한국해운조합의 사업종류(조합원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공제사업, 위탁 사업, 해양사고구제사업 등) 규정	해운조합법 법률 제6조 제1항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 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 아야 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보안등급의 설정· 조정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해 보안사 건 발생의 위험정도에 따른 보안등급의 설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선박) 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사항으로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을 규정	선박등기법 제3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선박등기) 적용범위	선박등기 적용범위(총톤수 20t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t 이상의 부선에 대해 적용)	선박등기법 제2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유조선 등의 준수 사항	1,500ki 이상의 경유나 중유를 싣고 운반 하거나, 유해액체물질을 1,500t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항행금지	해사안전법 제14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선박 등의) 인증심사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해사안전법 제4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좁은 수로등에서의 항로의 지정	해역의 자연적인 조건, 선박의 교통량 증가 등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인정되면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항로지정 등)을 지정·운영	해사안전법 제3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안전관리대행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한 필요항목 및 절차 등 규정	해사안전법 제5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분담유 수령량 보고	연간 15만톤 이상 분담유(원유, 제품유, 혼합가공유 등) 수령자는 92년 국제기금협약에 의거 매년 분담유 수령량을 IOPC Fund*에 보고하여야 함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선박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불복시 재검사	선박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불복시 재검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선박안전법 제72조 및시행규칙 제93조	규제유지 일몰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하역설비검사 기록 및 비치	선박소유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함	선박안전법 제3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8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 항해검사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경우 '예인선항해검사(1년마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날 전후 3개월 이내)'를 받아야 함	선박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예비검사	선박에 선박용 물건이 설치·비치된 후 선박용 물건에 대해 검사를 받으려면 제조자·수입자 등이 선박에 설치 되기 전이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선박안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54조	규제완화 일몰유지	규제완화 일몰유지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작동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함	선박안전법 제30조, 시행규칙 제73조	규제유지 일몰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선박의 검사 등에서의 참여 등	선박의 검사 및 검정·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함	선박안전법 제6조	규제유지 일몰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함	선박안전법 제18조	규제유지 일몰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선박검사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선박안전법 제77조, 시행규칙 제9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확보	선박은 감항성*을 유지해야 함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준비를 갖추는 것 또는 갖춘 상태	선박안전법 제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폐지 일몰폐지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정	우수한 시설,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제조업체에 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48조	규제완화 일몰유지	규제완화 일몰유지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대행기관 지정 및 감독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평가 및 지정 절차와 검사대행기관 지도감독	항로표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제35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사설항로표지위탁 관리 신고	사설항로표지 관리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신고	항로표지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침몰선박 및 구조물 설치 등 공사시 사설항로표지 설치 의무	침몰선박 및 구조물 설치 등 공사시 사설항로표지 설치	항로표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제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중앙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항만법 제42조, 시행령 제39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항만협회의 설립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를 설립	항만법 제91조, 시행령 제9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등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수역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신항만건설사업의 허가, 승인취소 등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능시 사업의 허가, 승인의 취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8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법령위반 및 공익을 위한 처분	항만건설사업시행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지정 등을 받은 경우 이법에 의한 허가·승인·지정 등을 취소	항만법 제7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시설장비의 검사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 장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항만법 제26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항만시설장비 검사업무관련 검사대행기관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장비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항만법 제28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항만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신고	갑문, 운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을 사용·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항만법 제24조, 시행령 제23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항만시설장비의 자체 점검	항만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항만법 제25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사용·수용	항만공사 또는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타인소유, 점유 토지에 출입 및 재료적치장·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음	항만법 제75조, 시행규칙 제28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비관리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되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항만법 제15조 제4항, 제5항 및 시행령 제2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항만법 제96조, 제97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금지행위	항만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명시	항만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항만배후단지로 조성·고시된 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등) 명시	항만법 제84조,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30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산발전기금에 납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0조 제1항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과태료	측량, 수로조사 방해, 수로도서지 판매가 격 미준수, 거짓신고, 부정에 대한 과태료 납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11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성과심사를 위한 규정과 수수료납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타인점용 토지 등의 출입 또는 사용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해 타인의 점용토지 등을 출입 또는 일시 사용행위 가능	연안관리법 제35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방제분담금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500t 이상의 유조선, 1만톤 이상의 선박, 1만 k 이상의 기름저장시설)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토록 함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시행령 제54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해양환경 관리업 등록	해양환경관리업(폐기물해양 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준의 기술능력과 선박·장비 및 설비 구비	해양환경관리법 제70 ~75조, 시행령 제55~56조, 시행규칙 제36~38조 및 제44조	규제유지 일몰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평가대행자의 등록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함.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시행령 제65~66조, 시행규칙 제54조	규제유지 일몰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해양환경 영향조사 등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60조	규제유지 일몰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금 형태의 부과금을 부과·징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령 제26~28조, 제30조,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규제유지 일몰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3자 물류를 기반하는 해운업 특성을 고려하여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참여를 제한	해운법 제24조 제4항, 시행령 제13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연맹지원단체등의 수익사업의 시행 승인	해양소년단 연맹지원단체 등은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 시행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법 제6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연안정비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연안의 침식방지 등 연안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가능	연안관리법 제27조	규제유지 일몰유지	규제유지 일몰유지

(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① 해양사고 발생시 조사관의 허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증거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증거보전 대상물 '선박안의 기록'에서 '선박 밖, 해상교통관계기관의 전자적 비전자적기록'으로 확대하고 선장에게 항해자료기록장치²¹³⁾ 보존의무를 신설(강화)
 - ☞ 해양사고 증거보전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는 물론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사 입법례 및 국제규정(협약)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해양안전심판에서 증언한 증인에게 이를 이유로 하고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신설)
 - ☞ 증인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를 통해 해양안전심판에서 증인들의 증언 기피현상 및 허위진술을 줄일 수 있고 해양안전심판 증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점과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③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보존의무 위반과 해양안전심판의 증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신설)
 - ☞ 의무 위반과 금지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선장의 정보보전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증인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과학적인 사고원인 규명자료의 확보와 해양안전심판 증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해 수출제한 대상에 2cm 이하 우렁챙이를 추가(강화)
 - ☞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을 제한 또는

213) 항공기의 블랙박스과 유사한 선박장비로 일정시간 후 자동 지워짐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4) 선박구획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여객선의 침수사고 후의 시스템 능력 및 운항정보 향상을 위해 2014년 이후 신규 건조되는 일정 규모 이상 여객선을 대상으로 복원성 컴퓨터 또는 육상지원 시스템을 구비토록 함(강화)
- ☞ 동 개정안에 대한 근거규정이 상위법에 명확하고, 선박운항, 항만시설 운용 관련 규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설치된 국제해사기구의 SOLAS협약²¹⁴⁾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5)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및 해역,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염전시설 및 기구·자재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신설)
- ☞ 상위법인 「소금산업진흥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안전관리기준은 내용에 따라 해양환경기준 등 관련법규 기준을 준용하였고, 생산업자(1,000여개)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견이 없으며, 기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6)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부분폐형구명정의 색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용구명설비의 색도 확인·환경·성능요건 등 일반요건을 강화(강화)
- ※ 구명정 : ① 전폐(완전밀폐)형구명정 ② 부분폐형구명정 ③ 개방형구명정

214)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선박 및 운항 등의 안전 관련 국제협약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국제해사기구(IMO)²¹⁵⁾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²¹⁶⁾이 발효('14. 1. 1)됨에 따른 국제구명설비 코드(LSA Code)²¹⁷⁾의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이어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7) 수산자원의이식승인대상품종의규격등승인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면과 내수면의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등에 대한 종류, 양식방법, 종묘 승인수량, 종묘 크기 등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 기준을 정함(신설)
- ☞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그 승인기준은 수산자원이식협의회('12.12.20)²¹⁸⁾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이어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8)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추가발행 요건·범위 등을 정함(강화)
 - (발행사유) 선박운항 정상화, 선박투자회사 정상화, 그 밖의 투자자 보호
 - (발행범위) 3회 이하, 추가발행 前 최초 주식액면가 총액 30% 이하 규모
 - (사용범위) 선박관리비용, 연료비, 수리비 및 개조비,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
- ☞ 상위법 개정('13.10.6. 시행)으로 주식의 추가발행 근거가 명확하고 주식 추가발행 여부는 종국적으로 주주들이 선택하는 구조이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없고 피규제자들의 비용부담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15)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16) 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217) LSA Code : Life-Saving Appliance Code

218) 수산자원이식협의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

(29) 항만법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①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신설)
- ☞ 선수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지원 및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민간참여 촉진 등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참여 촉진과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신설)
- ☞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난개발 방지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③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²¹⁹⁾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신설)
- ☞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조성된 토지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참여 촉진과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④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비용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신설)
- ☞ 법 제63조의 2 신설(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로 항만재개발 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사업의 건전성 제고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사업의 건전성 제고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⑤ 공사완료 후, 사업구역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자협의회가 관리토록 함(신설)
- ☞ 자율적으로 구성된 입주자협의회 구성·관리를 통해 조성된 사업구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입주업체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입주자 및 사업지구 등 이용자)의 이견이 없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19)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은 제외

(30)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면허 취소(강화)
- ☞ 도선법 개정('13.5.22. 공포, '13.11.23. 시행)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고예방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도선할 경우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법 제9조제1항제11호)되고, 그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9조제6항)

(31)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화재에 취약한 FRP선박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난연성(難練性)수지액²²⁰⁾ 적층 대상선박을 총톤수 100톤 이상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 확대(강화)
- ☞ 총톤수 10톤 미만 강화플라스틱(FRP)선박의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규정이 상위 법에 명확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2)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제해사기구(IMO)²²¹⁾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²²²⁾의 구명정 이탈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이탈시험, 강도시험 등)요건을 국내기준에 수용하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FRP) 선체의 도면승인 및 재질시험, 강도 시험 및 외관확인 등

220) 적층용 및 겔코트(FRP 선체의 표면에 미관과 보호를 겸할 수 있는 수지층)용의 액상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로서 난연성 수지액 적층시 일반수지만 적층시 보다 약 20분 이상의 차열성(화재 확산방지 효과)으로 화재진압 및 탈출 시간 확보에 유리

221)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22) LSA Code : Life-Saving Appliance Code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구명정 이탈장치 및 비사업용 플레저보트(FRP) 선체의 시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 시험항목을 준용하여 검정²²³항목(표본검사)을 개정(강화)

- ☞ 구명정 이탈장치에 대한 성능시험 요건은 근거규정이 상위법에 명확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의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선체의 형식승인 기준은 현행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을 준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선박 검사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는 근거규정이 상위법에 명확하고,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을 준용하여 최소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정항목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3)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지정 조사 참여자)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신설)
- ☞ 상위법인 「해양과학조사법」 개정('13.11.14. 시행)에 따라 지정조사 참여자들의 업무수행 및 결과 보고를 이행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4) 어촌·어항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어항개발사업시행자²²⁴가 어항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신설)
- ☞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토지·물건을 수용할 경우 관련법²²⁵을 준용,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로·공항·항만·하천 등 공익사업에 이미 시행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23)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개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고 표본검사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선박안전법 제8조 제1항)

224) 해양수산부장관(국가어항), 시·도지사(지방어항), 시장·군수·구청장(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2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35) 해사안전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면서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사유 등을 규정(신설)
 - ☞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사유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사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6)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항만출입증 발급 신청시 신원조사 대상자를 규정하고 신원진술서 작성·제출 및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신설)
 - * ① 항만내 제한구역·통제구역²²⁶⁾을 출입하기위한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자
 - ② 부두출입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은 업·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 ③ 외국인 출입증 발급 신청자
- ☞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의 보호와 항만보안상 취약한 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인 출입절차 규정으로 관계기관²²⁷⁾ 이견이 없고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7)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강화 3)

■ 심사내용

- ① 선박소유자 부담의 선원송환보험가입 대상자 범위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확대(강화)
 - ☞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노조의 이견이 없고 국제협약²²⁸⁾ 수용 등을 고

226) 제한구역 : 입·출국장, 항만의 전기실·기계실·전산실·유류저장고·펌프실·통신실 등
통제구역 : 항만변전소, 경비종합상황실, 무기고 등

227)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경찰청

228) 2006 해사노동협약(제2.5조-송환)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송환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선박소유자에

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② 개정된 선원법에서 선박조리사의 승선이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기준을 정함(신설)

☞ 선원법 개정('13.3.23. 시행)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의 자격기준과 선박내 급식의 품질 및 위생수준 개선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③ 선원의 거주설비와 선내급식과 관련하여 식량과 식수공급, 저장 및 취급장소 설비 등을 매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할 선장의 의무를 규정(신설)

☞ 선내의 식량과 식수의 공급관리 등을 통해 선원들의 건강권 보장, 시설 관리 부실에서 올 수 있는 질병예방을 기대할 수 있고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노조단체 등의 이견이 없고 국제협약 수용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④ 선원에게 1주에 7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1일 휴식시간은 두 차례까지만 분할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완화의 제한기준을 정함(신설)

☞ 선원의 휴식시간 적용범위나 기준을 명확히하고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선원 휴식권 보장 및 근로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국제협약 수용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⑤ 소년선원(18세 미만)의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규정(신설)

☞ 선원법 제61조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의 근로시간 및 휴식 시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을 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한 규정임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⑥ 위험화물적재선박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강화)

☞ STCW협약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승무경력 및 승인된 훈련과정을 수료한 선원의 승선을 통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대해 재정 보증을 마련할 것을 요구토록 함

- ⑦ 선내안전 보건기준 숙지, 선내 표지에 따른 행동, 위험작업시 보호 기구 사용 및 거주 환경의 청결유지 등 선원의무사항을 규정(신설)
 - ☞ 선원의 선내작업시 안전 및 위생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원의 준수사항 의무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선원들의 작업안전권 보장과 건강권 향상, 국제협약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8)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신설 1, 강화 7)

■ 심사내용

- ① 국제협약²²⁹⁾ 중 오수배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배출률²³⁰⁾의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고 배출하도록 규정(강화)
 - ☞ 선박의 분뇨 배출률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승인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 및 외국항에서 우리선박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이어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계획서의 작성·검인·비치 및 이행의무를 추가(강화)
 - ☞ 오염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비상계획서에 포함된 방제절차, 방제교육·훈련 등의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행을 확보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③ 선박의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함(강화)
 - ☞ 선박의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는 지정업체에서 하고 있으나 폐기처리에 대한 절차 또는 방법이 미흡하여 폐기처리도 설비제거 지정업체 및 단체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④ 해양오염방제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장 발부 및 체납가산금 부과, 국세체납처분 등에 따른 강제징수절차를 규정(강화)
 - ☞ 해양오염방제분담금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229) 오수 배출에 관한 규정(부속서 제4장 제1규칙)의 개정사항 및 국제해사기구(IMO) 제5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결의서(157)「선박으로부터 처리되지 아니한 분뇨의 배출을 기준에 대한 권고」

230) 선박의 흡수(선박이 물에 잠기는 부분)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배출률

보아 원안의결

- ⑤ 평가대행자²³¹⁾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근거를 마련(강화)
- ☞ 평가대행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대행영역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⑥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검정 및 성능인증과 성능인증검정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및 검정을 취소(강화)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형식승인검정과 성능인증·성능인증검정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검정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⑦ 소속공무원이 출입, 확인·점검 및 시설·장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있는 대상(업체)²³²⁾을 추가(신설)
- ☞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누락된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있는 업체²³³⁾의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양환경보호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⑧ 의무이행규정 신설에 따라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²³⁴⁾을 마련(강화)
- ①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받은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 ②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폐기한 자
- ③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

231)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232) 제42조제3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자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

233)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형식승인업체 및 성능인증업체

234) 제132조(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의무이행규정 신설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으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9)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어업허가 유효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연근해어업허가²³⁵⁾를 같은 시기에 동시에 처분하려는 경우’를 추가(강화)
- ☞ 어업질서 확보와 어업조정 등 효율적인 어업허가 관리를 위해 어업 허가를 같은 시기에 동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관련단체(지방자치단체·수협중앙회·선주 등) 이견이 없고, 행정효율성향상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0) 수산업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① 총톤수 8t 이상의 동력어선 근해어업 어업허가 제한톤수 기준을 총톤수 10t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상향(강화)
 - ☞ 연근해어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선원복지공간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연근해어업 어선의 제한톤수 기준을 조정하여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면서 선원들의 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선주 및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의 이견이 없고 국제협약 수용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2003년 개정된 과징금 부과 최고 한도액²³⁶⁾을 물가상승률, 어업소득 및 어선규모 등을 감안,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강화)
 - ☞ 불법어업을 막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현실에 적합하도록 과징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단체와 협의회 이견이 없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5) 연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수산업법 제46조)

236) '03년 이후 약 10년동안 개정없이 운영되어오면서 과징금 기준이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국가경쟁력위원회 및 법제처 지적('08년)

(41)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① 조업중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의 혼획어종 및 그 혼획비율을 정하고 어업인의 혼획 저감장치 부착의무를 규정(신설)
- ☞ 그동안 혼획의 전면금지에서 수산업법 개정('13.12.19. 시행)으로 어업별 혼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혼획어종 및 혼획의 허용범위 등을 정하고 「혼획저감장치」 부착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보를 위해 어선의 선복량²³⁷⁾을 제한하고 어선의 건조나 개조시 증톤의 허용범위를 규정(신설)
- ☞ 지속가능한 어업의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의 종류별 경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선복량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기존의 관련규정을 동일한 내용으로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조정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③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신설)
- ☞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제도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에 이관·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자체 및 수협중앙회 등 관련기관들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④ 어업정지 처분 중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1/2 범위에서 가중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가상승률, 어업소득 및 어선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강화)
- ☞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게 어업정지 또는 취소를 대신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의 현실화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7) 특정범위를 정하여 산출한 선복(船腹, ship's space)의 총량, 즉 적재능력을 말함.

(4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해양생물 18종²³⁸⁾을 추가로 지정(강화)
 - ☞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해양생물종의 보전 및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보호, 보호대상해양생물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산생물에 대한 처방전발급 수수료 상한액을 5,000원으로 하고 처방전 서식 및 처방전 사본 보존기간(3년간) 규정을 마련(강화)
 - ☞ 상위법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관련기관·단체와 협회 등의 이견이 없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실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손해평가인 위촉취소 및 해지사유 규정을 준수(신설)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가입어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처리를 위한 손해평가인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손해평가인의 질적 향상과 관련기관·단체와 협회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8) 바닷새 13종(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뽕쇠오리, 습새, 바다제비, 쇠가마우지, 아비, 바다쇠오리, 희수염바다오리, 바다오리), 식물 5종(갯봄맞이꽃, 섬현삼, 남가새, 개정향풀, 초종용)

(45)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낚시업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1회 4시간 이내 이수하여야 하며, 낚시터 및 낚시어선 종사자에게 전달교육을 하여야 함(신설)
- ☞ 상위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낚시업자 및 관련기관 이견이 없고 안전사고예방과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6)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선박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성능요건²³⁹⁾ 강화(강화)
- ☞ 「국제해사기구(IMO) SOLAS 협약」 및 「국제 화재안전장치 코드(FSS Code)」의 국제소방설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선박안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관련단체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7) 어선설비기준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① 구멍조끼의 착용성 향상을 위한 요건을 추가하고 심사기준을 마련(강화)
 - ☞ 상위법인 「어선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위성항법장치(GPS) 설치대상을 현행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에서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²⁴⁰⁾까지 확대(강화)

239) 송수관벨브의 설치요건 강화, 고정식탄산가스 소화장치관 요건 강화, 고정식(저·고팽창·갑판)포말소화장치 성능요건 강화,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설치 강화, 자장식 호흡구의 경보작동 추가, 화재탐지장치 전원공급 요건 강화,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소방설비 설치 강화, 소방원장구의 추가 비치,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 및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의 비치방법 강화

240) 2012년말 어선 총 등록척수는 75,031척이며 GPS추가 설치대상 5~30톤 미만 어선척수는 1,328척으로 전체어선척수의 1.67% 수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어선의 해양사고에 따른 조난신호 발신시 신속한 구조 등을 위해 위치정보 연동을 위한 것으로 자발적인 설치 운용사례가 많고 어선주단체들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8) 우수천일염·생산방식인증천일염·친환경천일염의 생산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인증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염전·작업장 및 그 주변 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신설)
- ☞ 상위법인 「소금산업진흥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천일염생산업자 및 관련 자치단체 이견이 없고, 천일염 안전성확보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9)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착용성이 향상된 구멍조끼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강화)
- ☞ 어업인 등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착용이 가능하도록 착용성이 향상된 구멍조끼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어선법시행규칙」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국제기구의 안전요건 인용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대상범위²⁴¹⁾를 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신설)
- ☞ 농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와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농수산물의 판매·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수한 농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발굴·육성이 필요하고 상위법인 「농수산

241) 농협·수협, 농·어업법인, 산지·소비지 유통시설 등에 채용 후, 실제 현업에 종사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물품질관리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관련협회 의견,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1)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① 수밀격벽²⁴²⁾ 설치를 현행 총톤수 5t 이상 소형어선에서 기관실이 설치된 총 t수 5t 미만의 소형어선까지 설치토록 확대(강화)
 - ☞ 어선의 침몰 또는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어선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개선 권고,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소형어선의 액화석유가스 설비 설치기준²⁴³⁾을 「어선설비기준」 제139조(액화석유가스 설비 기준)를 준용²⁴⁴⁾하도록 강화(강화)
 -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배관설비 요건, 용기의 고정설비 및 설치장소에 대해 어선설비기준을 준용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형어선 안전관리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시정 요청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③ 소형어선의 항해용구 비치 대상에 위성항법장치(GPS) 추가(강화)
 -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3.28)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설치대상이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으로 확대되고 어선의 해양사고에 따른 조난신호 발신시 위치정보 연동을 위한 것으로 자발적인 설치 운용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④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건조된 면허어업 또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낚시어선은 제외한다)의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설치유예(면제)를 조정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검사시부터 적용(강화)

242) 어선의 침몰 또는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내부를 여러 방향으로 구분하여 막은 벽으로 수압을 가해도 물이 새지 않도록 칸막이벽을 설치

243) (현행) ① 호스 및 가스용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 ② 배관은 호스 또는 금속관으로 설치 ③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④ 인입배관은 외벽에 접하여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쉽게 폐쇄할 수 있을 것

244) (강화) 설비 및 설치기준 적합요건을 구체화·추가 : 액화석유가스용기(3), 용기의 고정설비·설치장소(6),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배관 설치(7)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대응을 위해 무선설비 설치유예(면제)를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어선소유자들의 이견이 없고 국비지원사업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5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①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과기준을 조정(강화)
 -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14.1.31. 시행)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원양협회(원양어업허가를 받은 79개사 모두 가입) 이견이 없고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관계 및 국제규제수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 ②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원양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 정지) 기준을 강화(강화)
 - 1차위반 : 원양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정지 30일 ⇒ 정지 60일
 - 2차위반 : 원양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 불법어업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국제적인 불법어업국가 지정으로 전체 원양산업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 내용을 반영, IUU 어업방지 책임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상위법인 「원양산업발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한국원양산업협회 및 원양어업자들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 ③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지 않는 공해수역에서 저층조업을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공해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 영향평가를 받아 그 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강화)
 - ☞ 상위법인 「원양산업발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유엔총회 결의 및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공해상 저층어업관리를 위한 국제 지침」 등 국제규범 이행 준수를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 ④ 공해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국제수산기구가 권고하는 부수적 어획물²⁴⁵⁾ 처리에 대한 절차준수 및 어선위치추적장치 미작동시 보고의무 마련(강화)

245)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의 상어류, 바다새류, 바다거북류 등

- ☞ 불법어업 규제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 전반과 소비자까지 확산되고 공해에서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수산기구²⁴⁶⁾·NGO의 영향력이 증가되면서 자국 수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금지 등 무역 조치와 연계하여 타국의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는 추세인 가운데 상위법인 「원양산업 발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원양어업자 등의 이견이 없고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신뢰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린 살오징어가 가장 많이 포획되는 4월과 5월, 2개월간을 포획 금지 기간으로 설정(강화)
 - ☞ 살오징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어린 오징어 주 분포시기(산란기)인 4월과 5월, 2개월간 포획금지 기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2000년 이후 살오징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관련 업계 건의, 포획금지에 따른 편익분석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②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조정·확대(강화)
 -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별표 3-1, 별도 1-1), 근해안강망어업(별표 8), 기선권현망어업(별표 9), 근해통발어업(별표 10-1)
 - ☞ 일부 대형어선들이 연안에 근접 조업하면서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자원남획과 연안어업과의 조업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연안에서의 자원남획을 예방하고, 어장선점을 둘러싼 연근해 어업간 분쟁조정, 갈등해소,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조업구역 조정이 필요하고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규제대상 어업인들의 합의·조정, 연안자원 보호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③ 전국해역에서 쌍끌이저인망 어업의 멸치 포획을 금지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세목망(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을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어종²⁴⁷⁾을 일부 강화(강화)
 -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소형어류자원의 제한적 이용을 위해 세목망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업종간 갈등 예방, 업계의 자율적인 합의사항('07년) 반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업질서 유지를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46) '13년 기준 국제수산기구는 47개(FAO), 이중 우리나라는 20개 가입

247) 총 13종 : 멸치, 방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봉장어, 젓새우, 곤쟁이

3. 해양경찰청

김하나 사무관

(044)200-2446 hana88@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해안경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4건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497회 행정사회분과위 (2013.11.22)	원안의결 2 부대권고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2. 해안경비법 시행령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4 부대권고 1	신설 1, 강화 4 중요 1, 비중요 4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안 제6조제5항, 강화)
 - 면허시험 대행기관²⁴⁸⁾(총 23개소)이 동력수상레저기구²⁴⁹⁾의 면허시험 중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켜야 하는 시험관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 ☞ 도로와는 달리, 수상에서 이뤄지는 실기시험에서는 시험 코스가 한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험관의 업무를 ‘지시’와 ‘채점’으로 나누어 2명 선임하는 것이 안전

248) 같은 법 제14조에 의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면허시험 업무를 대행

249)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스키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측면에서 적절. 이미 현장에서는 시험관을 2명 지정해오고 있으므로,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 교육 : 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기준(안 제9조제5항, 강화)
 -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²⁵⁰⁾(총 23개소)을 지정할 때,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지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 재지정 금지기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개정안 마련이 시급한 것에 비하여 국회 입법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동의함
다만, 추후 법률 개정시, 재지정 금지기간 및 지정 취소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할 것을 부대권고함
-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사항 및 운항규칙 : 술에 취한 상태 기준(안 제17조, 강화)
 - 동력수상레저기구²⁵¹⁾의 조정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을 강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²⁵²⁾에 따른 기준(0.05% 이상)'으로 상향
 - ☞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도로교통법), 바다·하천(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에서의 운전 관련 주취 기준을 동일(혈중알코올농도 0.05%)하게 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동의
 - ※ 혈중알코올농도 0.08% : 체중 70kg 기준, 소주 5.6잔 / 맥주 5.6잔
 - 혈중알코올농도 0.05% : 체중 70kg 기준, 소주 3.5잔 / 맥주 3.5잔

(2) 해양경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 사고예방조치 및 비용부담(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 상위법에서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의 이동명령에 불응한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13.8.13)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직접 규정한 조치(선박 이동 및 승객 피난 조치) 이외에 '해양경찰관을

250) 같은 법 제10조에 의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상안전교육 업무를 위탁

251)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스키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252) 해사안전법시행령 제14조,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한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선박에 편승시키는 조치' 등을 추가함

- 그리고,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한 상위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그 범위를 '해양경찰관이 동원한 선박·크레인·기타 장비 등에 의해 이동된 선박'으로 한정 (국가와 자치단체 소속의 장비 사용료는 미부과)

※ 12년 기준, 선박 총 96,641척(어선 75,031척, 수상레저기구 12,175대, 기타 9,435척)

☞ 선박의 강제 이동을 위해 해당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이 해당 선박에 편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²⁵³⁾ 등에도 있음. 이동 조치를 통해 선박의 재산 등이 기상악화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므로 장비 사용료 부담은 필요 (예, 5천톤 선박 이동시, 예인선 사용료 120만원) 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장비 사용료는 제외하여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므로 규제 수준도 타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 순서(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강화)

- 상위법 개정('13.8.13)으로 태풍 등 天災나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해양사고가 임박한 경우(법 제14조제2항) 또는 명령 불응시(법 제14조제3항) 해당 선박을 즉시 이동·피난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고, 이동·해산·피난명령, 이동·해산·피난실행 등 강제 조치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함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현행				개정안			
위반행위	조치의 순서			위반행위	조치의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항로 방해 등 (제14조제1항)	경고	명령	실행	(左同)	(左同)	(左同)	(左同)
				태풍 위험 등 사고 우려 (제14조제2항)	경고	명령	-
				명령 불응시 (제14조제3항)	-	-	실행

☞ 이동·피난 등의 조치는 강제성을 수반하는 공권력 작용이므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고,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고를 먼저 실시해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고, 명령-실행 등 단계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동의

253)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해,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가능(제7조)

제5절 | 농림축산 분야

1. 농림축산식품부

남승헌 사무관
(044)200-2421 na85049@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지법, 종자산업법, 축산법,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2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8건, 강화 21건 등 총 6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9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였고, 나머지 6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 10	신설 10 비중요 10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경제분과 위원회 (2013.2.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3.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4.14)	원안의결 13	신설 9, 강화 4 비중요 13
5. 종자산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7.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경제분과 위원회 (2013.6.24)		
10.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7.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3.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정안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7.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2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2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2.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24.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5.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68 개선권고 1	신설 48 강화 21 중요1, 비중요68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농수산물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0)

■ 심사내용

- 의무자조금단체의 대의원, 총회 의장·부의장·감사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자격 요건을 설정(신설)
 - (대의원 자격)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준 농수산업자
 - (의장 등 결격 사유) 최근 2년 이내 의무거출금 납부 3회 이상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미납한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
 - ☞ 대의원의 자격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 감안 시 적정하고 의장 등의 결격 사유는 단체활동에 불성실한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활한 단체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기 위한 절차로서 공동자조금 설치준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의결사항을 정함(신설)
 - (구성요건) 농수산업자 8명 이내, 자조금단체 의장(위원장), 부의장(부위원장), 감사 4명 이내,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전문가 각 1명
 - (의결사항) 자조금단체 설치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통합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 수준이 낮으며 유사 입법례 감안 시 적정수준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자조금단체가 의무(임의)자조금 설치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 설치 계획서의 내용²⁵⁴⁾을 설정(신설)
 - ☞ 설치계획서에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를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유사 입법례 감안 시 적절하며, 납부대상·거출금 산정기준 등은 사업의 기본사항에 해당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자조금단체의 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절차 및 변경계획서 내용을 설정함(신설)

254) 1. 의무(임의)자조금의 명칭, 2. 의무(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의무(임의)거출금의 납부대상자, 4. 의무(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5. 의무(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임의적인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필요 수준이며 계획서 내용 변경 등의 내용확인도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여 신청자의 계획서 작성으로 인한 부담 수준이 낮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법 설정
 - * 유통경로가 복잡한 농수산물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납기관(농협, 도매시장, 유통공사 등)이 대신 의무거출금을 납부 받을 수 있음
 -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함(신설)

- ☞ 자조금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축산분야 의무거출금 수납기관 수수료²⁵⁵⁾ 및 유사 입법례 감안 시 적정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정부의 의무자조금단체 정부 지원·출연 중단 기준 및 개선 조치 기준을 규정(신설)
 - (중단 기준) 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
 - (조치 기준) 해당 품목의 특성과 그 원인을 감안하여 최대 2년
 - *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 해당 농수산품목의 대표성²⁵⁶⁾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 수준이며, 품목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조치로 해당 단체의 부득이한 사정 고려하며, 이행에 충분한 기간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의 상한을 설정(신설)
 - * 과도한 운영경비 지출로 인한 자조금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제정으로 해당 비용의 상한을 정하도록 함
 - (10억원 이상) 임의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20
 - (10억원 미만) 임의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30(단, 2억원 초과 금지)
 - ☞ 단체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준이며, 현행 농수산자조금 단체 운영현황²⁵⁷⁾ 및 유사 입법례 감안 시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5) 한우자조금 : 의무거출금의 5%, 낙농자조금 : 의무거출금의 3%

256) 해당 품목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조성한 의무자조금의 특성을 고려 하여 대표성 확보 필요성 존재

257) 본 제정(안)의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자조금단체(25개)는 없음

- 농수산업자가 납부한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규정(신설)
 - (시기) 환급 청구한 날 또는 과오납 확인한 날로부터 즉시
 - (확인방법) 반기별로 과오납 여부 확인
 - ☞ 자조금단체에 속한 농수산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유사 입법례 감안 시 적정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외부전문기관²⁵⁸⁾의 지정 기준,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신설)
 - (지정 기준) 경제·경영, 재무·회계, 농수산 분야 전문가²⁵⁹⁾ 각 1명
 - (평가 내용) 생산·유통 등의 환경 분석, 자조금 운용 실태 및 성과, 대표성·효율성·발전가능성, 시정조치 이행 결과 등
 - ☞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설정(신설)
 - ☞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며, 유사 입법례를 감안 시 적정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축산계열화사업자²⁶⁰⁾가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사육경비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 ‘사육경비를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준수사항을 규정(신설)
 - (가축수령거부사유) 1. 가축폐사, 2. 가축전염병발생 또는 살처분, 3. 심각한 가축훼손으로 계약농가와 출하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
 - (사육경비감액사유) 1. 가축폐사, 2. 가축전염병발생 또는 살처분, 3. 가축훼손 등으로

258) 자조금단체의 성과 등 평가를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

259) 박사학위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의 석사학위자, 5년 이상 경력의 학사학위자

260)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여 농가에게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고 계약농가가 출하한 가축을 도축·가공·유통·판매하는 업체(ex. 하림, 마니커, 목우촌)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상품가치가 떨어진 경우, 4. 공급한 가축이 출하한 가축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 (경비지급지연사유) 1.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피해 발생, 2. 부도, 파산, 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육경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유형 신설
- (계열화사업자) 1. 허위계산서 발행 또는 차명거래, 2. 가축입식 지연, 3. 공급가축 상태 미통보, 4. 신속한 조치 미이행, 5. 변경 사항 서면 미통보
- (계약농가) 가축사육과 사육자재 품질 및 질병 발생 관련 허위통보
- ☞ 계약당사자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일부 조항의 의미가 애매모호하여 향후 법 적용시 논란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조항의 명확성을 담보하도록 개선권고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위반횟수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고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은 없으며, 유사 입법례를 감안 시 적정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비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비료제조 원료를 별지 서식²⁶¹⁾ (별첨 참조)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신설)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비료제조 원료 사후관리' 및 '불량비료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존 양식을 통일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비용과 비료공업협회 등 이해관계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비료원료 장부기재 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 설정(강화)
- ☞ 법률개정에 따라 도입된 '비료원료 장부기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위반횟수 별로 처분수위를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은 없으며 비료공업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1) 구입(수입) 연월일, 종류, 구입처(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수량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신설 9, 강화 4)

■ 심사내용

- 유기식품 등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이하 ‘인증’)취소 및 인증품에 대한 표시변경, 제거,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 신설 인증²⁶²⁾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신설
 - 인증품 표시사항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정
 - ☞ 인증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인증 취소 기준 세분화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은 없으며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시 신고 및 승인 대상, 절차를 정함(신설)
 - (대상) 1. 신고사항 : 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인력,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
2. 승인사항 :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업무 규정
 - (절차)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기관에 신청서 제출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규제대상이 소수(78개 기관)이고, 규제비용(서류제출)이 낮고,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정함(강화)
 - (결과 보고) 인증 및 사후관리 결과를 현행 분기별 서류보고에서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하도록 변경
 - (불시 심사) 심사대상²⁶³⁾의 범위를 정함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증기준 위반품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규제대상이 소수(78개 기관)이고, 현행 전산시스템을 운영 중이므로 규제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으며 친환경농업인증기관협회 등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2)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

263)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준위반 혐의로 신고된 자 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지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휴업(폐업)신고서 수리후 인증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 등으로 통지하도록 함(신설)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활한 휴업(폐업)신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규제비용(문서통지)이 없고 친환경농업인증기관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다시 발생한 경우 같은 위반사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강화)
 - ☞ 인증제의 대(對)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 별로 처분 수위를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신설)
 - (지정기준) 시험·분석 업무범위, 인력, 시설, 장비 등
 - (지정절차) 조직, 인력, 시설, 장비 현황 서류 제출
 - (처분기준) 시험연구기관 업무정지, 취소 등의 세부기준 신설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위반횟수 별로 처분수위를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에 대한 취소 및 해당 자재에 대한 판매 금지 등의 행정 처분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신설)
 - ☞ 불량 유기농어업자재 유통 방지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 별로 처분수위를 상향하였고 친환경농자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공시등기관은 유기농자재 품질관리 지도 일정 및 방법, 관리 기준 등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보고토록 함(신설)
 -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3개 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원대학, 순천대학)기 지정·운영 중

- ☞ 양질의 농자재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정한 것으로, 품질관리 지도시 필수적으로 수립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이행에 따른 부담 수준이 낮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공시등기관의 변경신고 제출서류 및 변경승인 사항을 정함(신설)
 - (제출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유 증명서류
 - (승인사항) 1.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2. 공시 및 품질인증 분야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부실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규제대상이 소수(3개 기관)이고, 규제비용이 낮고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공시등기관의 공시등 현황 및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제품 통보 등의 보고시기를 규정(강화)
 - (보고주기) 1. 공시등 제품 생산·수입 실적(반기), 2. 공시등 현황(분기) 3. 사후관리 결과(조치후 1달 이내)
 - (부적합통보) 유기농업자재가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즉시 통보
 - * 부정·불량 유기농업자재 사용시 유기농산물 인증이 취소되어 신속한 보고를 통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통금지등 정보공유로 농가피해를 예방
- ☞ 공시등기관의 위반행위 개연성을 감소시켜 불량 유기농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내용을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 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소수(3개 기관) 이고, 공시등기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공시등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휴업이 종료되기 10일전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도록 규정(신설)
 -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활한 휴업(폐업) 신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규제이행(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공시등기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공시등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 설정(강화)
 - ☞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 실효성 확보를 통한 유기농자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 별로 처분수위를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공시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기관(3개 기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인증(공시등)사업자 및 인증(공시등)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강화)
 - ☞ 유기식품 등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처분수위를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등의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기준을 세분화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 방지하고 대학, 연구소, 종자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규정(신설)
 - 종자산업진흥센터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 신설
 - ☞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처분수위를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종전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사항의 업체 등 주요 변경사항²⁶⁴에 대하여도 신고토록 함(강화)
 - ☞ 종자유통질서 확립과 품종관리 등을 위해 것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주요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규정하고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으며 한국종자협회 및 품목별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4) 주요 변경사항 : 대표자명(명의변경), 법인명, 주소(전화번호)

-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우량종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종자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신설)

* 종자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함

- ☞ 양질의 우량종자를 생산·유통하기 위한 품질검사의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비용부담은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식물신품종보호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농어업인이 자가채종을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²⁶⁵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신설)

-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양식한 산물을 경작하거나 번식목적으로 사용하는 종자로 제한

- ☞ 농어업인의 자가채종을 할 경우 품종보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하는 범위,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해외사례²⁶⁶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지구 내 외식업소의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30% →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임(강화)

-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을 정하였으며 식재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외식업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5)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증식·생산·조제·양도·수출 등을 할수 있는 권리

266)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서도 자신의 토지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것을 번식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육성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규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조합의 부실방지를 위해 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해 장관이 직접 시정요구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부실발생이 높은 조합에 대해 장관이 승인한 시정요구 불이행시, 장관이 직접 시정요구를 명하게 하는 등 조합원인 농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의 부실화 예방으로 오히려 금지원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기대되며, 규제대상이 1,165개 조합이고, 지역 농·축협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3차)

■ 심사내용

-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건수는 총 11건으로 폐지, 완화(6건) 등 규제를 개선하고, 5건에 대하여는 현행 규제는 유지하되 일몰은 삭제 하는 등 부처 의견이 타당하여 수용하였으며,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가기준 설정 등 2건에 대하여는 각각 일몰을 재연장하는 것으로 심사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제위
지리적 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지리적 표시의 등록, 변경, 이의신청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제완화 (일몰삭제)	동의 일몰삭제
경매사의 임면 및 자격시험 관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 및 경매사 자격시험 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완화 (일몰삭제)	동의 일몰삭제
농약의 수급 조절	농약의 수급 안전등을 위한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	농약관리법 제18조	규제완화 (일몰삭제)	동의 일몰삭제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제위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농어업재해시 복구자금 선지급 후 복구기한 설정, 미이행시 선금금 반납	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	규제폐지 (일몰삭제)	동의 일몰삭제
권리 변동의 신고	환지계획의 인가 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 토지의 권리변동 신고	농어촌정비법 제33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동의 일몰삭제
공수의 위촉	수의사 중 희망자를 공수의로 위촉 및 위촉자의 업무범위 설정	수의사법 제21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동의 일몰삭제
연수교육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	수의사법 제34조	규제완화 (일몰삭제)	동의 일몰삭제
진료부 및 검안부 비치 의무	수의사의 진료부나 검안부 비치 및 기록 의무	수의사법 제13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동의 일몰삭제
처방전의 기재사항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동의 일몰삭제
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식물방역관 자격전형 응시기준,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제완화 (일몰삭제)	동의 (3년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부과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동의 (5년연장)

(10) 수의사업 시행령 일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수의사처방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의사법 제41조제2항 제6의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계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 ☞ 신규로 도입되는 수의사처방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설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준을 정한 것으로 피규제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관련협회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1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가인증 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에 인증 농수산물의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규정 (강화)
 - 현행 국가인증 농산물 거짓표시 금지사항에 광고 추가
 - ☞ 거짓광고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우수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것으로 국가인증 농수산물 생산·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유사 입법례(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전통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등의 행정처분 기준 설정(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기준 세분화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술 제조업체·협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설정(신설)
 - 교육훈련기관은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 교육훈련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기준을 세분화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술 제조업체·협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수의사업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처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신설)
 - 허가관련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영안 제13조의2),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영안 제13조의4),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규칙안 제22조의2), 신청서류의 보정(규칙안 제22조의3), 설립등기 등의 보고(규칙안 제22조의4), 정관변경 허가신청(규칙안 제22조의5), 임원선임의 보고 등(규칙안 제22조의6), 재산의 증가 보고(규칙안 제22조의7),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규칙안 제22조의8), 서류 및 장부의 비치(규칙안 제22조의9), 법인사무의 검사·감독(규칙안 제22조의10),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규칙안 제22조의12)
 - 신고관련 : 해산신고(규칙안 제22조의11), 청산 종결의 신고(규칙안 제22조의13)
 - ※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공익목적 달성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동물진료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동물병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그 재산을 출연하여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하여 과도한 부담은 없으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으로, 관계기관(공정위, 중기청 등) 및 수의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동물진료법인은 동물진료업무 외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신설)
 - 부대사업 : ① 동물진료에 관한 조사·연구 ②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③ 진료부의 전산관리와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을 정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관계기관(공정위, 중기청 등) 및 수의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4)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토종가축별 인정기준, 인정기관²⁶⁷⁾, 인정절차(신청-심사-통보), 지도감독 및 인정²⁶⁸⁾·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신설)
 - ☞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인정기관의 조건, 신청 등 인정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규제대상이 소수(6종, 5개 기관)이고, 축산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중도매인이 그 명이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 ☞ 중도매업 허가증 불법대여 등으로 농산물 유통질서문란 및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공인회계사법)와 비교 시 적절한 수준이며, 도매시장업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에게 우선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 임대농업기계는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이 서투른 여성 및 고령농업인을 배려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와 비교 시 적절한 수준이며, 농기계 제조업체 및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7) 인정기관 및 대상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돼지), 한국토종닭협회(닭), 한국오리협회(오리), 제주도축산진흥원(말), 한국한봉협회(벌)

268) 인정 :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가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것을 말함
인증 : 제품, 시스템, 자격심사,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함

-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거나, 검정결과를 발급하였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신설)
 - ☞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후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 시 지정 취소하는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검정절차·방법·기준 등의 업무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검정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신설)
 - ☞ 농업기계 검정의 신뢰를 위해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성적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출하가축의 품질기준, 농가의 사육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 ☞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을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표시사항,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축산생산자 단체, 계열주체 대표 등과 품질기준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축산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농림수산식품 신기술의 인증 취소 및 인증의 표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강화)
 - ☞ 유농림수산식품의 신기술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표시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유사 입법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인증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 폐기·판매금지 등이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미이행 하거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하도록 규정(신설)
 - ☞ 인농수산물의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여 소비자 및 선량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신설 1)

■ 심사내용

- 농지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면 누구나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강화)
 -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의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처분명령을 받고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등
 - ☞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유휴농지를 대리경작자로 하여금 농업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농지 및 유휴농지 현황]

(단위: 천ha)

구 분	'90	'00	'05	'06	'07	'08	'09	'10	'11	'12
농지(a)	2,109	1,889	1,824	1,801	1,782	1,759	1,737	1,715	1,698	1,730
유휴농지(b)	3.5	4.7	3.1	4.5	6.1	10.0	15.0	10.1	7.4	(미조사)
b/a(%)	0.2	0.2	0.2	0.2	0.3	0.6	0.9	0.6	0.4	-

* 주) 농지 :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는 경지(논·밭·과수원 등)

* 주) 유휴농지 : 2년 이상 경적을 포기한 농지로서 개간 등 농지복원 작업이 필요한 농지로 경지에 포함되지 않음(농지면적에서 제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강화)
 - (현행)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
 - (개정안)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농수산물 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명확화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예시]

구분	시설(예시)	현행	개정안
농산물	국내산 밀을 원료로 구입하여 밀가루를 만드는 시설	설치 가능	설치 가능
	국내산 밀가루(가공품)를 원료로 구입하여 빵을 만드는 시설	설치 불가	설치 불가
	국내산 고구마를 원료로 구입하여 건조·절단하여 주정의 원료인 건조 고구마를 만드는 시설	설치 가능	설치 가능
	국내산 고추를 원료로 구입하여 건조·절단하여 고춧가루를 만드는 시설	설치 가능	설치 가능

※ 농산물의 경우 현행과 개정안의 시설 범위 차이 없음
 - 다만, 현행 규정이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 발생

임산물	국내산 죽순을 원료로 구입하여 죽순나물을 만드는 시설	설치 가능	설치 가능
	국내산 대나무를 원료로 구입하여 죽부인, 돛자리 등을 만드는 시설	설치 불가	설치 불가
	국내산 고사리를 원료로 구입하여 고사리나물을 만드는 시설	설치 불가	설치 가능
	국내산 약초를 원료로 구입하여 엑기스를 만드는 시설	설치 불가	설치 가능

※ 임산물의 경우 개정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넓음

수산물	국내산 고등어를 원료로 구입하여 간고등어를 만드는 시설	설치 가능	설치 가능
	국내산 김(원초)을 원료로 조미김을 만드는 시설	설치 가능	설치 가능
	조미김을 구매하여 김과자를 만드는 시설	설치 불가	설치 불가

-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도구역 내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농지를 농산물 가공·처리시설로 전용하고자 하는 가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농지전용을 제한하거나 1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공미터 이하까지만 농지전용을 허용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건축법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별첨)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포함하도록 함(강화)

-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은 농지전용 허가 가능

☞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농지 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설정하였으며, 고시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폐지·축소하고 감면비율을 조정 등 제도개선(강화)

[제도개선사항]

- 감면대상 폐지 : 활용도가 미미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 감면대상 축소 : 사업용 및 도시용 철도시설 중 '교육훈련시설 등', 민영화된 한국통신이 시행하는 '전기통신설비',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 감면비율 조정 : 농업기계수리시설의 감면비율(농업진흥지역 50% → 0, 비진흥지역 100% → 50%)

☞ 농지전용억제 기능을 강화하고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폐지, 축소하는 것으로, (주)KT, 한국철도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축사·곤충사육사의 관리사, 간이저온저장고, 농막,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연면적)를 명확하게 규정(신설)

구분	면적 제한
축사·곤충사육사의 관리사,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 이하
농막	연면적 20㎡ 이하
간이액비저장조	고정식 200톤 이하일 것 ※ 이동식의 경우 제한 없음

* 현재는 「농지업무편람」에서 기존 법령 해석을 통해 농막(20㎡ 이하)·간이저온저장고(33㎡ 이하)·간이액비저장조(고정식의 경우 200톤 이하)의 범위 기술

☞ 농업생산기반인 농지 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속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부속시설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2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신설)
 - ☞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대행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동물의 입식기준을 축종에 따라 달리하고, 운송·도축 시에도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신설)
 - ☞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²⁶⁹⁾ 인증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동물운송업자, 소비자 및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조성의 대상 토지의 입지조건을 정함(신설)
 - ☞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초지대상 토지에 대하여 조성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 조성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지조건은 축산과학원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규정하였으며,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안(신설 8)

■ 심사내용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신설)
 -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험사업자와의 약정

269)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예: 대관령 목장, 방목 양계농장 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체결은 보험사업자의 보험 운영방식 및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농어업재해보험법)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농협생명, 수협, 기타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의 임직원, 「보험업법」에 정한 자로 보험모집자를 제한하는 규정(신설)
 - ☞ 보험모집의 부당모집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유지하고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농어업재해보험법)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농협생명, 수협중앙회, 기타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보험사업자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일정액을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신설)
 - ☞ 보험사업자의 결산 잉여금의 일부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보험급여의 안정적 지급과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보험업법)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농협생명, 수협, 기타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사업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신설)
 -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은 국가와 민간사업자가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최소한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농어업재해보험법)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보험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가입자할 수 있는 자를 농어업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 경영체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어선원보험 적용자는 제외하도록 규정(신설)
 - ☞ 법의 목적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정책대상인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로 제한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고, 산재보험연구센터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농어업인 안전재해 인정기준을 농어업 작업 사고, 업무상 질병 등으로 하고, 농어업작업과 재해 연관성이 없는 경우²⁷⁰⁾는 제외하도록 규정(신설)

270) 보험가입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농어업인 재해는 제외

-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보험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신설)
 - ☞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고, 보험사 및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책임준비금의 미계상,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또는 상황보고 등 거짓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신설)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 ③~④ 생략

- ☞ 보험모집의 질서 유지와 계약자 보호 및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풍수해보험법)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고, 보험사 및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판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신설)
 - ☞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을 자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과수·축산 농가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농업 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도록 규정(강화)
 - 어업은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 선박등기부등본 사본,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 ☞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을 자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농어업인이 제출할 서류를 정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은 없으며, 과수·축산·수산 농어가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이화학검사 위탁기관을 '식품위생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정 또는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인삼류 검사기관(인삼검사소)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규정(강화)
 - *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인 검사 관리
 - ☞ 농약 등에 대해 인삼류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검사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인삼류 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수출상품 등의 검사기준을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검사기준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기준을 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강화)

* 현행 시행규칙(제18조의3)은 수출상품 검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 없음

☞ 자체검사업체 수출 인삼류의 검사 신뢰도를 높여 고려인삼의 대외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국내 유통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삼연합회 및 수출관련 관련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에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 마련(강화)

☞ 검사받지 않은 부적격 인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자체검사업체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농약관리법)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인삼류제조업체 및 인삼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농촌진흥청

서문수 사무관

(044)200-2436 sun61@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기준 고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등 총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 강화 1건 등 총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3.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3.9.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제462차 경제분과위 (2013.7.3)		
계	-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1, 비중요 6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지정 기준(강화)
 - (가축분퇴비) 염산불용해물²⁷¹⁾ 기준(25% 이하) 신설 : 현재 타 비료의 염산불용해물 기준은 30% 이하로서 가축분퇴비의 사용량이 타 비료에 비해 훨씬 많은 점을 감안, 기준을 25% 이하로 강화
 - (퇴비) 유해성분²⁷²⁾ 및 규격²⁷³⁾ 기준 강화, 염산불용해물 기준 신설 : 가축분퇴비 기준과 동일수준으로 변경
- ☞ 유해성분 함유 산업폐기물 등이 퇴비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토양환경 보호 및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인 한국유기조합과 협의하여 규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기준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미생물비료인 토양미생물제제의 유해성분 허용항목 및 기준 추가(신설)
 - 허용항목 및 기준 : 비소(20mg/kg), 카드뮴(2mg/kg), 수은(1mg/kg), 납(50mg/kg), 크롬(90mg/kg), 구리(120mg/kg), 니켈(20mg/kg), 아연(400mg/kg)
 - ☞ 토양미생물제제의 유해성분 허용기준 마련은 토양환경 보호 및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용항목 및 기준도 혼합유기질비료 등에서 정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²⁷⁴⁾ 비료생산자협회,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규정하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신규 비료(음식물류폐기물건조물) 지정(신설)

271) 염산(강한 산성 물질)에 녹지 않거나 높은 온도(600℃)에서 태워지지 않는 물질

272) 크롬(250mg/kg ⇒ 200mg/kg), 구리(400mg/kg ⇒ 360mg/kg), 아연(1,000mg/kg ⇒ 900mg/kg)

273) 유기물 대 질소비(50 이하⇒ 45 이하), 건물 중 염분(2.0% 이하⇒ 1.8% 이하)

274) 아연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은 혼합유기질비료 유해성분 기준(동고시 별표3)을 적용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부산물비료로 신규 지정되는 음식물류폐기물건조물의 지정기준 신설(별표3)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조·분쇄하여 분상 또는 입상으로 제조 한 것)	1.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6 2. 유기물: 7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 은 1mg/kg 납 50mg/kg 크 롬 90mg/kg 구 리 120mg/kg 니 켈 20mg/kg 아 연 400mg/kg	1. 수분(H ₂ O) 10%이하 2.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8%이하	1.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돌 등 이 물질이 없어야 함. 2.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 민원인의 신청²⁷⁵⁾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건조물을 비료로 신규 지정하는 필수절차로 규제수준은 혼합유기질, 혈분 등 유사비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비료생산자협회,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폐수처리오니의 알루미늄 및 수분 기준(신설)

-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폐수처리오니에 대해 알루미늄 및 수분허용기준 신설²⁷⁶⁾

☞ 폐수처리오니에 대해 알루미늄·수분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은 검사결과 평균값을 적용해 과도하지 않으며, 비료생산자협회,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위해성평가 의뢰자의 서류제출 의무(신설)

-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위해성 평가의뢰서 등 일정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²⁷⁷⁾

② 고시제정(안) 별지 1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자료’

275) (주)푸른환경기술이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건조물에 대한 공정규격설정 요청

276) 각 알루미늄 1.5% 이하, 수분 80% 이하(검사결과 최소·최대의 평균값 적용)

277) 제출서류 ①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의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 곤충을 사육·유통하려는 자나 사육·유통하고 있는 자가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 의뢰자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최소한의 서류형식으로 제출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곤충 종을 사육·유통하는 농업인에 의한 2차적인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환경부, 시·군·구, 곤충농가, 곤충산업협회 및 관련 연구단체 등 이해당사자 이권이 없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의뢰자 등의 준수사항(신설)

- 의뢰자는 위해성 평가 대상 곤충으로 문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당 곤충의 국내 사용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고 위해성 평가결과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곤충 종의 사육·유통에 대한 정보는 위해성 평가를 의뢰한 해당 농가가 그 종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특종 종에 대한 문제 발생 등을 대비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평가결과 조치사항 준수 등 의뢰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곤충농가, 곤충산업협회 및 관련 연구단체 등 이해당사자 이권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6.30)에 도래하는 '농약의 품목등록시 제출서류' 등 1건의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농약의 품목등록시 제출서류 일몰규제 심사건은 농약제조기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맞춰 농약성분, 안전성 기준 등에 대해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일몰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농약의 품목등록시 제출서류	농약 품목등록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종류 및 검토기준 설정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규제유지 3년 재검토	규제유지 3년 재검토

3. 산림청

서문수 사무관

(044)200-2436 sun61@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산지관리법 개정안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3건, 강화 1건 등 총 2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49회 예비심사 (2013.1.7)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63회 예비심사 (2013.4.14)	원안의결 12	신설 12 비중요 12
3. 목재칩 규격·품질기준 고시 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목재브리켓 규격·품질기준 고시 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파티클보드 규격·품질기준 고시 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섬유판 규격·품질기준 고시 제정안	제316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3회 예비심사 (2013.9.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1
9. 산지관리법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제462차 경제분과위 (2013.7.3)		
계	-	원안의결 24	신설 23, 강화 1 비중요 24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목제품이용 실태 조사(신설)
 - 산림청장은 목제품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항목²⁷⁸⁾을 규정하고 목제품 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²⁷⁹⁾해야 하며 목제품 제조·유통 업체는 실태조사 자료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목제품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2007년부터 국가승인통계²⁸⁰⁾로 등록되어 기 시행중이며, 규제대상은 소수(1,289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므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으며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및 등록취소 등(신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²⁸¹⁾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요건²⁸²⁾ 규정

1.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사업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2. 경영 악화, 질병, 이민 및 그 밖의 여건변화로 사업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하여 등록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산림탄소 상쇄사업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은 소수(약 92개 사업자

278) 조사항목 : 1. 국내·외 원목 수급 현황, 2. 산업별 목재 사용 현황, 3. 목제품별 제조·가공 및 유통·소비 현황,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279) 'UN기후변화협약'에 의거 목제품 기초현황을 포함한 후변화 국가보고서 매년 제출토록 의무화

280) 목제품이용 실태조사 : 통계청 승인번호 제13634호('08.8.1. 승인)

28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28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취소 요건 규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예상)로 한정되어 있고,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등록절차²⁸³⁾와 사회통념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산림탄소흡수량(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등(신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30년) 연장²⁸⁴⁾이 가능하도록 함
 - ☞ 국제적 거래가 가능한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적 기준²⁸⁵⁾을 준용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소수(약 92개 사업자 예상)로 한정되어 있고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연장 가능형) 20년 2회 연장하여 최대 60년 가능
- (연장 불가형) 최대 30년 기한을 설정

- 과태료의 부과(신설)
 -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1년 내 합산)
 -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이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1년 내 합산)
 -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 실태조사 및 검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수준(500만원 이하)이 유사사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7)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2)

■ 심사내용

- 인증·인정 등(신설)

283) UN등록절차 : (사업자)계획서 작성 → (검증기관)계획서 검토 → (UN)계획서 등록

284)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

285) UN기후변화협약 산림탄소 크레딧 유효기간(Decision 5/CMP.1 부속서)

- 목재 교육프로그램, 전통 목재제품, 목재제품 명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인정 기준 규정

1.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

- 목재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 목재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등

2. 전통 목재제품 인증 기준

- 전통 목재제품의 원형 복원이 가능할 것
- 전통적 기법을 사용한 제작공정과정을 갖출 것
- 내구성, 편리성 및 대중성을 갖출 것
- 전통에 입각한 내용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 전통 목재제품으로서의 계승·발전 보존 가치가 있을 것 등

3. 목재제품명인 인정기준

- 전통 목재제품의 원형 복원이 가능한 자
- 전통 목재제품 복원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 해당 기능·기술의 계승 및 보호·보존 가치가 있을 것
- 인정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는 자
 - 전통 목재제품의 제조·가공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목재제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기준

- 지역 간벌재 연간 소비량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직접생산 여부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상품 경쟁력이 있을 것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 인증·인정의 신청 및 변경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증·인정을 받은 목재제품은 포장 혹은 제품표면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인증·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활동상황을 보고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해야 함

- ☞ 목재의 이용 활성화와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증·인정’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품의 우선구매,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검증제도이며 인증·인정 기준, 표시기준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며 규제이행 비용은 실비수준의 수수료로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탄소저장량의 표시·측정 등(신설)

- 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대상 목재제품 규정

1. 제재목	7. 파티클보드
2. 방부목재	8. 섬유판
3. 난연목재	9. 마루판
4. 목재플라스틱복합재	10. 배향성스트랜드보드
5. 집성재	11.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제품
6. 합판	

-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절차 규정(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기관에 제출)

1. 제품개요서 및 규격서·재료내역서 등 제품 설명서
2. 연간 생산가능량 및 생산계획서(단, 수입품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가능량 및 수입 계획서)
3. 원자재 공급처 내역 및 제품 판매·유통 계획서

- ☞ 상위법에서 규정한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측정’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향후 탄소계정²⁸⁶⁾ 활용을 감안,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규정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려는 행정목적이 인정되고 본 규정은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며, 규제이행 비용은 실비수준의 수수료(건당 약 90만원 예상)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유통제한 등(신설)

- 목재제품의 기준 및 종류 규정 : 목질계 원재료 구성 비율이 전건중량(목재의 중량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하여 얻은 목재의 중량 기준)으로 50% 이상인 제품

286) 향후 탄소포인트, 캐시백 등 자발적 탄소거래제도에 사용되는 계정

[목재제품 종류]

- | | |
|--------------|-------------------------|
| 1. 원목 | 11. 배향성스트랜드보드 |
| 2. 제재목 | 12. 목재펠릿 |
| 3. 방부목재 | 13. 임산펠릿 |
| 4. 난연목재 | 14. 목재칩 |
| 5. 목재플라스틱복합재 | 15. 목재브리켓 |
| 6. 집성재 | 16. 톱밥성형탄 |
| 7. 합판 | 17. 성형목탄 |
| 8. 파티클보드 | 18. 목탄 |
| 9. 섬유판 | 19.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 10. 마루판 | 제품 |

- 안전성평가 대상품목은 목재제품 중 산림청장이 안전성 평가기준을 고시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안전성 평가의 신청절차를 규정(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제출)

1. 제품개요서 및 규격서, 재료내역서 등 제품설명서
2. 연간 생산 가능량 및 생산계획서(단, 수입품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가능량 및 수입 계획서)
3. 원자재 공급처 내역 및 제품 판매·유통 계획서

- 안전성 위해(危害)제품의 지정기준 규정

[안전성 위해(危害)제품 기준]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목재제품
2.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검출한 목재제품
3. 목재이용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목재제품
4.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목재제품

[조치명령의 종류 및 기준]

1. 해당 목재제품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생산 및 판매 제한 명령
2. 해당 목재제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라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용도로의 전환명령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목재제품의 경우 : 폐기명령

☞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안전성 평가’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성평가 대상품목은 목재제품 중 안전성 평가기준을 정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한 품목으로 한정되며, 안전성 평가방법, 시료분석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안전성 위해(危害)제품의 지정기준, 조치명령 등은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유사법령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은 분석을 생략하도록 규정한 점, 규제 대상이 소수(약 700개 목재생산업체)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 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등(신설)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규정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을 것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것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규정(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제출)

[안전성 위해(危害)제품 기준]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2. 국내외 목재산업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 관련 심사자료
4.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5.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6.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신기술 지정’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신기술의 지정기준, 제출서류 등은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타 법령에서 인증된 신기술을 인정하는 점, 규제 대상이 소수(약 700개 목재생산업체)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라 보아 원안의결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및 유통제한 등(신설)

- 규격·품질검사 대상품목 규정

▶ 목재제품 중 산림청장이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한 목재제품

- 규격·품질 검사신청 절차 등 규정(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1. 제품개요서 및 규격서·재료내역서 등 제품 설명서
2. 연간 생산가능량 및 생산계획서(단, 수입품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가능량 및 수입 계획서)
3. 원자재 수급처 내역 및 제품 판매·유통 계획서

-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절차 등 규정(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1.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
2. 목재제품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 보유 내역
3. 최근 1년 동안 목재제품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 품질·규격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조치명령의 종류 및 기준]

1.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용도 전환, 일부 수리·보완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용할 경우 규격·품질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판매정지·반송
2.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규격·품질검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사대상 품목은 목재제품 중 산림청장이 규격·품질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기준을 고시한 목재제품으로 한정. 규격·품질 검사와 관련된 유사법령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합격 제품의 조치기준 등은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규제대상이 소수(약 700개 목재생산업체)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 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등(신설)

-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 및 품질인증 대상품목, 인증기준 및
 - ▶ 대상품목은 목재제품 중 산림청장이 품질인증 기준을 고시한 제품
 -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1. 신청 품목의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생산시설명세서 1부
3. 인력확보명세서 1부

- ▶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은 포장 혹은 제품표면에 인쇄 또는 스티커 등 부착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품질인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품목은 목재제품 중 산림청장이 품질인증 기준을 고시한 제품으로 한정되고, 품질인증을 위한 세부기준과 표시기준은 산림청장의 고시로 위임. 규제대상은 소수(약 700개 목재생산업체)로 한정되고,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목재생산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등(신설)

-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규정

- 원목 생산업
 - (1종)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기능2급 각 1명, 자본금 5천만원, 사무실
 - (2종)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1명(또는 35시간 교육수료), 자본금 1천만원, 사무실
 - ※ 1종 중 기술2급 보유기준은 2년간 유예
- 제재업 : 공장별 기술자 1명(상시인원 10인 미만 : 기능사, 10인~19인 : 산업기사, 20인 이상 : 기사), 자본금 3천만원, 사무실
 - ※ 기술자 보유기준은 2년간 유예
- 유통업 : 수입업(사무소, 보관시설, 자본금 5천만원), 원목 유통업(사무소, 자본금 3천만원)

- 목재생산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절차 규정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서
3.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4. 기술인력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 목재생산업자가 비치해야 하는 장부의 종류 규정

- 원목생산업자: 매입매출장,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제재업자: 원자재수불대장(화학처리제 수불대장 포함), 매입매출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품질관리대장, 성분검사서 및 내부검사철
- 유통업자: 매입매출장,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분석결과)

- 위반행위 시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

[목재생산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4. 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5.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6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7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 목재생산업 등록요건 일부 경과규정 적용

- ▶ 원목생산업의 기술능력 요건 일부(기술2급 보유) 및 제재업의 기술능력 요건 전부에 대하여 2년간 유예기간 적용

☞ 목재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목재생산업 등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은 사업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목생산업의 경우,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과 합의된 사항으로 별채기술 및 안전사고 예방 측면과 유사 입법례, 교육을 통한 등록요건 충족 규정²⁸⁷⁾, 기술인력 보유기준 유예(2년)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이며 제재업의 경우도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능력 기준,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규정²⁸⁸⁾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유통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 보관시설, 자본금 등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제한 등(신설)

-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기준 규정

- ▶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되며 규제영향평가(공정위, 중기청)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87) 기술자격이 없는 경우 35시간 이상의 원목생산업 교육이수시 인정

288) 자격요건 중 ‘기술능력’ 기준은 2년 경과 후 적용

-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신설)

- 지정기준 규정

1. 교육시설 및 교육 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지정·변경 신청 절차 규정

-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연구실적

-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규정

[지정취소 기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술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 * 취소기준 중 제2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 목재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정기준의 유사 입법례와 취소사유 발생시 6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라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신설)

- 목구조기술자의 자격분야, 자격요건, 업무범위 등 규정

분야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목구조 시 공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의 목구조시공 기본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소지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의 목구조 시공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목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350시간 이상의 목조건축과정을 수료한 자 다. 건축·목재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p>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p> <p>구조용 제재목 등급평가 업무</p>
목구조 관 리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소지하고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목재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700시간 이상의 목조건축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 라. 건축·목재관련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p>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관리 업무</p> <p>구조용 제재목 등급평가 업무</p>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절차 규정

-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1.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2.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3.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수료 증명서(해당자)
4.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자)
5. 증명사진 1매

- 목구조기술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

위반 행위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2.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 자격정지 1월

☞ 상위법에서 규정한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받아 규정한 것임. 자격 요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관련분야 교육이수 요건²⁸⁹⁾을 적용하여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자격증 발급 절차와 행정처분의 기준은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목재산업 실적보고(신설)

- 실적보고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 규정

▶ 법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 실적보고의 주기, 내용 등 규정

▶ 매년 당해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목재제품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 보고

☞ 목재산업의 실적보고 의무를 상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재이용 통계자료를 확보하려는 정책의 목적을 감안해 볼 때, 목재생산업자를 보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보고내용(생산·판매·재고량)이 간소하여 규제이행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규제대상은 소수(약 1,200개 업체)로 한정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8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11-72호)」의 ‘건축목공’ 및 ‘목조건축시공’ 분야의 필수훈련시간은 700시간으로 규정 - ‘별첨 2’ 참조

- 과태료(신설)

- 법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 목재생산업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내 합산
(1차 위반 시정요구, 2차 위반 15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년 내 합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 목재생산업의 실적 보고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내 합산
(1차 위반 시정요구, 2차 위반 7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는 점과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목재칩 규격·품질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목재칩의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방법(신설)

-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인 목재칩에 대한 사용원료의 제한, 규격 및 품질기준, 품질시험 및 표시방법 제정

- ▶ 사용원료의 제한 : 기름, 방부제 등 화학물질에 오염된 목재는 원료로 사용불가
- ▶ 목재칩의 분류 및 규격·품질기준 : 목재연료칩과 호그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격 제정
- ▶ 목재칩의 품질시험 및 표시방법 : 공시재료 준비, 목재칩의 크기 분포 결정, 분석 시료 준비, 함수율, 회분, 발열량 측정, 염소·황·무기성분 분석 등, 목재칩의 종류에 따라 포장된 제품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 표시 등

☞ 목질계 고체바이오 목재칩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재칩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고려, 생산·유통, 품질관리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제도이며 규격·품질기준, 표시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의 고시로 위임, 목재연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격·기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이행 비용²⁹⁰⁾이 크지 않으며, 유사 사례²⁹¹⁾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목재브리켓 규격·품질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목재브리켓의 규격·품질 기준 및 표시방법(신설)
 -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인 목재브리켓에 대한 분류 및 규격·품질기준, 품질시험 방법 및 표시방법 등 제정
 - ▶ 목재브리켓의 분류 및 규격·품질기준 : 21가지 요소에 따라 A1등급, A2등급, B등급으로 구분
 - ▶ 목재브리켓의 품질시험 : 시료준비, 함수율, 회분, 밀도, 질소 등 분석방법 10가지 규정
 - ▶ 목재브리켓의 규격·품질 표시방법 : 상품명, 등급, 원산지, 품질, 무게, 생산자(수입자), 제조일자 등 내용 제작·표시
 - ☞ 목질계 고체바이오인 목재브리켓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재브리켓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유통, 품질관리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제도이며 규격·품질기준, 표시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의 고시로 위임. 목재연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격·기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이행 비용²⁹²⁾이 크지 않으며, 유사 사례²⁹³⁾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료 보아 원안의결

(5)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목재펠릿의 규격·품질 기준 및 표시방법(신설)

29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국내 고형연료 품질시험 및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펠릿 품질시험에 준용한 분석비용 산출액 기준 수수료 : 연간 106만원수준

291) 국제적 연료용 목재칩 관련 규격(BS-EN 14961-4) 및 환경부의 고형연료 품질기준(WCF) 고려(기술표준원 기술규제 영향분석결과 별도 의견 없음)

29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국내 고형연료 품질시험 및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펠릿 품질시험에 준용한 분석비용 산출액 기준 수수료는 업체당 연간 75만원수준으로 예상

293) 목재펠릿 품질규격, KS의 계산방법, 유럽연합 표준규격 등을 준용(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영향분석결과 별도 의견 없음)

-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와 청정연료인 목재펠릿의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펠릿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을 강화
 - ▶ (현행) 목재펠릿 품질기준 12종(중금속성분 미포함), 규격·품질표의 기재방법의 품질 7분야
(개정) 발열량 계산방법 추가(고위발열량과 함께 저위발열량 환산 표시 가능하도록 포함), 8종(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수은, 니켈, 아연)의 중금속성분 기준 및 표시방법 추가, 회분용융 거동온도(재가 녹는 온도)를 권장표시항목으로 추가
-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 규격·품질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안은 목재펠릿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이행 비용²⁹⁴⁾이 크지 않으며, 유사 사례²⁹⁵⁾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6) 파티클보드 규격·품질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파티클보드의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방법(신설)
 - 건축 내장재나 가구재로 섬유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티클보드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 기준 및 규격, 시험방법 등 제정
 - ▶ 파티클보드 종류 : 균열, 비틀림, 휨 등 외관 기준과 표면·이면 상태 등에 따라 종류 구분
 - ▶ 파티클보드의 외관 및 품질기준 : 치수·직각도, 함수율, 휨강도 등 18가지 항목의 품질기준 마련
 - ▶ 파티클보드의 품질 시험방법, 표시방법 : 17개 항목에 대한 시험편 치수·수량 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한국산업규격(KS F3104) 등 시험방법 준용, 표면·이면상태, 휨강도, 생산월일, 생산지 등 내용 제작·표시

294) 8종의 품질표시 항목분석을 위한 추가 비용(업체당 연 4회 기준 192만원, 전체 37개업체 7억원)이 예상되나 비용대비 사회적 편익(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등 170억원 예상)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한국임업진흥원 분석 결과)

295) 저위발열량은 한국산업표준(KS E 3707)「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발열량 측정방법(Determination of calorific value of coal and coke)」을 준용, 무기물 분석 및 회분용도 거동온도 측정은 유럽연합 표준규격인 무기물 분석 방법(EN 15297:2011 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minor elements – As, Cd, Cr, Cu, Hg, Ni, Pb, and Zn) 및 유럽연합 표준규격의 측정방법(prEN 15370:2011 Solid biofuels – Determination of ash melting behaviour)을 준용(“별첨2” 참조)

- ☞ 파티클보드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고려, 생산·유통, 품질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규격·품질기준, 표시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음. 소비자 안전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격·기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이행 비용²⁹⁶⁾이 크지 않으며, 유사 사례²⁹⁷⁾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 섬유판 규격·품질기준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섬유판의 종류·품질기준 및 표시방법 등(신설)
 - 건축 내장재나 가구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섬유판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 기준 및 규격, 시험방법 등 제정
 - ▶ 섬유판 종류 : 밀도 용도, 난연성, 휨강도 등 기준에 따라 섬유판 종류 구분
 - ▶ 섬유판 외관·품질기준 : 치수·직각도, 함수율, 휨강도, 박리강도, 단열성, 난연성 등 25가지 항목에 따라 연질판, 중밀도판, 경질판 등 품질기준 마련
 - ▶ 섬유판의 품질 시험방법, 표시방법 등 : 24개 항목에 대한 시험편 치수·수량 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한국산업규격(KS F3100) 등 시험방법 준용, 종류·표면상태, 휨강도, 난연성, 치수, 생산자 등 내용 제작·표시
- ☞ 섬유판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고려, 생산·유통, 품질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규격·품질기준, 표시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음. 소비자 안전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격·기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이행 비용²⁹⁸⁾이 크지 않으며, 유사 사례²⁹⁹⁾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96) 파티클보드 규격·품질 검사를 위한 비용과 품질표시 등을 위한 라벨부착 등 최소한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편익대비 규제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297) 현행 파티클보드의 규격·품질에 관한 기준은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규격(KS)을 준용하고 있음.

298) 섬유판의 규격·품질 검사를 위한 비용과 품질표시 등을 위한 라벨부착 등 최소한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편익대비 규제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299) 금번 섬유판의 규격·품질에 관한 기준은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규격(KS)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품질·규격 표시방법을 추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취소 등(신설)
 -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취소 및 정지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이 산림재해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위법하게 이루어진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각종 인·허가시 일반적인 제재수단으로 입법 불비를 보완한 것임. 입목벌채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입목벌채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강화)
 - 산림사업보조금을 받은 자가 본래의 목적 외로 유용 또는 횡령한 때에는 보조 또는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을 명하고 보조 또는 지원받은 산림사업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 산림사업보조금을 원래 목적 외로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회수코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보조금 반환규정은 다수의 입법례³⁰⁰⁾가 있으며 보조금 반환명령은 보조금제도의 일반적인 제재수단으로 규제의 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0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목적외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8) 산지관리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토석채취 교육(신설)
 -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와 채석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내 업무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산림청장 등은 해당 사업장의 재해예방 등을 위해 업무관리자에게 토석채취에 관한 교육 실시
 - * 교육기간·교육시설 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이 심각³⁰¹⁾하고 소음·분진 등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토석채취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인정³⁰²⁾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산림토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6.30)에 도래하는 '국유임산물의 매각(이의신청)' 등 총 7건의 일몰 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 국유임산물의 매각(이의신청) 등 6건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규제유지(재검토 3년)에 원안동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납부기간 연장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지일시사용신고, 매장문화재 발굴 등 목적사업, 풍향계측 시설을 위한 진입로 개설시 대체산림조성비 납부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해 왔으나 향후 산림환경변화 등에 맞춰 대체산림조성비 감면비율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일몰설정을 유지하는 원안에 동의

301)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장 15개소 중 12개소에서 경계침범, 수직절벽·지하채취 등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점검·교육 등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302) 2012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토석채취가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필요성 제기(日 채석법도 재해방지를 위해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업무관리자는 채석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국유임산물의 매각 (이의신청)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은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3년 재검토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 등을 산업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3년 재검토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입산통제 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3년 재검토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부과 및 납부기간 연장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시행령 제32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규제완화 3년 재검토
수목원 운영자의 등록 및 신고	등록 수목원의 연간 의무개방일(180일 이상)과 1일 개방시간(4시간 이상)을 규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규제유지 3년 재검토
수목원 전문가의 교육과정의 인증	수목원전문가의 분야별 교육과정과 교육과목에 대한 이수시간을 규정(이론수업 360시간, 실습수업 960시간 등)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시행령 제8조의3)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3년 재검토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 의무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3년 재검토

제6절 | 방송통신 분야

1. 방송통신위원회

강보람 사무관
(044)200-2419 gelsomino@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1건, 강화 2건 등 총 1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49회 예비심사 (2013.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349회 예비심사 (2013.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53회 예비심사 (2013.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53회 예비심사 (2013.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357회 예비심사 (2013.2.28)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6.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73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제465회 경제분과 (2013.8.16)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4	신설 11, 강화 3 비중요 14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이를 취소(신설)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위법성 시정 수단이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신규 지정시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요건 및 세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및 교육·평가 등 자격부여 절차 마련(강화)
 - ☞ 인증기관 지정요건은 인증기관의 경영 안정성 및 심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사원 자격요건은 인증 관련 업무의 기본 지식 및 소양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공익성 심사기준을 ‘국가안전보장, 외교·통상 정책과의 부합, 공정한 경쟁, 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법령 준수 및 법절차 이행,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로 구체화하고 심사대상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무선)’와 ‘매출액 300억 이상 사업자 중 매출액, 설비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유선)’를 추가(신설)
 - ☞ 현행 기준에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등을 추가하여 사인간 주식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해외 자본의 무차별적인 국내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에 따른 공정경쟁 훼손 방지 및 외교 관계 고려 등

공익이 크므로 타당하고, 주파수 및 대규모 유선망은 공공자원으로서 오용시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심사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통계보고 종류에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를 추가(신설)

- 기술방식별 : 2G·3G·LTE·와이브로 등
-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 동영상, 게임, SNS 등
- 기간별 : 연·반기·분기·월·주·일단위 구분
- 시간대별 : 최번시/한산시 구분, 1시간당, 평상시/야간/심야 구분

☞ 현행 시설·이용자·이용실적·통화량·회계통계에 데이터 이용자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은 크지 않으나 통신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및 통신사업자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투자 지원 근거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조정(신설)
 -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33%로 인상(현행 1%)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인하
- ☞ 주요 방송사업자 중 스카이라이프의 분담금 징수율만이 인상되나 경쟁사업자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급격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된 것으로 인상 후에도 분담금 비중이 대상 사업자 중 가장 낮은 비율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신설 3,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³⁰³⁾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통신의 비밀 보호 의무를

303)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계사(수화통역사)에게 문자나 수화 등으로 보내면, 중계사가 그 메시지를 통화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부여하고 위반시 이를 시정토록 함(신설)

☞ 당해 규정으로 중계사의 언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나 이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의 이익이 더 중요하며 같은 법에서 전기통신업무 종사자에게 기 부과된 통신비밀 보호의무와 비교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변경 이외에도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공익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안전, 공공 안녕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이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동법에서 기간통신사업 양수·법인 합병 관련 경영권의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성 심사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지주회사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 관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제조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사는 단말기 제조 등에 필요한 서비스 규격 관련 정보³⁰⁴를 제공토록 하고 정보 제공 거부시 과태료 부과(신설)

☞ 이동통신사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되나 다양한 지급 단말기 공급 활성화로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의 편익이 발생하고, 과태료 부과액(1천만원)은 법상 규정한 과태료 부과액(1천만~3천만원) 중 가장 소액이나 같은 법상 명령 또는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액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 행위 금지(신설)

☞ 정보 공유 의무화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나, 분실·도난 단말기의 부정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사회적 손실 예방의 공익이 크고 부정 사용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기 식별번호 훼손을 금지하여 통신사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 공유의 취지를 살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013년 9월 22일 일몰예정인 도매제공 의무제도(제38조제2항, 제4항)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16년 9월 22일까지로 함 (내용심사)

☞ 당해 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나, MVNO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304) 음성전화, 영상전화, 무선인터넷 접속, SMS 등에 대한 통신사별 규격으로 각 이동사별로 상이하여 자금제용 단말기 제조를 위해 각 이동사 서비스 규격의 반영이 필요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요금 경쟁은 통신비 절감을 통한 이용자 후생 제고에 기여하므로 타당하고 비록 예상보다 낮은 MVNO 가입율 등이 문제되나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의 범위를 규정하고 인증기관으로서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선별·지정(신설)
 - 신청서, 인증심사원 보유현황 및 증빙서류, 업무수행 요건·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 (참여실적 명세서, 인증심사원 자격 증빙 자료 등)
 - 요건심사는 인증심사원 상시고용 여부와 공정성 확보 여부로 판단하고 능력심사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시설, 재정상태, 인증업무운영체계 등을 기준으로 계량화된 지표에 의해 평가
 - ☞ 제정안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를 실제 심사항목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고 있고, 요건심사 기준 중 인증심사원 기준은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컨설팅 업무 수행자는 인증심사기관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증기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능력심사기준은 이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및 유효기간³⁰⁵⁾을 정하고 허위서류 제출, 자격 유지기준 미달, 불공정 심사 및 금품 수수, 정보누설의 경우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소(신설)
 - ☞ 인증심사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인증심사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는 당연규정이며 자격 유효기간(3년)은 유사제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미래부 소관)'의 인증심사원 자격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유사제도간 심사원 관리를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05) •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보유한 자에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원간 등급은 인증심사 참여실적으로 구분
 • 인증심사원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부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3년 연장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7)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방송내용의 기록' 등 총 11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10건에 대해서는 현행 일몰을 유지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규제가 폐지되는 1건³⁰⁶⁾에 대해 일몰폐지 동의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방통위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706	자료제출 의무	정부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6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자료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규제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3년)	일몰유지(3년)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산상황 자료범위 ¹⁾ 는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 검토 필요
707	방송내용의 기록	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를 비치하고, 프로그램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존	방송법 제83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2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방송사업자의 법정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및 사후방송심의를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보관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3년)	일몰유지(3년)	사업자는 보존기간(6개월)의 적정성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행정여건 ²⁾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08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방송사업자가 업무 폐업 또는 휴업 시 방통위에 신고해야 함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방송시장은 지상파, 유선, 위성, IPTV 등 새로운 분야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의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
				일몰유지(3년)	일몰유지(3년)	방송시장의 진입·퇴출 관리제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의 필요성과 적정성(제출서류의 범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06) 기사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방통위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709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등 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BS, EBS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해야 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일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함)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0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의 공급·전달을 위한 공동체 라디오의 설립 목적에 따라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비를 제한하여 자체편성의 촉진 필요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비율 (현재 30%)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10	방송광고 기준 및 방법	방송광고 시간, 횟수 및 방법을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제2호	규제완화 (개정안료)	규제완화	(현행)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매회 3건·1분 이내로 제한 (개선) 중간광고의 회당 건수제한 (3회)규정 삭제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방송광고 횟수와 시간의 제한은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몰 유지 필요
720	정보의 삭제 요청 등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받은자의 정보 삭제 등 요청권한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규제완화	규제완화	(현행)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정보삭제요청권 부여 (개선) 정보삭제요청권에 대응하여 정보계재자의 이익제기권을 부여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인터넷 이용문화 및 사용자 의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관련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22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5	규제폐지	규제폐지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결정('12.8.23)
				일몰폐지	일몰폐지	
728	영상·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정보 보관 의무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영상 또는 음향형태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6개월) 동안 해당 정보를 보관하도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확산에 따라 저장·기록되지 않는 방식 ³⁾ 으로 제공되는 유해매체물의 노출 빈도가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필요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사업자의 제공정보 보관기간(현행 6개월)의 적정성 여부는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몰 유지 필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방통위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738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요금고지서만으로 과금의 적정성 판단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기재방식에 대한 기준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고지서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2조 제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통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준속 필요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요금고지서의 필수고지사항 ⁴⁾ 은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주기적 검토 필요
743	법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고의·중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일반/중대/매우중대한 행위로 구분하는 세부기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법령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해당 시점의 사회적 인식수준으로 결정되는 유동적 개념이므로 주기적 검토가 필요
744	의무적 조정 과징금에 대한 기준	위반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감경하는 세부기준을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법령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은 해당 시점의 사회적 상황 및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일몰유지 필요

- 1)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 2) 위원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2개월 분량의 방송내용을 보관
- 3) (예)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아프리카TV, 판도라TV 등
- 4)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량, 할인 및 감면 정보, 시간대별 통화량정보 등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동 법률 위반시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상황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법 준수여부 확인 및 동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타 법률 및 동 법률 내 유사사례³⁰⁷⁾와 비교할 때에도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법률 위반행위의 중지, 법률상 의무 이행,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신설)
 - ☞ 시정조치명령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에도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3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절 | 노동·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김해영 사무관

(044)200-2447 geneve2@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직업안정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1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건, 강화 23건 등 총 2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7건 중 7건은 개선권고(부대권고 2건 포함), 1건은 철회권고를 하였고, 나머지 19건은 원안의결하였음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개정안	제349회 예비심사 (2013.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50회 예비심사 (2013.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직업안정법 개정안	제480회 분과위 (2013.2.4)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53회 예비심사 (2013.2.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07회 예비심사 (2013.2.18)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신설 2, 강화 2 중요 2, 비중요 2
6.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 개정안	제483회 분과위 (2013.3.19)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7.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제367회 예비심사 (2013.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제367회 예비심사 (2013.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7회 예비심사 (2013.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제487회 분과위 (2013.5.15)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88회 분과위 (2013.5.28)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	강화 8 중요 4, 비중요 4
12.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 심사안	제489회 분과위 (2013.6.26)		
13.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 심사안	제491회 분과위 (2013.9.2)		
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13회 본위원회 (2013.10.13)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98회 분과위 (2013.12.10)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19 개선권고 5 철회권고 1 부대권고 2	신설 4, 강화 23 중요 11, 비중요 16

나. 2013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산업안전 보건업무 수수료(표 1, 가목) (강화)
 - 상위법의 개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 '13.3.1. 시행예정)으로 의무적 안전 인증 대상에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 추가됨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 수수료(최저 16만원, 최고 74만원)를 정한 것임
 - ☞ 안전인증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검사소요 원인과 이로 인한 수익이 있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은 신규 제품으로 최소화하였고, 기획재정부와의 수수료 협의 결과 이견도 없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2) 유해·위험작업의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제3조제1항, 별표 1)(강화)
 -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신설(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12.1.1.시행)됨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을 ‘기중기 운전 기능사’에서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기능사’로 한정. 다만, 기중기 운전기능사 중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경험자는 예외적으로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
 - ☞ 항만의 안전은 항만 물류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해당 장비를 조종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하역 장비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그동안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자였던 기중기 운전기능사의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자격을 인정해줘 신뢰 이익을 보호해 주므로 위 규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직업안정법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법 제23조)(강화)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겸업하려는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예외없이 등록 의무를 부과 (종전에는 신고의무 면제)

구분		현행	개정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규 사업자	신고제	등록제
	유·무료 직업소개 겸업자	-	등록제
유료 직업소개업		등록제	
무료 직업소개업		신고제	

- ☞ 직업 상담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직업정보제공사업과는 사업의 특성이 달라,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겸업자에게 별도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되어, 등록제가 신규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기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예를 들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등)을 추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개선권고), 법 개정 완료 후 시행령 개정시, 직업소개업 겸업자의 등록요건이 기존 직업소개업 등록요건과 중

복되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부대권고)

-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확대(법 제36조제1항)(강화)
 - 신고 사업자(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한도를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에서 '사업소 폐쇄명령'으로 강화하고, 필요적 취소 사유(제2호 결격사유 위반)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허가 받은 경우(제1호)를 추가
 -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취업알선의 대가 유무만 다를 뿐, 구직자와 구인자를 직접 연결해준다는 본질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련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 정도가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의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법 제40조의2제2항, 제3항)(신설)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소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 관련 교육 대상자 중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전(신청일 1년이내)에 직업소개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강화
 - ☞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사업으로서, 구인·구직자간 합법적이고 정당한 직업소개를 위해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함양이 중요하고, 교육의 효과와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한해 현행 교육을 사전 필수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방식 우선 적용(안 제142조제1항, 제3항) (강화)
 - 종전에는 타워 크레인을 자립고³⁰⁸⁾(自立高)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벽체 또는 와이어 로프 방식으로 지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벽체 지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 방식 허용하고 와이어로프 사용시 지지점을 4개소 이상으로 하고, 동일한 각도로 설치하도록 함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³⁰⁹⁾(국토부)에서 건설공사의 타워크레인(3t 이상) 지지방식 등을

308) 타워 크레인이 아무런 지지 없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높이(약 18~30m)를 말함

309) 2012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비중요 규제), 2013.2월 공포 예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정함에 따라, 이를 조선업·철강업 등 다른 업종 및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에도 확대하려는 것으로 업종 및 하중과 관계 없이, 타워 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보다 벽체지지방식이 더 안전하므로 동 규제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특별관리물질 추가 (안 별표 12) (강화)
 - 사업주가 작업장내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이하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페놀, 납 등 7종을 특별관리물질³¹⁰⁾에 추가하고,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 복합 제재의 성분 중 특별관리물질 비율이 0.1%이상(현재 1%)이면 특별관리물질로 분류
 - ☞ 동 규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유해성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3항) 결과 및 국제기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 주기 강화 등 의무가 추가되지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법 제7조의3, 제26조제2항제1호)(신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함)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달 별도로 지급하고 그 노무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도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
 - ☞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서 연간 노무비 규모가 약 12조에 달하는 등 사업자 및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제2항에서 수급인이 임금체불을 한 경우, 도급인이 그 미지급 임금을 대신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하는 것이 사적 계약 관계 원칙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2항은 삭제하여 도급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임금 지급의 보증(법 제7조의4, 제26조제2항제1호)(신설)
 - 공공공사에 한해, 기존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확대하여, 사업

310)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임

주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원·하수급인의 직접 시공 부분)

* 사업주가 파산·도산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

- 즉, 사업주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사업주의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이 있으면, 보증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보증제도 운영을 위해, 발주자는 임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원수급인은 발주자(하수급인 → 발주자, 원수급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함

☞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함이나, 사업주 및 기업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보증 채권자인 근로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증기관에는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을 추가해 보증 시장을 확대·개방하도록 하며,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취지에 맞게 임금청구권 대의의 범위(사업주 등)에서 발주자는 삭제하여 발주자의 부담을 줄일 것을 개선권고함. 보충적으로 하위법령 마련시, 임금 체불 기초 조사 등을 실시, 모범적인 사업주에게는 보증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검토를 부대권고함

- 도급인의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부여(법 제13조의2)(강화)
 -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수급인)가 퇴직공제 부금 납부 의무³¹¹⁾를 해태할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 대신 공제 부금을 내도록 책임을 부과

[공제 부금을 대신 납부 예시]

-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납부하기로 수급인과 합의한 경우
- 퇴직공제에 가입한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도급인이 도급계약시 밝힌 퇴직공제 가입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퇴직공제제도는 임시·일용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급관계에서 공제부금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수급인에게 미지급했거나,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도급인이 납부책임을 대신 지도록 한 것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311) 사업주는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며(동법 제10조제1항), 피공제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동법 제13조제1항)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퇴직공제제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정 (법 제26조)(강화)
 - 퇴직공제제도에 위반되는 각종 의무(공제관계신고, 소요비용 원가 반영 등)를 위반한 발주자,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금액 상향(300만원 → 500만원)	과태료 신설(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동법 제10조의4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제가입에 드는 비용을 원가에 밝히지 않은 도급계약 당사자 (동법 제10조의3제1항) • 퇴직공제가입에 드는 비용을 원가에 밝히지 않은 원수급·하수급 계약 당사자 (동법 제10조의3제2항)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 (동법 제13조제1항)

☞ 퇴직공제제도는 임시·일용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사업주 등이 공제부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주자 및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직업소개요금 제한(강화)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동안 구인자·구직자 모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구인자로 한정하고, 구직자로부터는 소개요금을 받지 못하게 함
- ☞ 위 고시 개정안은 1967년 유료직업소개업이 허용된 이후 지난 45년간 유지되어 온 소개요금의 구인·구직자 징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직업소개사업자 및 구인자의 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으며, 근거 법률의 위임 범위 및 규제 법정주의 등 법 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철회하고, 구직자의 소개요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는 직업안정법에 반영·개정 추진할 것을 권고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안 제34조제3항, 별표 3)(강화)
 -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에 유해요인(35종)과 질병

(3종) 및 암(12종)을 추가

- * (유해요인) 불산, 염산 등 화학물질과 베릴륨, 벤지딘 등 발암물질
- * (질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저체온증
- * (직업성 암) 난소암, 식도암, 갑상선암 등 12종 추가

☞ 최근 재해가 빈번해져 보험이 필요하거나, 연구결과 유해인자와 발병간 원인적 관련성이 높은 물질 중에서 검증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³¹²⁾할 수 있으나,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할 실익이 크고, 이해관계인 의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8)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요양 보상(안 제44조제1항, 별표 5)(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동법시행령 별표 3)의 상위 근거인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유해요인(12종)과 질병(4종)을 추가
 - * (유해요인) 베릴륨, 벤지딘,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 * (질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저체온증, 신증후군 출혈열, 뇌혈관 질병
 - ※ 원칙적으로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추가된 것 중 일부를 추가(유해요인 11종, 질병 2종)했고,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누락되었던 것을 추가(유해요인 1종, 질병 2종)
 - ☞ 연구결과 유해인자와 발병간 원인적 관련성이 높은 물질 중에서 검증을 거쳐 선정하고,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추가된 요인과 질병 중에서 포괄적인 것을 분별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83조, 별표 2)(강화)
 - 상위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제22조의4)를 시행(‘13.6.19)하면서, 유사 명칭 사용 및 명의 대여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도 부과함에 따라,

312)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직원 20명인 회사(임금총액 10억)의 연간 산재보험료는 1,700만원(보험료율 1.7%)에서 1,780만원으로 인상(보험료율 1.78%)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i) 유사 명칭 사용시 5백만원, ii) 명의 대여시 1천만원 등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 ☞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이고, 위법행위의 고의성과 부당이득 가능성,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고용형태 공시 의무(영 제26조의2, 규칙 제3조)(신설)
 -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2) 개정으로 고용형태 현황 공시가 시행('13.6.19)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의무 부과 대상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로 한정하고, 공시 범위는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 현황으로 규정
 - 공시해야 할 근로자의 범위에는 i)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ii) 기간제 근로자, iii) 기타 근로자, iv) 소속외 근로자 등을 포함 하고, 특히, 소속의 근로자의 범위에 파견, 용역외에 사내 하도급도 추가
 - ☞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파급효과가 크므로, 대상 기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비정규직의 형태 중 어떤 종류를 공시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대상 기업의 규모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공시 범위에 '사내 하도급'을 포함한 것은 원안 동의하고, 더불어 공공기관의 공시항목에서 '사내 하도급'을 포함할 것을 부대권고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8)

■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규정 확대 : 안전보건교육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범위(영 2조의2제1항, 별표 1)(강화)
 - 사업별 적용규정의 표현방식을 제외 규정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제31조)이 적용되는 업종을 전면 확대³¹³⁾(단,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313) (기존)에는 60종에 적용 → (개정안)은 건물·산업설비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봉제의복서비스업 등 34개 업종 추가.

- 사업장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만 실시)
- 한편, 특별안전보건교육(제31조제3항)뿐만 아니라, 유해작업 도급인가(제28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48조) 및 공정안전보고서(제49조의2) 의무는, 동 의무가 적용되는 업종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 최근 (주)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사고 등 안전수직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보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이 급증해, 교육비용 (약 215억원)이 매우 크므로 규제 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하므로 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하고, ‘녹음시설운영업’, ‘정보서비스업’은 특별교육만 실시하고, 별표 1의 안전보건교육(동법 제31조) 적용 업종의 범위는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개선 권고, 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교육비 지원 사업도 확대할 것을 부대 권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영 제9조제1항, 별표 1의2, 규칙 제12조)(강화)
 - (의무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 책임자’)의 선임 의무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추가 18종, 1,625개소)
 - (기준 차별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³¹⁴⁾일 때 적용하되, 업종의 유해위험도에 따라 사업 규모를 차별화
 - ☞ 관리책임자 제도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사업주 또는 임원이 직접 지도·감독하게 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이 산업사고 예방 측면에서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교육비용 등이 소요되나, 기존의 임원 등이 겸직하므로 신규 고용비용이 없고, 산업재해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확대(영 제12조제1항, 별표 3)(강화)
 -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사업장내 안전의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 추가(8종, 2,216개소)하고 업종의 유해위험도에 따라 사업 규모와 안전관리자 수를 차별화
 - ☞ 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추가된 업종(18종) 중에서 가발 및 유사제품제조업 등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업종을 선별해, 안전 관련 실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둬으로써 기초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하며, 기존의 안전관리자 대상 업종과 위험도가 유사하고, 사업 규모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종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수를 최소화하였으므로 규제 수준도 적절

그 중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4개 업종은 특별안전보건교육(동조 제3항)만 추가
314) 농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10개 업종은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적용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확대(영 제16조제1항, 별표 5)(강화)
 -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사업장내 보건의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을 추가(8종, 2,284개소),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에도 의무를 신설하고 업종의 유해위험도에 따라 사업 규모와 보건관리자 수를 차별화³¹⁵⁾
 - ☞ 보건관리자는 그 자격이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 관련 전공자 등으로 다소 경직적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늘어나는 보건관리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여부, 특히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더 큰지 여부 등, 규제 집행비용이 과다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당초 사업주의 자율책임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정책³¹⁶⁾을 의무로 변경함에 따라, 신뢰보호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입법예고 결과, 한국건설경영협회 등에서도 대상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 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대상 확대(영 제25조, 별표 6의2, 규칙 제25조)(강화)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추가 18종, 1,625개소)하고, 업종의 유해위험도에 따라 의무 대상 사업의 규모를 차별화³¹⁷⁾
 - ☞ 전(全) 산업의 평균 재해율과 비교하여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경영 및 노동계의 협의³¹⁸⁾ 결과, 업종을 선정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해 근로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조치 대상 확대 (영 제26조제1항)(강화)
 - 사내 도급(하도급 포함) 관계³¹⁹⁾에서 사업장내에서 도급인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315) 예를 들어,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서 '개발 및 유사제품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반면, '농업, 보건업 등'은 5,000명 이상일 때 적용

316) 2010.12.21. 「건설재해예방대책」 '초대형 현장(1,500억원 이상)은 보건관리자 선임을 유도하고, 선임시 점검·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317) '봉제의복제조업' 등 재해율 높은 6개 업종은 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적용하되, '농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10개 업종은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적용

318)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개선 T/F」를 구성, 2012년 3월~11월까지 8차례 협의

31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부터 제조위탁 등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관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작업환경측정(법 제42조제1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재해 예방조치를 하게 하는 의무를 모든 업종³²⁰⁾에 적용(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 도급인에게 종합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 것은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이 원도급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사내 하도급의 사용이 일반화³²¹⁾되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³²²⁾과도 부합하지만, 업종의 특성과 규모에 관계없이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한 것이 과도하지 않아 원안의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확대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2)(강화)
 -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업무,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추가 18종, 1,625개소)하고 업종의 유해위험도에 따라 의무 대상 사업의 규모를 차별화³²³⁾
 -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안전을 위한 기초 제도로서, 전(全) 산업의 평균 재해율과 비교하여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경영 및 노동계의 협의³²⁴⁾ 결과, 업종을 선정하였으며, 안전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과 규제 대상이 동일하게 선정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안전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라 보아 원안의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규칙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제100조제4항 별표 13)(강화)
 - 근로자가 6개월간 일정시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³²⁵⁾(1년에 1회)을 받도록 사업주에게 의무 부과(위반시 천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야간작업’의 주요 건강 문제인 수면 장애, 유방암 및 소화기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신설

320) 현재는 ‘건설업, 제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8개 업종에만 의무 부과

321) 1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799개소(41.2%),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2만 6천 명(24.6%)

322) ‘대법원’은 사내하도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한다고 판시(‘10년 7월)한바 있고, ‘국정 과제’에도 포함 (9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323) ‘봉제의복제조업’ 등 재해율 높은 6개 업종은 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적용하되, ‘농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10개 업종은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적용

32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개선 T/F」를 구성, 2012년 3월 ~ 11월까지 8차례 협의

325) 일반건강진단과 구별되어, 인체에 유해한 특정한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2년 주기)으로 실시하는 검사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개정안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2012년 기준, 적용대상 근로자는 134만명,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1,052억원 예상

(12) 재검토행 일몰도래 규제 심사

■ 심사내용

- 퇴직 시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일정 금액(1억원) 이상을 수령한 자에게는 일정기간(실업신고일부터 3개월)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 지급유예기간 중 재취업비율이 일반 수급자보다 낮아 실업급여 즉시 지급을 통한 재취업 유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건설공사가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안의결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에 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 ☞ 임금지급 보증제도, 노무비 구분관리의 법제화 등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규제유지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
 - ☞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
 - ☞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여야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 제출 지연기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점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배로 정하고, 지급제한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설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 ☞ 사업주에 대한 지도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 ☞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에다가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은 과다한 서류작업만 초래하므로 원안의결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진폐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 ☞ ‘석탄광업, 철광업 등 분진발생 사업장’에만 대행자 지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중복 문제와 형평성 위배 우려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복지업무를 하면서, 세제 혜택 등을 받으므로,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
-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 과태료 기준에서 ‘상습’, ‘고의’ 등 불명확한 기준을 삭제하고 경감기준(50%)을 추가하여 국민의 규제 순응도를 높였으므로 원안의결
-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유사 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과태료 수준(500만원 이하)이 다른 입법사례(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만원 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 300만원 이하, 건축사 100만원 이하 등)에 비해 과도하므로 완화할 필요
- 고용노동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신고, 등록 또는 허가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하는 것은 구인·구직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 기존 근로자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을 갖춘다면 ‘겸임’도 가능한 보충적 수단도 있으므로 규제 수준은 적절하므로 원안의결
-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 ‘정신병’의 범위를 정신분열증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제외해 부당하게 근로를 금지당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규제 개선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 그 기준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에다 ‘일정한 실무 경력’을 추가한 것이므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어 원안의결
-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일정 이상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 안전보건진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과 진단실시건수('12년 94건) 대비 진단기관의 수 (23개)도 적절한 점에 비추어 현재 규제수준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빈혈 등을 제외하고자 함
 - ☞ 철분결핍성 빈혈, 뇌염 등 발병 경로가 다르거나 감염에 의한 요인은 업무상 질병 기준에서 제외하여 산재보험의 공정성을 높일수 있으므로 원안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
 - ☞ 최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를 지명할 때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의 비율을 반영해 지명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원안의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및 비용지원 용자관련 서류 보존의무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 규제는 부정 수급 관련 조사 및 쟁송시 증빙자료로서 필요하고, 전자문서로 보관 가능도록 개선 ('10년 5월)해 부담을 줄였으므로 원안의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 후, 위법사유가 있을 때에 지정 취소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지정취소 사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교육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으로 정한 것은 최소한의 성실 의무와 준법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하므로 원안의결
- 국외 재해발생시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공단이 현장 조사에 대해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이를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최소한의 증거자료이므로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을 때에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직업안정기관이 정확한 구인정보를 확보해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원안의결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이므로 원안의결
- 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해야 하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근로자의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위원 결원시 보궐위원을 신속하게 위촉하는 게 중요하므로 원안의결
-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음
 - ☞ 산업재해급여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는 산재보험 영역에서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준 사법행위이므로, 조사연구원의 전문성이 중요하여 원안의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건의 및 지도조언에 대한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일반적 상응 조치의무를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 ☞ 동 규제가 있어야만 안전관리자 등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므로 원안의결
-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협조의무를 정하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동 규제가 있어야만 건강진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므로 원안의결

(13)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 심사

■ 심사내용

- 사회적 기업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유사조직(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과 비슷하므로 원안의결

-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신청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함
 -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게 한 것은 다른 유사 입법(경비업 허가 등)에서도 통상적으로 정한 기한이므로 적절하므로 원안의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함
 - ☞ 직업소개사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네거티브로 전환

(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임금 지급의 보증 (법 제7조의4 제6항)(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公共공사)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13.2.15. 규계위 심사 완료)함에 따라, 보증제도의 운영을 위해, 도급계약 당사자인 원수급인으로 하여금 보증서 발급 금액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강제
 - ☞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함이나, 사업주 및 기업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하고, 임금지급 보증제도 신설에는 동의하나, '보증제도의 운영 및 절차'와 '보증 수수료의 신탁 제도' 항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함 (부대권고 포함)
 - * (개선) 공사 범위의 구체화 : 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므로 법률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로 명확히 규정
 - * (개선) 보증기관의 역할 : 임금이 체불된 건설 근로자가 보증금 지급을 보증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마련
 - * (부대) 보증서 제출 절차 간소화 : 보증서 우편 송부 및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하수급인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주자 및 원수급인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 필요
 - * (부대) 의무 면제 : 임금체불이 전혀 없는 성실한 건설업자에 대한 의무 면제 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필요
 - * (개선) 신탁제도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변경 : 신탁법 체계와의 모순,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집행 가능성도 부족한 신탁제도는 철회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증 수수료를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영 제9조제1항제5호 및 규칙 제9조의2, 영 제10조)(강화)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목적실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시행령), 주된 목적사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시행규칙)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을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시행령)
- ☞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목적실현의 인정범위를 시행령에서 확대(규제완화) 규정하고, 추가되는 사회적 목적실현 사업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³²⁶⁾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도 자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기준(제10조 별표2)(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70%에 미달하는 경우로 확대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비율 제고 등 제도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여성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여성고용기준 강화에 원안동의 하되, 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업종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종 세분화 등 동종업종 분류를 2014년 중 재조정(시행규칙 별표2 비교2 개정)하도록 부대권고

326) ①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 제9

2. 환경부

나제순 사무관

(044)200-2445 shepherd7@pmo.go.kr

김태수 사무관

(044)200-2446 kimtaesoo@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자연환경보전법을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8건, 강화 7건 등 총 9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9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9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7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3.1.14)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 4 중요 2, 비중요 2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7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3.1.14)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52회 예비심사 (2013.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57회 예비심사 (2013.3.8)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85회 행정사회분과위 (2013.4.15)	원안의결 7	신설 2, 강화 5 중요 2, 비중요 5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64회 예비심사 (2013.4.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6회 예비심사 (2013.5.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6회 예비심사 (2013.5.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6회 예비심사 (2013.5.3)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0.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제366회 예비심사 (2013.5.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367회 예비심사 (2013.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67회 예비심사 (2013.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74회 예비심사 (2013.7.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제377회 예비심사 (2013.7.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 처리규정 제정안	제378회 예비심사 (2013.7.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80회 예비심사 (2013.8.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제380회 예비심사 (2013.8.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81회 예비심사 (2013.8.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384회 예비심사 (2013.9.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	제385회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24.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개정안	제387회 예비심사 (2013.9.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87회 예비심사 (2013.9.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6.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개정안	제388회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88회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91회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9.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314회 본위원회 (2013.10.29)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30.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2. 위해우려종 지정고시 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15회 본위원회 (2013.11.11)	원안의결 8	신설 3, 강화 5 중요 2, 비중요 6
3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496회 행정사회분과위 (2013.11.12)	원안의결 10	신설 3, 강화 7 중요 2, 비중요 8
35.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개정안	제395회 예비심사 (2013.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5회 예비심사 (2013.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26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8. 수처리재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9.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심사	제492회 행정사회분과 (2013.9.23)		
50.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심사	제494회 행정사회분과 (2013.10.21)		
계	-	원안의결 96 개선권고 3	신설 28, 강화 71, 중요 10, 비중요 89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휘발유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법에 기존의 강제정차식 노상단속 외에 원격측정기를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정밀 검사 기준의 3배 수준으로 정함(강화)

☞ 무정차식 원격측정방법 도입은 점검대수 증가로 실효성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으며 하위법령(고시)에서 배출허용기준 1회 초과시 통보하고, 2회 연속 초과시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는 소속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게 신규교육³²⁷⁾

과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강화)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소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문정비사업 등록요건(정비 분야, 확인검사분야), 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술인력(확인·검사)에 대해서는 교육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함

- 측정기기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산정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강화(강화)

- (현행) (1차)경고→ (2, 3차)조업정지→ (4차)허가취소 또는 폐쇄

- (변경) (1, 2차)조업정지→ (3차)허가취소 또는 폐쇄로 강화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사례(대기배출·방지사설 등)와 비교 시에도 과도한 수준은 아님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연도별 적발건수 : 2009년(1건), 2010년(4건), 2011년(2건), 2012년(2건)

- 제작차의 배출가스 인증·변경인증·인증생략 신청시 징수할 수수료 금액을 정함(강화)

☞ 감사원 감사(’07)에서 인증업무 수행시 행정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지적하여 이를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 금액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수수료 원가를 근거로 물가정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산정하였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2013년부터 먹는샘물 등에 대하여 지상과 텔레비전 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³²⁸⁾을 마련(강화)

☞ 동 규제는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광고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규제수준이

327)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328) 수돗물을 비방하거나 수돗물과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돗물을 불신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나프탈렌 등 5종을 수질오염물질³²⁹⁾로, 인체 유해성이 높고 공공수역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포름알데히드 등 3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³³⁰⁾로 지정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강화)
 - ☞ 당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을 2년 유예('15.1.1.)하여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고 규제수준에 있어 외국기준과의 비교 시에도 과도하지 않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동의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고�형연료제품³³¹⁾ 사용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동 제품을 사용할 경우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설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 부적합 시 개선명령을,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폐기물인 점을 감안할 때 환경문제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규제 업체수가 157개(제조137개, 사용 20개)에 불과하여 규제로 인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피규제자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동의
 - * 일반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폐기물관리법 제30조)
- 고�형연료제품 수입허용에 따라 제조·수입 신고절차를 명확화하고 1회성 품질등급 인증 제도를 수시 품질검사 제도로 변경하며 품질기준 초과 시 제조·수입금지, 과징금부과·대집행 등 조치방안 마련함과 함께 사업자 스스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 제도 도입(강화)

329)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 (현재 48종 지정)로서 배출허용기준준수위무 발생

330)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현재 25종 지정)이며 수질오염물질로만 지정된 것 보다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331) 고�형연료제품 : 가연성 생활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목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제품

- ☞ 품질검사제도로 전환되면서 연간 2.7억원의 비용이 발생되나, 연간 제조·수입예상액 약 3,900억원 (제조 600억, 수입 3,300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품질기준 3회 위반 시 6개월간 제조·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징금으로 대체부과도 할 수 있어 제재가 과도한 수준도 아니므로 비중 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 에너지협회 설립 근거 마련하되, 설립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신설)
- ☞ 우리나라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이 초보단계이고,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가 협회설립허가를 하고 감독하는 규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유사사례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기물협회 설립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자에게 보고 및 검사 의무를 부여하여 관련시설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설 2, 강화 5)

■ 심사내용

- 관계공무원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여부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실태조사는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 수질 등의 오염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토지소유자의 피해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농장 등 출입시 방역상의 문제³³²⁾는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 유사 입법례 : 하수도법 제8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2조 등에서 토지출입을 규정

332) 농식품부에서 방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현행의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외에 상수원 관리지역인 4대강 수변구역에서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현행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당초 이해 관련 단체가 제기한 문제점³³³⁾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용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동의
- 가축분뇨 시설설치자의 권리·의무 승계시 신고의무 부여, 재활용 시설 및 처리업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 부여, 퇴비·액비기준 준수, 퇴비·액비 유출금지 등 시설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분뇨를 방류할 우려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강화)
 - ※ 퇴비·액비기준 또는 비료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퇴비·액비를 생산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퇴비·액비 품질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일정부분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퇴비·액비 품질기준 자체는 기존부터 있던 것으로 새롭게 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활용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퇴비·액비기준과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시 개선명령 부과
 - 또한, 재활용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가동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또는 가축분뇨처리금지 명령(강화)
 - ☞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폐쇄명령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원활한 재활용 처리를 위해 필요하며 유사사례³³⁴⁾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바이오 에너지시설을 가축분뇨처리업으로 분류(강화)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축분뇨 및 액비

333) 과밀사육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하려던 것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제외함

334) 유사사례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는 폐쇄명령과 폐기물처리금지명령을 규정

-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미입력 하거나 가축분뇨의 운반 중에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유를 추가
- 영업정지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2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 ☞ 과징금 상향은 종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9.7.제정) 시행 당시 규정한 2천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가절차 관련 규정들은 업무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인계·인수 및 자가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토록 의무화(신설)
 - ☞ 가축분뇨의 불법처리를 예방하는 등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며 축산농가의 노령화로 자료입력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행시기를 공포 후 3년으로 하고 그간 시범사업(제주도, 강화도 등)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보완 및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동의함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중지처분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강화)
 - ☞ 고농도·난분해성 가축분뇨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법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강화)
 - * 폐기물관리법(제8조)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 버리는 행위를 금지
 -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었고, 유사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관련 범칙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 점과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은 2005년 2월 5일 하향조정(5만원 → 3만원)된 금액을 환원(3만원 → 5만원)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³³⁵⁾에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추가하고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규모 및 건물·시설 기준과 냉매의 관리·회수·처리 기준을 정함(강화)
 - ☞ 공기조화기 냉매 물질로서 사용비중 및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냉매 사용량에 따른 단계적 실시, 가정용 에어컨 등 소규모 사용시설 및 단독주택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비산배출 저감대상 시설의 시설관리기준, 점검·조사 및 행정처분 사항을 정함(신설)
 - (시설관리)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점검·개선계획서 제출, 업종별 관리대상 물질 및 배출시설별 관리기준 등
 - (점검·조사) 정기점검·조사 및 검사 절차, 업종별 세부내용 등
 - (행정처분)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 ☞ 시설관리 기준, 점검방법 및 도입시기 등은 적용대상 업체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³³⁶⁾하여 협의·결정하고, 행정처분 수준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특정대기유해물질³³⁷⁾인 ‘디클로로메탄’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대상 물질에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50ppm 이하)을 정함(강화)
 - ☞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해외(미국 등)에서 발암성 물질로 추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취기한계 농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등을 감안 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5)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염화불화탄소

336) 시설관리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사업 참여 현황

- 2010년도 연구사업(원유정제처리업) : 대한석유협회 및 4개 정유사(총 16회 회의)
- 2011년도 연구사업(제철·제강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한국철강협회와 4개 제철·제강사 및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4개 화학제품업체(총13회 회의)

337)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등 대기유해물질(35종)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폐석면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을 월 평균 20kg(현행 1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로 확대(강화)
 - ☞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등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받고 있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피규제자 수의 증가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폐석면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매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을 추가하여 제출하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기록·보존하며 폐석면이 매립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함께 인계받아 보존토록 함(강화)
 -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었고, 이력관리에 따른 규제비용(이력관리기록부, 구역매립 실적보고서 작성 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폐기물관리법 개정('12.6.1)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등이 도입됨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와 사용종료·폐쇄신고서 첨부서류 보완, 사용종료·폐쇄 검사 및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규정(신설)
 - ☞ 사용종료·폐쇄 검사 및 사후 정기검사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사용 중인 매립시설과 공동이용 중인 부대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 중인 매립시설 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토양정밀조사 지역을 추가(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석유정제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판매업 등 시설과 그 주변지역
- *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 자연재해 등 비의도적 활동으로 인한 토양환경변화가 예상되어 토양정밀조사의 필요성이 토양전문가에 의해 인정된 지역
- ☞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판매업 등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토양정밀조사 지역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이견(대한석유협회)이 있으나, 다른 민간사업장인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등이 정밀조사지역에 포함되어 있고(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토양정밀조사는 정책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과다조사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시 첨부토록 한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 정화과정 검토,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오염도 변화 추이, 토양정화일지,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 등이 포함되도록 함(강화)
 - ☞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토양정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 포함토록 한 사항들은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행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시험·검사 등을 금지토록 함(강화)
 - ☞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12.2.1. 개정)에서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해당 시험·검사를 할 수 없도록 기 규정되어 있으며 타 법에 기 규정된 사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허용기준을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 이하(현행 200㎡ 이하)로 축소(강화)
 - ☞ 퇴비사 등의 허용면적 축소가 실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었고, 허용면적을 50㎡ 이하로 하더라도 퇴비사 등의 축종별 설계기준을 충족 가능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2012.6.1)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강화)
 - ☞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의 유사 위반내용에 대한 위반회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준용하여 규정하였고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로 하여금 보유한 측정기기 현황, 측정기기 관리 일지(교정내역 등)를 기록·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도록 함(강화)
 - ☞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의도적 조작에 대비하고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기현황 및 기기의 교정내용을 기록·보관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기 현황 및 교정내용의 기록·보관에 드는 비용은 기록부 작성 정도로 미미한 반면,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로 수질오염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획득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³³⁸⁾으로 정함(신설)
 - ☞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자원을 포획·채취 등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현황 파악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 중 활용 및 보존가치가 높아 관리하고 있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1,971종)을

338)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1,971종 지정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 이권이 없고 비용발생 수준도 미미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구역 내 위치한 폐수배출 사업장 및 공동방지 시설에 대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다만,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후 5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부착을 면제(강화)
-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구역 내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를 악용하여 야간에 고농도의 폐수를 불법 방류하는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2억5천만원 내외)·운영(연 4천만원 내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후 일정기간 배출허용기준(5년)을 준수한 경우 부착을 면제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13.2.1)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을 위한 적합판정 기준(매연 배출량, 주행온도 조건)을 정하고 성능유지 확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2회) 및 검사기간 연장(30일), 검사수수료 등 처리절차 규정(신설)
- ☞ 매연 검사기준 초과차량 등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부착하는 저감장치의 성능 확인을 위한 적합판정 기준 및 처리절차 규정은 필요하며 적합판정 기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감효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³³⁹⁾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재검사 및 검사기간 등은 유사한 성능검사(자동차 성능검사 등)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음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8

(16)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 처리규정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환경오염 시험·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의 항목별³⁴⁰⁾ 표준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중요 시험·검사장비의 관리대장 작성의무 부여(신설)
 -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항목별 시료의 표준처리 기간 기준 마련 및 시험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비의 관리의무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 시료의 특이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관리대장 기록사항도 최소한의 내용(수리내역, 자율검사 실시결과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 규제부담 수준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음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가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³⁴¹⁾에 규정됨에 따라 위반의 내용·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신설)
 - ☞ 국립생태원이 국가사무를 위탁수행³⁴²⁾ 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기관의 신뢰도 저하 및 일반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률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3회)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감이 가능하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등 규제부담의 집행방식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환경피해 종류에 지하수 수위저하를 추가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환경

340) 수질, 대기·소음·진동, 악취, 실내공기질로 구분

34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342)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외래 생물의 위해성 평가 등 업무 수행

분쟁조정위원회³⁴³⁾ 소관 사무에 포함(강화)

- ☞ 지하수 수위(수량포함) 저하로 인한 피해 발생시 분쟁해결 수단이 민사소송만 가능하나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분쟁조정은 민사소송과 비교시(참고2) 양측³⁴⁴⁾ 모두에게 비교적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고 비용절감, 처리절차 간편 등의 편리성과 피해자의 피해 구제 수단 확대라는 이점이 있음에 따라 원안의결
- 환경피해 예방 및 환경분쟁 해결지원 등을 위해 환경분쟁조정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되, 설립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신설)
- ☞ 환경피해자들의 분쟁해결 지원, 일반국민 대상 환경관련 전문활동 등을 직접 또는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적기관임을 감안하면 환경부장관이 협회설립 허가를 하고 감독하는 것은 필요하며 협회에 대한 감독 범위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음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가전제품의 저소음 등급 표시제 및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음도 검사 의무가 시행 예정임에 따라 소음관련 검사를 대행할 소음도 검사기관에 대한 세부 지정기준³⁴⁵⁾을 마련(신설)
- ☞ 소음도 검사결과에 따라 가전제품의 저소음 등급 및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준수여부³⁴⁶⁾ 등이 결정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요건은 현행 소음발생 건설기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하거나 기준 소음 이상의 휴대용 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신설)

343)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능 수행

344)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피해자)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명되는 자(가해자)

345)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346) 소음도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부적합한 제품에 저소음 등급표시를 부착하거나 최대음량 초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 ☞ 가전제품의 무분별한 저소음표지 사용과 기준 소음 이상의 휴대용 음향기기 유통에 따른 사용자들의 소음피해(청력손실 등) 예방, 유통질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률에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3회)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감이 가능하고 최초 위반시 가장 낮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규제부담의 집행방식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태계보존협력금³⁴⁷⁾ 부과대상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없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강화)
-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인허가 협의단계시 생태계보존협력금을 부과(’01년)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따라 생태계보존협력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³⁴⁸⁾가 발생하여 부과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동일사업에 대한 이중부과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음에 따라 원안의결

(2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증보험금액 및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처리업종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를 58종은 상향하고 28종은 하향조정(강화)
- ☞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조정(58종 인상, 28종 인하)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부담 증가액은 연간 총 178백만원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견제시가 있으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실제 처리비를 조사(관련용역,

347)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자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 훼손(형질변경 등)을 초래하는 경우 부과(훼손면적당 부과금액 : 250원/㎡)

348)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나 절차간소화 등으로 협의절차 없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산업단지 절차간소화 특례법 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2.4~’12.9)하여 처리단가를 산정한 점,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도 이견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배출권거래제³⁴⁹⁾ 시행에 앞서 배출권 거래소³⁵⁰⁾ 지정을 위한 신청자격, 평가기준, 지정 취소 사유 등을 정함(신설)
 - (신청자격) 청산·결재 시스템 운영경험(1년 이상)이 있는 기관으로서 경쟁매매 및 청산·결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6명 이상)
 - ※ 신청불가 사유 :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기관
 - (평가기준) 거래안정성(시스템 구축가능성 등), 시장활성화(국제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 등), 배출권거래제 정책이해도 및 수행 능력 등
 - (지정취소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 상위법에 근거하여 배출권 거래소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시장 감시,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등 공적인 시장기능 수행 및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중인 유럽 및 국내 유사 입법사례(금융투자상품 거래소 지정요건 등)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음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2)

■ 심사내용

-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중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신설)
 - ☞ 먹는물관리법(제8조의3)의 위임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349)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15년 시행)

350)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운영, 매매 및 청산·결재, 시장감시, 경매, 분쟁조정 등을 관장(시행령 제27조)

- 써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을 규정한 지하수법 시행령도 개정안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샘물보전구역 지정 대상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지정 범위를 신설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범위를 토대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신설)**
 - ☞ 취수지점으로부터의 거리 등 지정범위의 적정수준을 일반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지정검토 대상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고 샘물 부존지역이 주로 산간지역으로 먹는물관리법에서 금지한 오염유발시설의 입지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규제비용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먹는물관리법 개정(13.3.22)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가 4배 상향됨에 따라 먹는물영업관리자의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일배수(4배)로 상향조정하고, (수질)검사기관의 경우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강화)**
 - ☞ 먹는물관리법 개정(13.3.22)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가 4배 상향됨에 따라 먹는물영업관리자의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일배수(4배)로 상향조정하고, (수질)검사기관의 경우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강화)
 - ☞ 먹는물관리법 개정(13.3.22)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가 4배 상향됨에 따라 먹는물영업관리자의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일배수(4배)로 상향조정하고, (수질)검사기관의 경우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강화)
 - ☞ 먹는물관리법 개정(13.3.22)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가 4배 상향됨에 따라 먹는물영업관리자의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일배수(4배)로 상향조정하고, (수질)검사기관의 경우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강화)
 - ☞ 먹는물관리법 개정(13.3.22)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가 4배 상향됨에 따라 먹는물영업관리자의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일배수(4배)로 상향조정하고, (수질)검사기관의 경우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강화)
 - **먹는물관리법 개정(2013.3.22)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 정수기 설치신고, 관리방법 준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강화)**
 - ☞ 냉·온수기와 동일한 용도의 정수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냉·온수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제출의견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먹는물관리법(제8조의5)이 샘물보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입지가 인정되는 ‘먹는샘물의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신설)**
 - ☞ 위생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오염유발가능성도 낮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4)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 반출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종을 확대³⁵¹⁾ 지정(강화)
 - ☞ 국내 고유생물자원(39,000여종) 중 활용 및 보존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이 필요한 종을 추가 지정할 필요성 있으며 학술용 및 전시용인 경우 반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국외반출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국외(호주³⁵²⁾, 인도³⁵³⁾, 일본 등) 입법사례 등과 비교시에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3.5.22)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강화)
 - ☞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의 인증제도 관련 과태료 및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으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6)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연간사용료 부과방식에 있어 인증제품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의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사용료를 매출구간별(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부과 기준 마련(강화)
 - ☞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료 부과체계가 제품 매출액이 적을수록 사용료 부담이 커,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도록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2001년 사용료

351) (현행) 1,971종 → (개정) 2,798종

352) 호주는 자국내 서식하는 491종을 제외한 모든 고유종(14만여 종)을 접근규제 대상으로 지정

353) 인도는 자국내 서식하는 모든 생물(13만여 종)에 대하여 접근허가를 받도록 규정

정수체계가 제정된 이후, 사용료를 처음 인상하는 것으로서 사용료 부담비중 및 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인상 하되, 부과방식을 매출구간별로 차등(3단계) 부과토록 함으로써 규제부담 수준도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원안의결

(27)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먹는물관리법(2013.3.22.개정)의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신설)
 - ☞ 개정안은 현행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관리방법을 준용하여 규정하되, 정수기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제출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먹는물관리법 개정(2013.3.22)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측정하는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위반내용 및 횟수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신설)
 - ☞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한국샘물협회)의 자동계측기 허용오차범위 유예기간 설정 및 최초 교정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건의를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으며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도 유사한 위반사항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순환골재를 수직·수평 배수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H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유출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또는 집수정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강화)
 -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자원협회(순환골재 생산자단체)가 제기한 사항이 협의를 통해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엄격한 pH기준만 적용하기 보다는 pH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배수로, 집수정 등의 용출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선택가능성에서 합리적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도로공사 기준을 현재 길이기준 이외에 면적기준을 추가하고,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대상공사에 농어촌도로를 포함(강화)
 - ☞ 농로(農路)도 재활용용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어촌도로(읍 또는 면지역 도로)의 경우에도 공사규모가 클 경우 의무사용 대상공사에 포함함이 합리적이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었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3.6.12)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강화)
 - ☞ 법률 개정(2013.6.12)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반횟수별 부과금액을 정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으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9)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³⁵⁴(VOCs) 규제대상지역에 기존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이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을 추가로 신설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배출시설 신고(3개월 이내) 및 방지시설 설치(1년 이내) 의무 부과(강화)
 - ☞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대기오염(오존농도)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인체 위해성을 고려할 때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 지정기준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누락되어 고시 등으로 포괄 위임함에 따라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비산배출 저감대상 시설³⁵⁵ 사업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환경부 장관이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유사 입법사례(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와 비교시 동일한 규제수준으로 검사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국가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4) 석유화학제품(휘발유·벤젠 등), 유기용제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37종)

355) 원유정제처리업, 화학제품제조업, 제철업 등 119개 업체

-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운영상황 기록·보존 및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측정결과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과태료 강화(200만원 → 500만원)(강화)
- ☞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46,000여개)에 대한 운영 상황 및 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 등의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 강화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 입법사례(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와 비교 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³⁵⁶⁾의 지정 기간, 재지정 요건 및 재지정 요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양성기관별로 실시하던 2차 해설시연 평가를 운영사무국³⁵⁷⁾에서 실시하도록 함(강화)
- ☞ 자연환경해설사 전문교육·양성기관의 부실운영³⁵⁸⁾ 예방 및 양성기관별 자체평가에 따른 해설사 자질저하³⁵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양성기관에 대해 지정 기간 및 재지정 요건을 신설하고 자연환경해설사 평가를 전문평가 기관이 실시하도록 개선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지정 요건(연 20명)이 양성기관 평균 수료실적(50명/1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실기시험도 전문평가단(운영사무국)이 양성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생 추가부담(응시료 등)이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법률에 상

356) 생태해설·교육, 생태탐방안내, 환경훼손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사 지속 양성·배출을 위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제도를 도입('12.1), 전국 6개 기관 지정·운영중

357)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해설시연평가, 표준교재개발 보급, 해설사 DB구축 등을 수행

358) 한번 지정된 양성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없어도 관리 및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무분별한 양성기관 난립 및 수강생들의 피해발생 우려

359)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기관(1개) 합격률이 69%인 반면 민간 양성기관(3개) 합격률은 95%~100%로 수준임을 감안하면, 평가결과의 신뢰도 저하 및 교육생 확보, 기관유지 등을 위한 무분별한 수료증 발급이 우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항 규정하고, 범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근거 등을 마련(강화)

☞ 개정내용 대부분이 현행 고시에 규정된 사항으로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새롭게 추가되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근거도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으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강화)

☞ 타법에서도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폐기물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받을 수 있도록 함(강화)

☞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폐기물전문분석기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받아야 하므로 폐기물 시험·분석에 따른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며 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유사 입법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2) 위해우려종 지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수입 또는 반입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해우려종³⁶⁰⁾(24종)을 지정(신설)

☞ 무분별하게 반입·수입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고유 생태계 교란³⁶¹⁾을 예방하고 외래종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국내 생물종 보호를 위해 위해성우려종 지정의 필요성 있으며 자연보호관련 국제기구(세계자연보전연맹 등), 인접국가(일본, 중국) 등에서 위해종으로 지정되어 관리 및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종들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후에도 국내 반입·수입은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360) 포유류 2종, 조류 1종, 어류 2종, 연체동물 1종, 곤충 1종, 식물 17종

361) 그동안 외래종에 대한 수입·반입시 별다른 관리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배스 등 무분별하게 반입된 외래종에 대해 현재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18종)·관리하고 있는 실정

(3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5)

■ 심사내용

- 법률(2013.6.12.개정)의 위임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붙일 수 있는 조건, 비산먼지·침출수·악취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 및 동 시설의 설치대상을 규정(신설)

[개정(안) 요약표]

구 분	현 행	개 정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붙일 수 있는 조건	(신설)	① 건설폐기물 보관기간(10일 이내), ② 비산먼지·소음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③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필요조치
오염방지시설 및 설치대상	(신설)	① (설치대상)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임시보관장소 ② (설치시설) 방진벽·살수시설·방진덮개·바닥포장·지붕 덮개시설

☞ 임시보관장소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해 관계자 이견 없으며 오염방지시설 설치범위 및 설치대상은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안동의

- 법률(2013.6.12.개정)의 위임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파쇄·분쇄) 사업장 내 중간처리 공정 및 보관장소에 설치해야 할 오염방지시설 및 동 시설의 설치대상을 규정(신설)

☞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중간처리 사업장 내 중간처리 공정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당초 개정안에서는 2km 이내였으나 입법예고 후 1km 이내(175개소)로 완화하였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과 중간처리 공정에 오염방지시설을 선택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과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 법률에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재질을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신설)

☞ 현재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덮개로 사용가능한 재질을 명시하되, 피규제자의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고시로 덮개 재질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전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변경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받도록 함(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시에도 변경허가의 적법여부를 미리 검토 받아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변경허가계획서 제출 및 허가관청의 적정성 통보절차를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한국건설자원협회(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없음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양도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강화)
 - ☞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양도 등으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건설폐기물류의 중간처리 기준에 유해물질 함유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및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포함하고 건설폐기토석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유기이물질 함량기준을 현행 5% 이하에서 1% 이하로 강화(강화)
 - ☞ 건설폐기토석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기이물질의 부식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성에 우려가 있어 유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을 다른 건설폐기물류와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 이견없음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는 탈수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 등의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인정(강화)
 - ☞ 현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련 규정에 따른 건설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법률 개정(2013.6.12)으로 임시보관장소 관련 행정처분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각각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정함(강화)
 - ☞ 법률 개정(2013.6.12)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것으로 현행 행정처분기준상 유사사례(참고3)를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고려되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없음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7)

■ 심사내용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예외사항 변경하고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EU) 환경기준 변경사항(추가 또는 삭제)을 반영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강화)
 - ☞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와 자동차 유해물질 규정(ELV)의 개정 에 따른 국내법적 대응으로 필요성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제조업자) 또는 연간 수입액 3억원 이상(수입업자)으로 규정(강화)
 - ☞ 재활용의무량 중 제외되는 비율³⁶²⁾ 및 유사 입법례³⁶³⁾를 고려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³⁶⁴⁾을 의무대상 확대품목(17개) 및 실제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재산정하는 한편, 재활용 및 회수 의무이행 기준이 제품 단위에서 제품군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재활용·회수 단위비용을 제품 단위에서 제품군 단위³⁶⁵⁾로 재설정(신설)
 - ☞ 재활용·회수 단위비용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및 회수 의무³⁶⁶⁾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으로 단위비용이 낮을 경우 의무이행보다 부과금을 선호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소요비용을 토대로 재산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재산정된 단위비용을 관계부처(산업부)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추가된 의무의 이행 여부, 의무대상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고와 검사 사항에 추가³⁶⁷⁾(신설)

362) 제조업체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업체들이 전체 출고량의 99.6%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수입액 3억원 이상 업체들이 전체 수입량의 92.9% 점유

363) 유사제도인 전기·전자제품 이외의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의 면제 기준을 준용

36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회수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됨

365) 개별 품목별 금액 산정 후 가중 평균하여 산정

366) 스스로 이행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이행하여야 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추가된 의무 이행 여부 및 의무대상³⁶⁸⁾ 확인 등을 위해 기존의 보고 및 검사 사항에 관련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³⁶⁹⁾을 정함(강화)
 - ☞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 부과금액을 정한 것으로 현행 과태료부과기준상 유사사례³⁷⁰⁾를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총 27종(현행 재활용·회수대상 10종, 추가 17종)의 전기·전자제품을 5개 제품군³⁷¹⁾으로 분류하고, 대당 중량기준으로 70% 혹은 75% 이상 재활용하도록 함(강화)
 - ☞ 관련 업계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재활용·회수 대상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 등이 유사한 제품군별로 재활용기준을 정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 로 원안의결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회수위탁계약서 사본(회수를 위탁하는 경우)을 첨부하도록 함(강화)
 -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를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회수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폐자동차재활용업 중 폐가스류처리업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신설)
 - (현행)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맞게 파괴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367) 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및 비용부담 등의 이행
 ②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리·보관 등의 준수
 ③ 폐전기·폐전자제품, 폐자동차 인계·인수 관리표의 적정 여부
 ④ 연간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연간 전기·전자제품 수입액
 ⑤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

368)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제조업자), 연간 수입액 3억 이상(수입업자)

369) 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천만원)
 ②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370) 현행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 자동차폐차업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분리·보관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준용

371) 대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이동전화단말기

- (개정) 이송·투입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수집·운반차량(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 폐가스류처리업의 시설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폐자동차재활용업 중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재활용업의 시설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대상 품목을 현행 10개에서 26개로 확대(강화)
 - (현행)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개인용 컴퓨터·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 (확대) 전기정수기·전기비데·공기청정기·연수기·음식물처리기·청소기·믹서기·전기밥솥·비디오플레이어·선풍기·식기건조기·전기오븐·전기히터·전기다리미·전자레인지·가습기 등 16개
 -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피규제자별 비용부담이 될 수 있으나, 유해물질 준수대상 확대품목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적용시기를 2014년 6월 30일까지 유예해 달라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에 따라 원안동의함

(35)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물학적 처리방법(토양경작법)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미생물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거나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과정검증 시 확인하도록 하고 2가지 이상의 토양정화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각각의 세부설치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설명·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강화)
 - ☞ 미생물의 적정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설비를 갖추거나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비용부담도 과도하지 않고 2가지 이상의 정화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정화방법의 조합순서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화능력을 갖춘 시설인지 확인을 위해 설치시설에 대한 설명·검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3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제한을 위한 대상기기 선정, 제한기준 및 검사방법 마련(신설)
 - (대상기기) 이어폰이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PMP, MP3) 및 휴대용 전화기
 - (제한기준) 100dB 이하
 - (검사방법) 소음도 측정환경, 측정조건, 측정자료의 분석·평가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
- ☞ 대상기기 선정 및 최대음량 제한 기준은 관련 업계 간담회(3회), 자발적 협약(1회) 등을 통해 수출용 대상기기는 제외하고 대상기기 중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규제부담을 최소화 하고 국제표준 검사방법 및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을 반영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경분야(수질·대기 등) 시험·검사기관이 생산하는 시험·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서명을 받도록 상위법이 개정(13.7) 됨에 따라 서명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의 범위³⁷²⁾를 규정(강화)
- ☞ 서명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의 범위가 공인시험·검사기관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유사사례(비파괴 검사 등)와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전문기술인은 시험·검사기관 종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인력채용이나 비용발생 우려가 없도록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2)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측정분석검정 응시자격 및 해당기관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 중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3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경신기술 평가³⁷³⁾시 환경분야(대기·수질 등)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하는 환경기술 대상을 규정(강화)
 - ☞ 대규모 환경시설(정수장, 하·폐수처리장 등) 공사 및 처리기술의 경우 기술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인증만으로는 현장적용, 부실공사 등의 문제³⁷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술검증을 함께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정 임의인증 제도로써 신기술 평가를 원하는 업체에 한해 적용 되고, 유사 기술분야인 분뇨 및 강우유출수 처리기술 만을 추가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검증시 소요비용(현장 평가수수료)의 70%을 지원하는 등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요 원안의결

(39)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습지보호지역 내의 위반행위자³⁷⁵⁾에 대해 위법행위의 내용,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기간을 정함(강화)
 - ☞ 불법행위로 인한 훼손시 신속한 원상회복 및 의무이행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위법행위의 내용,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간 설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위법행위 내용 및 원상회복 기간 등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6개월)내로 한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난 10년간 위법행위 발생현황(1건)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요 원안의결

373) 우수한 환경기술 보급 및 실용화를 위해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된 기술은 신기술 인증을,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은 기술검증을 해 주는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 운영(’97년)

374) 수질분야 신기술의 경우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 등에 따라 처리효율 및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신기술 해당여부 만을 평가하는 신기술 인증 외에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능 및 경제성이 입증된 기술검증이 필요

375)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신축·증축·토지의 형질변경·광물채굴·모래채취 등

(40)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통기한을 6개월 이상으로 승인받기 위해 최초 제조된 제품수, 제조후 6개월 경과,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경과된 제품수 등 영업자가 제출해야 할 시험수(水)의 기준 중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강화)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먹는샘물 안전성 강화방안」(’12. 12)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유통기한이 잘못 산정되면 자칫 소비자가 변질된 생수를 마시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1)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동 약취방지시설³⁷⁶⁾ 설치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및 제출서류 중 공동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추가(강화)
 - 공동 약취방지시설 운영 규약³⁷⁷⁾에 포함될 내용의 명확한 범위가 없어 개별사업자 간 운영비 등 부담방식에 대한 논란방지 및 자원 미확보로 인한 공동방지시설 공사 중단 등 개별 사업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부담명세서 및 제출서류 추가에 따른 비용발생도 미미하고 유사사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등과 비교 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노인요양시설의 범위를 종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13.6)됨에 따라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범위를 규정(강화)

376) 신고 대상 약취배출시설은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약취법 제8조)하고 있으나 비용 및 부담완화 등을 위해 공동 약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377)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들 간의 방지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담은 자체 협약서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관리대상 범위	• 연면적 1천㎡ 이상인 국·공립 노인요양 시설	• 연면적 1천㎡ 이상인 국·공립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시설개수	132개	882개(민간 750개)
발생의무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측정(연1회) 및 결과보존, 교육이수(신규 1회, 보수 교육은 3년마다 1회)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공간으로 건강에 취약한 노년입주자들의 환경성질환(미세먼지, 세균 등) 예방 등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중 다수를 차지³⁷⁸⁾하나 그동안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임산부·유아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의 적용 기준과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측정의무 완화(연 1회→2년 1회), 사이버 교육이수제도 도입(교육비 미발생) 등을 통해 규제부담을 완화 할 예정으로서 이해 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를 정하고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가 보고, 자료제출 및 시설·장비검사 등의 수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 (강화)

[주요 개정내용]

구 분	내용
과태료 부과대상 대중교통차량 범위	•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스
발생의무	•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의 보고,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이 대중교통차량 또는 제작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관계서류·장비 등 출입·검사시 수인의무
과태료 부과 내용	• 보고·자료제출 미이행, 거짓 보고·자료제출 한 경우 - (과태료 부과)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200만원)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오염물질 채취 거부·방해·기피 한 경우] - (과태료 부과) 1차(250만원), 2차(370만원), 3차(500만원)

378) '12년 기준, 전체 노인요양시설 2,600여개 중 민간노인요양시설은 2,450여개(95%) 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대중교통차량³⁷⁹⁾ 범위는 장거리 또는 장시간을 운행하는 고속·직행형 시외버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발생³⁸⁰⁾도 미미한 수준이며 법률로 정한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3회)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부담 집행방식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정책 도입 취지에 맞게, 일반가정에 한해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범위는 공공 하수도 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가정으로 한정(강화)
- ☞ 음식점 등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과 일반 가정 중에서도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가 아닌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곳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며 그동안 법령에 명시적으로 없었을 뿐이지, 현장에서는 일반가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므로 규제 대상이 실질적으로 변함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기존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료표지용 도료(塗料)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공업용도료(선박용·강교용)에 대한 VOCs 함유기준 마련(강화)
- ☞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5회) 등을 통해 함유기준에 대한 적정수준을 마련하되 규제적용 이전에 제조·생산된 도료의 경우 규제시행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박용 도료의 적용기준은 2015년도 선박건조 계약 사용분부터 적용하는 등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9)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380)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기준유지, 측정, 교육이수 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음

(4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상위법에서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에 사후관리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13.6.2. 시행)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기준에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을 추가(강화)
 - ☞ 사후관리를 꼭 이행하게끔 강제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사전에 적립하되, 의무 이행후 검사 비용 등 전부를 환급해주는 특성상 정기검사 비용(법 제50조제3항)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에 추가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규제 수준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보증보험 가입 등의 준수사항 위반(법 제40조제1항) 시, 시·도지사는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그 처리금지 기간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처리금지 2개월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구체적으로 정함(1천만원)(강화)
 - ☞ 처리금지 2개월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처리금지 3개월(2천만원)과 1개월(5백만원)의 중간 수준인 1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폐기물 처리기준(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등 다른 위반 사항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수준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상위법 개정(13.7.16)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강화)
 - ☞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상한 내에서 과태료를 정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별화하고, 위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액을 상향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였으므로, 규제수준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없었음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상위법('13.8.13.개정 / '14.2.14.시행)에서 혼례, 회갑연의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아예 금지(법 제10조제1항제1호)하고 상례(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원칙 허용 하되 예외적으로 조리 및 세척시설이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규제 대상 인 조리 및 세척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강화)
 - ☞ 개정안은 일회용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되, 장례업체의 영세성과 위생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규제 대상을 주체(식품접객업자)와 공간(임대한 공간내)을 기준으로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의 정착률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일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시행령안 제8조제4항)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상위법(제28조의5)에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인가취소 처분이 신설('14.2.14.시행)되고 인가취소 사유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신설)
 - ☞ 시정명령 규정 역시 인가취소와 함께 신설('14.2.14.시행)되었기에 기존의 시정명령 실적이 없으나 농협협동조합법(2회 불이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회 불이행) 등 다른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³⁸¹⁾을 추가하고 건축자재의 방출기준 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방출허용기준을 강화(강화)
 - ☞ 환경성질환(천식·아토피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오염물질 세부 방출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자재 오염물질로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³⁸²⁾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381)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시행령 제2조제3항)

382) 세계보건기구(WHO)산하 IARC(국제암연구소)은 폼알데하이드를 다이옥신, 석면과 같은 1급발암물질(인체발암 유발)로 규정

- 폼알데하이드 강화기준은 이해관계자(전경련, 페인트 조합 등) 의견수렴을 통해 당초 기준보다 완화하고 제도시행의 유예기간(1년)을 두고 있으며 시중에 사용 중인 건축자재의 방출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기준 적용시 초과율(5.6%)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8)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수준에 맞게 수처리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염소(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살균)의 농도를 높이고(5% → 12%) 소독 부산물로서 발생이 불가피하나 발암 우려가 있는 ‘브로메이트’와 호흡기 등에 유해한 ‘클로레이트’의 기준을 추가(강화)
 - ☞ 유효염소의 기준은 현재 판매중인 제품들과 유사하므로 추가 규제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브로메이트 및 클로레이트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의 1/10 수준 등 물의 깨끗한 정도(1종, 2종)에 따라 제한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적절하며, 이해관계인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9~50)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6.31)에 도래하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 총 97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 96건에 대해서는 규제유지·폐지 등에 원안동의하고,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3항)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료 징수율 정부출연금의 최고 40% 미만으로 부과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수율에 대한 시행령 규정을 완화(100분의 60 → 100분의 40)하도록 개선권고 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받은 기술료에 대한 사용범위 및 사용실적보고 의무 부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3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개선권고 재검토 3년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선정기준 고시 근거마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과학원고시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비산먼지 규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 변경신고, 억제시설 설치 의무 부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VOCs 배출시설이 사업장 증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운행차검사(배출가스) 대행자 등록·취소	운행차검사(배출가스) 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 별표28	규제폐지	원안동의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지정 및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30	규제폐지	원안동의
제작자동차 인증시험업무 대행	자동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제1항 별표18의2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약취검사 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등	약취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도록 함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7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사업장 설치의 허가 등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의 인증(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요건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운행차 소음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소음도 확인검사대행자 지정을 위한 기술능력 요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6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및 허가(취소)	야생동물 포획시 허가 요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원안동의
멸종위기야생 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및 허가(취소)	멸종위기 야생 생물 허가 요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규제유지 일몰폐지	원안동의 원안동의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및 등록취소	생물자원 보전시설(자원보존 연구센터 등) 등록을 위한 시설 요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수렵면허 시험 등	수렵면허 취득 요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수렵승인 등	야생동물 수렵시 수렵 승인 요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원안동의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	야생동물(574종)을 수출·입 및 반출·입 하려는 경우 야생동물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기준	야생생물 담당공무원을 보조하기 위해 야생생물보호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자격기준을 갖춰야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비공원관리청(개인, 공공기관 등)의 공원사업 (변경)허가	자연공원내 개인, 공공기관 등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변경)허가 요건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반입·재배 등을 위한 허가 요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변경)등록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 및 등록 요건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제1항, 2항 및 시행령 제68조 별표5, 69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자연경관 영향검토 및 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영향 검토 및 심의 의무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시 요건(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지정(변경)을 받아야 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표8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	먹는샘물등 수입시 원수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수입사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변경)등록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이나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먹는샘물제조업 (변경)허가	먹는샘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이나 서류를 갖추어 (변경)허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이나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정수기 제조업, 수입 판매업 신고 및 수리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 지정 등	샘물등의 증명 표지제조자 시설 및 자격 요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샘물개발 (변경)허가 및 환경영향조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야 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샘물개발관련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취소) 등	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려는자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2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 규정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수도시설의 관리	일반 수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 의무	수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저수조 청소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 7의2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4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7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신고	오수배출 건물 등의 설치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중요사항 변경시 신고 의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등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공공하수도시설로의 하수 유입제외 절차를 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별표2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교육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사유를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변경신고)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을 조사한 후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처리(재활용)계획서를 작성·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임시보관장소 승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변경승인(신고)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설치승인을 받아야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공제규정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받아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및 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일정규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서식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 서류를 휴대하고 있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제폐지 일몰폐지	원안동의 원안동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의무, 설치계획 승인	산업단지 등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정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기준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 및 관리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허가취소 등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폐기물처리 신고 등	일정규모 이상으로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거나,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해당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를 작성·제출 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장부의 기록·보존	재활용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	재활용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업종구분에 따라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폐자동차의 재활용 결과 제출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등의 재활용결과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원안동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고형연료제품을 제조·공급하려는 자는 품질·등급 인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환경분야측정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야(자동차, 대기, 먹는물 등)별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함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별표6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환경측정기기 제작·수입자는 구조, 규격 및 성능에 대한 형식승인(변경)을 받을 경우 관련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측정대행업 등록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9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환경기술인력의 환경전문교육 의무	방지사설업 최초 고용 기술인력 및 법령 위반자의 환경전문교육 이수 의무 부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6조 (舊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환경측정분석사 등	측정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환경 측정 분석사 응시자격 기준마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를 갖춰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어린이 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종류 및 유해성목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기준초과시 판매제한, 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음	환경보건법 제24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	관찰물질 ¹⁾ 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찰물질 종류와 제조예정량 등 신고의무 및 대표자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의무 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제 계획 수립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시험기관의 지정 등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동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마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2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유독물 관리자 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승인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유독물영업 등록 및 변경등록(신고)	유독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유독물의 수입신고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 종류와 용도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제4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 등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취급시설기준을 갖춰야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소음도 검사기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신축공동주택의 주민입주전 공기질 측정·공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공고 절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방음시설 설치계획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고체연료 및 저황유의 연료사용 승인	저황유 외의 연료 사용시 허가(변경) 또는 신고(변경) 및 고체연료사용 제한지역에서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별표34의2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3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배출시설의 설치 사업장의 신고·이행의무	악취배출시설의 사업자가 시설증축, 임대, 폐쇄 등을 하려는 경우 서류(변경명세서, 방지계획서 등)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3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제출 서류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유발사업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해당 내용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등록 및 변경등록(신고)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신고), 준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5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방지시설, 개선명령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의 저감계획 수립이행의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의 저감계획 수립이행의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의 저감계획 수립이행의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신고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취소	폐수처리업 등록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별표20, 제4항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희석처리의 인정 등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의 인정 증명자료 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규제유지 일몰폐지	규제유지 원안동의
분뇨의 재활용 신고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규제완화 재검토 3년	원안동의 재검토 3년

1)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82종, '13.3월기준)

3. 기상청

이규삼 사무관

(044)200-2443 lks201@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1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하여 원안의결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일몰도래형 규제심사	행정사회분과위 491회 (2013.9.2)		
2.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심사(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일몰규제는 대상은 '기상업무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1건으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 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일반적 권한 규정으로서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낮아 일몰폐지로 원안의결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기상청	규개위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기상청장은 지정한 기상교육 훈련담당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취소 및 정지명령 가능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상법 제35조제4항	일몰폐지	일몰폐지

(2) 기상청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기상청이 실시할 기상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공공 목적의 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 * (현행) 기상사업자, 기상정보지원기관,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단체, 관련 대학
→ (개정) 국가·지자체 소속 교육기관,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관련 대학
- 기상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이상 교육·훈련기관이 운영을 중단’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간을 3개월로 규정(강화)
 - ☞ ①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 정비) 교육·훈련 기관의 목적 및 교육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인정, 현 규정 제정(’06년) 이후로 민간기관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② (교육훈련기관 시정명령 요건)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기상법의 위임에 따라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8절 |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1. 교육부

정재환 사무관

(044)200-2438 jjh0223@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영재교육진흥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 등 19개 법령에 대해 신설 23건, 강화 13건 등 총 36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음
- 심사대상 36건 중 철회권고와 개선권고는 각각 2건씩이었으며, 32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49회 예비심사 (2013.1.4.)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478회 분과위 (2013.1.4.)	개선권고1 철회권고1	신설 2 중요 2
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298회 본회의 (2013.1.21.)	원안의결2	신설 2 중요 2
4.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개정안	제357회 예비심사 (2013.3.8.)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5.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71회 예비심사 (2012.6.7.)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제372회 예비심사 (2013.06.17.)	원안의결3	강화 2, 신설 1 비중요 3
7.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 검토서	제490회 분과위 (2013.07.05.)		
8.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385회 예비심사 (2013.09.12.)	원안의결6	신설 6 비중요6
9.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11회 본회의 (2013.09.13.)	원안의결1	신설 1 중요 1
10.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92회 분과위 (2013.09.13.)	원안의결2 철회권고1	강화 1, 신설 2 중요 2, 비중요 1
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09.17.)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9회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3	강화 2, 신설 1 비중요 3
1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91회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1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1회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15.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391회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16.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1.08.)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18.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95회 예비심사 (2013.11.22.)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95회 예비심사 (2013.11.22.)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20.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497회 분과위 (2013.11.22.)	원안의결1	신설 1 중요 1
21.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22.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3.)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제319회 본회의 (2013.12.20.)	개선권고1	신설 1 중요 1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319회 본회의 (2013.12.20.)	원안의결1	강화 1 중요 1
계		원안의결 32 개선권고 2 철회권고 2	신설 24, 강화 12 중요 10, 비중요 26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회사 등의 장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금융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함(신설)
 - ☞ 교육비 지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예산의 불합리한 낭비를 막기 위해 지원 신청자의 금융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다른 입법례에서도 유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이하 '특별교육 등')를 받도록 규제를 신설함(신설)
 - ☞ 최근의 교권침해 수준과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교권침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인성교육 강화 및 교권보호 등을 위해 필요함
다만,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이수 의무는 관할 교육감 등 지도감독기관의 장이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등에 불참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제를 신설함(신설)
 - ☞ 신설하고자 했던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등 이수 의무를 '관할 교육감 등의 특별교육 기회 제공 및 참여 독려' 하는 방식으로 개선권고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은 철회를 권고함

(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 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신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기준(요약)]

- ①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종목 선수경력 3년 이상인 자
- ② 해당 종목 관련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 자격증 소지자
- ③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 소지자
- ④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 입상 경력자
- ⑤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 현재는 지침 등을 통해 지역별로 자격기준을 두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선발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동일 자격임에도 지역에 따라 임용 여부에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차이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별 자격기준에 비해 자격조건을 다양화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동의함.
- 각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신설)

[스포츠강사 자격기준(요약)]

- ①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 ② 경기단체 운영 지도자 양성과정 자격증 소지자 중 5년 이상 지도경력 있는 자
- ③ 선수 경력 5년 이상인 자
- ④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 현재는 지침 등을 통해 지역별로 자격기준을 두어 스포츠강사를 선발하고 있으나, ‘학력제한(전문대졸 이상 등)’을 두는 등 학력차별이 있으나, 개정안의 자격기준은 ‘학력제한’ 등을 삭제하는 등 자격조건을 완화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동의함.
다만, 스포츠 강사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간 자격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및 스포츠강사 자격기준 간 수준 또는 경력 등이 유사한 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을 지적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4)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원격교육 설비의 세부기준(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비 등)을 다음과 같이 강화 및 조정함(신설)

[원격교육 설비 기준 강화·조정(일부 요약)]

- ① 서버설비 : (현행)서버용량을 용도별로 별도 마련 → (개정)용도별 용량을 통합하고, 기존에 비해 용량 수준을 1.5배 상향 조정 등
- ② 소프트웨어 설비 : (현행)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설비를 갖추도록 함 → (개정) 사용자 수 기준 삭제 등

- ☞ 현재의 기술수준(CPU, 메모리, 네트워크 대역폭 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강화되는 설비기준을 사이버대학에서 이미 충족시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동의함

(5) 고등교육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정원 외 학사편입학 정원을 입학정원의 5% → 2%로, 모집단위별 정원의 10% → 4%로 축소하도록 규제를 강화함(강화)

- ☞ 2012년 12월 7일 제296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동의한 안건으로, 법제처 심사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재입법 예고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함

※ 제296회 본위원회('12.12.7) 심사 결과

- ☞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가 지나치게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 학사편입 모집가능인원에 비해 충원율은 30%대로서, 학사편입 모집인원 제한 강화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신설 1)

■ 심사내용

- 학교법인이 선임하는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입학정원 500인 이상인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이하 ‘대학 등’)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교법인 전체’로 범위를 확대함(강화)
 - * 기존 :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 등과 입학정원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의 학교법인은 공인회계사 선임에서 제외되어 왔음
 - ☞ 대학 내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와 대학 건전성 향상이 가능해지고, 실제 본 개정안에 의해 공인회계사를 새롭게 감사로 선임해야 하는 학교법인은 15개 법인으로 대상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 ‘교육용 기본재산’의 매각수입을 교비회계 세입항목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신설함(강화)
 - ☞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연구 활동을 위해 대학 설립시 기본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재산이며, ‘교비회계’로 계상되어 왔음. 따라서 그 매각수입 또한 현재까지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동 시행령 제13조제1항제9호)’으로 보아 교비회계 세입항목으로 포함시켜 왔으며, 본 개정안은 대학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함
- 대학의 외부회계감사 결과(감사증명서 및 부속 서류)에 대한 감리를 할 경우 ‘감리실시요건, 감리기준, 결과조치’에 대한 규정 신설(신설)
 - ☞ 개정안에 따른 감리실시요건이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의 감리 규정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감리기준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며, 감리결과조치는 잘못된 회계감사를 감리를 통해 적발한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함

(7)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학교 건강검사' 등 총 35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35건에 대해서는 규제유지·폐지 등에 원안동의하고, 기간제교원 임용기준 등 7건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유지하는 것을 개선권고함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건강검사 등	학교건강검사 실시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 제7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계약학과, 학부 등의 설치·운영 기준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요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제 유지/ 3년 연장	규제 유지/ 3년 연장
유사명칭 사용금지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 번역원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한국고전 번역원법 제21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과태료 (한국고전번역원법)	유사명칭(한국고전 번역원)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5조	규제 폐지	규제 폐지
한국고전 번역원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한국고전 번역원 관련 유사명칭 사용 등 사회질서를 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8조	규제 폐지	규제 폐지
교사안에서의 환경 및 식품위생 기준	학교의 장이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설정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교원소청 심사 위원 자격 제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기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학교에 두는 교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치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40조의3	규제 완화/ 3년 연장	규제 완화/ 3년 연장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시험의 특성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	규제 유지/ 3년 연장	규제 유지/ 3년 연장
교육과정	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 기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규칙제10조	규제 완화/ 3년 연장	규제 완화/ 3년 연장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결정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제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규제 유지/ 3년 연장	규제 유지/ 3년 연장 (조문 명확화)
기간제교원	기간제교사 임용기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3년 연장
기술지주 회사의 인가취소 등(시정명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인가 취소 등에 대한 요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8제1항	규제 유지/ 5년연장	규제 유지/ 5년 연장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사내대학의 학년도, 학기 등	사내대학 학년도 및 학기 운영 조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	규제 유지/ 3년 연장	규제 유지/ 3년 연장
외국에서 한국학교 등의 설립·운영	외국에서 한국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2조, 제18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3년 연장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 규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제 유지/ 5년 연장	규제 유지/ 5년 연장
산학겸임 교사 등의 자격기준	산학겸임 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설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2	규제 유지/ 3년 연장	규제 유지/ 3년 연장
산학협력단 설립·운영 기준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으로서 민법의 일부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3년 연장
산학협력단 회계운영 기준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일몰 삭제
산학협력단의 단장	대학의 장이 산학협력단의 임면을 정하도록 규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일몰 삭제
시설·자료 등	학교도서관 시설 기준 (위치, 면적, 자료수) 및 폐기 기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별 제8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3년 연장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대학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3	규제 유지/ 5년 연장	규제 유지/ 5년 연장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한국학 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학 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한국학 중앙연구원 육성법 제9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일몰 삭제
유학인정 취소	허위증명, 최학 등을 받은 경우 유학 인정 취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제 유지/ 3년 연장	규제 유지/ 3년 연장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 회의 소집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일몰 삭제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한국학교 학교법인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5년 연장
자료의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한 자료 배부 요청권 및 소장자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요청권	한국학 중앙연구원 육성법 제5조	규제 완화/ 3년 연장	규제 완화/ 3년 연장
자치위원회의 구성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수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규제 완화/ 3년 연장	규제 완화/ 3년 연장
자회사의 설립 등	기술지주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및 기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제36조의4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규제 유지/ 5년 연장	규제 유지/ 5년 연장
전문상담 교사의 배치 등	전문상담 교사의 배치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제 유지 / 5년 연장	규제 유지/ 5년 연장 (조문 명확화)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	기술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제21조, 직업교육 훈련촉진법시행령 제19조	규제 유지/ 5년 연장	규제 유지/ 5년 연장
학교기업 설치 금지업종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을 표시함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제 유지/ 3년 연장	규제 유지/ 3년 연장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권한 규정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0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일몰 삭제
학교보건실 설치기준	학교 보건실 설치 및 시설에 관한 기준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5년 연장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보건 인력 배치 기준	학교보건법 제15조	규제 유지/ 일몰 삭제	규제 유지/ 5년 연장

(8)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직무내용, 등록자격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주무부장관에게 변경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신설)
 - ☞ 민간자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신설 등록이 가능하므로,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변경 사항이 제한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 자격기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등록자격관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검정 등의 정지 및 자격 등록 취소의 기준을 신설하고, 등록 취소 및 자격검정 등의 정지 시 공고방법 및 공고내용을 정함(신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요약)]

시정명령 위반 횟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처분 기준	자격검정 등의 정지 6개월	자격검정 등의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 ☞ 시정명령의 대상이 과장·허위광고 시정 등으로 민간자격관리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함
- 자격기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검정 등의 정지 및 자격 등록 취소의 기준을 신설하고,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폐지 시 6개월 전 신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함(신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요약)]

시정명령 위반 횟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처분 기준	자격검정 등의 정지 6개월	자격검정 등의 정지 12개월	공인 취소

- ☞ 시정조치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인 자격의 경우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만큼 공인자격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함
- 공인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공인자격관리자가 운영)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기준, 평가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신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공인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도록 정한 것은 자격기본법 제3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며, 공인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있어(자격기본법 제23조제3항) 교육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이수기준, 평가기준, 교육과목 등의 교육훈련과정은 자격 취득 시 일반 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인자격관리자에 의한 임의적 변경에는 제한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함
-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광고, 홍보할 경우 자격 취득 등에 관한 부대비용, 환불 안내 문구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고,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신설)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일부 요약)]

- ①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등록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 ②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등

- ☞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중 청약철회,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43%(’12년 기준 654건)에 달함을 고려할 때 부대비용 및 환불 관련 문구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도 다른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규제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 주무부장관에게 자격정책심의회,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민간자격 등록, 시정명령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신설)
- ☞ 자격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자격의 취득과 보유 과정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수적이며, 보수교육, 자격증 갱신 안내 등 자격취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함

(9)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의학계열 학과를 운영 중임에도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에서 해당 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과 학생 모집 정지(1차 위반시), 학과 폐지(2차 위반시)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신설)

- ☞ 1차 위반시 입학정원을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하는 처분이 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의학계 열 학과의 '실습 운영'은 질적 측면의 학습여건에 해당되며, 그 부실에 대한 것은 다른 교육여건(교지, 교사)과 달리 강화된 행정제재처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안의결함

(10)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강화 1, 신설 2)

■ 심사내용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현행 '학생 정원'에서 '학년별 학생 정원'으로 조정함(강화)
 - ☞ 현행 '학생 정원' 규정은 도입 시 경과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왔고, 그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은 '학년별 학생 정원'이었음. 즉 개정안은 실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법령 상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함
- 교육감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입학 업무처리 절차, 입학자격 검증 서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외국인학교 등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교육감에 의해 정해질 경우 학생, 학부모의 예측가능성, 입학의 투명성 등 편익이 예상됨
 - 또한, 기 '외국인학교 입학업무 가이드라인(지침)'을 통해 교육감이 정해오던 것으로 규제 신설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외국인학교 등의 입학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입학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함(신설)
 - ☞ 일반 학교 학생과 달리 외국인학교 학생에만 별도의 취소 처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규제의 효력이 개별 당사자의 사정과 위법성 정도 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철회권고함

(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비 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대졸(예정)자의 응시자격(성적기준, 중소기업 재직자)을 신설함(신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특성화고 등 출신 기술·기능인재를 위한 국비 해외유학제도를 도입하면서 응시자격을 새롭게 둔 것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특성화고 등의 여건에 맞게 성적기준을 완화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2, 신설 1)

■ 심사내용

- 학원 및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함(강화)
 - ☞ 종전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상향입법 하는 것으로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함
- 교습자의 자질함양 등을 위해 각 교육감이 교습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강화)
 - ☞ 이미 11개 교육청에서 교육 조례 등을 통해 교습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 중이며, 의무규정이 아닌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불참에 따른 제재처분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함
-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등록증, 현금출납부, 직원명부 등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신설)
 -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상향입법 하는 것으로,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함

(1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유치원장 등이 유치원 소속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³⁸³⁾ 신설(신설)
 - ☞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383) 1회 : 1백만원, 2회 : 2백만원, 3회 : 3백만원

또한,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동일하므로 원안의결함

(1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치원 소속 유아의 건강검진을 건강검진기본법 상 항목에 맞게끔 반영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보관 및 폐기 기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사항을 규정(강화)
 - ☞ 현재 적용하는 학교건강검사 규칙이 초·중등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치원생에 적합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 등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15) 고등교육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학교 폐쇄 명령의 요건인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 위반 횟수를 현행 '여러 번' → '3회 이상'으로 조정(신설)
 - ☞ 불명확하게 규정('여러 번') 되어 있던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적용을 최소화하고, 피규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의결함

(16)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학교급식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정보 공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의 세부 기준(1회: 1백만원, 2회: 2백만원, 3회: 3백만원)을 정함(신설)
 - ☞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위반횟수를 고려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원안의결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특목고 등의 운영과정에서 입학 또는 회계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이 발생할 경우 특목고 등 지정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함(신설)
 - ☞ 지정취소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행위를 한 기관에 주어지는 권한이며, 개정안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지정취소 전까지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개정안 제76조, 제90조 등)하도록 하는 등 규제비용을 최소화하였음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18)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고등교육법 상 '강사' 규정 신설(제14조의2, '14.1.1. 시행)에 따라 연구실적연수(1년) 및 교육경력연수(1~2년)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설함(신설)
 - ☞ 강사의 대학 내 지위를 고려하여 조교수보다 낮은 수준의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고, 필요한 자격 연수가 총 2~3년으로 일반적인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은 대부분 자격을 충족하므로 최소한의 자격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고등교육법 상 '강사' 규정이 신설(법 제14조의2, '14.1.1. 시행)됨에 따라 그 임용·재임용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 심사 시 심사위원 구성, 임용기간, 급여 등의 필수 계약 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함(신설)
 - ☞ 심사, 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심사, 임용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필수 계약조건도 근로기준법 등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20) 사립학교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중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그 적립목적을 지정하도록 함(신설)
- ☞ 사립대학 적립금 과다 축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적립금 축적·사용의 투명성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 총액의 27.6%가 기타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지만 기타 적립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 미비로 운영 내역이 미공개 되어 왔음
또한 개정안은 특정적립금 사용 목적을 지정하도록 했을 뿐, 특정 목적을 강제하지 않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등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21)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상 ‘복합영상물제공업(멀티방 등)’을 추가함(강화)
- ☞ 최근 멀티방 등이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복합영상물제공업이 DVD방 등 비디오물감상실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고려할 때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금지 시설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22)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강화 1)

- 시행령에 있던 영재학교 입학자격(령 제14조), 영재학교의 지정취소(령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영재학급의 승인취소(령 제23조제3항, 제4항) 규제를 법률에 상향 규정(강화)
- ☞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신설 1)

-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재직기간 상한연령을 교원은 62세 또는 65세(교수), 사무직원은 60세까지로 정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도 재직기간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상한연령은 43세로 규정(신설)

- ☞ 동일한 연금 제도 안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직기간 상한연령 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 재직자 등에게 연금제도 변경사항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뒤로 조정하고, 고용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사무직원과 동일하게 60세까지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함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사립대학 교직원의 퇴직수당 소요 비용에서 사학연금공단 부담금(매년 23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년간('10~'12년)평균 약 1,500억원)을 종전 국가 100% → 국가 60%, 대학법인 40%로 배분하여 부담하도록 조정함(강화)
- ☞ 퇴직수당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원칙에 맞게 사립대학 법인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약 280여개 대학(62.6%, '12년 기준)이 1억원 미만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대학별 부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2. 미래창조과학부

강보람 사무관

(044)200-2419 gelsomino@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1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2건, 강화 5건 등 총 3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7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나머지 3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51회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전자파 장애 방지기준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전자파 보호기준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373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73회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0	신설 10 비중요 10
6.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제464회 경제분과 (2013.7.19)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7.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심사	제465회 경제분과 (2013.8.16)		
8. 무선설비규칙 개정안	제383회 예비심사 (2013.8.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제388회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390회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방송법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안	제399회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6 개선권고 1	신설 32, 강화 5 중요 1, 비중요 36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는 경력 분야를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지식정보보안 관련 분야로 축소하고 현행 변호사, 회계사, 특수 분야 경력자, 민간자격증취득자에게 완화된 경력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특례 기준을 삭제(신설)

☞ 동개정안은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분야 경력기간의 50%를 지식정보보안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변호사, 회계사, 특수 분야 경력자의 경우 정보보안업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완화된 경력기간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여타 자격기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보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방송수신기(TV, 오디오 등)가 통합된 새로운 유형의 기기를 ‘멀티미디어기기’로 정의, 동 기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및 현재 적용기준이 없어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기준을 차용하고 있는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에 관한 기준 신설(신설)
- ☞ 개정안은 국제표준³⁸⁴⁾을 수용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출현,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에 대한 고유 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조업체는 적합성평가 소요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두어 업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전자파 보호 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정보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방송수신기(TV, 오디오 등)가 통합된 새로운 유형의 기기를 ‘멀티미디어기기’로 정의하고, 동 기기의 전자파 보호 기준을 신설(신설)
- ☞ 개정안은 국제표준³⁸⁵⁾을 수용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출현,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에 대한 고유 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조업체는 적합성평가 소요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두어 업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개정 시행령에 방송통신기자재의 표본검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시행규정마련(신설)
 -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은 적합성평가지험에 합격한 기자재 중 3%에

38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국제표준(CISPR 32)과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국제표준(IEC/PAS 62825)을 반영

385)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보호 국제표준(CISPR 35)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검사대상: 회로·구조 변경, 인체안전 등 일상생활 및 공중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자재)

- ☞ 美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유·무선 및 전자파 발생기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도³⁸⁶⁾를 준용하였으며, 표본구매 또는 제출 시 비용부담이 발생하나 표본검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심사기일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편익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은 아님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10)

■ 심사내용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현황과 통계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시 서비스 제공자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신설)
 - ☞ 실태조사의 범위를 ‘산업 현황과 통계 확보’에 한정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은 의무가 아니라 협조사항으로(제재처분 없음)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 절차, 내용의 적용을 받게 됨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에 해킹 등에 의한 사고 발생시 안전성 검증 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등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안전성 검증기관은 침해사고, 정보유출 등의 피해확산 방지·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시행령 위임)를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공공부문에서의 보안사고는 국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일정 수준의 정보보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미래부 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대한 수준 및 정보보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신설)
 - ☞ 미래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일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는 아니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추후 해당 고시에 대한 규제심사시 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86) 지정인증기관(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TCB)이 시험제품의 5% 이상을 유상구매 또는 인증신청자에게 요청해 표본검사 실시

- 사업자 단체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고 미래부 장관은 표준약관을 제정(공정위와 협의)하고 그 시행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자 단체에 권고할 수 있음(신설)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경우 개별약관의 내용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사업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변경하되 객관적 심사를 위해 최소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침해사고·서비스장애·정보유출 발생시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신설)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특성상 정보의 집적이 이루어지므로 이용자 정보 대량 유출 등 사고 발생시 통지의무 부과는 이용자의 권리보호, 추가 피해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로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그 내용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 부과(신설)
 -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률은 ‘개인정보’에 한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또는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 외의 정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 규정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미래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명칭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업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사실을 공개하도록 권고(신설)
 -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실의 공개 권고는 이용자의 알 권리, 서비스 선택권 및 정보 통제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며 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취급자의 경우 단순 정보공개에 따르는 부담은 경미하고 그 효력도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종료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사업 종료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용자는 본인 정보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수 있음(신설)
 - ☞ 사업종료시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 본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규정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미래부 장관은 인지·신고에 의해 법 위반 행위 인정 시 그 확인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물건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 확인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지·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신설)
 -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 및 방법은 명시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과잉조사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은 침해사고 통지·신고,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등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미래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 과태료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제정안 과태료 상한액은 유사법령 비교 시 적정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천~1천만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3천~1천만원 이하)

(6)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전파법에서 전자파 등급기준 도입을 규정함에 따라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과 방법에 관해 규정(신설)
 -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에 따라 2개 등급(1·2등급)으로 분류하고, 제품 포장상자·메뉴얼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등급 표시 의무화
 - (이동통신기지국) 전자파 강도에 따라 4개 등급(1·2·주의·경고)으로 분류하고 펜스,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등급 표시 의무부과
 - ☞ 휴대전화 등급제는 제조업체가 전자파 등급(1·2등급)과 전자파 흡수율 중 자율적으로 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 강도등급 표시방법은 수정(‘전자파강도’ → ‘전자파강도 측정값’)하되 기술발전,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 및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을 감안하여 재검토 일몰(3년 주기)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7)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등 총 46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41건에 대해서는 현행 일몰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5건에 대해서만 일몰폐지 등의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미래부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4	건강검진의 실시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10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연구활동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유사활동종사자로의 피해확산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건강검진의 항목 ¹⁾ 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변화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토 필요
5	과태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수준 또한 안전관련법령과 유사한 수준임 *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 안전법 등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은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
8	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변경)의 승인 규정	과학관 육성법 제7조 시행령 제8~10조 제14의2 시행규칙 제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관련법령의 인·허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규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3년)	일몰유지(3년)	승인신청절차(제출서류 등)는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
18	등록(과학관)	과학관 설립·운영자의 등록요건 구비 및 등록사항 등	과학관 육성법 제6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2, 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과학관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등록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몰유지(3년)	일몰유지(3년)	등록요건 ²⁾ 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몰 유지 필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미래부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19	등록의 취소(과학관)	등록과학관의 등록 취소 사유 규정	과학관 육성법 제12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법에서 부과한 의무위반 행위시 제재처분으로서 등록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등록요건과 마찬가지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록취소기준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 검토 필요
22	사업 (과학관)	과학관의 추진 사업 및 기타사업	과학관 육성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과학관의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범위 ³⁾ 를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과학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관련 정책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규제유지 필요
28	소속 공무원의 필요시 관련 서류 등의 검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소속 공무원의 서류검사업무는 행정조사의 일환으로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폐지	일몰폐지	공무원의 서류검사 규정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재검토 일몰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31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과목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 일몰 유지 필요
36	이공계 대학 등 여학생비율 적정유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 등에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다양한 분야의 인력채용 등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시 동 규제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양성평등정책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 규제의 일몰도 유지할 필요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미래부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37	이공계대학 등의 여학생 비율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목표달성을 권장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3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다양한 분야의 인력채용 등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시 동 규제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3년)	일몰유지(3년)	양성평등정책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 규제의 일몰도 유지할 필요
43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 설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1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다양한 분야의 인력채용 등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시 동 규제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3년)	일몰유지(3년)	양성평등정책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성인력의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은 해당 시점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인식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
44	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위험물질을 보유·관리하는 연구실은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규제유지 필요
				일몰폐지	일몰유지(3년)	동 법령의 적용대상 ⁴⁾ 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주기적인 재검토 사항이라 판단됨
48	폐관통보(과학관)	과학관 폐관에 따른 통보 및 등록말소	과학관 육성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과학관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폐관에 따른 추가적 의무는 없으며, 단순한 통보의 무만을 규정
				일몰유지(3년)	일몰폐지	폐관통보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나 관련서류의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몰 폐지 타당
54	후원회(과학관)	과학관 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지원 근거	과학관 육성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과학관 운영·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한 규정으로서 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일몰유지(3년)	일몰폐지	후원회 구성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나 관련서류의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거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몰 폐지 타당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미래부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55	수익사업 (과학관)	과학관의 수익사업 근거 규정	과학관 육성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0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과학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나친 영리추구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수익사업의 범위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사항으로 주기적 검토 필요
707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의무	방송사업자는 방송 일지를 비치하고, 프로그램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존	방송법 제83조 방송법 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방송사업자의 법정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및 사후방송심의를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보관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사업자는 보존기간(6개월)의 적정성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여건 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08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방송사업자가 업무 폐업 또는 휴업시 미래부에 신고해야 함	방송법 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방송시장은 지상파, 유선, 위성, IPTV 등 새로운 분야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방송시장의 진입·퇴출 관리제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의 필요성과 적정성(제출서류의 범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09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등 비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KBS, EBS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해야 함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방송법 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0조	규제완화	규제완화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성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과 같이 역외 재송신만 승인 받도록 규제 완화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비율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11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특정 IPTV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1/3를 초과하여 서비스할 수 없음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제1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IPTV사업자(전국)와 SO 사업자(지역)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에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비율은 가변적인 내용으로 일몰 유지 필요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미래부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7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등	IPTV사업자는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을 신고해야 함 (이용요금은 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제1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사업자과 마찬가지로 IPTV 사업자에게도 서비스이용약관(요금정보 및 이용조건)을 신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사항 ⁶⁾ 은 시장상황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사항이므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713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및 사용전 확인을 받아야 함	전기통신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위법한 통신사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통신망 신고제(이전까지 허가제 운영)는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자가통신설비의 신고에 따르는 심사 등은 통신시장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714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기등록 또는 기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여야 함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별정·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제도로 규제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통신서비스 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등록 및 신고의 구체적 사항은 가변적이므로 일몰유지 필요
715	통계의 보고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별 시설현황, 이용실적, 이용자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자료를 비치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58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통신서비스 시장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사업자 통계자료의 제출범위는 시장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사항이므로 주기적인 검토 필요
716	보편적 역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매년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르는 손실을 보전받으려는 사업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로서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실적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추가적 의무이행사항(전문가 검토 등)은 시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몰유지 필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미래부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717	수수료	전파법 관련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전파법 시행령 제95조 제96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의무적인 허가·검사에 따르는 수수료는 행정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수수료 요율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사항이므로 일몰유지 필요
718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와 신규이용자의 직접보상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및 손실보상 규정 명시	전파법 시행령 제8조	규제완화	규제완화	손실보상금 청구에 따르는 절차는 시설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등은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토 필요
719	통신보안의 준수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시설자, 무선종사자 등은 통신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전파법 제30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국가중요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폐지	일몰폐지	통신보안의 준수 규정은 가변적인 성격의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폐지 타당
721	통신 과금 서비스의 이용제한	불법정보 등을 유통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제공 거부, 정지, 제한명령 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과도한 영리행위, 서비스이용자 기망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처분의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행위요건은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일몰 유지 필요
723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가 청구시 이용자에게 구매, 이용내역 등을 고지하여야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8	규제유지	규제유지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통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존속 필요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요금고지서의 필수고지사항은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주기적 검토 필요
724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망 안전성 및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제완화	규제완화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조치만을 유지하도록 규제완화 * 기존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보호조치와 안전진단방안을 모두 수립해야 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고시로 위임하였으므로, 해당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미래부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725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정보통신제공자 등은 이행부 또는 미래부 요구가 있을 경우 물품이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법 위반혐의 인지, 신고 및 민원접수 등의 사유발생시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는 통신서비스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폐지	자료제출의무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일몰폐지가 타당함
726	통신 과금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신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미래부에 신고해야 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신고의무는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약관신고의무는 시장거래상황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일몰유지 필요
727	통신 과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등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미래부에 등록하여야 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의 재무건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보호를 꾀하기 위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등록요건 ^{가)} 의 범위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 검토 필요
729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 및 등록취소	영리를 목적으로 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통신비밀 보호법 시행령 제30조별표1	규제유지	규제유지	불법감청행위로 인한 일반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탐지업체의 등록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등록요건 ^{나)} 은 해당 분야의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 검토 필요
730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정보통신공사사업의 공생발전을 위하여 분리발주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분리발주 적용대상은 정보통신공사사업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 검토 필요
731	의무제공대상 설비의 정보제공	설비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제공 대상 설비의 정보제공	전기통신 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규제유지	규제유지	설비보유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동 규제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의무제공 설비 등의 범위는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몰유지 필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미래부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732	설비제공 절차간소화 및 절차 개선	설비제공절차 간소화 및 절차개선	전기통신 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규제유지	규제유지	설비보유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동 규제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의무제공 설비 등의 이용절차는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몰유지 필요
733	의무제공 현황 신고와 설비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의무제공 현황 신고와 설비제공 및 이용 실태 감독	전기통신 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설비보유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동 규제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통신시장상황변화에 따른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무제공 설비관련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34	회계관련자료 정리 및 제출기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 회계자료 정리 및 제출기준	전기통신 사업회계 분리기준	규제유지	규제유지	전기통신사업시장의 경쟁과 관련된 정보 ⁹⁾ 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동 규제의 존속 필요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제출서류의 범위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일몰유지 필요
735	건축물 지하층에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건축물 지하층에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규제유지	규제유지	안전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서 유지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통신관련 기술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유지 필요
736	옥외회선의 건축물 지하인입 및 계약해지 후 가공선로 철거	옥외회선의 건축물 지하인입 및 계약해지 후 가공선로 철거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반 국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 규제 유지 필요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통신관련 기술기준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유지 필요
737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	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규제유지	규제유지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구내통신실에 관한 최소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으로 존속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구내통신실의 면적기준은 관련 기술기준의 발전 등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일몰 유지 필요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미래부 검토의견	규제조정실	
					검토의견	판단근거
739	회계위반 관련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	회계위반 관련과징금부과 기준 금액 산정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규제유지	규제유지	회계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처분 기준으로 규제의 존속 필요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과징금 산정기준은 당해 산업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것으로서 주기적인 검토 필요
740	선불통화 사업자의 의무	선불통화사업자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율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미래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담	선불통화 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규제유지	규제유지	사업자의 자율시책수립 및 필요시 관련 자료제출의무는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제도의 유지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선불통화 서비스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자료제출의무는 조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몰유지 필요
741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가입	선불통화 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규제유지	규제유지	사업자의 보험가입의무부과는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선불통화 서비스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보증보험가입금액은 조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몰유지 필요
742	선불통화 서비스 제공에따른 자료제출	선불통화서비스 제공에따른자료 제출	선불통화 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규제유지	규제유지	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는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제도의 유지필요성이 인정됨
				일몰유지 (3년)	일몰유지 (3년)	제출자료의 범위 ¹⁾ 는 해당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몰유지 필요

- 1) 혈압, 혈액 등 일반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 2) 시설, 인력, 과학기술자료 보유 등
- 3)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전시·조사연구·간행물 제작배포
- 4)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실
- 5) 위원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2개월 분량의 방송내용을 보관
- 6)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등
- 7) 자본금·출자총액 등
- 8) 이용자보호계획 수립여부, 인력, 재정능력 등
- 9)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및 접속료, 설비제공대가, 보편적 역무손실 보전금 산정 등
- 10) 대차대조표, 서비스 요금, 과금단위, 유효기간, 장애발생시 대책 등

(8)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신기술이 적용된 고화질 3D 방송을 지상파 정규채널(KBS, MBC, EBS, SBS)에 편성하기 위한 방송표준방식 기술기준 개정사항으로서 고화질 3D 방송, 기준·부가영상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방송신호의 표현형식과 영상신호·다중화 조건을 규정(신설)

☞ 개정안은 최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고화질 3DTV 방송방식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실험·시범 방송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3DTV 방송표준의 적용대상인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의 경우 이미 시범방송을 통하여 관련 기술·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신기술이 적용된 고화질 3D 방송을 지상파 정규채널(KBS, MBC, EBS, SBS)에 편성하기 위한 방송표준방식 기술기준 개정사항으로서 고화질 3D 방송, 기준·부가영상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방송신호의 표현형식과 영상신호·다중화 조건 규정(신설)

☞ 개정안은 최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고화질 3DTV 방송방식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실험·시범 방송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3DTV 방송표준의 적용대상인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의 경우 이미 시범방송을 통하여 관련 기술·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교육기관³⁸⁷⁾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인터넷중독 현황 및

387) 유치원(유아교육법) 및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사례, 인터넷중독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함(신설)

- ☞ 인터넷 중독은 그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교육과 인식제고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실시 빈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을 정함(신설)
 - ☞ 공정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지정 및 취소 등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증기관 지정기준은 인증심사 능력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인증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및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인증기관에 대해 업무 관련 신고의무 및 매년 인증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신설)
 -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직무 관련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통해 품질인증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업무 관련 신고의무 및 인증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는 인증기관의 심사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그린인터넷인증 또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시에 대해 유사표시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신설)
 - ☞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범위 내에서 과태료 기준이 설정되었고 가중 또는 감경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유사 입법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방송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기존 규정이 방송법 상 유효기간 만료(10. 6월)로 폐지되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운용 범위를 재규정(신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RO의 채널운용범위를 재규정³⁸⁸⁾하여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채널운용범위는 기존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공익채널을 미운용한 경우 과태료(2천만원) 부과(신설)
- ☞ SO 및 위성방송에 대한 공익채널 의무 운용의 취지를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종교·장애인복지채널 등 기타 의무운용채널을 미운용한 경우와 비교 시에도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 방송법 개정안무선설비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보호기 성능을 국제표준(ITU-T K.12)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에 맞게 광분배기·허브 등 다양한 설비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단자함의 최소 크기를 규정(강화)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에서 결정된 보호기 성능 기준을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상전압으로부터 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하고 국가 간 기술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방송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국선단자함 최소 크기를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및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협정 체결·권한 위임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공익성 심사 사유로 규정(강화)

388)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의 전환 정책 및 방송·통신 융합 추세 반영

- ☞ 동 규제는 기간통신역무의 공익을 해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기간통신역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며 군사, 치안 등 국가 중요통신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 확보라는 편익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상위 법률에서 자급 단말기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규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제공 범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강화)
 - ☞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별로 규격이 달라 각각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휴대폰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통사가 규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동 규격정보는 휴대폰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시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음성통화, 긴급통화, SMS, MMS 등에 대한 것으로서 다양한 자급 단말기 제조·유통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편익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가 분실 등으로 신고되면 해당 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해당 장치의 접속 확인 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차단(강화)
 - ☞ 동 규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공유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실 신고된 단말기가 다른 이통사에서 이용되는 경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비용이 소요되나 단말기 분실 및 부정사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사업계획서) 및 심사기준 규정(강화)
 - ☞ 국경 간 공급은 외국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협정체결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승인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현행 승인심사 시 제출 및 검토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에 따른 편익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IPTV방송제공사업자에 대해 방통위가 선정한 공익채널을 3개 이상 편성할 의무를 부과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하고 방송내용 기록·보존 의무 부과(신설)

- ☞ 현재 모든 IPTV 방송 제공사업자는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채널을 자율적으로 편성중이며 IPTV는 100개 이상 채널에서 실시간 TV방송 송출이 가능하여 공익채널(3개) 운영에 필요한 채널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고 방송법상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도 공익채널 편성의무가 있고 시청자의 복지향상이라는 편익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IPTV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만 규정된 시정명령 대상을 IPTV 콘텐츠사업자로 확대(신설)
 - ☞ 방송법에서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IPTV법상 방송콘텐츠사업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방송콘텐츠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상위법 제12조에 명시된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범위 및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대학이 자료 또는 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할 의무를 규정(신설)
 - ☞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범위는 대외적으로 통용되는 전공분류 체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려는 대학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규정되었고 자료 및 개선이행계획 제출은 학점이수 인턴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³⁸⁹⁾을 정함(신설)
 - ☞ 공정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지정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은 인증심사 능력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미래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환경·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정확한 유통실태 파악에 필요한 경우

389) 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조직과 인력 ③ 설비와 환경조건 ④ 인증업무 절차 ⑤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관련 단체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요청(신설)

- ☞ 동 규제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수직적, 종속적인 유통구조에 따른 불공정 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 항목 및 자료제출 요구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정책 도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판단되며 동 조사는 통계청과 협력하여 국가승인 통계로 수행될 예정이므로 규제집행이 충분히 가능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임시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 관련 자료³⁹⁰⁾ 제출 의무 및 보증보험 가입 관련 기준³⁹¹⁾ 규정(신설)
 - ☞ 무분별한 임시허가 신청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시허가 대상 및 허가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신규 기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한 사후구제라는 편익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임시허가 취소 후 해당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계속한 자에 대해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신설)
 - ☞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가중·감경 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사 법령 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비교 시에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상위 법령에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보유해야 할 전문인력,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을 정함(신설)
 - ☞ 동 규제는 공정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기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인력, 설비, 운영 요건 등의 세부기준 검토 결과 인증심사 능력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며 품질인증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제고할 수 있다는 편익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90) ① 보증보험증서 사본 ② 제공하려는 기술·서비스의 주요 사항과 이용요금에 관한 자료 ③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지침

391) 보증보험의 기간, 갹신임무, 가입금액 산정기준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재 하도급 사전승인 제외대상은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SW)’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 등록되어 가격정보가 공개된 상용SW’만 제외대상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 지급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없도록 대금지급 방식 평가항목 배점수정(강화)
- ☞ 현행 규정 상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SW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발주기관, SW사업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외 또는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하도급 사전승인 제외 대상을 ‘조달청과 단가 계약 체결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³⁹²⁾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발주 시 하도급기업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를 확산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 의결

392)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생략)

3. 문화체육관광부

정재환 사무관

(044)200-2438 jjh0223@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2013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 2013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여행업보증보험 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 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1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1건, 강화 18건 등 총 3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9건 중 10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건은 철회권고하였으며, 2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51회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51회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2	강화 2 비중요 2
3. 저작권법 개정안	제480회 분과위 (2013.2.4)	원안의결3 개선권고1	신설 2, 강화 2 중요 3, 비중요 1
4.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제353회 예비심사 (2013.2.8)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5.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300회 본회의 (2013.2.15)	원안의결1 개선권고3 철회권고1	신설 4, 강화 1 중요 5
6. 관광진흥법 개정안	제481회 분과위 (2013.2.15)	원안의결2 개선권고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7.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 제정안	제301회 본회의 (2013.2.28)	철회권고1	신설 1 중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2013년도도서관의저작물복제· 전송이용보상금기준 개정안	제356회 예비심사 (2013.3.1)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9. 201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제356회 예비심사 (2013.3.1)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58회 예비심사 (2013.3.15)	원안의결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11. 여행업보증보험 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개정안	제361회 예비심사 (2013.3.29)	원안의결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63회 예비심사 (2013.4.12)	원안의결2	신설 2 비중요 2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63회 예비심사 (2013.4.12)	원안의결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85회 분과위 (2013.4.12)	원안의결3 개선권고2	신설 3, 강화 2 중요 3, 비중요 2
15. 문화체육관광부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 심사안	제490회 분과위 (2013.7.8)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10회 본회의 (2013.8.30)	개선권고2	강화 2 중요 2
17.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312회 본위원회 (2013.09.27)	개선권고1	신설 1 중요 1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89회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7 개선권고 10 철회권고 2	신설 22, 강화 17 중요 16, 비중요 23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복합유통게임업소³⁹³⁾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을 적용하고,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강화)

39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와 출입제한업소로 나뉘어짐

- ☞ 기존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전체에 적용하고 있던 청소년 출입시간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규제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또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제338회 예비심사 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한 바 있으므로, 동일하게 원안의결함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투명 유리창 설치, 잠금장치 설치 금지 등)(강화)
 - ☞ 본 시설기준은 제338회 예비심사('12.10.19)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한 안건으로 법제심사 과정에서 재입법예고되어 재상정된 안건이므로, 원안의결함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콘텐츠 이용 공간 내 화장실, 욕조 등 설치 금지 시 영업정지 등)(강화)
 - ☞ 본 시설기준은 제338회 예비심사('12.10.19)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한 안건으로 법제심사 과정에서 재입법예고되어 재상정된 안건이므로, 원안의결함

(3) 저작권법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저작물을 '공공기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에 게재되어 교육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그리고 '학교 입학시험 등에 필요하여 공중송신한 경우' 에는 저작권자 동의없이 저작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강화)
 - ☞ 수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유사 입법례(재판 목적 이용시 동의 불필요)를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고, 저작권 범죄 수사 등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함 또한 교과용 도서 게재, 입학시험 등의 경우 공중송신 허용은 저작물 보호를 위해 복지방지조치를 의무화(동법 시행령 제9조)하고 있고, 교과용도서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동법 제25조제4항)되어 있으므로 원안의결함
- 허위저작권 등록자의 저작권 등록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신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허위등록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등록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고, 공정한 직권말소를 위해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
- i)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ii)벌금형 등(동법 제105조제3항)을 선고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iii)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대표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동법 제105조제4항)을 받은 경우 당연퇴임하도록 하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미이행 시 업무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iv) 저작물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 중 일부를 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강화)
- ☞ (i , ii , iii) 저작권료를 수수하고, 분배하는 저작권위탁(또는 신탁)관리업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당연퇴임,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인정되나, 저작권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당연퇴임 등을 명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부합하지 못함. 따라서 당연퇴임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함
(iv) 저작물을 일부 신탁하도록 한 것은 저작권자 고유의 권리이고, 다수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
- 위법한 저작권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상향입법하였으며, 저작권 인증없이 인증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신설)
- ☞ 기존 시행령 상의 내용에 비해 완화된 내용으로 상향입법하였고, 과태료 처분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4)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세부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신설)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기준(발취요약)

- 제1군 : 주근무시간 30시간 이상 100% 인정 등
- 제2군 : 연간 8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인정 등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인정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력인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5)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호텔업의 종류로 ‘소형호텔업’을 신설함(신설)
 - ☞ 다양한 특례가 인정되는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부족한 객실문제 해결 및 호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함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함(신설)
 - ☞ 동 사업은 이미 「수상안전레저법」에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점검, 영업제한 등 관리감독 규제사항을 적용받고 있음.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보다 규제가 완화된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사업지원과 육성이라는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광수상레저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신설하도록 개선권고함
-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동 시행령 제2조제1항)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강화)
 -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옥체험업 등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지원근거를 마련(’11.7.21.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한 바 있음. 반면 개정안은 동 사업을 규제가 강화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여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려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를 권고함
- 소형호텔업, 관광수상레저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함(신설)

※ 소형호텔업 기준(발체요약)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 갖추고 있을 것.
- 부대시설 중 단란주점 영업 등은 둘 수 없음

※ 관광수상레저업(발체요약)

- 장비 및 기구 계류시설, 보관장소 등을 갖추어 것
- 화장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것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소형호텔업은 주거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유흥주점 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관광수상레저업, 한옥체험업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지정기준을 규정하도록 철회권고함
- 소형호텔업, 관광수상레저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을 신설함(신설)
 - ☞ 관광수상레저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정도 철회권고하였으며, 소형호텔업은 기타 호텔업과 비교할 때 과징금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함

(6) 관광진흥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표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신설)
 - ☞ 관광표지는 해당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정보이므로, 관광표지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부착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 관광사업자 중 등급을 받지 않거나, 등급판정 주기가 지났음에도 등급을 허위로 부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신설)
 - ☞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관광숙박시설의 등급제 적용 대상을 관광사업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광사업자에게 등급결정 신청의무를 부과함(강화)
 - ☞ 국가에 의한 등급제 의무화가 되면 일률적 기준으로 시장 등급이 정해져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따라서 민간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철회권고함

(7)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 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강화)

※ 시정권고 기준(발체요약)

- 직접 게임 운영 방식 : 1인의 1개월간 구매가능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 이하여야 하며, 베타한도는 그 1/30을 초과할 수 없음
- 간접 게임 운영 방식 :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음 등

☞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원칙에 따라, 고시에 직접적인 규제를 정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게임물 제공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 부과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회권고함

(8) 2013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보상금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2013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보상금 기준을 판매용에 한하여 출력 20%, 전송 25% 인상함(강화)

☞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29.7%)을 고려하여 보상금 기준을 인상한 것으로 원안의결함

(9) 201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201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함(강화)

※ 보상기준(발체요약)

-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보상 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보상금 지급개선 연구(’09.11)’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2010~2014년까지 매년 6.2%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보상금 세부기준도 2012년도 대비 6.2% 인상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함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³⁹⁴⁾을 미납한 상영관 경영자에게 미납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제25조 2의 5항)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제25조 2의 6항)하도록 함(신설)
 - ☞ 부과금 미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부과금의 준조세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며,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미납금의 10~30%)보다 낮아 실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담은 감소하므로 원안의결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발권 및 상영관 관련 정보를 통합전상망에 전송할 때 ‘고의 누락 또는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신설)
 - ☞ 영화상영관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상영영화 등의 자료 수집을 위해 통합전상망 정보가 고의 누락 또는 조작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규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영화업 신고 또는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사실상 폐업상태인 영화상영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함
- 비디오물감상실업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함(강화)
 - ☞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설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함

394) 입장권 부과금 :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

(11) 여행업보증보험 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여행업자는 가입금액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제4조 2항). 피보험자(업종·지역별 협회장)는 보증보험 등의 기간만료 30일 전에 여행업 관할등록기관의 장에게 기간만료 여부를 사전 통보(제4조 4항)해야 함(신설)
 - ☞ 여행피해자 보호장치인 ‘매출액 대비 보험의무가입금액 확보’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의한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추가적인 규제비용 발생이 거의 없으므로 원안의결함
- 여행피해 변상금 지불요청을 받은 업종·지역별협회장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간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피해사례를 접수하도록 규정함(강화)
 - ☞ 현재에도 업종·지역별 협회장은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해 피해보상사실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안의결함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영업자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 ‘노래연습장 내부의 실 구획 수’ 등을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노래연습장 양도·양수에 따라 영업자가 변경등록을 할 때 ‘행정처분 등에 관한 내용고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또한 노래연습장 영업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할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신설)

- ☞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에서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 소재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래연습장 내부의 실 구획 수 변경 시 신고의무 부과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제2호를 준용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
- 또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내용고시 확인서’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
- 노래연습장 영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를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반복하여 하는 경우,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함(강화)

- ☞ 법제처 법령정비계획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 대상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서 인터넷신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표시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강화)
 - ☞ 제258회 본위원회(‘11.5.26)에서 심의 완료된 안건으로,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어 재상정됨
-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사업자는 피해자의 조정신청사실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신설)
 - ☞ 제258회 본위원회(‘11.5.26)에서 심의 완료된 안건으로,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어 재상정됨
- 정정보도 등 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시 알림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신설)
 - ☞ 제258회 본위원회(‘11.5.26)에서 심의 완료된 안건으로,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어 재상정됨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3, 강화 2)

■ 심사내용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종전 6년 이내)에 사업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도록 함(강화)
 - ☞ 골프장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8개 법령의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므로, 착공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상적 사업수행에도 제약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착공기한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개선권고함

-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변경 신고기한 위반 시 제재조항을 신설함(신설)
 - ☞ 변경신고 기한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함
-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신설)
 - ☞ 규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규제위에서는 규제사항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수정함

개정안	수정안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강화)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등록, 신고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므로, 등록취소 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함
- 체육시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와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 종전 영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함(신설)
 - ☞ 입법 미비사항을 악용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위를 보완하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원안의결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5)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경륜·경정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총 6건의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경륜·경정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 심판의 자격과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규격	경륜·경정법제7조/시행령제6조, 제7조,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제완화/일몰연장(3년)	규제완화/일몰연장(3년)
승자투표권의 발매	경륜·경정 경주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	경륜·경정법 제9조제1항, 제3항/시행령 제11조	규제유지/일몰삭제	규제유지/일몰연장(3년)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종사자 연수 제도	신문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제도를 설치·운영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제유지/일몰연장(3년)	규제유지/일몰연장(3년)
수익금의 사용	경륜·경정 경주사업자의 경주 수익금 사용범위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사용)시행령제22조(수익금의사용)	규제유지/일몰삭제	규제유지/일몰연장(3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방문화원'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2, 제20조	규제완화/일몰삭제	규제완화/일몰삭제
수탁사업자의 위탁 운영비 취득금액 제한	수탁사업자가취득할 수 있는 금액 제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규제유지/일몰삭제	규제유지/일몰연장(3년)

☞ 6건에 대해서 규제유지·완화에 원안동의하였으나, 일몰설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륜·경정 경주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발매방법 등 3건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유지하는 것을 개선권고함

(16)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온라인 포커, 고스톱 등 웹보드 게임물 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신설)

※ 준수사항(발췌요약)

- i 이용자 1인의 1개월간 구매가능한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 이내
- ii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는 1만원 이내 / 1일 한도 초과 시 48시간 동안 이용시간 제한
- iii 이용자는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고,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진행 시킬 수 없어야 함
- iv 게임을 이용할 때마다 공인인증 등 본인확인을 하여야 함

☞ 웹보드 게임 자체는 사행성 게임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사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통한 현금 전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i) 게임업체가 2005년부터 자율적으로 실시 중인 사항으로 구매금액 한도를 제한해도 이용자는 소액 무료충전을 통해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원안의결함
- ii) 1일 결제 한도는 웹보드 게임 종류별 운영방식, 규모,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월간결제한도의 1/30~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하고, 48시간 동안 게임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직접적 제한에 해당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여 48시간 → 24시간으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함
- iii) 게임상대방 선택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친목도모 등 목적으로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특정금액 이하 소액방, 무료 게임머니 전용방 등 특정한 경우 상대방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권고하였음
게임 자동진행 금지의 경우 게임 속도를 높여 베팅 규모를 늘림으로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원안의결함
- iv) 게임 접속시 마다 휴대폰 인증 등을 하는 것은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므로, 본인인증 횟수를 분기별 1회로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제출 및 보고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1천만원)을 신설함(신설)

☞ 자료·보고요청, 시정 조치결과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함

- ※ 자료요청, 보고요청 위반 시 : 1백만원 / 시정명령 조치결과 미보고자 : 2백만원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7)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의료호텔업은 ① 연간 투숙객 중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50% 이상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② 위치규정(의료기관으로부터 1km이내), ③ 내·외국인 투숙현황 보고 의무 신설 및 ④ 의료호텔업 등록기준(아래)을 신설함 (신설)

※ 의료호텔업 등록기준(발체요약)

- i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 또는 층별로 설치
- ii 의료관광객 숙박 객실로서 욕실 등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
- iii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 ☞ ① 의료호텔 운영 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국인 수용최대치를 설정(연간 30~50% 등)하는 방식으로 개선권고함
- ② 획일적 거리제한은 지역별 입지조건, 적정부지 확보 등을 어렵게 하고, 투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회권고함
- ③ 보고 조항 중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철회 권고함
- ④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는 예시규정(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을 넣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함

그 외 다른 기준 등은 원안의결함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게임물 기술심의 대상을 현행 사행성 게임물에서 경품지급 게임물까지 확대함(신설)
- ☞ 현재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대상과 기술심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집행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을 동일하게 두는 것으로 원안의결함

4. 문화재청

송지영 주무관

(044)200-2437 yonha999@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5개의 법령의 신설 3건, 강화 5건 등 총 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 중 1건은 개선권고,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제478회 행정사회분과위 (2013.1.4)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56회 예비심사 (2013.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67회 예비심사 (2013.5.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369회 예비심사 (2013.5.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490회 행정사회분과위 (2013.7.5)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77회 예비심사 (2013.7.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서울 송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81회 예비심사 (2013.8.1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7 개선권고1	신설 3, 강화 5 중요 1 비중요7

나. 201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2012년 12월 31일에 일몰도래하는 '문화재 매매업 허가' 규정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여부 등을 심사
 - ☞ 문화재 보존 및 불법 유통에 따른 사회적 피해 등을 감안할 때 매매업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규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재산적 가치로 인해 국내외 음성적 유통 가능성이 높은 점과 1999년 신고제 전환 이후 관련 범죄증가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몰 삭제 요청안에 원안동의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문화재매매업 허가	문화재 매매 등 영업의 허가제 운영	문화재보호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규제유지 일몰삭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고(현업 미종사자 제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 이후 5년마다 5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모두 받도록 한 것을 5년 동안 기한 내 어느 때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최신 수리기술의 습득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보수교육의 취지와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재수리기술자도 문화재수리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의무보수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가로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이결

(3)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궁·능원 및 유적에서 무속행위·방언(放言),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등을 하는 자에게 관람중지, 입장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문화재인 궁·능원에서 무속행위 등을 하는 자로 인해 다수의 관람객이 피해를 받고 문화재 관람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규정 없이, 관람중지 및 입장제한 등 최소한의 제재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문화재 매매업자가 영업장소와 상호를 변경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강화)
- ☞ 그간 매매업의 영업장소 및 상호 변경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가 임의로 허가 방식으로 처리하여 매매업자의 부담이 있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신고제로 명문화하여 이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으며, 문화재매매업은 문화유산의 이력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매매·교환 실태, 보유현황 등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 영업장소와 상호 등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규제 내용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목조건축문화재 등에만 설정된 금연구역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하고 관광객 등이 구역 내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강화)
- ☞ 개정안은 문화재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연구역 확대, 인화물질 휴대 제한 등은 신설하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고 인화물질을 휴대한 선의의 관광객 다수를 불법 행위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화물질 휴대 제한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법제처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적용기간, 처분일시점 등)을 정하여 위반 차수별 집행기준을 명확히 규정(강화)
 - ☞ 기존의 행정처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서울 송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송례문을 관람하는 자가 인화물질, 주류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음주·무속행위·제사 등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람중지·입장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신설)
 - ☞ 개정안은 화재·파손 등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한 수준도 인화물질 소지, 음주, 무속행위 등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방송·광고 등의 촬영은 문화재 훼손가능성이 높고 일반 관람객의 불편을 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송례문 촬영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신설)
 - ☞ 촬영행위에 따른 송례문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객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등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장소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가능성이 높고 일반 관람객의 불편을 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송례문 장소 사용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신설)
 - ☞ 장소사용 행위로 인한 송례문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객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등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원자력안전위원회

송지영 주무관

(044)200-2437 yonha999@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등 6개 법령 등에 대해 강화 10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음
- 심사대상 10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1회 예비심사 (2013.6.7)	원안의결4	강화 4 비중요 4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제388회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2	강화 2 비중요 2
3.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개정안	제386회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4.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제495회 분과위 (2013.10.25)	원안의결1	강화 1 중요 1
5. 특정해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92회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6.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6)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10	강화 10 중요 1 비중요 9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허가대상을 기존 사업소에서 출장소까지 확대하고 그 허가기준을 조정하고, 비파괴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또는 폐지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안 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함(강화)
 - ☞ 방사능 발생장치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출장소를 사용허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작업장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도 유사한 허가체계를 구성하는 등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기본교육(위원회 실시)과 직장교육(자체 실시)으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고, 기본교육을 평균 60점 이상으로 통과해야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또한 각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직장교육) 또는 승인(기본교육) 받도록 함(강화)
 - ☞ 방사선투과검사 등 고위험 분야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은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체 교육시간도 일부 조정이 있을 뿐 종사자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현재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자의 보수교육을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던 것을 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받도록 변경(강화)
 - ☞ 조종사 면허 등의 특성 및 원자력발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타 방사능 관련 면허와 달리 소속기관에서 자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왔으나, 각 면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이해관계자 이견 또한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방사선투과검사 관련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보고주기를 분기별로 하던 것을 작업 시마다 확대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눈, 피부, 신경계 등을 추가하며(현재 혈액검사만 의무실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강화)
 - ☞ 현재 방사선투과검사 관련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보고가 분기마다 이뤄짐에 따라 실제 피폭시점과의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하여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작업 시마다 피폭방사선량을 기록·보관하도록 해오고 있으며 보고방식을 전산 입력 방식으

로 바꾸어 자동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부담이 적음.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동일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임에도 적용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내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원자력사업자가 3년마다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하도록 하던 것을 물리적 방호와 관련한 사고 발생 또는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수시로 위협을 평가하여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시설변경에 따른 물리적방호체계 설계, 운영 및 변경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보완하도록 함(강화)
 - ☞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원자력시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기준위협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IAEA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권고(INFCIRC/225, '11년 5차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요건을 일부 강화함(강화)
 - ☞ IAEA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권고가 2011년 5차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현행 법령은 1999년 4차 개정분까지만 반영) 피규제자인 원자력사업자가 기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우려가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대상을 추가하고(57개 → 66개), 위원회 보고사항 중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사항 전체를 공개하도록 함(강화)
 -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원자력사고 등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의 배상/보상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해야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보상계약(또는 공탁)의 계약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원자력손배법상 배상책임한도와 동일하도록 약 5천억원(3억 SDR)으로 상향(강화)
 - ☞ 상위 법령의 취지 및 국민의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계약금액 상향의 필요성이 인정됨. 원전 인근 거주 주민수가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원전사고시 대규모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고 상향된 계약금액이 해외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며 추가적인 비용(약 120억원)은 피규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했을 때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시 시설허가기준에 미달하거나 계량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에게 시정·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행정조치 절차가 미비하여, 구두명령·행정공문 등으로 처리해오던 시정·보완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절차를 규정함(강화)
 - ☞ 원자력안전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대상이 원자력사업자에 한정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예산이 필요치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6)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IAEA,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등 국제기준에 따라 방사선원(放射線源) 보안기준을 확대하고, 의료피폭·방사선투과검사작업의 안전관리 및 방사능물질 폐기시설의 화재방호시설기준을 강화(강화)
 - 방법 및 보안 조치를 해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기준 적용대상 및 관련시설을 확

대하고 방사성동위원소의 위험도에 따른 보안기준 차등 적용

- 기존에 환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만 방사능 의료피폭을 관리하던 것을 환자, 배태아, 모유수유 중인 유아, 간병하는 가족 또는 친지, 방사선을 이용한 의생명 연구대상으로 참여하는 연구자원자로 확대하고 임신 또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방호절차 이행의무 등을 부과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은 대체 검사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함. 이동사용 작업장의 외부방사선량률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관리 및 일반인 접근여부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장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함
-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에 비가연성 또는 내화·내열 재료 사용, 소방시설설치, 폐기시설 등의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계통·기기에 대한 화재방호능력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화재위험도분석 수행 의무를 부과함
- ☞ 동 규제는 IAEA 및 ICRP 등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민과 관련 종사자의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제9절 |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이아연 사무관

(044)200-2441 zinc0705@pmo.go.kr

이성용 사무관

(044)200-2442 leesy@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제정안, 정신보건법 개정안,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7건, 강화 41건, 존속기한 연장 4건 등 총 7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2건 중 4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6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3.1.21)	개선권고 1	존속기한 연장 1 중요 1
4. 치과 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3.2.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3.2.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3.2.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9. 의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3.4)	원안의결 6	강화 6 비중요 6
10.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3.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안	예비심사 (2013.3.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3.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3.4.2)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4.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3.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안	예비심사 (2013.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3.5.29)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6.17)	원안의결 4	신설 2, 존속기한 연장 2 비중요 4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6.17)	원안의결 2	신설 1, 존속기한 연장 1 비중요 2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6.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7.26)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22.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3.9.1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3.10.16)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3 중요 1, 비중요 4
25. 정신보건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0.18)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비중요 6
26.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9. 기초연금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3.1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3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3.11.2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34. 의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6.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같은 과징금 적용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39.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행정사회분과위 (2013.9.2)		
40.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행정사회분과위 (2013.9.16)		
계		원안의결 68 개선권고 4	신설 27, 강화 41 존속기한 연장 4, 중요 9, 비중요 63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금액이 상향(100만원 → 300만원)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강화)
 - (기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 (개정안)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동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 위임 범위(300만원 이하) 내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두었으며,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가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신설)
 -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한 5천만원 이상 고의·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2.10.22)되어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 공개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 및 국세, 관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도 고의·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료 고의·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예비심사 307회에서 비중요 규제로 심사, '12.5.7)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준속기한 연장 1)

■ 심사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방송 광고시간 제한(오후 5시~ 7시)하는 규정의 효력 존속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기한을 3년 연장('13.1.26 → '16.1.26)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2의 규정은 2016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어린이비만 등 잘못된 식습관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간의 인과관계 등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조사기간이 짧아 식습관 개선과 비만을 감소에 대한 효과검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TV광고제한과 어린이비만과의 관계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의 한계로 불명확하고, KBS 등 주요 방송국의 어린이프로그램 시간대가 오후 3시부터 5시에 집중되어 있고, 초등학교의 평일 TV 주 시청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이어서 TV광고제한시간대를 현실과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에는 동의하나, 효력연장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광고제한과 비만과의 상관관계, 현실에 맞는 광고제한 시간대 등을 조속히 검토하도록 중요 규제로 보아 개선권고

(4) 치과 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인턴 수련 치과병원 지정기준에 '연간 퇴원환자 30인 이상' 실적을 추가하여 심도있는 수련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강화)
- ☞ 단순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퇴원환자 관리 등을 통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학회 및 수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기존 신설에 따른 수련기관 등 피규제자의 별도 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손과 얼굴을 닦기 위해 사용하는 위생처리업(물수건)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신설(강화)
- * 납, 수은, 비소, 카드뮴, 6가 크롬 각각 20mg/kg 미만

- ☞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인 물수건에 대한 규격기준 관리를 통해 중금속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용도로 사용하는 물휴지(공산품)에 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규제편익 대비 위생처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검사비용(6개월, 1회 18만원)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금지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강화)
 - (가중처분 적용기간)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 → 5년 이내 재위반하는 경우로 강화
 - (제공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강화(업무정지 1개월~해당품목허가취소 → 3개월~해당품목허가취소)
- ☞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 노력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관행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상습·의도적인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관련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타 위반사항에 비해 적발 여건 및 빈도의 차이가 있고, 계좌·자금 추적 등 사정기관 수사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금지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강화)
 - (가중처분 적용기간)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 → 5년 이내 재위반하는 경우로 강화
 -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법원판결로 정해지는 벌금액에서 사정기관 조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는 리베이트 수수금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 마련

- ☞ 의약품 유통 투명화 노력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관행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수수자에 대한 현행 처분기준은 벌금액 확정 등 확정판결 등이 없으면 수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행정처분이 불가한 상황임. 또한 수수자 처분기준은 상위법 위임범위(자격정지 1년 이내) 내에서 수수액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적절히 설정한 것으로 보임. 타 위반사항에 비해 적발 여건 및 빈도의 차이가 있고, 계좌·자금 추척 등 사정기관 수사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금지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강화)
 - (가중처분 적용기간)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 → 5년 이내 재위반하는 경우로 강화
 -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법원판결로 정해지는 벌금액에서 사정기관 조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는 리베이트 수수금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 마련
- ☞ 의약품 유통 투명화 노력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관행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수수자에 대한 현행 처분기준은 벌금액 확정 등 확정판결 등이 없으면 수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행정처분이 불가한 상황임. 또한 수수자 처분기준은 상위법 위임범위(자격정지 1년 이내) 내에서 수수액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적절히 설정한 것으로 보임. 타 위반사항에 비해 적발 여건 및 빈도의 차이가 있고, 계좌·자금 추척 등 사정기관 수사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의료법 개정안(강화 6)

■ 심사내용

-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전문의 수련병원·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정취소토록 함(강화)

- ☞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다른 사유와 달리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담당자의 자의적 집행에 따라 취소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의무적 지정취소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에도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강화)

- ☞ ㉠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환자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하며 그간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열람을 지연시키는 등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 해당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권을 보호해 주고 병원과 환자간 사소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현행은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후 3년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면허 취득 초기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차년도와 이후 매 3년마다 신고토록 변경(강화)

- ☞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는 정확한 실태 및 취업 상황을 파악을 통해 의료인력수급 및 관리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며,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되어있어 신고의무 1회 증가에 따른 의료인의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면허신고 시기에 대한 관련단체의 이견이 있으나, 면허취득 당해연도는 취업 준비 등으로 실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사업실적 보고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로 변경하고,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취소요건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교란행위자, 미등록기관과 거래자,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자, 사업실적 허위 보고자를 추가(강화)

- ☞ ㉢ 유치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의 기본정보 및 진료정보를 파악하여, 객관적·체계적 성과측정 및 시장추이를 분석하고 유치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마케팅 자료 등으로 활용 목적으로, 현행과 같이 연회 유치실적 조사시 적시성 있는 외국인환자 실적 통계 및 분석자료를 생성하기 어렵고, 등록기관의 경우도 유치실적을 지속적이며 심층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보고주기 단축의 필요성이 인정됨.

- ㉣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한국의료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활성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화하기 위해 유치업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 취소 사유 및 2년 이내 재등록 제한은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현행은 사무장병원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강화)
 - ☞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침해될 사익보다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욱 크므로 신속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폐쇄명령 사유로서 사무장병원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직권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나 명료한 법령 집행을 위하여 입법이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등) 및 특수의료장비(MRI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추가(강화)
 - ☞ 안전한 의료장비 사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의무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과태료부과의 법적 근거 및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고 향후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의무위반 수준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10)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노인복지법」 개정('12.10.22)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신설)
 -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제고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 위임 범위(300만원 이하) 내에서 위반 차수별로 세부 기준을 두었고, 타 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의 교육내용, 교육방법(집합 또는 인터넷 강의), 교육시간(1시간)을 정함(신설)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12.10.22)됨에 따라 교육내용, 방법, 시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별도 교육 없이 기존 교육과정(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방법, 시간 등이 타 입법례와 비교 시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2.12) 사항을 반영하여, 담배 포장지에 추가 표기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위치, 문구)을 규정(강화)
 - ☞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과 직·간접 흡연에 따른 건강상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 강화로 인한 포장지 인쇄 변경 비용과 비교해 볼 때, 경고문구를 통한 흡연율 감소 효과 등 국민건강 증진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12.10.22)에 따라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강화)
 - ☞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임 범위(300만원 이하) 내에서 부과 기준을 두었고, 타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에 '연금소득 등의 연간합계액 4천만원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강화)
 - ☞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의 일환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단, TF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개편의 큰 그림을 사전에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음)

(14)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령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공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법, 지정 취소, 사무국 설치 등의 사항을 정함(신설)
 - ☞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공공위원회 심의의 독립성과 운영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해외 사례(영국 연구윤리위원회 등) 감안 시 규제의 수준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령에서 위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기간(3년),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요건, 보고 의무(연 1회) 등의 사항을 정함(신설)
 - ☞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유사 입법례 감안 시 규제의 수준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시 리베이트 위반행위 관련 인증 결격사유 및 인증 이전·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취소 기준, 인증취소의 효과 등을 신설(신설)
 -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리베이트 위반기업으로 사후에 확정되었을 경우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치행정 원리상 ‘인증취소의 상세기준’을 정하는 것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히, ‘인증취소의 효과’는 상위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인증의 취소)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인증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인증취소와는 별개의 권리제한 사유이므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함. 다만, 개정안 내용은 법치행정 원리상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위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2013년 9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³⁹⁵⁾ 동의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신설 1)

■ 심사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신설)
-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장려하고자 시설주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착오가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고, 인증표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허위광고 예방 및 장애인 이용 착오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존속기한연장 2)

■ 심사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중 종사자 기준에 대한 존속기한 3년 연장(2012.12.31 → 2015.12.31)
-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성상 파견 등에 의한 간접적 고용환경이나 단발적 근로에 의해서는 적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종사자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규제 존속 필요성 인정, 동 규정의 존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유사사례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인력기준에 대한 존속기한 3년 연장(2012.2.17 → 2015.2.17)
- ☞ 방문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 및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향한 인력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간의 운영 실태 점검결과 소규모 요양서비스 시설의 난립 등 문제의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기준 유지가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95) 리베이트 관련 인증취소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인증결격사유 및 인증취소의 효과는 법률에 반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일반주민 생활지역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시 입소자의 생활환경, 입주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 개선(신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특성 상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입소노인 편의 증진, 주민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사례인 어린이 집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의 위치를 1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010년 2월 24일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2010년 2월 24일 이후 설립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한 인력기준을 적용(신설)
 - ☞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고,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력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협회에서도 인력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견이 없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규제수준이 적정하고, 3명 이상을 상근직으로 두는 것은 기관운영의 적정성 및 고용자 처우개선 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상근이 아닌 직원의 경우 실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여러 기관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인력기준 상향에 따른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존속기한연장)

■ 심사내용

-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력기준의 존속기한 3년 연장(2012.2.17 → 2015.2.17)
 - ☞ 방문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 및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향한 인력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간의 운영 실태 점검결과 소규모 요양서비스 시설의 난립 등 문제의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기준 유지가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010년 2월 24일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2010년 2월 24일 이후 설립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한 인력기준을 적용(신설)
 - ☞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고, 시설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력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협회에서도 인력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인

정하고 있어 이권이 없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규제수준이 적정하고, 3명 이상을 상근직으로 두는 것은 기관운영의 적정성 및 고용자 처우개선 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상근이 아닌 직원의 경우 실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여러 기관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인력기준 상향에 따른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 라는 소득요건을 추가(강화)
 - ☞ 동일한 규제(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 기 심사(제303회 본위원회, '13.3.29) 받아 원안 동의한 안건으로, 법제처 심사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재입법예고('13.6.5~6.12) 후 예비심사 안건으로 재상정되었으며, 당초 심사안보다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11.8.4. 공포, '13.8.5 시행)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토록 함에 따라 공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강화)
 - ☞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여 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는 등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13.8.5.)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결과 공개의 범위를 점수, 유효기간 등 객관적인 사실로 한정(제재처분 내용 비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모 선택권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라 보아 원안의결
- 아동학대 발생,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 위반 시설에는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신설)
 - ☞ 보조금 부정수령, 아동학대 등 고의·중대한 법 위반 시설의 경우,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모든 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위법시설 등 품질이 낮은 시설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평가인증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인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평가인증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비중요 규제라 보아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어린이집 설치기준 3차 위반 시 시설폐쇄토록 하고, 간호사, 영양사 및 취사부 등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보육교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강화)

☞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영유아 건강·안전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동 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개정안은 설치기준 위반사항이 시정명령 후 3번 적발되는 경우 시설 폐쇄토록 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절한 규제이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 외 영양사, 간호사 등에 대한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現行 처분기준에는 동 사항에 대한 제재 세부기준이 없어 의무 이행이 곤란하고, 개정안은 보육교사 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흠결을 보완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2)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세보조용구 보험 급여 적용에 따른 자세보조용구 업소등록 및 관리기준(인력·시설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강화)

☞ 국립재활원에서 자세보조용구 업소등록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수정(인력기준)하여 고시로 규정한 것으로서, 자세보조용구는 의사 처방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맞춤 제작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격 요건 및 상담·제작·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이 필요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구입 후 제품의 훼손·마모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와 업체간의 다툼 방지를 위해 A/S 제공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 사례(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규정)를 고려할 때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요양병원의 편의시설에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경사로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시설규격을 마련(강화)

☞ 다수 노인들이 장기간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확보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예 기간(1년 6개월) 및 유사 입법례(노인의료복지시설)를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 3)

■ 심사내용

- 이용자가 알기 쉽게 법인묘지 등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을 게시대상에 추가하고 시설물 및 장례용품 강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처분 근거 마련(강화)
 - ☞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과 방법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하고 강매를 금지하며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유족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이나 장례용품 이용/선택권 보장 및 공정경쟁 측면에서 필요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최소화, 이용자와 관리자간 신뢰형성으로 선진장례문화 정착, 전국공원묘원협회에서도 장사시설의 폭리근절을 위해 동의하는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시설묘지 등에 대한 적립된 관리금 용도를 장사시설 보존과 관리 등 재해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 사용제한하는 법률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신설)
 - ☞ 장수한 사용료 및 관리금의 용도의 사용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시 처분을 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 없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분묘유실시 보수비용을 이용자에게 추가 전가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사용료나 관리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이나 불편을 줄이고 전국공원묘원협회에서도 동의하는 최소한의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장사시설폐지시 3개월 전에 유골 등의 연고자에게 폐지사실을 통보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이를 공고하며, 위반 시 과태료부과규정 마련(신설)
 - ☞ 장사시설폐지시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보의무규정을 통보기간을 정하여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도 폐지사실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폐지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 유족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장례문화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고, 무연고분묘처리절차 및 노인복지시설폐지시 3개월 전에 신고의 무규정과도 형평에 부합되며 전국공원묘원협회에서도 동의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장례식장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하고 장례용품 강매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근거 마련(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장례식장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할 뿐, 행정기관에 등록/신고/허가 등을 하지 않는 자유업이므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감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제로 전환하여 이를 방지하고, 칸막이 사이로 시체와 식당이 붙어 있어 추가적인 시설 및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시설물 사용 및 장례용품 강매 행위 금지(권익위 권고사항)는 이용자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임. 다만 처분규정은 공정거래법의 처분과 중복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법에서 규정함이 타당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강매금지 및 처분규정 신설로 장례식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한국장례업협회에서도 동의하는 적정 규제이므로 중요 규제로 보아

1.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 → 신고업으로 전환하고 설치 및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위반시 처분 근거 마련에 동의하되, 재검토형 일몰(5년)설정권고, 설치 및 안전기준 위반시도 과태료 등 현실적 의무확보이행수단확보 필요성 검토, 향후 안전·시설기준 및 처분마련시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 개선권고
2. 장례식장 등 시설이용조건으로 장례용품 등 강매금지에 동의하되 복지부와 공정위간 중복 조사 및 중복 처분방지를 위한 결과 통보 등 협의채널 마련 권고
3. 장사시설폐지시 3개월 전 연고자에게 통보, 무연고자는 공고, 신고없이 장사시설폐지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에 동의하되, 통보/공고의무를 미이행하거나 3개월보다 짧게 공고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없으므로 과태료 등 의무확보수단 마련 개선권고

-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묘지 등에 대하여 시설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철거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마련(강화)

☞ 불법사설묘지시설의 경우 철거하여 원상회복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폐쇄된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방치되고 있는 불법사설묘지시설을 철거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방치하는 경우보다 쾌적성, 편리성으로 인한 편익이 증진되고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명령 등과의 형평에도 부합되고, 전국공원묘원협회에서도 시설물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 적정 규제이므로 동의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5) 정신보건법 개정안(신설 2, 강화 4)

■ 심사내용

-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가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도록 규정(신설)
- ☞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권리 행사를 위한 절차적 규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시설 내에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행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1백만원 이하)는 현행

정신보건법상 가장 가벼운 처벌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정신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신설)
 - ☞ 근거에 기반한 정신건강정책 수립의 필요성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을 감안할 때 실태조사 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신질환 정보는 그 특성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므로, 시설·기관 등의 협조를 통한 자료 조사가 불가피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질환자 영양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설 개선, 사업 정지(1개월 내),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 마련(강화)
 - ☞ 정신요양시설의 영양서비스 제공 의무(제21조3항) 규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단순 수용이 아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 질환자를 입소시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제3조)이므로 본래의 설치 목적 미이행시 시설개선,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정신재활시설)의 사례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정신재활시설이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해당 시설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강화)
 - ☞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황 및 그 변경사항을 적시에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규정은 변경신고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제재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의무 등)를 감안할 때 규제의 수준이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에서 '2개월'로 단축(강화)
 - ☞ 현행 주기(1년에 1회 이상)는 지나치게 길어 자의입원에 부담을 주며, 재원기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긴 편임. 장기입원에 따른 치료비용 증가 예방 및 자의입원한 환자의 퇴원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퇴원 의사 확인 주기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신의학적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의 안정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및 유사사례 평균 입원 기간을 감안할 때 2개월 주기는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이(1) 정신질환이 있으면서,(2)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상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하고, ㉡ 정신의료기관등에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강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 비지발적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 장기입원에 따른 치료비용 증가 및 환자의 사회적응력 저하를 예방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하여 조기 퇴원을 촉진하고, 정신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의 안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및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3개월 주기는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에 ‘인증 이후에 리베이트 등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아서는 안됨’을 규정(강화)
 - ㉮ 현행은 인증 이전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미인증 또는 인증 취소가 가능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인증 이후의 리베이트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개위 분과위(13.5) 심사시 내용상 동일한 규제(당시에는 ‘인증취소기준’으로 고시에 규정)에 대하여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이후 총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강화)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위유형별 응시제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행위 유형별로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당해 시험(정지 또는 무효) 및 0~3회의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유사사례에 비하여 완화 또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신설)
 - ㉮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 상대적으로 급여지급수준이 높고, 조세로 일부가 지원되어 이중지원

논란이 상존하며, 관계부처 이견이 없고,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장애인연금수급자가 수급권 소멸사유 외에 「소득 또는 재산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의무 부여(신설)
 - ☞ 소득 및 재산 변동시 또는 결혼 및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장애인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수급예방 및 체계적 급여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에 추가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 제도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9) 기초연금법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공무원 등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신설)
 -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지역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고 급여의 재원에 조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조세가 재원인 기초연금까지 지급시 이중혜택 논란여지가 있고, 특수지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이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계부처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연금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적급여수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지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조사/질문권, 자료제공요구권 등은 현행과 동일하나 조사/질문 내용 중 인적사항을 추가(신설)
 - ☞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급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가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 정보 보유기관에 자료제공요청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정지 등 정확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수급자 등에 대한 조사/질문권을 부여하고,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하여 수급권의 발생·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 관련 공적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규제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수행자, 행방불명 또는 실종자 외에 해외체류기간이 60일(현행 180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동안 기초연금지급을 정지토록 강화(신설)
 - ☞ 기초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수급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적법 개정으로 국내거주 복수국적자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나, 사실상 국적상실자에 해당하는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게까지 기초연금 지급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해외체류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로 추가 규정하고, 연금지급정지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수급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타 제도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일시보육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설치기준 마련(신설)
 - 입지기준 : 보건·위생·안전을 고려,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시설기준 : 영유아 1인당 4.29㎡ 이상, 1층 이상 3층 이하에 위치, 목욕설비와 화장실, 소화구 및 비상구 설치 등
 - ☞ 법률위임사항인 일시보육서비스지정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부정지정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발생비용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편익이 큰 최소한의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일시보육서비스 지정취소사유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거짓/부정지정을 받은 경우 등)을 규정(신설)
 - ☞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부정지정받거나 필요기준 미충족시 또는 아동학대 시 지정취소사유로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편익이 크며 부정지정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어린이집 정보공시항목의 구체적 범위·방법 규정
법 위반 사실 명단공표대상을 구체화하고 공표 방법을 정함(신설)
 - ☞ 영유아보육법 개정(12.5. 시행)으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및 위반사실공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위임사항인 어린이집정보공시 범위/횟수/시기/방법 규정 및 위반사실 공표사항/절차/방법 등 구체적 마련이 필요하고, 정보공개 및 위반사실공표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자의 비용(권리제한)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익이 크고 이해관계인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정보공시의무 위반 및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 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강화)

- ☞ 신설된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근절시키기 위하여 법률위임사항인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필요,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행정처분비용보다 공시제도이행 및 아동학대근절의 편익이 큰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연면적 100㎡ 이상 + 5명 이상의 인력)을 규정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인력기준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마련(신설)
- ☞ 일자리희망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법제화되면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위임사항을 구체화하면서 최소한의 의무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입법례보다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2)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양성교육과정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시설장) 자격요건 부여를 위하여 교육대상요건, 교육기관 지정요건, 교육이수기준 등 마련(신설)
 - 교육대상 :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1급
 - 교육실시기관 : 대학 및 공공기관의 교육기관으로 한정
- ☞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은 교육기관의 역량과 신뢰성, 요양보호제도 안정적 운영 등을 종합고려하여 소관부처가 결정하고, 2013년 12월말 현재 5년 이상 요양보호사는 5,728명으로 예상되나, 이중 실제 관리자 교육신청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기관을 민간까지 확대시, 교육기관심사 등 많은 행정부담발생이 우려되며, 그간 요양보호사양성교육과정 행정처분사례로 미루어 볼 때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교육운영과 요양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지나친 사전규제로 보기 곤란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관리책임자교육과정은 상이하고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교육기관지정이나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상위법령에 없어 위임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상위법령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도 시행후 실제 교육수요자수 및 공급기관부족으로 인한 교육 수요자 불편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시점경과 후, 민간교육기관의 진입허용여부를 복지부에서 판단토록 효력상실형 일몰 설정이 필요하므로 원안동의하되, 교육기관지정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및 효력상실형 일몰규정(1년) 마련 개선권고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5)

■ 심사내용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규정(강화)
 - ☞ 구급차 관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며, 재난·재해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0만원의 과태료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유사사례(자동차관리법, 응급의료법 시행령의 타 위반사항)를 감안할 때 규제의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 법률의 구급차등의 운용 등록 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1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 '변경 통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구급차 사용 본거지 변경, 소유자 변경, 등록 말소의 경우'로 규정하며, ㉢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발급한 신고필증을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앞면에 부착하도록 규정(강화)
 - ☞ ㉠ 신고 기간인 '지체없이'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
 - ㉡ 구급차 통보·신고 시, 소유자를 기재하여 사용본거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경시에도 통보·신고 불가피하며, 구급차의 불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된 구급차의 등록말소시(폐차 또는 일반 승합차로의 전환 등) 변경 통보·신고가 필요함
 - ㉢ 구급차등의 신고필증 부착의무는 이미 신고를 한 이후에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구급차 등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발급받은 신고필증의 단순 부착에 불과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시·도지사가 이송업 허가절차에 따라 발급한 허가필증을 운용자가 구급차 앞면에 부착하도록 규정(강화)
 - ☞ 신고필증(흰색)과 달리 허가필증(녹색)을 부착함으로써 이송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구급차인지 이용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미 허가받은 이후에 발급받은 허가필증을 단순 부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 구급차 등의 운용 위탁시 위탁계약서에 구급차 허가·신고필증 번호 및 이송업 허가 번호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 구급차의 시설기준 및 응급구조사의 보수 교육 이행 여부에 대하여 운용 위탁한 의료기관이 6개월에 1회 이상 지도·점검토록 규정(강화)
- ※ ㉠ 구급차 등의 운용 위탁시 형식적 사항뿐 아니라, 실질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며, 인력·의료장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필증 및 이송업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구급차의 시설기준은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행 여부도 지속 확인이 필요함. 위탁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점검 의무를 위탁기관에 두는 것이고, 6개월에 1회 이상 지도·점검토록 하는 것은 유사사례(검역법, 장기이식법, 자동차관리법 등)를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 구급차에 요금미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 운영시 사용하고, 환자·보호자의 신용카드 결제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장비는 사용 후 소독하도록 하고, 구급차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규정(강화)
- ※ ㉢ 현재는 환자·보호자가 이송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기 곤란한 다급한 상황일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당 요금 징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급차 미터기 설치 필요하며, 신용카드결제기는 국비·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적정성 인정
- ㉣ 구급차의 병원균 오염도 검사결과 세균이 검출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구급차는 응급환자 및 면역저하 환자를 이송하여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4) 의료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원격의료의 범위가 의사가 의료인에게 원격 자문을 하는 것 외에도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등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 ㉠ 원격医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구비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서 현행 시정명령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규정 신설
 - ㉡ 원격医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를 규정(강화)

- ☞ ㉠ 원격의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구비 의무 위반시의 제재수단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외의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처방까지 하는 것으로서 시설·장비 미구비 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적정성 인정. 과태료 수준은 유사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으로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요로 원안의결
- ㉡ 원격의료의 범위가 환자 진료까지 확대됨에 따라 원격의료 시행기관 파악·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신고제는 원격의료 시행기관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가장 완화된 방안이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는 유사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요로 원안의결

(3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의료법(제58조의3)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또는 조건부 인증) 등급을 받을 것을 추가(강화)
 - ☞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있어 병원의 질적 부분에 대한 검증 강화 및 검증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적으로 시행하는 유일한 평가 제도로서 수련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적정성 인정. 국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수련병원 지정 기준으로 인증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요로 원안의결
- 수련병원(기관)이 수련시간 관련 항목을 포함한 수련규칙(수련 실시·지도·감독 규칙)을 작성·비치·보관 외에도 시행·제출 의무화(강화)
 - 해당 수련규칙 미제출시에는 전공의 수련업무 정지 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 처분
 - ☞ 과도한 수련시간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 규정상 이미 시행을 위해 작성·비치토록 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 시행·제출토록 하는 것에 불과하며 해외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으로서 전공의 수련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수련규칙 작성·제출 의무만 부과하므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 또한, 수련규칙 미제출시 처분(시정명령 후 전공의 수련 업무정지 또는 수련병원 지정취소)도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요로 원안의결

(36)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임상영양사 자격기준으로 만족해야 하는 실무경력(3년 이상)에 대하여 인정 기관을 규정
 - 해당 인정기관을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및 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규정(강화)
-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임상영양사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기관(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외에도 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추가 인정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 전문인력 배출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및 관련 행정기관 근무경력, 연구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유사사례(임상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 기관 기준)보다 완화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
로 원안의결

(37)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과징금부과징수요건인 ‘업무정지가 수급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신설)
- ☞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요건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서 규정하면서 세부요건은 위임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영업자체를 정지시켜 규제하기 보다는 영업을 보장하면서 금전납부의무로 대체함으로써 규제완화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
로 보아 원안의결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법령위반 시 1일 과징금에 위반행위별 업무정지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신설)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심한 불편을 주므로 불편감소를 위해 업무정지처분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대신(갈음)하여 하는 처분으로, 법령위임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보다 과중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위반사실 공표내용 중 법률위임사항인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강화)

☞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공표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요양기관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혼동방지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표항목 마련이 필요하고, 공표항목추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타 법령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행정처분의 적용기준 일부 조정(강화)

- 일반기준 마련 : ① 위반행위 차수적용 원칙, ② 둘 이상의 위반행위 시 처분의 우선순위 및 적용기준, ③ 1차위반시 지정취소(폐쇄명령) 근거, ④ 행정처분 경감 사유 등 규정

- 과징금 제외대상 규정 : 성폭행 등 종사자의 중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등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처분단계는 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폐쇄명령) 3단계로 하고 위반횟수를 1차 시부터 4차 위반 시까지 통일 규정

- 법률에서 신설위반행위 처분기준마련 : ① 업무정지기간중 급여제공, ②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③ 수급자 유인·알선 등

☞ 법률에서 신설위반행위는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기 적용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횟수를 늘려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성폭행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 처분기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타 법령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단체의 이견이 없고 불법행위금지를 통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9)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심사(복지부분)

■ 심사내용

- 총 10건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한 결과 6건은 규제유지를 하면서 재검토키한을 3년 연장

하고,

- 나머지 4건은 규제개선하되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 1건은 규제를 폐지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자의 신고,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중증장애인생산물품시설의 지정 등 3건은 규제개선을 하면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의결과	
				보건복지부	규개위
1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	부랑인시설 설치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준수 의무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제11조 별표1, 제12조 별표2/별표3	규제폐지 일몰폐지	규제폐지 일몰폐지
2	기부식품 제공사업자의 신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함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별표3	규제개선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3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를 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규제개선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4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시설의 지정	중증장애인생산물품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함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제개선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5	의료급여기관의 지정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기관개설신고 /허가시 의료급여기관으로 당연 지정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제유지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6	의료급여의 절차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제1차~3차 의료기관에 단계별로 신청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의3	규제유지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7	입양기관의 허가	입양기관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2	규제유지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8	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의 지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위반 시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규제유지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9	사설모지의 설치허가 및 (변경) 신고	사설모지설치자들의 법령위반시 과징금 처분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별표6,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5	규제유지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10	시설 또는 변경 명령	어린이집의 신고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	규제유지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제 3 장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40)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예비심사(보건의료분야)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의료법 시행령' 등 총 29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 27건에 대해서는 규제유지·폐지 등에 원안동의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의료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별표2)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그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여 제재조치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등 총 2건을 개선권고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제위
과태료	복지부장관의 업무 지도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한국보건 복지인력 개발원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의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별표2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수련병원(기관) 지정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전문간호사 과정등에 관한 기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정함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약사, 한약사의 신고	약사·한약사의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약사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국내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를 수급조절 한약재로 지정하여 수입량 조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4조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구급차 등의 운전자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 시 위탁계약서 명시 사항 및 제출기한 등을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5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일몰폐지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기준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응급의료시설 설치기준을 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9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표5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자격정지 등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관, 이송업자, 구급차 등 운전자)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별표1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	장기기증 등록 등의 관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장기 등 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지불 금액을 정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6, 시행규칙 제30조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의무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절차 및 신청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투약 관리기준 및 방법을 정함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투약 관리 기준 및 방법(고시)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보험료납부의무 및 사용자 일부부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부양요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수탁검사기준 제한	검사기관으로 수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 범위·검사기관의 인력, 수탁검사로 산정·청구방법을 정함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검체검사위탁에관한 기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	전문요양기관의 인정 신청 시 첨부서류 등 인정 절차를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원받고자 할때 제출해야 하는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한의학육성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준 설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영업의 승계	공중위생영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동일한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의 지정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고시)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허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지·통보 등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별표3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등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산정 기준을 정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7, 제11조의2 별표8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기관의 지정·등록 등	감독대상기관의 규정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6, 제58조 별표8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행정제재처분기준 (폐기명령)	생명윤리법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4, 시행규칙 제57조 별표7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및 허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같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함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의료기관과 처리업자의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 의무를 정함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8조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및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정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일몰폐지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유통질서문란(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하여 보험 상한금액 직권 조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8조제2항 제10호 [별표5] 3.나.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성용 사무관

(044)200-2442 leesy@pmo.go.kr

이아연 사무관

(044)200-2441 zinc0705@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약사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9건, 강화 31건 등 총 4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0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3.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3.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3.4.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4.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3.4.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4.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4.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 5.31)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3.5.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8.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3.8.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7.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약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2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9.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1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3.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3.12.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분야) 재검토규제 일괄심사안	행정사회분과위 (2013.10.1)		
29.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분야) 재검토규제 일괄심사안	행정사회분과위 (2013.10.1)		
계		원안의결 40	신설 9, 강화 31 비중요 40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 등의 안전성정보 정기보고 주기를 단축(현행 1년 → 매분기별)하고, 신속보고 대상이외에 외국정부의 안전성 정보의 보고방법 및 절차 명확화(강화)
 - ☞ 연 1회 정기보고로 인한 위해사례 발생시점과 보고시점간의 시차를 줄이고 의약품 위해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의약품 안전성 관리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 주기 단축으로 인한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서조항 신설 등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의약품국제협력조화회의, ICH) 등에 맞지 않는 사항은 미반영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구강청결용 물휴지 보존제 허용범위 강화(외용제 수준 → 내복용제 수준)(강화)
 - ☞ 주로 영·유아의 구강청결용으로 사용하는 물휴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7가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는 식품에 원료성 식품인 ‘코코아분말 및 코코아버터’와 함께 ‘코코아매스를 추가’(강화)
 - (과산화수소 함량 규격 개정) 30.0% 이상 → ‘30.0~50.0%’로 개정
 - (L-주석산수소칼륨 성분규격 강화) 중금속 규격을 ‘납 2.0ppm 이하’로 강화하고 불용성물질 규격 신설
 - (효모 성분규격 강화) ‘생효모, 액상효모’ 중금속 규격을 각각 ‘납 1.0ppm 이하’로 강화
- ☞ 식품 제조·가공시 필요불가결하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기준(CODEX)에서도 ‘코코아매스’에 대해 동 색소류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시킴으로써 기준 적용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제한 식품추가에 따른 규제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수준이고, CODEX, 미국 등 제외국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에 준하여 위해우려항목에 대한 성분규격을 강화한 것으로,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얻는 안전성 확보 및 불안감 해소 등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4)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시험 수수료 산정(13건 신설)
 - ㉡ 국가출하승인 의약품(백신 등) 출하승인 수수료 현실화(강화)
- ☞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및 출시경쟁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 등 규제품질 합리화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며, ㉠ 의약품 허가·신청·신고 시험 수수료는 유사민원 및 적정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고, ㉡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수수료는 국민건강 안전과 직결된 대부분의 백신류로서 2003년(당시 원가산정의 50% 적용) 이후 미인상요인 감안,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약품 시험 및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수수료 산정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계부처(기재부)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5)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료기기 중 전기·전자회로를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의 품질에 대한 국제기준 개정
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강화(강화)
 -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ICE 60601-1) 전면 개정[2판(1988) → 3판(2005)]
- ☞ 주요국의 전자 의료기기 국제기준 적용 시기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 및 국제조화를 통한 국산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준규격 개정으로 파급효과가 큰 제조 및 수입업체 및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3회)를 통해 등급별·품목별 순차적 도입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6)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료기기 국제조화회의에서 정한 국가간 규제차이를 없애는 표준화 문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 적용 등급 및 보건안전 잠재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는 의무적으로 적용(1·2·3등급은 선택적 적용)(강화)
- ☞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작성시 의료기기 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견을 수용·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가(줄기)세포 등을 채취, 분리하는 세포치료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제품이 의료기기로 미분류(공산품) 되어 잠재적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위해성 기준 의료기기 등급관리 강화(7개 기기, 주로 1, 2 → 3, 4등급)(강화)
- 진단안전성 확보(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소프트웨어), 기준 명확화(혈액처리용 기구, 골수처리용 기구), 국제기준 적용(혈당측정검사지, 혈액응고 시간측정검사지), 인공안면 아래턱관절(통합관리)
- ☞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혈액이나 골수채취, 세포치료제 등을 배양 의료기기의 품목 및 등급 재분류 관리가 필요하고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심의기구인 「의료기기 위원회」타당성 심의(3회)를 거친 것으로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약품 등 교육기관 지정 및 검사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강화)
- ☞ 의약품 등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및 방법, 대표자 및 검사원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예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비심사('09.8.25)에서 비중요 규제에 심사 받은 바 있고, 경쟁제한적 요소는 없으며, 이해관계자(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검사원 및 대표자 100여명)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인결

(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5)

■ 심사내용

- 식육·가공품판매업소의 영업 신고 시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추가하고, 다른 유형의 제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마련(강화)
 - ☞ 기존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가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범위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규정의 보완이 불가피하고, 식육가공품에 대한 정보 확인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에도 적절한 수준이며, 관련 협회 등 의견수렴 결과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인결
- 식육·가공업판매업영업자는 식육가공품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장비·작업대 그 밖에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함(강화)
 - ☞ 현행 축산물판매업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은 식육판매업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축산물 가공품의 직접적 오염이나 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 감안 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관련 협회 등 의견수렴 결과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인결
- 식육·가공품판매업 영업자는 26.4㎡ 이상의 영업장을 갖춰야 하고,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함(강화)
 - ☞ 현행 축산물판매업 업소의 시설기준은 식육 또는 포장육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만 마련되어 있어,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기준을 새로 규정할 필요, 현재 식육판매업의 면적기준이 26.4㎡ 이상을 권장하고,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될 공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적기준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시, 제조·가공실을 두는 것은 영업을 위생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마련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은 확보되었다고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인결
- 식육·가공업판매업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육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유형별로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함(강화)

- ☞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최소한의 위생 및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규제의 수준은 적정하고, 가격표를 매장에 붙이는 것은 경미한 비용이 들고, 소비자의 편의제고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 식육·가공업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제조·가공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강화)
- ☞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식육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생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 시, 식육·가공업판매업자에게 식육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관련 협회 등 의견수렴 결과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비방하는 표시·광고'의 범위를 추가 규정(강화)
 - 다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로 규정
- ☞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12.10.22)됨에 따라 위 임범위 내에서 '비방의 표시·광고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에도 규제의 수준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조사·평가하는 방법 및 사항 마련(신설)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현황, 이력추적관리 정보 연계,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록제품 사후관리 체계 작동 여부 등을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의 점검사항으로 규정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조사·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명령 및 등록 취소 규정을 마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등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12.10.22)됨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그 조사·평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동 규제에서 조사·평가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당시 설정된 등록기준과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최소한의 규제조치이며, 조사·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고,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에도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이하 ‘GMP’) 적용업소 영업자는 GMP 적용에 따른 관리기록물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마련(강화)
 - ☞ 현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약처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GMP 적용업소가 관리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 조치라고 판단되고,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에도 규제의 수준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유통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 마련(강화)
 -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2월
 - ☞ 부적합한 제품을 고의 유통·판매한 경우는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처분 규정을 별도 마련하는 것은 규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한 조치이고, 처분근거 신설로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해당업체는 영업정지로 인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불법 제품으로 인한 업계의 부적절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비자 보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에도 규제의 수준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 중 식중독균 기준 개정(강화)
 - 대장균O157:H7 기준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확대
 - 버섯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 신설(납: 0.3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
 - 유성분을 함유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M₁ 기준 신설

-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 영·유아용식품 중 벤조피렌 기준 적용 품목 확대
- 수산물에 대한 히스타민 기준 신설
- 벌집꿀의 기준 및 규격 신설(수분(%): 23 이하, 전화당(%): 50% 이하 등)
- 생식용 굴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대장균: 230 MPN/100g 이하)
- ☞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국민의 섭취빈도가 높거나, 유해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영·유아 관련 식품 등에 대한 오염물질 안전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 제조 및 수입식품 모니터링, 해외 기준·규격 검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준을 설정하였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기업의 자가품질검사 비용 등)보다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얻는 국민의 안전 등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행정예고과정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였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새로운 성분(클로미프라민)의 조루치료제 허가(13.3.20)에 따라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신규 지정(강화)
- ☞ 우리나라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조루 치료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이 허가된 의약품의 치료 목적과는 다르게 ‘성기능 강화제’, ‘정력 증강제’ 등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기준, 지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강화)
- ☞ 2012년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기 운영중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일명 신호등 표시제) 대상 식품 재검토기한 연장 (2013년 1월 31일 → 2015년 1월 31일)(강화)
 - ☞ 제도 시행기간이 짧고 참여업체 수가 작아, 제도 시행 이후 판매량과 어린이 비만과의 관계 등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 다만, 신호등 표시제가 어린이들의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관련 연구 결과가 있고, 동 규제가 대상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하여 영양표시를 하도록 권고하는 자율표시제도임을 고려할 때,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보호자가 식품의 영양정보를 쉽게 인지하여 식품구매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재검토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표시 의무화(강화)
 - ☞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를 신속하게 신고하여, 관계기관이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식품 용기·포장에 신고 전화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부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으나, 동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용기·포장에 글자 추가 인쇄비용 등)이 크지 않으며, 영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였고, 유사 입법례(일반식품의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표시)를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마약류취급자뿐 아니라 마약류취급 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 폐기(변질, 부패, 파손, 유효기간 경과 등) 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토록 규정(강화)

- ☞ 상위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처리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시행규칙에서 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절차는 누락되어 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며, 마약류취급자와 취급승인자는 취급 기간과 횟수만 상이하고 사용하는 마약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폐기 절차도 동일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① 마약류취급승인자가 관계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②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미승인 수출입,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 신고의무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강화)
 - ☞ ① 상위법령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거 규정이 마련('13.7)됨에 따라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하는 것이며, 마약류취급자와 취급승인자는 취급 기간·횟수에만 차이가 있고 사용 마약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행정처분 기준도 동일할 필요가 있음
 - ② 상위법령 개정으로 원료물질 취급의 정지명령 규정이 마련('13.7)됨에 따라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는 마약류의 원료물질을 취급하므로 마약류취급자 처분 기준보다 완화된 수준의 행정처분 설정이며, 미국 등 해외사례보다 완화된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사탕, 젤리, 잼류에 납검사항목추가, 떡류에 대장균검사항목추가, 건어포류, 기타건포류,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중 훈제제품에 한하여 벤조피렌 검사항목 추가(강화)
 - 11개 주류에 메탄올(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총산(탁주, 약주, 청주에 한함), 보존료(탁주, 약주, 과실주에 한함), 납(포도주에 한함), 알데히드(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에 한함) 검사항목을 각각 추가
- ☞ 사탕 등에 납성분, 주류에 메탄올 성분 등을 검사항목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자가검사로 비용부담보다 국민건강보호의 편익이 크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는 최소한의 적정 규제라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라 보아 원안의결

(18) 약사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의약품 중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식약처장이 재평가 실시(신설)
 - 재평가 대상을 의약품에서 의약품등(의약품, 의약품)으로 확대
 - ☞ 의약품은 재평가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해당 단계가 없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어도 허가 변경·취소 등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의약품 재평가제도는 재검증을 할 수 있는 대안인 품목갱신제도보다 완화된 수준의 규제이며 해외사례를 감안할 때 규제의 수준이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임상시험 등(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 및 교육 미이수 시 임상시험 등 실시기관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식약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실시기관 및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규정(신설)
 - ☞ 임상시험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서, 종사자의 전문성·윤리성이 필수적임에도 교육 이수 의무 규정이 부재한 상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보다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는 적정한 수준임. 국제적 표준(ICH) 및 주요선진국에서도 임상시험 담당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자격증 소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실시기관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은 지정·위탁 기관에 대한 기본적 의무 부과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유사사례와 동등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의약품 등 수입자에 대한 수입자 신고 및 폐업 신고 의무 부과, 결격사유 규정 및 처분 종류에 영업소 폐쇄 추가(신설)
 - ☞ 의약품 등 수입자 신고 의무 규정은 약사법에서 규정('63~'91년)하였다가 삭제('91년)되었으며, 본 개정안은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임. 현재는 의약품 수입자의 경우 품목별 허가만 규정되어 있고, 수입업에 대한 신고 제도가 부재하여 사후관리가 곤란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됨. 수입자 신고는 국내 유사사례보다 완화 또는 동등한 수준이며, 해외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일본의 경우 허가·갱신제)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약국 등에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개인식별정보 제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 의약품안전정보 중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에 한하여 약물역학조사관이 약국 등에 출입·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신설)

- ☞ ① 현행은 부작용 등에 대하여 자발적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 정보로 한정되어 부작용의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이 곤란한 상황임. 요청 자료의 범위를 한정(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자료, 개인식별정보 제외)하여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국내외 유사사례(의료분쟁조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를 감안할 때 규제의 적정성 인정
- ②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의 정확한 조사·규명을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므로 출입·조사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인결

(19)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고카페인함유식품중 어린이기호식품에 한정하여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색상표시기준 및 방법을 마련(신설)

예시 1	고카페인함유 000mg <small>〈포장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small>
예시 2	고카페인함유 000mg <small>〈포장의 바탕색이 적색이 아닐 경우〉</small>

- ☞ 고카페인함유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학교 등에서 판매금지 및 TV광고제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적색으로 고카페인함유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는 것으로, 자율적색상표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어린이 성장발육장애등 부작용예방의 편익이 크며, 고카페인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오·남용 억제 및 어린이식생활안전을 위한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인결

(20)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텔레비전 방송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외에 고카페인함유식품 중 어린이기호식품을 추가(신설)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고카페인함유 어린이기호식품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및 TV광고제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TV광고제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고카페인함유 어린이기호식품 TV광고제한은 어린이식생활안전을 위한 적정 규제이며, 정책토론참여위원 및 이해단체의 주장과도 부합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고카페인함유식품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학교 등에서 판매금지하고, TV방송광고제한대상(17시~19시)에 추가하며,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부과대상에 추가(신설)
- ☞ 고카페인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일명 에너지음료)은 과다섭취시 발육장애, 심장질환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어린이 식생활안전을 위해 규제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고카페인함유 어린이기호식품을 학교 등에서 판매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TV광고를 제한하며, 그 외 시간에도 중간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법률위임사항(「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제이며, 정책토론참여위원과 이해단체주장 및 식품등 표시기준에도 부합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영대상, 적정성평가 대상 및 기준을 ‘도축업’에서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으로 확대
 - 안전관리인증요건,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인증서 발급, 인증변경신청 및 재발급, 인증유효기간 연장, 통합인증대상 등 인증세부 절차 규정(강화)
- ☞ 우유 및 축산물 등은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공급을 위해 어린이다량소비품목인 유가공품생산을 위한 집유업이나 축산물가공업도 도축업과 같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집유장 등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시 추가비용이 예상되지만 철저한 위생관리로 인한 국민편익이 더 크고, 도축

업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집유업 등에 대하여 HACCP를 의무적용함에 있어 이해단체의 이견이 없는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가축 및 축산물³⁹⁶⁾을 도축장(작업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12시간 절식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사항 규정(강화)
 -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물 유통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제조·수입하는 조제유류³⁹⁷⁾ 등록 및 이력추적관리 기준 준수 의무 부여
 - ☞ 축산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축출하 전 일정시간 금식 및 동물약품투여 금지, 조제유류 등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이 필요하고, 금식동안 사료절감분만큼 비용이 절약되며 안전식품제공편익이 크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상 문제없는 최소한의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집유업 및 축산물 유통업이 HACCP 의무적용대상으로 확대되고 가축·축산물 출하전 준수사항이 신설되어 의무사항미이행 또는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강화)
 - ※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미작성시 500만원, 미운영 시 300만원, 검사에 부적합한 가축·축산물 출하시 300만원, 출하전 절식위반시 30만원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미작성/미운영시, 작업중지명령 미이행시 관계공무원의 평가 거부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미작성/미운영시 1차 영업정지 1개월, 1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 ☞ 축산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집유업이나 축산물가공업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대상에 추가, 출하전 금식 및 동물약품투여금지, 작업중지명령이행제도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96) 축산물 : 원유와 식용란

397) 조제유류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영유아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

(23) 식품 등의 표시기준(신설 1)

■ 심사내용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내용(신설)
 - 식품용 기구에 '식품용' 문구 또는 도안 표시 의무화,
 - 주류유형 의무표시, 해동수산물 '해동' 및 '냉장진열시작일시' 의무표시, 원터치캔 주 의문구 수정,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및 '고카페인 함유' 및 '카페인 함량 00mg' 활 자크기 확대
- ☞ 식품 등의 표시제도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식품안전 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표시기준을 변경할 경우 업계의 추가비용발생이 예상되어 2년 동안은 중 전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추가비용보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의 편익 의 크고 이해단체의 이견이 없는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가공,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 식중독균에 캄필 로박터 콜리균 추가(강화)
 - 인삼, 산양삼, 도라지, 더덕 등 다년생 근채류를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대상(납 2.0 mg/kg 이하, 카드뮴 0.2 mg/kg 이하)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조제식 등 식품을 가공식품의 중금속 기준대상(납 0.01 mg/kg 이하)에 추가
- ☞ 캄필로박터콜리(*Campylobacter coli*)균으로 인한 식중독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소량의 균수로 인 체감염우려가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는 토양재배 시 작물체내 중금속 함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납은 영·유아의 지능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금속 안전관리가 필 요하고, 캄필로박터콜리(*Campylobacter coli*)균,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식 중독균, 납, 카드뮴 관리대상에 추가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안전식품제공의 편익이 크며 이해관계단체의 이견이 없는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5)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HACCP 판정시 'CCP의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항목의 점수가 일정점수(60%)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요건 추가(강화)
 -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평가시 중요항목 구분없이 전체점수가 기준점수(170/200점) 이상이면 적합판정을 하지만 'CCP의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항목은 핵심적인 평가항목이므로 그 항목의 점수가 일정점수(60%, 지정 : 27/45점, 사후관리 : 30/5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이 필요하고, 중요평가항목의 점수를 부적합판정기준으로 하더라도 영업자의 추가부담은 미미한 반면, 식품안전의 실효성확보라는 국민편익이 크고 이해단체의 이견이 없는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6)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대상에 보조심장장치 및 황격신경전기자극장치를 추가(현재 15품목 지정)(강화)
 - ☞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보조심장장치 및 황격신경전기자극장치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어 사용하는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이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어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고, 해당 장치의 부작용 및 결함이 보고된 바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심의결과 표시(심의번호 또는 심의필 표시)가 선택사항이나, 이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단, 라디오 광고는 제외하며, TV방송은 심의번호를 화면에 3초 이상 노출)(강화)
 - ☞ 현행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결과 표시가 선택사항으로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거짓·과대 광고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여부 판단이 곤란하므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함. 소비자가 의료기기 광고를 접할 경우 심의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심의결과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유사사례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광고 심의결과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또한, TV방송 광고는 타 매체(신문, 잡지, 인터넷 등)와 달리 짧은 시간에 인식을 해야 하는 특성상, 3초 이상의 노출 규정은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28) 식품의약품안전처예비심사(의약품 분야) 재검토규제 일괄심사안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약사법 시행령' 등 총 12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 9건에 대해서는 규제유지·폐지 등에 원안동의하고, 의약품 제조자의 원료검사 및 관련 기록 유지 의무(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건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원료의 품질검사를 확보하더라도 모든 원료에 대해 품질검사를 재실시 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제조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원료검사 폐지 또는 완화 등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권고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의약품관리체계이원화	약국개설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등은 식약처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관련 별표 6(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7호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일몰삭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지정	마약류 취급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및 제조를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신고토록 규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별표10(과태료 부과)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2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및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의료기기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별 또는 품목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징금 부과 • (갱신) 제조업자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 등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1조 별표1 과징금 • (갱신) 의료기기법 제49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허가 등	의약품등의 제조 수입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 처분 및 행정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2] 과징금산정기준	규제개선 재검토 3년	규제개선 재검토 3년
대한약전외의약품 기준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의 성질과 상태 등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고시)	규제개선 일몰삭제	규제개선 일몰삭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생물학적제제등(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제조·수입 품목허가 기준 및 자료 요건 규정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고시)	규제개선 일몰삭제	규제개선 일몰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규제개선 일몰삭제	규제개선 일몰삭제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규제유지 일몰삭제	규제유지 일몰삭제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약사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고시)	규제개선 일몰삭제	규제개선 일몰삭제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의약품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주의사항, 용법·용량 등 세부기준을 정함	의약품 표시등에 관한 규정(고시)	규제개선 일몰삭제	규제개선 일몰삭제
의약품 제조자의 원료검사 및 관련 기록 유지 의무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는 의약품 제조 종사자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 관리 등을 지켜야 함 의약품 제조자가 원료의 안전성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성적서 인정범위 등을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규제유지 일몰삭제	규제개선 일몰삭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29)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현행 규제 유지여부에 대하여 총 13건 중 규제유지가 10건, 규제개선이 3건(규제완화 1건 영세업체의 과징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 세분화, 규제강화 2건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식품에 고카페인 함유식품 추가 등)
 - 일몰유지 여부에 대하여 총 13건 중 11건은 일몰폐지하고, 2건은 일몰유지(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제외대상 규정으로 관련 업계의 매출액 변화, 유사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일몰연장)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식약처	규개위
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등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10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일몰폐지
2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식품위생법 관련 의무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일몰폐지
3	식품관련 영업허가 및 신청	식품관련 영업 허가 등 위반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규제개선 (기완료)	규제개선
				일몰폐지	3년연장
4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0	규제유지	규제유지
				3년연장	3년 연장
5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 안정성확보,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제13조제2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3년연장	일몰폐지
6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판매업의 신고 등	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자의 신고의무/신고절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동의
7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고시)	규제개선 (기완료)	규제개선
				일몰폐지	일몰폐지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식약처	규개위
8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일몰폐지
9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관한 규정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관한 규정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식품에 관한 규정	규제개선	규제개선
				일몰폐지	일몰폐지
10	위생수준 안전 평가에 관한 기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고시)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일몰폐지
11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고시)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일몰폐지
12	특정 식품의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금지	특정 식품의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금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제99조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일몰폐지
13	김치공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김치공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7호	규제유지	규제유지
				일몰폐지	일몰폐지

3. 여성가족부

이규삼 사무관

(044)200-2443 lks2010@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결혼중기업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9건, 강화 2건 등 총 2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1건 중 19건은 원안의결, 2건은 개선권고로 의결하였음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3.5.1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비중요 2, 중요 1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6.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3.7.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 재검토행 일몰규제 심사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3.9.2)		
6.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7.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3.10.1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비중요 2, 중요 1
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9 개선권고 2	신설 19, 강화 2 비중요 19, 중요 2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 표시(신설)
 - 경고문구 표시자(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표시내용³⁹⁸⁾, 표시방법, 글자 크기 등
 - ☞ 컴퓨터 이용자가 저작물 등을 검색, 업로드, 다운로드를 할 경우 화면 등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비용은 미미한 수준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강화)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경고문구 표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신설)
 -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거부 시 과태료 기준(신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강화)
 - ☞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두었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시 법정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2차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성범죄자의 운영·취업(노무제공 포함)제한 시설 규정(신설)
 - 휴게음식점영업 중 패스트푸드점,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 ☞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초 개정안에서 규제대상 선정근거 및 대상특정이 불명확하여 중요과제로 재심의 대상이 된 '패스트푸드점' 관련 호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39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대상기관은 1년에 한 번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방법 구체화 및 자료제출 규정(신설)
 - ☞ 법률 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기관은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과 그들을 지도하는 자 또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 것으로 최소한도의 규정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강화(신설)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업무 근무경력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성폭력방지 업무 종사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운영 기준(신설)
 - 보호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을 6.6㎡에서 9.9㎡로 확대
 - ☞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입소 정원 당 면적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3년의 유예기간 및 예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적절한 규제로 인정되어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신고(신설)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신고 및 취소 등 규정 마련
 -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강사의 자격기준,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 등을 정함(제8조의3, 별표3-2)
 - ☞ 기간 법적 근거 및 기준 없이 운영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양질의 성폭력 상담원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질 제고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기록 보존 및 보고(신설)
 -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특정기간 이상 보존하고,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

도록 함

- ☞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고,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 배제 대상 확대 등 자료 보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조치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설 1)

■ 심사내용

- 여가부장관이 매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의무교육대상이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규제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육 등 조치 및 언론공표는 적절한 규제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결혼당사자 신상정보제공기준 재검토기한 연장(강화)
 - 국제결혼중개시 맞선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 제공기준 검토시한을 연장
 - * 재검토기한(5년 연장) : (종전) 2013년 12월 31일 → (개정) 2018년 12월 31일
 - ☞ 신상정보제공기준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조치 강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어서 검토 및 개선 조치 시한을 2018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신상정보조회대상 범죄경력확대·추가(신설)
 - 신상정보 조회대상을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14조 위반범죄경력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열거된 범죄경력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열거된 범죄경력을 추가함
 - ☞ 여성의 인권보호측면에서 성폭력 범죄경력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상정보 제공의 취지와 여성의 인권보호를 담보하는 데 부합되고, 개정안과 같이 범죄경력조회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국제결혼당사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5) 재검토형 일몰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일몰규제는 총 9건으로 이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규제유지 3건, 규제폐지 및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개선 6건에 원안·수정동의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여가부	규개위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경력단절여성지원 센터의 센터장 및 상근상담전담자의 인력총원자격요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	3년 연장 (규제개선)	3년 연장 (규제개선)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배치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최소한 배치하여야 할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배치기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별표5]	3년 연장 (규제개선)	3년 연장 (규제개선)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신고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의 시설기준 및 강사 자격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별표4]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규제개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신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표2]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규제개선)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표1]	3년 연장 (규제유지)	3년 연장 (규제유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상담소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년 연장 (규제유지)	수정동의 (3년 연장) (자격요건 조정검토 개선)
가정폭력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정폭력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제외 : 파산선고 미복권자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3년 연장 (규제유지)	
성폭력피해상담원의 자격	성폭력피해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소장 및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1]	3년 연장 (규제유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사후절차 관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및 사후관리, 수련활동 인증유효기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3년 연장 (규제개선)	수정동의 (1년효력 상실형 일몰설정)

(6)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3)

■ 심사내용

- 감독기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은 전문안전기관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2년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안전점검강화가 요청되는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 * 다만,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전문안전기관을 통하여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위임사항(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의 마련이 필요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계획의 신고방법·절차 규정(신설)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계획 신고방법 마련 및 자치단체의 신고필증발급 및 관리대장 기재의무를 신설
 - ☞ 청소년활동계획신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를 받은 자치단체는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신고 관리대장을 기재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필요한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가청소년의 건강상태확인방법 마련(신설)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계획신고자가 청소년활동 참가청소년으로부터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
 - ☞ 청소년활동 참가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7)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마련(신설)
 -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같이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대하여도 설치기준 마련
 - ☞ 정서·행동장애, 사회부적응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기준보다 과도하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않는 등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적정규 제이므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신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대상사무에 청소년대상 상담지원, 부모교육, 가출예방 및 상담, 학업중단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등의 사무를 추가함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청소년대상 상담지원, 가출예방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대상사무에 추가하는 것은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 의결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신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 자격기준과 배치기준 마련하고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 지원관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
 -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 자격기준과 배치시설에 동의하되,
 - (1)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시설장 및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을 하향조정하여 완화³⁹⁹⁾하고
 - (2) 상담사, 보호자립지도요원, 치료사·임상심리사의 학력요건의 완화⁴⁰⁰⁾를 개선권고

(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개정(강화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강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 * 보육우선제공 미이행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우선보육제공규정 위반 시의 과태료부과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봄서비스 우선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규정이므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399) 예 : 박사 + 실근무 5년, 석사 + 실근무 7년, 자격증 + 실근무 7년

400) 4년제 대학 졸업 → 전문대학 졸업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경찰관의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 경찰관의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 ☞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근절, 현장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타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적정 규제이며 예방교육실시비용보다 건전가정육성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2)

■ 심사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 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횡수에 따라 법률위임사항인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 규제이므로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설치·운영 필요사항(신설)
 - 법률위임사항 마련 :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 ☞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으로 다누리콜센터(생활정보안내기능)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폭력피해이주여성의 상담 및 긴급지원 기능)를 통합하여 추가비용없이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하는 것으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제10절 |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통일부

나제순 사무관

(044)200-2445

shepherd7@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에 대한 내용심사 1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제492회 행정사회분과 (2013.9.23)		
계	-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일몰도래 재검토행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6.31)에 도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4건에 대해서 규제유지·폐지 등에 동의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심의위원회 사실 확인 등 협조의무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변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증지(종료) 사유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북한으로 재입국 기도 등으로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7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의 제한	취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일정기간(최고1년) 취업보호 중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의2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북한이탈주민 주소·직업·근무지 변동신고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일 부터 5년간 주소, 직업, 근무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제폐지	원안동의

2. 외교통상부

나제순 사무관

(044)200-2445 shepherd7@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에 대한 내용심사 1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 심사	제492회 행정사회분과 (2013.9.23)		
계	-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6.31)에 도래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1건에 대해서 규제완화·일몰폐지에 동의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설립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서류(정관, 재산목록 등)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규제완화 일몰삭제	원안동의 원안동의

3. 국가보훈처

이규삼 사무관

(044)200-2443 lks2010@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모두 원안의결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3.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3.9.17)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0. 국가보훈처 재검토규제 일괄심사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3.10.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7	신설 17 비중요 17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수익사업의 승인(신설)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등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를 시행규칙에 반영
 - ☞ 그동안 고엽제 전우회 정관에 규정되었던 수익계약에 의한 수익사업 관련근거 조항을 시행규칙 규정으로 상향입법하는 것으로 고엽제 전우회 등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의무 신설(신설)
 - 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
 - ☞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의무(신설)
 - 대상자에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소득·재산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금융회사 등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
 - ☞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의무(신설)
 - 교육지원, 요양지원 보조 등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금융회사 등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
 - ☞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의무(신설)
 - 대상자에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소득·재산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금융회사 등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
 - ☞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의무(신설)
 - 대상자에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금융회사 등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
 - ☞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 금지(신설)
 -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 ☞ 현행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권⁴⁰¹⁾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의 압류 금지를 명시화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유사사례⁴⁰²⁾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 금지(신설)
 -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 ☞ 현행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의 압류 금지 명시화 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1) 제22조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02) 유사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국민연금법 등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 의무화(신설)
 -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청인 및 금융회사 등의 정보제공 의무화 규정
 - ☞ 생활수준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지원 과정에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신설 5)

■ 심사내용

- 보훈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신설(신설)
 - 보훈복지시설⁴⁰³ 소관업무 및 이용자 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서류(운영상황·회계장부 등)의 제출 및 조사·검사
 - ☞ 보훈복지시설은 보훈복지대상자의 자립, 사회복귀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보훈처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사례⁴⁰⁴를 감안할 때에도 적절한 규제로서 비중요 과제로 원안의결
- 요양지원대상자 선정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의무 신설(신설)
 - 대상자에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금융회사 등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
 - ☞ 생활수준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지원 과정에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재활지원대상자 및 일상생활지원대상자 선정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의무(신설)
 - ☞ 생활수준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지원 과정에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3) 종류: 재활시설,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회관, 생활시설, 휴양시설

404) 한부모가족지원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독립기념관법 등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마련(신설)
 - 재활지원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해 민감정보(건강 관련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재활지원대상자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신청인의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유사사례 감안 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국가보훈처 재검토규제 일괄심사안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일몰규제는 총 14건으로 이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 내용 심사결과, 일몰유지 13, 일몰폐지 1로 의결

등록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보훈처	규개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 및 횟수 제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거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 부정행위로 인한 면직 등의 경우에 취업지원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일몰유지 (3년 일몰)	일몰유지 (3년 일몰)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 및 횟수 제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거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 부정행위로 인한 면직 등의 경우에 취업지원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함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일몰유지 (3년 일몰)	일몰유지 (3년 일몰)
5.18민주 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 및 횟수 제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거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 부정행위로 인한 면직 등의 경우에 취업지원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함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일몰유지 (3년 일몰)	일몰유지 (3년 일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 및 횟수 제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거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 부정행위로 인한 면직 등의 경우에 취업지원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함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일몰유지 (3년 일몰)	일몰유지 (3년 일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 제한기준 규정	취업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거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 부정행위로 인한 면직 등의 경우에 취업지원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일몰유지 (3년 일몰)	일몰폐지

등록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보훈처	규개위
고엽제법 적용대상자의 신상변동 신고 의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신상변동 시 신고의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5.18민주 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신고 의무	5·18민주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시 신고의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참전유공자의 신상변동의 신고 의무	참전유공자의 신상변동 시 신고의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일몰폐지	3년 일몰 유지
특수임무 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신고 의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시 신고의무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중·고등학교의 국가유공자 자녀등 일정비율 취학의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기관의 국가유공자 자녀 등 일정비율 취학의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중·고등학교의 특수임무 유공자등 자녀 일정비율 취학의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기관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의 일정비율 취학의무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품위손상행위 또는 금고이상 실형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정지	공무집행을 방해 하거나,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정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일몰유지 (3년 일몰)	일몰유지 (3년)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법적용 대상 배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폭행, 성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 등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법률 적용 배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일몰유지 (3년 일몰)	일몰유지 (3년)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특수직종 우선 고용의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과 특기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관련 기업체 등에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일몰폐지	일몰유지 (3년)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제공(신설)
 - 제대군인 지원 신청시 수급희망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금융회사등이 보훈처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 ☞ 금융정보 등의 범위는 생활수준을 고려한 취업·교육 지원에 대한 객관적 수급자 선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것이고, 아울러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도 성명, 주민번호, 금융회사명칭, 금융상품명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한정된 것으로서 적정성이 인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 승인 등 (신설)
 -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수익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 ☞ 수익사업의 합리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 수익사업이 가능한 보훈단체가 국유공자 단체('72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09년)까지 확대되면서 수익사업 허가·관리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신설 1)

■ 심사내용

-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승인 등(신설)
 - 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수익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 ☞ 수익사업의 합리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보훈단체가 확대되면서 수익사업 허가·관리 규정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국방부

김해영 사무관

(044)200-2447 geneve2@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에 대해 신설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 중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69회 예비심사 (2013.0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	제370회 예비심사 (2013.0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등록포로 등 신고의무 (제19조) (신설)
 - 등록포로⁴⁰⁵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자)에게 등록포로 사망 사실, 등록포로 사망 후

40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귀환포로(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배우자의 혼인 사실 및 주거지원을 받은 등록포로로 하여금 거주이전 등 주거사항 변동사실, 임대차계약 변동 사실을 3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포로 사망 사실, 배우자의 혼인 사실, 주거사항 변동 사실, 임대차계약 변동사실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 등록포로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및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고에 따른 비용(우편비용 등)이 미미하며, 다른 법령(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2)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격기준 (제60조의10 제2항, 제3항) (신설)
 - 군인사법 개정(2012.12.18, 시행일 : 2013.6.19)으로 도입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⁴⁰⁶⁾의 자격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 개정안은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군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생활의 고충이나 복무 부적응 등을 상담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406)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두도록 함

제11절 | 일반행정 분야

1. 안전행정부

홍성애 사무관
(02)2100-2399 hong@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1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4건, 강화 7건 등 총 3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1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였으며 나머지 2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안전행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	제355회 예비심사 (2013.2.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82회 행정사회 분과위원회 (2013.3.4)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367회 예비심사 (2013.5.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제488회 행정사회 분과위원회 (2013.5.27)	개선권고 2	신설 2 중요 2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81회 예비심사 (2013.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493회 행정사회 분과위원회 (2013.10.1)	부대권고 2	신설 2 중요 2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9회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89회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제394회 예비심사 (2013.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14회 본위원회 (2013.10.25)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비중요 1, 중요 2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95회 행정사회 위원회 (2013.10.25)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5.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제397회 예비심사 (2013.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98회 예비심사 (2013.12.14)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1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400회 예비심사 (2013.12.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9. 2013년 안전행정부 일몰도래 규제심사	제489회 행정사회 분과위원회 (2013.6.21)		
계	-	원안의결 25 개선권고 6	신설 24, 강화 7 중요 8, 비중요 23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신설 1)

■ 심사내용

- 공무원 채용시험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나, 이를 미지참하는 경우에 수험생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문을 채취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응시를 허용(신설)
 - ☞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지문을 채취한다는 점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판단
- 공무원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중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신설)
 -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등에 대한 정확한 인사기록 관리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확인, 가족수당 지급 등 인사사무 처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수준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강화 2)

■ 심사내용

-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금액을 상향조정(종합공사 : 70억원 ⇒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 6억원 ⇒ 7억원 미만)한 규제존속기한이 종료('13.3.15)됨에 따라 현행대로 지역제한 기준 유지를 위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조항 삭제(강화)
 - ☞ 지역제한 입찰제도는 지방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 지난 2회('09.3, '11.3)에 걸쳐 일몰제를 적용할 때에 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지역제한 기준금액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및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⁴⁰⁷⁾ 마련(강화)
 - ☞ 시행령에서 규정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동 규칙 개정안에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은 국가계약법령과 유사한 수준에서 설정하여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신설 2)

■ 심사내용

- 재난현장의 응급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민간기관·단체를 포함(신설)
 - ☞ 재난현장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위해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대상기관을 민간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응급조치 지원에 응한 민간단체는 사후비용정산이 가능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지역축제를 계획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안전행정부장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태를 점검(신설)
 -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한 지역에 다수의 집합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신고로 인하여 지역축제 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4)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고시 등(신설 2)

■ 심사내용

-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전자정부사업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고시에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407)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하여 설정(신설)

* (시행령)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자정부사업 관리자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법인

(고 시) 전자정부사업 관련 업무경험이 3회 이상인 수행책임자 1명 이상과 전자정부사업 관련 업무경험이 1회 이상인 지원인력 2명이상으로 구성

☞ 전자정부사업의 수행경력은 전자정부사업 관리자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보기 어려워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자격요건은 기술능력 및 사업관리능력, 건전한 재무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공통기준으로 일반화하여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 전자정부법에서 위임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으로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업무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관리 실적, 품질 및 성과관리 능력의 적절성 등을 설정(신설)

☞ 고시 제정안의 사업관리자 선정기준 중 '참여인력 및 수행실적' 부문은 사업관리자 자격요건(고시안 제5조)과 중복된 규정으로 자격요건과 구분되는 사업관리자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신설 1)

■ 심사내용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자 중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열람대상자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과 전입일자만 열람가능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동시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경우 1일 20통으로 열람 제한(신설)

☞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전입세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채권·채무 이해 당사자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로 전입세대 열람대상자의 성(姓)만 공개하고, 전국단위 전입세대 열람 허용으로 특정지역에 열람신청이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열람제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2)

■ 심사내용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시험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정지, 무효, 합격취소, 2년간 시험응시 제한 등 제재 규정(신설)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며, 그 내용이 유사제도⁴⁰⁸⁾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규정(신설)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증 발급 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인확인 및 자격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은 자격증 발급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자격증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른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 1)

■ 심사내용

- 입찰 참가자가 공동계약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관한 제한을 정하는 것으로 동 법률 시행규칙 및 예규에 근거하여 시행하던 제도를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신설 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미종료자 또는 형 집행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자격 상실자 또는 자격 정지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를 규정(신설)

408)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부정행위자에게는 시험정지 또는 무효, 3년간 응시제한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용 채용 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필요하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보조를 하고,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 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그 구성원의 채용제한 및 당연퇴직 사유를 기존 공공부문 인력 채용 시 적용되는 제한사유 수준에서 설정하여 그 내용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규제는 감사원 감사('11.7)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12.6)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부정 등의 방지책 마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신설)
- ☞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자·출연기관은 재정구조, 주요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사실상의 공공기관이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현행 공공분야 계약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그 수준을 설정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9)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신설 2)

■ 심사내용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의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인증의 유지관리 심사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인증범위 변경 시 인증변경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발생·인증표시 허위기재 시 인증을 취소하는 요건에 관한 기준 규정(신설)
- ☞ 인증 유효기간, 인증유지 요건 및 취소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및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운영 및 실효성 확보 조치이며, 그 내용도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나, 동 기준은 인증 취득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요건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효력상실형) 동의(부대권고)
-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신설)
- ☞ 인증심사원은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요건 및 인증심사 참여 제한요건은 제도 운영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치이나, 동 요건은 인증심사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2014년 9월 30일까지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효력상실형) 동의(부대권고)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2)

■ 심사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내용 등을 감안한 감경·가중 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및 위반횟수별 차등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기준의 명확화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내용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었고, 법제처 권고사항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정비(’12.12.31)’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 의무자 및 이수기준 규정(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이수 의무자 및 이수기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규제비용⁴⁰⁹⁾ 및 내용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 1)

■ 심사내용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마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처분을 명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 내용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12) 인감증명법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자동차 매도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강화)

409)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4시간 과정으로 1인당 5만원 수준의 비용 소요

- ☞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점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서류로써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이미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의무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관계부처 협업(안행부·국토부·권익위)으로 추진하는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기부금품 모집의 사전등록 요건은 신청인의 경력·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사전등록 없이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한 사후등록 기준 규정(신설)
 - ☞ 현행 기부금품 사전등록 요건을 영리·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부금품 사후등록은 현행 사후등록 불가에 대한 규제완화 사항으로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은 기부금품 모집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과도한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은 2년 이내로 하며, 기한연장은 등록기한을 포함하여 4년 이내로 하고, 모집기간 연장은 등록기간 포함하여 2년 이내로 규정(강화)
 - ☞ 기부금품 사용 및 모집기한의 설정은 현행 기부금품 사전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실효성 확보조치이나, 사업목적 및 외부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사용기한 4년 초과 사업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여부를 검사하며,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및 반환명령 사유에 사용기한 만료시에도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강화)
 - ☞ 기부금품의 사용행위 검사, 사용기한 내 목적대로 사용할 의무위반 시 제재,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에 관한 내역공개는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점검하는 실효성 확보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공공정보 공개대상기관을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원문공개 대상기관을 유치원 및 각급 학교로 규정(강화)
 - ☞ 유치원은 교육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정보공개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은 규제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치이나, 원문공개 대상기관에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원문공개 시스템 구축 소요비용 및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하여, 원문공개대상기관에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는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15) 지방공기업법(강화 1)

■ 심사내용

-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사장이 경영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도 3년간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강화)
 - ☞ 지방공기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시 적용되는 제한사유 및 기관 경영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신설)
 - ☞ 법률에서 위임한 청렴서약서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제출시기가 旣(기) 시행중인 국가계약법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건을 추가하고 제한기간을 설정(강화)
 - ☞ 계약의 공정성, 이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

이 인정되며,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계약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권익위 권고사항('13. 8)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고, 입찰 및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의 담합행위 및 부실시공 감리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설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이었던 철도·궤도 공사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철도·궤도공사 1년' 규정을 추가(강화)
 - ☞ 철도·궤도공사를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공사에서 제외하여, 계약당사자의 성실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철도·궤도공사 참여업체 부담은 대부분 이행보증서로 대체하며 이미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시행('13. 6.)하고 있는 사항으로 새롭고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과징금 납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근거 규정(신설)
 - ☞ 과징금은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규제완화 사항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이미 시행('13. 6.)하고 있는 수준에서 설정하여 과도하지 않은 정도로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1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5급 이하 7급 이상), 식품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 공무원(5급 이하 7급 이상), 원자력 발전분야 종사자(2급 이상 직원)를 포함(강화)
 - ☞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부정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자 윤리확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안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는 업무특성 상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방안을 고려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 2)

■ 심사내용

-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를 제한받는 자의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세액이 총 1백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신설)
 - ☞ 법적 위임근거는 명확하며,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감안한 제도의 실효성 및 카드연체율 관련한 지방세외수입금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설정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 및 정보화 업무 추진을 위해 안행부 장관, 지자체 장, 징수공무원 등은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규정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19)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안전행정부 소관 규제 중 2013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공무원 채용시 의무적 신체검사 실시’ 등 총 21건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절성 및 일몰설정의 타당성 심사
 - ☞ 총 21건 중 13건은 규제유지,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중 ‘안전행정부 공무원 퇴직자’ 규정은 준법감시인 자격을 안전행정부 공무원 퇴직자로 한정하는 제한적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하는 등 규제개선(완화 및 폐지)은 8건으로 개선율은 38%(8건/21건)임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공무원 채용시 의무적 신체검사 실시	공무원을 신규 채용시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판정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4조	규제개선 (규제완화)
			일몰삭제
공무원 시험응시 하한 연령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하한 연령 제한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6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일부자격증 미소지시 공무원 일부직렬 채용시험 응시금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직렬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전문가자격증(의사, 항공사, 선박·항공 조종사 등)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규정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8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설정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27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퇴직연금 또는 조직퇴직 연금의 지급정지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등 재임용 되는 경우,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를 지급정지	공무원 연금법 제47조, 시행령 제40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재산등록 대상자의 등록재산 범위	등록대상 재산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포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5호, 제3항 제14호	규제유지
			일몰삭제
승강기의 정밀안전 검사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대상 및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 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규제유지
			일몰삭제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운행 관리자에 대한 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규정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24조의4	규제유지
			일몰삭제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보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행정부, 시·도 및 승강기 사고 조사판정위원회 등 보고 의무 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제1항, 시행규칙 제24조의5	규제유지
			일몰삭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규정(2년 1회, 1회 4시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 천재지변·수의계약 대상자 등은 1회 2년의 범위내에서 갱신토록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등	규제개선 (규제완화)
			일몰삭제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상근임원을 두는 지역금고의 기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새마을금고 자산규모 및 상근임원의 수 기준 규정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7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이사장의 연임 회수 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횟수를 제한함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규제개선 (규제완화)
			재검토3년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정함(중앙회, 한국은행 등 근무경력 10년 이상 등)	새마을 금고법 제63조 제4항,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 제26조	규제개선 (규제완화)
			일몰삭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 건축물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정함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는 방법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규제개선 (규제폐지)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 간판을 표시하는 방법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규제개선 (규제폐지)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옥상 간판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규제개선 (규제완화)
			재검토3년
선전탑 및 야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야취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시행령 제29조	규제개선 (규제폐지)
광고물 실명제	허가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 표시 의무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규제유지
			재검토3년
온천종사자 등의 교육	온천종사자와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 시간(연간 4시간) 규정	온천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유지
			일몰삭제

2. 소방방재청

나제순 사무관

(044)200-2445 shepherd7@pmo.go.kr

김해영 사무관

(044)200-2447 geneve2@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풍수해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0개 법령에 대해 신설 8건, 강화 18건 등 총 26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6건중 개선권고 4건(부대권고 1건 포함)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22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음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98회 본위원회 (2013.1.2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2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298회 본위원회 (2013.1.22)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제364회 예비심사 (2013.4.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제368회 예비심사 (2013.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74회 예비심사 (2013.7.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제375회 예비심사 (2013.7.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방염성능의 기준개정안	제375회 예비심사 (2013.7.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제381회 예비심사 (2013.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제382회 예비심사 (2013.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제491회 분과위 (2013.9.2)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385회 예비심사 (2013.9.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제312회 본위원회 (2013.9.30)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4 중요 1, 비중요 5
1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8회 예비심사 (2013.1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제389회 예비심사 (2013.10.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91회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	제393회 예비심사 (2013.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제497회 분과위 (2013.11.25)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22 개선권고 4	신설 8, 강화 18 중요 5, 비중요 21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인화성 물품 취급 등 화재위험공사⁴¹⁰⁾를 하려는 사업주는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고 공사 전에 설치·철거가 용이한 임시소방시설⁴¹¹⁾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신설)
 -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시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위험공사 중지 등 개선명령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나, 소방관서에 신고 후 확인(제20조의2 제3항), 위반시 공사중지처분(제20조의2 제4항 후단) 등은 과도하므로 삭제(과태료 제53조 제1항제8호 포함)하도록 개선권고함
 - 아울러, 소방관서의 건축허가 사전동의 첨부 서류⁴¹²⁾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하도록 권고
- 인화성 물품 취급 등 화재위험공사⁴¹³⁾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내야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교육 미이수자를 고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함(신설)
 -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규칙에 소방 안전 교육을 추가해 통합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제20조의3, 제47조제1항제5호, 제53제1항제9호)에 대한 원안동의

410) 화재위험공사라 함은 페인트·우레탄·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공사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411)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상수도 간이옥내소화전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4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413) 화재위험공사라 함은 합성섬유·가스 등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공사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에 실시해 왔으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8개 업종)가 입주한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⁴¹⁴⁾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추가함(강화)
 -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영업 특성상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⁴¹⁵⁾가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영업장 등 건물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아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입주한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정밀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의 세부사항에 다중이용업소의 일부 소방시설 점검 항목(비상구 방화문, 방염물품 등)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정밀점검 세부사항에 대해 보완하도록 부대권고

(3) 풍수해보험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⁴¹⁶⁾ 및 자격취소 사유⁴¹⁷⁾를 신설(신설)
 - ☞ 보험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정 자격을 규정한 대부분의 법에서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또한 여타 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소방방재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사유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로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4) '12.1월 기준, 다중이용업소(8,057개)가 입점한 2천㎡~5천㎡ 건축물은 약 5,843개(단란주점 983, 유흥주점 2,766, 영화상영관 35, 비디오감상실 105, 노래연습장 3,162, 산후조리원 169, 고시원 735, 안마시술소 102)

415) 다중이용업소(191,871개, '12.1월 기준) 화재(5,181건)는 전체 화재건수 대비 1.8%이나 인명피해 점유율은 3.2%로 1.8배 높음

416)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풍수해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4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손해평가인 결격사유(1호~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옥상수조⁴¹⁸⁾ 설치 면제대상 중 해석상 마찰 우려가 있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을 삭제(강화)
 -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면적(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 계산 시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을 제외하던 예외조항 삭제
 - 감시제어반의 기능 중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상전원의 공급여부와 예비전원의 확보여부 기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삭제
 -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설치목적이 다르므로 설비 전반을 제어할 수 있는 감시제어반에서 비상전원 공급여부와 제어반 자체의 예비전원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옥상수조 면제사유인 ‘옥상이 없는 건축물’은 해석이 모호하여 비상시 펌프정지 등의 경우 2차적 화재방어 대책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옥상수조 및 비상전원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소의 비용증가(참고2)가 예상되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근린생활시설·생활형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5개(기존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을 수조에 확보(강화)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 대상과 규모면에서 차이가 없는 시설에 대해 수원의 양을 확대
- 근린생활시설·생활형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되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 경우 충압펌프⁴¹⁹⁾ 설치

418) 가압송수장치(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자연낙차에 의하여 옥내소화전 방수구로 소화용수가 방수되도록 소방대상물의 옥상에 설치(법정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별도 설치)

419)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호구역⁴²⁰⁾이 1,000㎡(기존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제어반 설치기준 마련
- 주차장에는 동파 우려가 있는 습식 이외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방호대상물(주차차량)에 적응성 있는 표준반응형 헤드⁴²¹⁾를 설치
-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인 경우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 송수구 설치 면제
- ☞ 생활형숙박시설·복합건축물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증가(시행령 개정, '13.1.9)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⁴²²⁾와 특성⁴²³⁾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일부 수용 하였고 신축건축물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옥상수조⁴²⁴⁾ 설치 면제대상 중 해석상 마찰 우려가 있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을 삭제(강화)
 -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면적(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 계산시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을 제외하던 예외조항 삭제
 - 감시제어반의 기능 중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상전원의 공급여부와 예비전원의 확보여부 기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 삭제
 -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설치목적이 다르므로 설비 전반을 제어할 수 있는 감시제어반에서 비상전원 공급여부와 제어반 자체의 예비전원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옥상수조 면제사유인 '옥상이 없는 건축물'은 해석이 모호하여 비상시 펌프정지 등의 경우 2차적

42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간이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는 지역)

421) 방수량 : (간이헤드) 50L/min, (표준반응형헤드) 80L/min

42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과 규모면에서 차이가 없는 시설에 대해 수원의 양 확대(참고2) 및 펌프식 등 가압송수장치 설치

423) 주차차량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와 방호대상물이 동일하므로 표준반응형헤드 설치

424) 가압송수장치(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자연낙차에 의하여 옥내소화전 방수구로 소화용수가 방수되도록 소방대상물의 옥상에 설치(법정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별도 설치)

화재방어 대책이 미흡하고 비상전원 및 감시제어반 설치 관련 예외조항 삭제는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측면 등을 감안하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옥상수조 및 비상전원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소의 비용증가가 예상되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범위를 확대 규정(강화)
 - (현행)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
 - (개정안)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 ☞ 청각장애인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시각경보장치 설치장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입법례⁴²⁵⁾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규정형식이 다의적이거나 포괄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시각경보장치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발생 수준이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옥상수조⁴²⁶⁾ 설치 면제대상 중 해석상 마찰 우려가 있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을 삭제(강화)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면적(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 계산시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을 제외하던 예외조항 삭제

4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426) 가압송수장치(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자연낙차에 의하여 옥내소화전 방수구로 소화용수가 방수되도록 소방대상물의 옥상에 설치(법정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별도 설치)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감시제어반의 기능 중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상전원의 공급여부와 예비전원의 확보여부 기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삭제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각 펌프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제외 대상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 있는 보일러실'을 삭제
 - ☞ 옥상수조 면제사유인 '옥상이 없는 건축물'은 해석이 모호하여 비상시 펌프정지 등의 경우 2차적 화재방어 대책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 감시제어반의 기능 강화, 보일러실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등 기타 사항의 경우 그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측면 등을 감안하면 필요성이 인정됨
 - * 해석이 모호한 '옥상이 없는 건축물' 조건을 삭제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예비펌프 설치 등 다른 조건을 갖출 수 있음
- 옥상수조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소의 비용증가가 예상되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강화되는 규제가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에 설치되는 소파·의자⁴²⁷⁾가 방염대상물품⁴²⁸⁾에 포함(시행령 개정, 2013.1.9)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해 방염성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수량을 60좌석으로 정함(신설)
 - ☞ 최소신청수량 제도는 현행 모든 방염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제도로 방염대상물품에 추가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파·의자에 한해 최소신청수량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소파·의자의 최소신청수량은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원활한 물품공급,⁴²⁹⁾ 방염대상물품의 품질관리노력 제고 및 방염성능검사의 효율적 수행⁴³⁰⁾ 등을 고려하여 정

427)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것에 한함

428)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에서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검사수량을 규정하고 있음

429) 최소신청수량 60좌석은 1개 영업장(규모 200㎡, 룸 6개 기준)에 설치할 수 있는 소파 및 의자의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파·의자가 포함(시행령개정, 2013.1.9)됨에 따라 소파·의자 제조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방염성능기준, ⁴³¹⁾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강화)
 - 또한,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에 대한 방염제의 적응성 확인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
 - ☞ 소파·의자가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됨에 따라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적응성 확인을 위한 방염성능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일본방염협회의 포장가구류의 방염제품성능 기준을 도입하였고,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측정방법은 합판, 섬유판, 목재 등에 사용되는 현행 방법과 동일
 - 방염제의 적응성 확인을 위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 및 기술심의회(소방산업기술원) 협의를 거쳤고, 부처협의 및 행정예고 결과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방염성능의 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파·의자가 포함(시행령 개정, 2013.1.9)됨에 따라 이들 물품의 방염성능기준⁴³²⁾, 방염성능측정기준

430) 최소신청수량에 대해 샘플수량 검사 후 불합격시 최소신청수량 전체가 불합격되므로 제조업체로서는 품질관리노력이 더 제고되며, 성능검사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입장에서도 한 번 출장검사시 일정수량이상을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임

431) (담배법 연소시험)1시간 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버너법 연소시험)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 연소시험) 탄화길이가 최대 7.0cm 이내, 평균 5.0cm 이내일 것

432) (담배법 연소시험)1시간 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버너법 연소시험)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 연소시험) 탄화길이가 최대 7.0cm 이내, 평균 5.0cm 이내일 것

및 시험방법을 정함(강화)

- 인테리어필름과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과 현장방염처리물품(합판, 목재 등)에 대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
 - ☞ 소파·의자가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됨에 따라 소파·의자의 방염성능기준,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이 필요하며,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의 방염성능측정방법은 합판, 섬유판, 목재 등에 사용되는 현행 방법과 동일하고,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은 현행 선처리물품⁴³³⁾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시험방법을 준용⁴³⁴⁾
 - 방염성능기준,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 기술심의회(소방산업기술원) 협의를 거쳤고, 부처협의 및 행정예고 결과 이견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비상콘센트설비⁴³⁵⁾를 설치⁴³⁶⁾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비상전원설치대상 확대(강화)
 -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면적(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 계산시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을 제외하던 예외조항 삭제
 - ☞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시 이견제시가 없었고, 강화되는 내용이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되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기 개정('13.6.10)된 내용으로 규제비용 또한 미미⁴³⁷⁾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3)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되는 물품

434) 현장에서는 실제 선처리물품의 시험방법을 준용하고 있어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는 측면

435) 소방관이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로써 소화작업 중 상용전원의 정전이나 상용전원의 소손으로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도 건물 자체에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아 소방대상물에서 소화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각종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436)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m 이상인 것에 설치토록 함

437)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이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참고2)「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이미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추가비용은 비상전원(발전기)과 비상콘센트설비 연결비용(연결 전선 1m당 약 5,200원) 정도 예상

(1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중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⁴³⁸⁾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에 단열처리하는 단열재의 내열성 기준(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불연재료⁴³⁹⁾’인 단열재를 사용)을 마련(강화)
- 옥상을 제외한 장소에 설치되는 외기취입구의 경우에도 옥상에 설치하는 외기취입구와 동일하게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토록 배기구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
- 제연설비의 제어반이 갖추어야 할 기능에 자체 내장된 예비전원(배터리)의 확보 및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
 - ☞ 제연설비 중 수직풍도이외의 풍도(수평풍도)에 내열처리하는 단열재의 성능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성능기준을 건축법령상의 ‘불연재료’로 하는 것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옥상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공기취입구의 경우에도 신선한 공기 취입을 위해서는 배기구 등과 이격거리가 필요하고 옥상에 설치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피규제자의 혼선 방지할 필요
 - 제연설비의 제어반 기능에 예비전원(배터리) 확보와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타 소방시설에는 갖추어진 기능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강화되는 규제가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14) 일몰도래 재검토형 규제심사

■ 심사내용

- 기술인력, 장비기준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438) 수직풍도(층간을 관통)이외의 풍도는 수평풍도로서 송풍기와 수직풍도를 연결할 때 및 층내에서 수평으로 설치. 풍도를 통해 제연구역에 공기를 불어넣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토록 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

439)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등을 말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 등의 용어를 준용하고 있음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장비기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 15개를 삭제하고 인력기준 중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므로 원안의결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성능위주설계 대상 소방대상물 범위 등을 규정한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 등으로 성능위주설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대상 범위 등 현행 규제를 유지할 필요
-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함
 - ☞ 풍수해보험 손해평가는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일정요건을 가진 사람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⁴⁴⁰⁾에 복합영상물제공업⁴⁴¹⁾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안전관리 강화
- ‘피난유도선⁴⁴²⁾’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 확대
 -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다중이용업인 영화상영관을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에 포함
 -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노래)의 다중이용업 추가는 타법에서의 업종 분류 변경을 반영⁴⁴³⁾하는 것으로서 현행 다중이용업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화재위험도 등에서 유사하므로

440)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주어짐

441)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비디오+게임+노래, 일명 멀티방)

442)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4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2.2.17)으로 현행 다중이용업인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등록하여 게임 또는 노래를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현행 다중이용업인 비디오물감상실업이 피난유도선⁴⁴⁴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이므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기본으로 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도 동 시설의 설치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신설 2, 강화 4)

■ 심사내용

-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⁴⁴⁵하여 방염처리 업무수행의무 위반으로 다른 자에게 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행정처분 근거 마련(강화)
 - ※ 방염처리업무의 관리강화를 위해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동법 개정안)
- 소방시설업의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마련
 - 현행 행정처분 근거조항(제9조 제1항)⁴⁴⁶에 제23호의2(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 ☞ 소방시설공사업, 설계업 등 다른 소방시설업에서는 기 규정된 사항으로 방염처리업의 경우에도 방염성능기준 미준수 등으로 다른 자에게 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은 하수급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소방안전을 저해하므로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유도를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한 측면⁴⁴⁷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규정하는 등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소방시설공사업에만 도급 규정(소방시설공사 도급은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던 것을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도 포함하여 도급 규

444)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영업, 고시원 등이 현행 설치대상

445) 현행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

446)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벌칙 및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성격상 개별사업법에서 규정할 사안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정을 개정⁴⁴⁸⁾하고, 저가 하도급 → 부실시공 →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한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교부,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 강요 금지 등 도급의 원칙 마련(신설)

☞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급시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급의 원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것으로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국민의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⁴⁴⁹⁾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⁴⁵⁰⁾ ③ 발주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⁴⁵¹⁾ 등을 신설(신설)

☞ 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은 유사 업종에서 기 규정된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 이견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의결

③ 발주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는 하도급계약자료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대상(개정안 제22조의4)에서는 공공기관으로만 규정되어 공공기관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계약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행정비용, 규제효과 등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이므로 공개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하도록 공개대상 계약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 하도록 개선권고. 또한 그 밖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자가 임의대로 판단하여 공개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없고, 다른 공개항목만으로도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할 때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기타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강화)

* 현행은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공사실적 등의 신고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허위자료 제출 시에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저해하는 측면

448) (개정안 제21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방염처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449)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4 등 다른 법령 조항을 준용하여 규정

450) 위의 각주와 동일

451) 공개범위(개정안 22조의4) :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를 권고('12.11)하면서 제시한 공개범위를 그대로 준용하여 규정

- ※ 공사실적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개정안 제40조 제1항 13의2)
-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법률에 자료제출 의무 미비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경력수첩 발급 근거와 함께 부정발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재근거⁴⁵²⁾를 마련(강화)
 - ☞ 자격수첩과 달리 경력수첩의 경우 법적근거가 미비되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경력에 따른 적절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함을 고려할 때 경력수첩의 부정발급 등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유사업종에서도 경력수첩 등 경력관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①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또는 배치변경 통보 위반, ② (하)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⁴⁵³⁾ 위반, ③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공사실적 등의 허위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근거 마련(강화)
 - ☞ 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의 전과정을 책임지는 감리원의 적정배치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변경) 통보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②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자 등 당사자 보호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
 - ③ 시공능력평가 취지를 고려할 때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 가지 모두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부처협 및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2년간 재발급 금지) 등

453) 계약 당사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 및 보관해야 함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1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소방산업공제조합⁴⁵⁴)은 자신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거나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도 기성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공사진행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계약의 경우 발주자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이 보증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공사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비협조적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소방시설공사의 규모(연면적), 층수 및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소방기술자 배치기준⁴⁵⁵)을 등급별(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및 소방기술인정자)로 차등화(강화)
- 연면적 5천㎡ 미만인 공사에 배치할 경우 소방기술자 1명당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공사업자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 현행은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만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5천㎡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 소방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한 것으로 공사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소방기술자 등급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및 (사)한국소방정책학회의 연구용역⁴⁵⁶)('11년, 한국소방시설협회 발주) 결과를 토대로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여, 시행 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4)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대여 및 투자, 소방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사업 등을 영위

455) 현행은 공사규모 등과 관계없이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자 인정 자격수첩을 받은 사람 중 1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만 규정

456) 소방시설업 발전방안으로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별 차등배치를 제시하여 소방시설공사업계에서도 소방기술자의 차등배치 필요성을 인정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100만원(현행 5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현행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신설)
- ☞ 동일한 구조·구급 허위신고에 대해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규정⁴⁵⁷⁾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위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감안할 때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치함이 타당하므로 비중요 규제요 원안의결

(2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⁴⁵⁸⁾의 본체 외면에 KS규격에 의한 방법(방청도료 KS M 6030)으로 방청도장을 하도록 구체화⁴⁵⁹⁾함(강화)
 - 이중벽탱크의 감지층(간극 0.1mm)에 설치된 누설감지센서 보호를 위해 누유검사관 하부의 탱크본체 외면에 2mm이상의 흠이 있는 보강판을 설치하도록 함
-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 수수료를 일부 인하⁴⁶⁰⁾하는 한편, 최소수수료⁴⁶¹⁾ 도입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수수료를 시간당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육 수수료를 별도로 정함
- ☞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본체 외면에 KS규격에 의한 방법으로 방청도장을 하도록 하는

457) (소방기본법시행령)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458) 저장탱크 내면(강철)과 외면(강화플라스틱)에 일정 간극을 두고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도록 한 탱크

459) 현행은 저장탱크 본체 외면에 감지층이 있도록 강화플라스틱을 파복하는 부분에는 방청도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

460) 중량(kg) 또는 내용적(ℓ)에 따른 수수료 구간 세분화(3구간→5구간)를 통한 수수료 인하 및 포대용기 수수료 인하

461) 소량 신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수수료가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13년 175,860원)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추가하되, 수수료 총액이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것은 기준이 과도하지 않고, 불량 도장으로 인한 주변 토양오염, 화재⁴⁶²⁾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반용기 검사수수료 개정안은 소량검사에 따른 현실적 문제⁴⁶³⁾를 고려하여 최소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고, 강습교육 수수료 인상안은 위험물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협의 및 기획재정부와 수수료 협의⁴⁶⁴⁾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협의 대상 추가([별표1] 2. [비고] 제1호)(강화)
 -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허가·승인 시 최초 허가·승인시 협의된 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 중 영구저류지 용량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재협의 하도록 함
 -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에 대한 협의 관련 규정 정비([별표1] 2. [비고] 제1호)
 - 사업부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협의토록 함
 - 의제사업 협의대상 규모 변경([별표1] 2.. [비고] 제4호)
 -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사업의 협의대상 규모를 현행 15만㎡ 이상에서 기본 협의대상 규모(5천㎡ 이상 등)로 변경
 -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74조)
 - 제6조제1항 및 별표1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범위 및 협의 시기의 적절성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도록 규정한 재검토일몰 조항 삭제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범위 및 협의시기 관련 재검토 조항 삭제(제74조) 및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선권고⁴⁶⁵⁾

462) 누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식이며 유증기가 발생할 경우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큼

463) 용인시 소재 검사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지방소재 운반용기 제작자로부터 소량(검사수수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도 존재)의 운반용기 검사 신청을 받더라도 검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출장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인력을 하루종일 투입하는 상황

464) 당초 행정예고안(3,000원/h → 5,000원/h)에 대해 교육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4,500원/h을,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4,000원/h을 요구하여 4,250원/h의 협의안이 마련된 후 기획재정부와 수수료 협의를 통해 4,000원/h 으로 조정

3. 경찰청

김하나 사무관

(044)200-2446

hana88@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1건의 법령에 대해 강화 1건 등 총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제391회 예비심사 (2013.10.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건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88조제4항, 별표 6, 강화)
 - 상위법에서 ‘교차로 통행방법(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위반 차량의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160조제3항)를 시행(13.11.23.)함에 따라, i)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시 6만원(승합차 기준), ii) 끼어들기 위반시 4만원(승합차 기준)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 ☞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20만원 이하)내이고,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태료 체계에 따라, 동일한 위법행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분(범칙금)과 그 규제 수준을 유사하게 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위험도가 비슷한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위반 사례(466)와 비교해도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적절하고, 이해관계인의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465) 규정형식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재검토조항 관련 시행령 일괄개정안과 일치
예시)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6)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11.12.9. 시행)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금액보다는 1만원씩 상향

4. 법무부

이아연 사무관

(044)200-2441 zinc0705@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변호사법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 심사	행정사회분과위 (2013. 9. 2)		
2.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 9. 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3. 9. 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3. 11. 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3. 11. 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 변호사법 개정안	본위원회 (2013. 11. 27)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8	강화 8 중요 1, 비중요 7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 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국무총리고시 제2009-1호, '09.12.3)에 따라 설정된 일몰

규제 중 금년도('13.12.31)에 도래하는 ‘법률구조법 시행령’ 등 총 3건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유지·폐지 등을 심사

☞ 3건 모두 규제유지·폐지 등에 원안동의

일몰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심사결과	
			부처의견	규개위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요건 및 제출절차 (3억원 이상 자산,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5명 이상 보유 등)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부실한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등록요건 등 규정 (관련기관 5년이상 종사자 보유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1, 5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절차 등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요건 및 절차 (신청직전 1년간 법교육 실적, 법교육 전문인력 1명 이상 상근 등)	법교육지원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제유지 재검토 3년	규제유지 재검토 3년

(2)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증인 등이 민감정보⁴⁶⁷⁾ 또는 본인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⁴⁶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와 같이 공증인이 공증사무 수행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467) 민감정보 : 범죄경력자료

468)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결혼이민자와의 혼인에 있어 진정성 및 정상적 결혼 생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강화(강화)
 - 부부간 기초적 의사소통 가능 여부 심사 규정 신설, 초청인의 가족부양능력 심사 강화, 빈번초청자 및 귀화자의 초청 제한
 - ☞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다문화가족의 결혼사기, 가정폭력, 이혼율 증가, 성매매, 위장·사기 결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입국 전 단계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심사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해외사례(영국, 네덜란드 등)를 감안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주⁴⁶⁹가 불법행위⁴⁷⁰를 한 경우에도 그 외국인을 초청한 초청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강화)
 - ☞ 외국인 사용사업주의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초청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주체인 사용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대상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법률 위임에 따라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자 중 법인사업자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로 규정(강화)
 -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자가 기존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로 확대
 - ☞ 기업의 어음관련 회계의 불투명성, 위변조의 위험 등 종이어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상 확대 필요성을 인정함. 자산총액 등의 기준(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 수 등) 중에서 어음 발행인·수취인·피배서인에게 가장 명확한 기준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

469) (현행) 초청인의 불법행위시에만 발급 제한 가능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초청인에게 초청된 후 불법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제재가 어려움

470) 금고 이상의 형 선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범칙금, 외국인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공금, 임금 및 수당 체불, 강제근로 등

어 규제 수단이 적정하며, 현행 발행의무대상자의 수(전체 법인사업자 중 6.3%)를 감안하였을 때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36.2%)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임. 전자어음 행위(발행·배서·결제)시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나, 종이어음 이용으로 인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감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의해 변제 요구행위가 중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 요구하는 경우의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마련(강화)
 - ☞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변제 요구시 이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제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제재방안과의 형평성⁴⁷¹⁾ 및 제재수단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형벌이나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하는 것이고,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비용명세서(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 교부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과태료(천만원 이하)를 마련(강화)
 - ☞ 비용명세서 교부⁴⁷²⁾ 의무(현행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 인정.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및 제재수단의 실효성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하고, 과태료의 수준도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변호사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변호사의 결격사유⁴⁷³⁾에 '징계로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면직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강화)

471) 폭행·협박을 사용한 추심행위시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변제요구 중지명령에도 반복적 변제요구시에는 형평성을 고려, 완화된 제재인 과태료로 규정

472)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실제 채권 금액을 초과해서 청구해서는 안 되며(법 제13조), 채무자는 채권추심 비용 확인을 위해 항목별 비용을 명시한 비용명세서 요청 가능

473) 현행은 검사가 탄핵·파면·제명 시 5년, 해임 시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음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현행은 탄핵·파면·제명·해임은 결격사유에 포함되나, 면직은 제외되어 이를 악용하여 현행 규정을 유명무실화할 수 있으며, 면직된 경우 '2년간' 변호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유사사례보다 완화된 규제임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공직에 근무하던 변호사 자격자⁴⁷⁴)가 공무원 재직중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위법 행위 시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징계처분 또는 퇴직한 자'에서 '직무관련성'을 삭제
- ☞ 공직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직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변호사 등록거부는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를 한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결격사유로 규정)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며, 등록거부 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규제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4) 판·검사 자격자,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변호사 시험 합격자

5. 국민권익위원회

이규삼 사무관

(044)200-2443 lks2010@pmo.go.kr

가.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3년도에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에 대하여는 1건은 개선권고, 4건은 원안의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본위원회 (2013.7.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비중요 1, 중요 3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3.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5 비중요 2, 중요 3

나. 201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신설)
 -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특정직무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및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자에 대한 과태료 부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과(당사자 1천만원 이하, 제3자 2천만원 이하)에게 과태료 부과

- ☞ 부정청탁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 유사 사례를 감안할 때,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금액 기준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중요과제로 원안의결

•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금지 및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금지(신설)

-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공직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이 받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자 등이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위반 시 관련된 금품가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 ☞ 법안은 처벌 예외규정(안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모호하여 구성요건 예측이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도 제재하여, 형법 등의 뇌물죄로 처벌하기 곤란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금품제공자에게 과태료수수금액의 5배 이하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 은밀화된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요과제로 원안의결

• 공직자의 특정직무 상대방과 공직자 가족의 거래제한(신설)

-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과 금전 차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

- ☞ 공사계약, 부동산 거래 등이 공직자 가족을 통해 우회적·편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공직자 가족의 거래제한 위반 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시 공직자에 대한 제재'(안 제32조제5항제2호)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수단을 마련토록 중요과제로 개선권고

• 신고자 보호 의무(신설)

-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보호조치결정 이행의무 부과, 신고자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금지

- ☞ 보호조치결정 및 신고자 신분공개 금지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 조치로서, 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국내외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에도 규제의 수준은 적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신설)
 - 정해진 기한까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⁴⁷⁵⁾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효적인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 부과 사유, 이의제기방법 등을 문서로 알리고 명시적인 불복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5) 보호조치결정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04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제1절 규제 일몰제 - 일몰규제 정비 690

1. 규제 일몰제 개요 690
2. 재검토형 일몰규제 근거법령 일괄정비 추진 691
3. 향후 추진계획 693

제2절 규제정보화 추진 694

1. 추진 배경 및 경과 694
2. 규제정보화 사업 내용 695
3. 향후 추진계획 697

제3절 행정조사 정비 698

1. 행정조사 개요 698
2. 행정조사 정비원칙 699
3. 2013년도 행정조사 운영 및 정비실적 700
4. 행정조사 정비 세부내용 700
5. 행정조사 시스템 구축 700

제4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701

1. 개관 701
2. OECD 국제회의 참석 701
3. APEC 국제회의 참석 704
4. 규제개혁 경험전수 706

제5절 규제영향평가 707

1. 개요 707
2.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709
3. 향후 계획 713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익을 주는
규제개혁백서

책임

규제개혁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제1절 | 규제 일몰제 - 일몰규제 정비

정재진 사무관

(044)200-2429 koreaijj@pmo.go.kr

1. 규제 일몰제 개요

가. 일몰제의 개념 및 유형

규제 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각의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미리 설정하고 규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및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이다. 규제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고, 노후규제 정비를 통해 행정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는 유용한 규제 품질관리기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는 모든 규제에 대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일몰제는 존속기한이 설정된 효력상실형과 일정주기로 재검토가 필요한 재검토키형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효력상실형은 계속 존속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자동으로 폐지되는 유형으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한시법에 근거한 규제 등 일부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재검토키형은 일정 주기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고, 기한도래시 존치 또는 폐지·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유형으로 현재 일몰규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나. 규제일몰제 운영 경과

규제일몰제는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고 초기에는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 적용근거 및 재검토행 일몰제 운영의 근거 미비로 활용이 저조하였으나, 2009년과 2010년 등록규제 7,000여건에 대한 전수검토를 통해 1,602건(재검토행 1,522건, 효력상실형 80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으며 기한도래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816건의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26건을 폐지하였으며 재검토 실익이 적은 223건은 일몰을 삭제하고, 567건은 일몰을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2013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재검토행 일몰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몰규제 근거법령에 대한 전격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2. 재검토행 일몰규제 근거법령 일괄정비 추진

가. 추진배경 및 목적

그동안 일몰규제에 관한 정보는 관보게재를 통한 고시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재검토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일몰제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향상하고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몰규제의 내용과 재검토행기한을 당해 법령에 직접 명시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개정 행정규제기본법(2013.8.17 시행) 제8조 및 19조의2는 규제의 재검토행기한을 당해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신설·강화규제 외에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일몰규제 근거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였다.

나. 법령정비 대상 및 추진방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는 일몰제 도입초기부터 당해 법령에 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해 왔으므로 정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법령정비는 네거티브 전환 검토규제 중 일몰설정 추진규제 748건 등 재검토행 일몰규제 총 1,814건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정비대상 일몰규제]

구분	일몰규제 정비 건수
정비대상	네거티브 관련 748건 및 기존 일몰규제 등 총 1,814건
법령별	법률 134개(규제 292건), 시행령 259개(687건)
	시행규칙 202개(573건), 고시 등 194개(262건)
부처별	국토부 398건, 환경부 289건, 식약처139건, 미래부 121건, 해수부 109건, 금융위 107건 등
주기별	2년 4건, 3년 1,751건, 5년 59건

일몰규제 근거법령의 정비는 법령 수준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부처의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일몰규제 근거법령 중 법률의 개정은 국회 심의를 고려하여 각 부처별로 2014년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개별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일괄개정을 추진하였다. 시행규칙 이하에 대해서는 각 부처 주관으로 추진하되 시행령 개정 일정과 같이 2013년 말까지 일괄개정을 완료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일몰규제 근거법령 정비 추진 방식]

법령	추진 방식	주체	비고
법률	개별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	각 부처	
시행령	관련 시행령 일괄 개정	국무조정실	
시행규칙·고시	관련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	각 부처	

다. 시행령 일괄정비 결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한 재검토형 일몰규제 관련 시행령의 일괄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이 2013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총 28개 부처의 259개 시행령에 근거한 687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이에 해당하며, 일몰주기는 3년이 6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금번 법령정비를 통해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에 근거한 재검토행 일몰규제]

구분	일몰규제 정비 건수
부처별	국토부 167건, 환경부 74, 산업부 54, 미래부 53, 금융위 44, 중기청 33, 교육부 27, 해수부 27, 기재부 25 등 총 687건
주기별	3년 668건(97.2%), 5년 19건(2.8%)
시행령 건수	국토부 42개 시행령, 환경부 26, 복지부19, 산업부 19, 미래부 15, 교육부13, 해수부 13, 중기청 12, 문화부 11 등 총 259개

3. 향후 추진계획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몰규제의 재검토키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폐지·완화 등의 개선조치를 하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 일몰규제 근거법률의 개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설·강화규제 심사시에도 일몰설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규제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2절 | 규제정보화 추진

안창민 사무관

(044)200-2406 cmahn@pmo.go.kr

1. 추진 배경 및 경과

규제개혁이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관리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규제와 관련된 정보나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필요한 규제 정보의 검색도 어려워, 규제관련 정보관리와 규제등록관리, 규제심사 등 규제개혁업무에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2008년 3월 규제개혁차관회의 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되어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08.4)하고, ISP사업발주 및 연공용역을 수행하였다('08.7~11)

이렇게 수립된 규제정보화 추진전략을 토대로 '0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09년에는 1단계 사업(2월~8월)으로 ▲규제심사지원시스템 ▲규제등록관리시스템 ▲규제과제관리시스템 등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0년에는 2단계 사업(4월~10월)으로 ▲부처자체심사시스템 구축 ▲규제건의관리시스템 구축 ▲규제정보포털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3단계 사업(3월~9월)으로 규제사무에 대한 업종별·활동별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등록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3년에는 규제관련 정보를 국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구축하였고, 행정조사 운영·정비내용에 대한 부처간 상시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처 행정조사 운영·정비실태의 실시간 확인·점검을 위해 ▲행정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험·검사·인증제도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규제정보화 사업 내용

가. 부처자체심사시스템

부처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검토, 상정, 심의 등 부처자체심사 전 과정의 온라인화하고 기관별 상이하게 운영되는 자체심사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양식의 표준화를 통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지원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였다.

나. 규제심사지원시스템

부처자체심사를 걸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분과위/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규제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규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규제심사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전산화하여 규제심사관련 자료와 심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난 심사정보 검색이 용이하고 관련 통계자료 제공 등으로 효율적인 심사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규제등록관리시스템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의 생성·변동·소멸과정 등 규제에 관한 정보를 DB화하고, 이를 검색어 입력을 통해 규제내용, 규제심사결과, 규제성격 등 다양한 검색 항목 제공과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규제에 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부수규제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존속기한이 미설정된 규제, 등록이 누락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단계부터 절차별로 규제를 관리하도록 하여 규제등록 변경사항 및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라. 규제과제관리시스템

매년 부처에서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라 발굴하여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 손톱 밑 가시, 경제5단체 건의과제 등 각종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등 과제의 종류별, 완료시기별 등으로 실적관리, 이행상태 점검, 과제관련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관리를 규제등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규제건의관리시스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온라인 규제건의와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된 오프라인 규제건의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건의된 규제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휴대폰과 메일 등으로 알려줌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관련한 규제건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한 대국민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였다.

바. 통합 규제정보포털

기존 규제정보포털(www.rrc.go.kr)을 통합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로 개편하여 국민에게 좀 더 다양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정보(852건), 손톱 밑 가시(334건), 네거티브 방식 기업규제 완화(1,650건) 등 규제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떤 규제가 신설되고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었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사. 규제통합정보시스템

법령 제·개정을 통한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법규도 이에 맞춰 제때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규제등록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앙부처는 소관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의 정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아. 행정조사시스템

행정조사 운영·정비내용에 대한 부처간 상시 공유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처 행정조사 운영·정비실태의 실시간 확인·점검 등을 위해 행정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부처청이 일선 현장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 및 행정조사 정비·개선 내용에 대한 상호 공유·확산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처소관 행정조사 760여 건과 정비실적 47건에 대해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다.

자. 기술규제정보시스템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규제중의 하나가 시험·검사·인증 등의 기술규제이다. 기술규제는 제품 안전·신뢰도를 높이거나 기업 활동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지만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경우는 국민·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법령에서 규정된 시험·검사·인증 등은 200여 개 이르고 있지만, 관련 정보공유와 상호인증 체계가 미흡하여 유사제도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중복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험·검사·인증제도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부처 공무원이나 규제심사자들이 업무에 활용하여 제도개선과 규제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국민·기업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3.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규제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해 규제개혁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 연계, 모바일 서비스 개시 등 국민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 행정조사 정비

나제순 사무관

(044)200-2445

shepherd7@pmo.go.kr

1. 행정조사 개요

가. 행정조사의 개념(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3조)

-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가안전보장, 국방, 조세, 형사, 근로감독, 금융감독, 공정거래 조사 등은 동법의 적용을 제외

나. 행정조사의 기본원칙(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등)

-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조사권 남용을 금지
-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자 선정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
- 법률근거 없이 행정조사 내용 공표 및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 법률근거 없이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행정조사 정보의 이용 및 타인 제공 금지
-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주기는 정기조사가 원칙
- 출석·진술 요구서, 보고·자료제출 요구서 및 현장출입 조사서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조사 정비원칙

가.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만 존치시키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행정조사 폐지

나. 행정조사기준 완화

- 행정조사 대상 업종별 성수기 등을 피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행정조사의 횟수, 주기 등을 완화·조정
-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
- 기술발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현장조사 및 서면에 의한 조사 등을 온라인 등에 의한 조사로 전환하는 등 조사방법 개선

다. 공동조사 대상 발굴 및 실시

- 기업 및 사업자 단체·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조사 대상이 되는 행정조사 자체 발굴
- 동일·유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간 공동조사 실시

라. 자율관리체제로의 전환

- 행정조사 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조사·신고하면, 이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기업의 행정조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확대·활성화

마. 행정조사 근거법령의 정비

- 행정조사의 근거가 원칙적으로 법령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상의 명확한 위임 없이 자의적, 편의적인 지침·계획 등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금지
- 개별 행정조사의 근거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

3. 2013년도 행정조사 운영 및 정비실적

2013년도에는 23개 부처에서 총 335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형별로 현장조사 228건(69%), 보고·자료제출 92건(28%), 시료채취 9건(2%), 출석·진술요구 6건(1%)이고,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59건, 농림축산식품부가 55건, 환경부 41건, 통계청 36건, 식품의약품안전처 32건, 안전행정부 14건 등이며, 이 중 47건의 행정조사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다.

4. 행정조사 정비 세부내용

- 기업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사대상·횟수 축소, 서류제출 면제 등 행정조사 완화·축소(36건)
 - * ▲ 농산물생산비 조사대상 농가 수 축소(2,800 → 1,860농가), ▲ 보훈대상자 취업 실태조사 대상기업(100인 미만 제외) 축소(14,279 → 9,345개), ▲ 발농업직불제 신청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표본조사(50%)로 완화,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서류제출 간소화 등
- 행정조사 관련 법적근거 및 원칙준수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8건)
 - *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자료제출 및 보고사유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점검시 조사기간 등 근거규정 마련
- 중복조사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동일·유사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6건)
 - * ▲ 화재발생시 신속대응 등을 위한 대학 연구실(실험실) 위치 및 화학물질 실태 조사시 소방안전 검사 병행 실시, ▲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시 거리에 따라 역학조사기관(산림청장, 지자체)을 지정하여 중복조사 방지

5. 행정조사 시스템 구축

행정조사 운영·정비내용에 대한 부처간 상시 공유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처 행정조사 운영·정비실태의 실시간 확인·점검¹⁾ 등을 위해 행정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부처청이 일선 현장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 및 행정조사 정비·개선 내용에 대한 상호 공유·확산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처소관 행정조사 760여 건에 대해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다.

1) 조사 대상 축소, 조사주기 완화, 부처간 공동조사 실시 등 행정조사 개선·정비 실태에 대해 연도별 관리 및 평가수행

제 4 절 | 규제개혁 국제협력

강보람 사무관

(044)200-2419 gelsomino@pmo.go.kr

1. 개관

규제개혁 국제협력의 가장 큰 부분은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의 현황과 추진성과를 정확히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외에 APEC 경제위원회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타 국제회의 참석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경험전수 및 선진국 규제개혁 경험공유 등의 대외협력 업무가 있다.

OECD 회의와 관련하여 규제정책위원회('13.4월, 11월)에 참석하였으며, 그 외에 APEC 경제위원회('13.6월), APEC 규제영향평가 워크숍('13.11월)에도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 소개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대외협력도 강화하여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체계 및 전략 등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였다.

2. OECD 국제회의 참석

가. 제8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2013년 4월 22~23일, 프랑스 파리)

2013년 4월 22~23일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을 논의하고, OECD 회원국의 규제성과 측정체계 개발, 러시아 OECD 가입심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논의

- OECD 사무국은 2012~2014년 규제정책위원회의 새로운 논의주제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을 제시하였음
 - 회원국들은 세계 전반적인 경제위기와 국가적 예산 제약 하에서 포용적 성장이 중요한 이슈임에 공감하고 규제개혁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각국(EU, 미국, 일본)의 규제개혁과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
 - 규제는 지지를 유도하고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중요 이슈로 다뤄짐

(2)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모범관행 논의

- OECD 사무국은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배경 및 원칙을 소개하고 국제모범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향후 절차를 제시
 - 참가국들은 규제 거버넌스의 국제 모범관행 확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원칙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사무국은 온라인 상으로도 2013년 6월 30일까지 논의와 의견 공유를 지속하여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 원칙에 대해 승인할 예정임을 언급

(3) 콜롬비아의 규제성과 평가에 대한 논의

- 콜롬비아는 규제 품질 제고와 규제 간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시도해 온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및 OECD 사무국이 대표로 논의
 - 콜롬비아의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성과를 고려하여 규제 정책과정을 표준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법률적 분야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됨

나. 제9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2013년 11월 12~13일, 프랑스 파리)

2013년 11월 12~13일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을 논의하고, OECD와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논의

-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을 새로운 이슈로 제시함에 따라, 금번 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와 주요 기제’를 중심으로 논의
- OECD 사무국은 규제개혁의 핵심 기제에 관한 국가별 사례를 발표하고, △ 규제개혁 행위자 확대, △ 참여와 지원의 확보, △ 기업협력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
 - 회원국들은 경제위기와 국가의 예산제약에서 포용적 성장이 중요한 이슈임에 공감하고 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 업무 총괄하게 하고, 규제 심사를 확대하는 등 자국의 노력을 소개
- 한국 대표단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5년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을 소개하면서 주요 정부정책과의 통합·조정을 강조
 - 특히, 규제는 지지를 유도하고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중요 이슈로 다뤄짐

(2) 러시아의 OECD 규제정책위원회 가입 절차에 대한 논의

- 러시아의 OECD 가입 여부는 규제정책위원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서 회원국 간에 이견이 많은 상황임
- OECD 사무국에서는 ‘공공 거버넌스 위원회’에의 가입과 ‘규제정책 위원회’에의 가입 절차를 분리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 사무국에서 세부 사항을 사전에 전달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함에 따라 대다수 회원국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다음번 회의로 연기됨
 - 회원국 간에 이견이 많은 만큼, 러시아의 OECD 가입 안건은 OECD의 관련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평가됨

3. APEC 국제회의 참석

가. APEC 경제위원회(2013년 6월 29~30일, 인도네시아 메단)

2013년 6월 29~30일 개최된 APEC 경제위원회에서 주요 회원국들이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고, 규제 관련 국제협력 방안 및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FoTC

- 일본은 APEC 신구조개혁(ANSSR)이행에 대한 기여방안으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동 FoTC 참여국들은 규제개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
 - 인도네시아는 분야별 규제개혁 증진을 위해 다른 포라(forum)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일본 및 EC 의장은 이에 동의를 표함.

(2) APEC 경제정책보고서(AEPR) 작성

- 금년 경제정책보고서(AEPR 2013) 작성 관련, 대만은 회원국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보고서 작성 일정 계획을 안내
- 2014년 경제정책보고서(AEPR 2014) 작성 관련, 미국은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를 위해 ① 모범규제관행 통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single on-line location for regulatory information) ② 기존 규제에 대한 평가 및 검토(reviews of existing regulations) ③ 사전 규제 예고제(regulatory agendas)를 제안하고 동 체계에 따라 경제정책보고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을 표명
- 2015년 경제정책보고서(AEPR 2015) 주제 선정 관련, EC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2014년 EC1까지 의견 제시를 요청함.

(3)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s) 이행

- 러시아는 'APEC-OECD Web Portal'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멕시코는 규제 및 규제영향평가(RIA)의 질적 제고, 투명성 및 경제성장 증진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워크숍 개최계획을 보고

(4) 정책토의 :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 회원국들은 ① 녹색 투자 부문의 규제개혁 ② 지역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 토의
 - 녹색 투자 부문의 규제개혁과 관련, 일본은 규제개혁 관련 3가지 정책 우선순위 분야 (녹색투자, 중소기업, 혁신)에서의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모범규제관행(GRP) 및 APEC 신규조개혁(ANSSR) 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
 -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관련, IMF와 ABD는 역내 경제가 여타 지역보다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을 평가하고, 내년 역내 경제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또한 역내 동반성장을 위해 인프라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함.

나. APEC 규제영향평가 워크숍(2013년 11월 7~8일, 멕시코 시티)

2013년 11월 7~8일 멕시코 COFEMER(규제개선 연방위원회, The Federal Commission of Regulatory Reform) 주관 하에 15개 회원국 참여한 APEC 규제영향평가 워크숍에서 기업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규제영향평가의 방법론적 논의

- 규제영향분석은 ‘문제정의 → 정부개입 정당화 → 규제대상 설정 → 대안(alternative) 모색 → 규제 필요 시 영향분석(비용편익분석, 대안 비교) → 규제집행 및 평가’ 과정으로 이뤄짐
 - 회원국들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실증적이고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규제 및 그 대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동의
 - 다양한 통계적, 기술적 기법을 도입하여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산출할 필요

(2) 분야별 논의 : 경제적 규제 및 사회적 규제 영향평가

- 경제적 규제 및 사회적 규제 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토의를 통해 회원국간 공유할 수 있는 모범사례 발굴
 - 경제학, 통계학적 기법을 활용한 전문적인 영향평가 방법 소개

(3)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

-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기법의 활용방안을 향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를 희망함
 - 다만 규제영향분석의 결론은 간결, 명료하면서도 실증적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데 동의
-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분석의 결과도 정당하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함
 - 계량화되지 못하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이 규제영향분석에서 간과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

4. 규제개혁 경험전수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규제개혁 경험공유를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목표·추진체계·주요사례 등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였다.

또한 2013년 12월에는 호주 캔버라를 방문하여 호주의 규제개혁 체계, 규제영향분석, 성과평가체계 사례 등을 공유하고 규제개혁 당국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규제개혁 경험 공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절 | 규제영향평가

김준호 연구관

(044)200-2454 junkim@pmo.go.kr

1. 개요

가. 규제영향평가란

- 규제 도입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편익, 적합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선택·제시토록 하는 등 합리적 규제행정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중 심층분석이 필요한 경쟁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인증 중복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²⁾을 통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

나. 법적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또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3개 분야³⁾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다. 영향평가 조직

-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⁴⁾」에 근거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

2) ① 경쟁영향(공정거래위원회), ② 중기영향(중소기업청), ③ 기술규제영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3) ①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②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③ 기술규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

4)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2013.4.15)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 실시

-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위) :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청) :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부) :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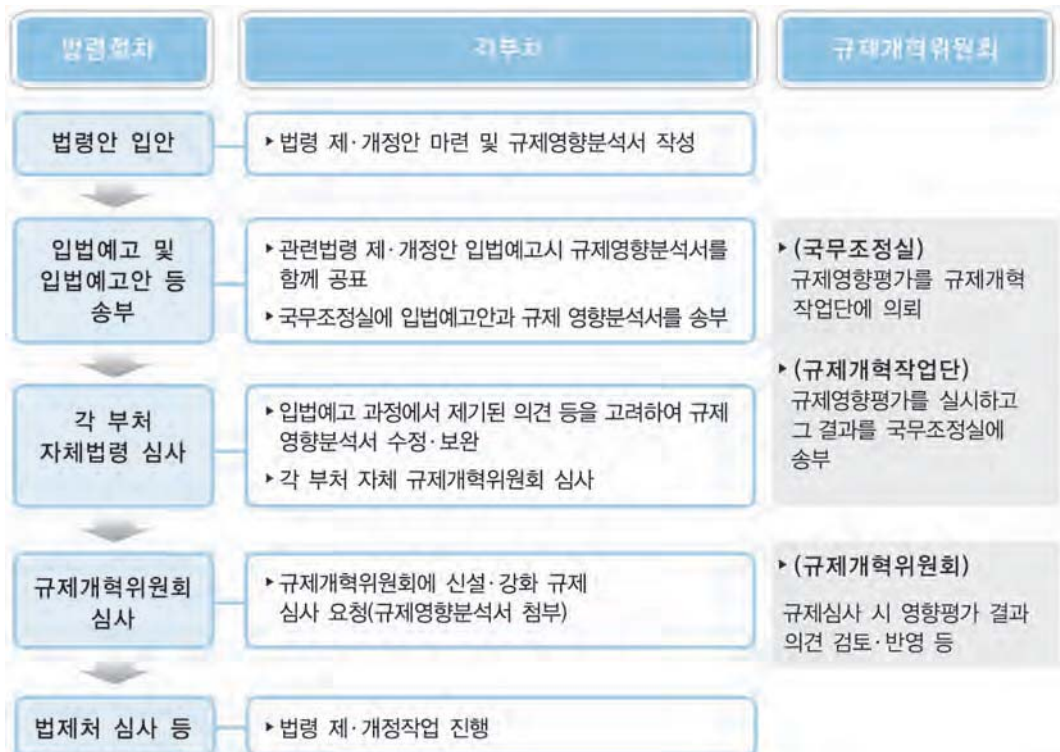
라. 영향평가 절차

-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로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가 접수되면 규제개혁작업단에 규제영향평가를 요청·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심사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

* ① 규제심사 의뢰(부처 → 국무조정실), ② 평가의뢰(국무조정실 → 작업단), ③ 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④ 검토의견 제출(작업단 → 국무조정실), ⑤ 규제심사(국무조정실)

-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별 역할]



2.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가. 경쟁영향평가

(1) 경쟁영향평가란

-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이미 도입한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말함

(2) 추진경과

-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
 - 2007년도에 경쟁영향평가 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
-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토록 제도화
- 2010년 10월 OECD 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 운용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

(3) 경쟁영향평가 목적

-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

(4) 경쟁영향평가 대상

-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5) 2013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 국무조정실은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16개 부처(청)의 272개 법령(시행규칙, 고시, 지침 포함) 590건의 경쟁영향평가를 요청하였으며,
 - 작업단은 585건의 경쟁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총 15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고 9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미미’ 의견 제시
-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한 15건 중 8건이 규제조정실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됨(반영률 : 53.3%)

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란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14,177건(’13.6월 기준) 중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전체의 58.5%인 8,291건

(2) 추진경과

- 2008년 8월, 6개 부처합동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차 회의 시 ‘중소기업제도 개혁 방안’ 보고
 - 신설·강화하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개정
- 2013년 6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영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개정

(3) 중소기업영향평가 목적

-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

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상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
 -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천억원 이상, 3년간 평균매출액 천 500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5) 2013년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에 23개 부처(청)의 308개 법령(시행규칙, 고시 포함), 667건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였으며,
 - 작업단은 667건에 대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총 39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함
- 검토의견 39건 중 19건은 규제심사 시 반영(반영 12건, 일부반영 7건)되었고 9건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남(11건은 규제심사 진행중)

다. 기술규제영향평가

(1) 기술규제영향평가란

- 기술규제⁵⁾영향평가는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

5)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2) 추진경과

- 2012년 7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
 -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
- 2012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심사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
- 2012년 12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신설

(3) 기술규제영향평가 목적

-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
- 불합리한 기술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각 부처의 기술규제가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하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발생을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

(4)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

- 기술규제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
 - 기술기준은 상품(농산품 포함)의 특성·공정·생산·유통·폐기 및 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 준수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강제되는 것
 - 시험, 검사, 인증 등은 제품, 시스템, 자격심사,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활동

(5) 2013년도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 국무조정실은 ‘기술규제개혁작업단’에 16개 부처(청)의 160개 법령(시행규칙, 고시포함), 291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요청하였으며,

- 작업단은 285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총 55건의 분야별 검토의견 제시
- 검토의견 제시 결과 규제심사가 완료된 42건(21.3%)은 의견수용 80.8%(반영 66.6%, 개선방안 마련 14.2%), 일부수용 7.1%, 이견조정 및 합의 2.3%, 수용곤란 9.5%으로 나타남

3. 향후 계획

- 효율적 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 체계,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영향평가의 문제점 발굴·개선, 통합 매뉴얼 개발, 교육 등 내실화 추진

가. 규제영향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주요 제·개정 법령 입법예고 前단계, 국조실-영향평가기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효율적 영향평가 수행

나. 규제영향평가 처리 절차의 온라인 체계 구축

- 규제영향분석서 등록·조회, 영향평가 요청·회신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온라인화하여 규제심사·영향평가 행정효율화

다. 규제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 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현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영향평가 문제점 분석·개선 등의 피드백 체계 기반 마련

라. 규제영향평가 주요 사항 보고 및 교육 실시

- 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주요사례 등의 반기별 규개위 보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홍보·전파 추진 (3개 분야 통합보고)
- 3개 분야 영향평가 매뉴얼을 제도개선시 통합하여 공동 제작·배포

05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3년 규제개혁 평가 716

1. 규제개혁평가 개요 716
2. 2013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717
3. 부문별 평가결과 717

제2절 2013년 규제개혁 평가 및 전망 719

1. 들어가며 719
2. 규제개혁 내용 측면 720
3. 규제개혁 시스템 측면 725
4. 결론 731

제3절 2014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732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732
2. 중점 추진분야 733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주는
규제 개혁 백서

소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민의 삶을 챙기고
나라의 살림을 챙겨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며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제1절 | 2013년 규제개혁 평가

김유일 사무관
(044)200-2452 enogengi@pmo.go.kr

1. 규제개혁평가 개요

매년 자율적, 적극적,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는 규제개혁 뒷받침이 필요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 중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3개 기관(통계청, 병무청, 권익위)을 제외한 3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33개 기관의 1년간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부 단위(19개)와 청 단위(14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규제 수, 부처업무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 단위와 청 단위 내에서도 그룹핑하여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이행도/노력도/효과성으로 크게 나누어, 규제개혁과제 발굴노력 및 이행실적, 규제 개혁 관련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실적, 고객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계획과 집행보다는 국민 및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였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2. 2013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3년의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추진전략에 맞추어 5대 중점분야(‘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성장동력 확충’, ‘민생경제 안정 및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를 선정, 국정과제 이행에 규제개선이 필수 요소인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각 부처가 총 852개의 규제정비종합계획 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와 직결되거나 다수부처 관련 과제는 국조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점 개선타기 위하여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손톱 밀 가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하였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로 불합리한 규제 형성을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총 1,200건을 심사, 중요규제 163건 중 101건(61.96%)을 개선 또는 철회권고 했다.

3. 부문별 평가결과

■ 계획 단계

2013년 내수시장 위축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상의 애로 및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정비종합계획 과제(852건), 손톱 밀 가시 개선과제(325건), 네거티브 규제정비 과제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였다.

국민의 규제개혁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전문연구기관 의뢰, 여론조사 실시, 경제단체 건의, 민원·언론보도 분석 등 과제발굴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부처가 규제개혁과제 발굴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완책을 함께 마련·시행하고 있다.

■ 집행 단계

불합리한 규제 형성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 규

제5장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개혁위원회는 총 1,200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63건의 중요규제 중 101건 (61.96%)에 대해 철회·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각 부처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율도 평균 14.7%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표 및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보도자료 배포, 기자 간담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주요 규제개혁과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동영상·인포그래픽이 결합한 멀티미디어 보고서 제작, 팟캐스트 방송, 특별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로고·캐치프레이즈 제작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주요 사례

- ‘농축산물 유통 규제개선’에 대해 대책발표 이전 장관 기자 간담회·현장 방문 실시, 대책발표 이후 TV 인터뷰·특별 홈페이지 개설 등(농식품부)
- 대한변리사회 등 규제개선 설문조사 실시, 특허청 팟캐스트 방송, 동영상·인포그래픽이 결합한 멀티미디어 보고서 제작·배포 등(특허청)
- 보건복지분야 주요 규제개선사항을 ‘알랑가몰라’ 만화책으로 제작하여 배포, 정책고객 26만명에게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복지부)

■ 산출/결과 단계

2013년 규제개혁 만족도는 67.9점으로 2012년 조사결과(69.4점) 대비 1.5점 하락하였다. 대상별로는 전문가의 만족도가 71.9점으로 일반국민(65.7점), 내부고객(69.0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별 연도별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11	'12	'13	'12년 대비	'11	'12	'13	'12년 대비	'11	'12	'13	'12년 대비	'11	'12	'13	'12년 대비
전체	65.0	67.6	65.7	▼1.9	72.6	73.1	71.9	▼1.2	64.1	68.7	69.0	▲0.3	67.2	69.4	67.9	▼1.5

제2절 | 2013년 규제개혁 평가 및 전망

이혁우 배재대 교수
(042)520-5982

1. 들어가며

2013년,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다양한 규제개혁이 시도되었다. 규제개혁은 140개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중요한 정부 어젠다로 채택되었다. ‘손톱 및 가시’로 대두되는 기업현장의 규제애로가 적극적으로 발굴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과중한 규제부담이 규제형평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했다. 규제전반에 네거티브 접근의 보편화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은 국내·외의 각종 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2012년의 19위 보다 6단계 하락한 점수이다. 그런데 정부규제 부담은 95위, 규제개선을 위한 법체계의 효율성은 101위이다. 재산권 보호는 55위이고 창업 시 행정절차의 수는 30위, 창업 시 소요시간은 25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89위, 통관절차 부담은 49위, 증권거래 관련 규제는 94위이다. 규제관련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가 국가경쟁력 총평가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에 비해 규제개선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인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에 대해 종합만족도 점수 67.9점(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에 체감하는 규제부담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등록규제에 입각한 양적 규제관리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규제개혁의 성과가 실제 국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주목한 질적 규제관리로 일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년 추진된 각종 규제개혁 어젠다의 성과를 살펴야하고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시스템 설계도 고민해야 한다.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규제의 특성상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과 갈등, 설득에도 관심

을 가져야 한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고에서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방향성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2. 규제개혁 내용 측면

가. 신설·강화규제 심사

(1) 성과

2013년,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위해 총 62회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중 분과위원회는 40회, 본위원회는 22회가 개최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으로 보면 2011년의 68회와 2012년의 59회와 비슷한 수치이다. 다만, 심사규제의 수로 평가해 보면 2013년의 경우, 총 1,200건(중요규제 163건)을 보이고 있어 2011년과 2012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규제 수가 줄어든 원인은 정부의 규제신설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법안의 성립이 많아진데도 그 이유가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신설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근 정부의 우회입법과 그로 인한 졸속입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2011년 ~ 2013년)]

구 분	분과위	본위원회	소계
2011년	43	25	68
2012년	37	22	59
2013년	40	22	62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자료(2013)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규제 수(2011년 ~ 2013년)]

구 분	심사규제 수	중요규제	개선·철회권고(건)	개선·철회 권고율
2011년	1,271	264	139	50.2%
2012년	1,632	181	101	55.8%
2013년	1,200	163	101	61.96%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자료(2013)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율은 61.96%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규제심사를 통한 규제품질의 개선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들 규제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도입되었을 경우 초래될 수 있었던 사회적 부담과 비효율을 가정한다면 규제개혁에서 규제심사의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게 된다. 2013년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서의 중요한 규제심사의 성과와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에 대한 개선권고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영업 시간대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위법에서 '심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데 대해, 시행령에서는 오전 6시 이후에도 이를 포함시켰으나 이 시간대는 일출시간 및 대중교통 운행시간, 출퇴근시간을 고려할 때 심야로 보기 어려워 상위법 위임한계를 벗어날 소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과도한 규제부담의 완화 혹은 철회를 권고한 것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정하고 수행업무를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 종합분야로 구분하고 자본금 등의 등록요건을 정한데 대해 자본금 추가확보 부담에 의한 신규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종합분야의 3억원에서 2억원, 설계 및 용역분야 1억원에서 5천만원, 건설사업관리분야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개선 권고 한 것이다. 한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은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보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이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재산권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양도·상속이 허용되어온 2009년 11월 이전에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 양도·상속금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안 되고, 신규면허 금지 또는 신규면허에 대한 양도상속 금지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셋째, 규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권고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 신설한 것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대기오염(오존농도)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인체 위해성을 고려할 때 규제 필요성 인정하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 지정기준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누락되어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직전 사업연도 1년 미만 영업가맹점은 실제매출액을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

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정보제공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선권고한 것이다.

넷째, 획일적 규제를 탈피하여 피규제자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유연한 규제설계를 권고한 것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은 2년 이내로 하며, 기한연장은 등록기한을 포함하여 4년 이내로 한 데 대해 그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다만, 모집금액이 많거나 남북관계·국제정세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에 대한 고려 필요하여 사업목적, 외부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한 4년 초과 사업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그 사유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국인 투숙객 의무규정(50% 초과)을 설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국인 투숙객을 외국인 수에 비례하여 허용하는 문체부 방식은 호텔 영업 관리상 어려움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내국인 수용최대치(범위 : 연간 객실의 30~50% 이내에서 문체부가 정책적으로 판단)를 설정하는 방식이 예측 가능성 및 호텔 운영상 편익에 부합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2) 평가

그러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부처별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수행한 규제가 전체 심사규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제이다. 2013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수치상으로는 1,200건의 규제심사를 수행하였으나 이들 중 사실상 중요규제에 대해서만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규제는 부처의 자체규제심사 결과를 수용하는 형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처의 자체규제개혁위원회가 충분한 규제심사 기구로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규제심사에 상당한 공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그 성과는 가시적이지 못하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에 대한 규제심사의 방향성과 합리적인 규제의 개념, 사례 등에 대한 컨설팅과 세미나가 필요하다. 또한 부처의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그 내용 역시 공개하고, 매년 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단순히 부처가 제출한 신설·강화 규제를 놓고 그 문제점을 따지는 것보

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처에 합리적 규제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해야 할 것이다. 규제심사를 위한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지원과 조연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개별 규제의 특성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규제설계를 위한 규제대안의 설계도 협의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규제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노력이 반영되어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와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의 인적·물적 역량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은 제안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점검을 위해 최대한 많은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항목간의 복잡성과 중첩성, 공무원이 이해하기에 추상적인 항목의 존재, 규제유형에 따른 분석의 경중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안 그래도 어려운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자체를 형해화시켜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게 되는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가 원활한 규제심사를 충족할 정도의 깊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나. 기존규제 개혁

(1) 성과

기존규제 개혁을 위해 매년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계획을 세우고 이에 입각한 부처별 기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2013년 박근혜 정부 1년간의 기존규제 개혁은 ‘손톱 밑 가시’로 대별되는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이 대표적으로 추진되었다.

‘손톱 밑 가시’는 상반기를 중심으로 볼 때, 1월 말 304건, 3월 말 432건, 5월 말 297건 등 세 차례 걸쳐 총 1,133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했고 이 중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건을 개선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미용업에 포함되어 왔던 네일미용업을 분리함으로써 네일아트 및 메이크업 종사자의 독립적인 시장영역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독립적인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미용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네일업을 합법화시켰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그동안의 정부의 규제설계 관행이 원칙금지, 예외허용으로 정해지다 보니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시장에의 진입에 심각한 장애로 작동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즉

사회적 위해의 발생, 사회적 약자의 보호, 특정 경제주체의 불공정한 시장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내용만을 금지시키고 그 외의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전체(1,845건) 중 89%(1,650건)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 혹은 네거티브 규제 수준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는데, 개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상 등록제임에도 실무 현장에서 변형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던 폐수처리업에 대해 기술능력이나 시설 및 장비 등 법규에 명확하게 정해진 등록기준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등록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의료기기법의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일반인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할 때 별도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의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그 외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지방정부의 규제개선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이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의 위헌적인 규제가 지방정부 수준의 규제에서 상당히 존재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이들 지방정부의 규제는 정부의 등록규제에도 잘 포함되지 못해 관리상의 애로가 있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규제개혁추진단,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규제애로를 수시로 접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2) 평가

2013년, 기존규제 개혁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비판적 평가와 개선점도 부각된다.

먼저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국가정책의 입안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규제분야에서도 다수의 진입장벽과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양산되었으며, 이들이 기업들의 신규 사업 활동에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억제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일반국민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진입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감소,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제한으로 신규 사업과 투자의 지연, 하도급법으로 인해 하도급 시장 자체의 축소가 우려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규제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다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반국민은 물론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하도급자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연장선상에서 2013년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 규제개혁의 방향성이 중소기업 규제애로의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 지다 보니, ‘손톱 및 가시’ 제거와 함께 어찌면 이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으로 투자를 가로막고, 시장에 불합리한 개입을 하는 등 사회 전체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는 규제개혁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투자활성화 저해 규제, 각종 서비스산업 규제, 수도권 규제, 각종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2013년 후반기 이후에야 정부 어젠다로 적극적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통상 어느 정부이든 집권 초기 이해당사자간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그러나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핵심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개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서비스 사업의 경우, 매출 10억원이 증가할 때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16.7명인 반면, 제조업은 8명에 불과해 두 배에 이르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제도는 정치권의 의료민영화 논란과 경제민주화 논리에 막혀 18대 국회에서 폐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현황을 보면, 일자리의 70%, GDP의 60%가 서비스산업이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임. 택시와 식당 등 많은 서비스산업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낮으며, 의료와 교육 및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가 많아 자유경쟁을 할 수 없고 외국에 대해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규제의 개선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3. 규제개혁 시스템 측면

가. 규제개혁 추진체계

(1) 성과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의 개혁에 대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할 사무국으로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조정실을 두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체계 역시 일반적으로는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를 부총리로 승격하여 각종 경제정책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획재정부에서도 챙길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 2013년 들어, 정부에서 추진된 ‘손톱 밑 가시’ 발굴 및 개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행정규제기본법을 정비한 중소기업 규제형평제 도입, 규제비용총량제(2014년 현재 도입 고려 중) 등 다수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겸임)에서 추진하였다. 물론 기획

재정부에서는 네 차례의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개혁 법안의 추진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 2013년,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특징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된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의 분리라는 이원적인 체계를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규제개혁관련 정부조직을 슬림화한 것은 정부의 비효율을 해소하려 함과 동시에 경제분야를 직접 챙기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경제관련 규제개혁을 챙기도록 함으로써 규제개선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각종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조정하여 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2) 평가

2013년 박근혜 정부 1년차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그 성과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다.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의한 핵심규제의 개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상시적 규제개선과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한데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들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도록 기대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규제개선에 대한 자원의 집중과 적극성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에 소위 정권의 실세를 임명하고 매달 1번씩 규제개혁관련 실무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챙기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어려움을 겪었던 다양한 규제개혁과제가 해소될 수 있었으며 규제일몰제, 행정부담 감축 등의 중요한 규제개혁 이슈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데 반해 2013년 기획재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어젠다의 추진은 이런 적극성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정부 내 핵심규제 개선을 위한 개혁주체가 모호해졌다. 이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김대중 정부 시기의 규제개혁위원회 수준의 물적·인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사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의 경우, 매우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하는 루틴 한 기능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기획재정부를 부총리로 승격하고 이를 통해 각종 경제정책의 추동력 확보를 기대하면서 규제분야에 대해서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은 핵심규제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의도하였지만 규제개혁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국가재정, 공공기관, 거시경제지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하나로써 관리되는데 그쳤다.

정부 역시 이런 시행착오를 인식하여 2014년 1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였다. 그 운용의 성과는 향후 활동을 통해 평가해야 하겠지만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범정부적 체계를 집권 2년이 되어서야 갖추게 된 것이다.

2014년 이후,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규제의 특성상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체계를 시급히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방향을 보면, 규제 혁신은 규제총량제 실시 등 시스템 개혁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도록 하고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은 기획재정부가 맡기로 되어 있다. 또한 기업 현장으로 해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담당하는 등 역할도 분담돼 있다. 대통령이 분기별로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치적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 규제관리는 정부의 핵심 예젠다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강력한 정치력을 갖는 규제관리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의 규제관리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규제관리기구의 설립 혹은 기존 정부조직 중에 규제관리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것은 규제관리를 통한 노후가 구축되기 어려울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에 실패하는 부적절한 기구의 선택으로 규제관리의 실패가 유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는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처럼 규제개혁위원회를 위원장과 위원의 상임을 보장하는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그에 걸 맞는 권한을 부여해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규제개혁을 일관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규제관리의 대상과 범위

(1) 성과

2013년, 정부는 규제관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규제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관리는 규제등록제도의 운영을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로 등록하게 하고, 기존규제 역시 주기적으로 등록에서 누락된 것을 파악하여 이를 등록하도록 유도하였다. 2009년에 대대적으로 실시된 미등록규제의 발굴과 등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고시 수준의 규제, 지방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 고시와 지방정부 규제의 경우,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의 생성과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완전하게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특히 지방정부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등록하거나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문제규제를 발굴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외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법률 중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소관부처로 하여금 이를 등록토록 유도함으로써 규제등록제가 보다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규제등록제의 실시로 인해, 정부의 규제의 양과 질에 대한 현황이 주로 등록된 규제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규제등록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그러나, 정부의 규제관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시급하게 해소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등록제로 규제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등록된 규제의 수로 국가전체의 규제총량을 파악하고 그것이 증가하면 규제로 인한 불합리성의 증가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규제관리의 핵심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에 있다는 점을 볼 때, 등록된 규제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것 모두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뿐더러, 등록된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신설·강화규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 의해 그동안 등록에서 누락되어 관리가 되지 못하던 규제가 관리범위 안으로 포함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규제등록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관리가 규제의 총량관리에 중점을 둔 소위 양적 패러다임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규제품질관리, 즉 질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편,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품질관리는 규제관리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15대 국회 때 1,000건을 넘어선 의원입법안은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1만 건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정부입법안은 806건에서 1,466건으로 1.5배 늘었을 뿐이다. 이런 경향은 2013년에도 지속되었다. 반면,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에 의한 검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또한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제정, 혹은 전부개정 법률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의무적 강행사항도 아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의 합리성 검토가 정부입법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그 결과, 2013년 발의된 의원규제입법 513건에 대해 한국규제학회의 규제영향분석특위가 진행한 모니터링평가 집계 결과에 따르면 ‘규제 품질이 낮은 의안’들은 규제 신설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부작용, 현실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하면 학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이나 과외교사들에게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고 과외 교습이 정지된다. 그러나 한국규제학회는 “선행학습이 문제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여, 부모의 교육권이나 학원 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역시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한국규제학회는 “억지로 가격을 제한했다가는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법부의 법률제정과정에서 집행부인 행정부와 협의와 조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두 주체가 매우 긴밀히 입법과정에 참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의회의 입장이 주도적이고 행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과소하다. 의원의 형식적인 입법권이 강조되다 보니 입법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실질적 입법, 즉 규제 합리성검토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입법권의 침해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성립된 불합리한 규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정집단의 보호, 혹은 특정한 위기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도입한 규제가 의도치 않은 집단에게 강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2014년에는 이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공백의 상황을 국회 내에 사전적 심사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든, 입법 후 정부 내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할 장치를 두는 방식이든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 규제개혁도구의 정비

(1) 성과

2013년,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개혁수단 중 대표적인 것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와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술인증제의 합리화를 기한 것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여,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규제의 체감부담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업규모별 차별화된 규제부담을 측정하고 이를 규제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의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유연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규제적용의 차등화를 위해서는 규제기준의 차등화, 규제절차의 차등화, 규제시기와 주기의 차등화, 제제 및 관리의 차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술인증제는 그동안의 중복규제로 인한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정부의 인증제도는 법정 의무인증제도(강제인증제도)와 지정제도 등의 복수인정체계를 갖고 있어서 국가표준이 표준(KS)와 각 부처의 기술기준으로 각각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이 지켜야 할 인증관련 규제들이 증가하게 되어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양 인증제도 모두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기술인증제의 합리화는 이런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규제개혁수단과 관련해서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는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시스템이 규제관료의 유인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설계된 까닭에 규제개혁에서 규제관료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영국의 원인원아웃(OIOO: One In, One Out) 제도에서 착안한 이 제도는 규제부처가 새로운 신규규제를 도입할 경우, 그와 등가의 부담을 갖는 기존의 규제를 함께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규제관료는 최대한 규제부담이 덜한 신규규제의 설계를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등 규제개혁부서의 요청이 없더라도 평소, 스스로 기존 규제의 불합리성을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정부 내 규제비용의 측정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에서는 규제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이외의 별도의 규제비용과 규제분석을 위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조직들은 미국의 OIRA, 영국의 BRE 등 이미 규제관리의 선진국들에서는 당연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효과적인 규제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관리의 질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체계적인 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라도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와 더불어 규제비용분석 체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4. 결론

제도는 한 사회 내 행위주체 간 상호작용의 방향과 성과를 정해주는데, 이런 제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다. 좋은 제도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 국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를 더 낮게 다듬으려 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국가이다.

국가에서는 제도의 핵심이 바로 규제이다. 규제는 그 영향권에 있는 기업, 국민, 정부 모든 행위 주체에 의사결정의 기준과 제약점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다. 정부는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성원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규제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 규제관리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규제관리에 소홀하거나 실패한 정부가 좋은 정부로 평가받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규제관리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양적관리의 패러다임을 넘어 질적관리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규제품질의 점검과 분석, 평가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관료가 스스로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소관업무의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지침과 합리적 규제의 조건 등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규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규제관리체계의 정비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규제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규제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능력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외 정부별 규제개혁기구의 운영을 통해 이미 규제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긴 하다. 따라서 이들 역량을 한데 모으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규제관리를 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4년, 정부의 규제개혁은 이런 규제개혁을 둘러싼 문제점을 딛고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규제관리에 성공한 정부만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증거를 명심하면서.

제3절 | 2014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김유일 사무관

(044)200-2452

enogengi@pmo.go.kr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2013년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 외형적인 경제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업과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와 실질임금의 정체로 민간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비 부진에 따른 공급 정체로 인해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 생태계가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가치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4만불을 향해 퀀텀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규제개혁은 규제시스템 개혁,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개혁 및 공무원의 행태개선 등 실질적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일과성으로 추진된 건수 위주의 개혁이 아닌, 규제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다.

2. 중점 추진분야

■ 규제시스템 개혁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를 폐지(Cost-in, Cost-out)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계산이 어렵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등급'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규제비용분석 독립기구를 통해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을 엄격히 검증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맞춰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규제에 대한 절대량 감축을 위해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2014년 10%, 임기내 최소 20%를 폐지할 계획이다. '14년은 부처별 특성에 맞게 최소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2015년 이후에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감축할 것이다. 다만,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덩어리 규제 폐지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정부분 감축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창업·신산업 촉진, 신기술 분야 등 신설 경제규제에 네거티브 방식 및 일몰(효력상실형)을 적용하고, 미등록규제 정비를 위해 미등록규제 신고, 실태조사·등록 후 신고안된 규제는 실효화 조치 또는 효력상실형 일몰 설정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정보, 애로해결의 창(窓)을 규제정보포털로 일원화하여 기업애로·국민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 서비스산업 및 덩어리 규제 개선

현행 부처 단위의 부분적 접근방식만으로는 핵심 분야 덩어리 규제 해결 등 기업과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성과도출이 어렵다. 그간 서비스산업 규제 등 다수의 핵심 규제개선 과제는 이해집단간 대립 및 정부내 조정기능 미흡으로 추진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개선을 위해 먼저 5대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 업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旣 수립된 서비스분야 규제개선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고, 제조업 연계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내수활성화 촉진을 위한 추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식·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의 현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노동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환경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다.

■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지속 추진

기업·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기업 애로규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손톱 밑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기업 현장애로는 3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개선과제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확정·발표하여 건의기업 등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규제개혁을 위해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 지자체별 규제현황 파악·공표 등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과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해석 등 업무행태가 소극적인 경우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738

가. 행정규제기본법 738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752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일부개정 2013.5.24) 763

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68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770

가. 규제개혁위원회 770

나. 경제분과위원회 773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2013년) 775



제1절 |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가. 행정규제기본법

- ▣ 제 정 1997. 8.22 법률 제5368호
- ▣ 일부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 ▣ 일부개정 2005. 12.29 법률 제7797호
- ▣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 ▣ 일부개정 2009. 3.25 법률 제9532호
- ▣ 일부개정 2010. 1.25 법률 제9965호
- ▣ 일부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 ▣ 일부개정 2013. 7.16 법률 제11935호

제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3조(적용 범위)

-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4조(규제 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5]

제5조(규제의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7.16>
-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7.1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7.16>
-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7.16>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전문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3.7.16]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0조(심사 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11조(예비심사)

-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2조(심사)

-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

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14조(개선 권고)

-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5조(재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1.25]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제17조(의견 제출)

-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10.1.25>
 -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2. 삭제 <2009.3.25>
 -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7.16]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2조(조직 정비 등)

-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정 2010.1.25>**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10.1.25]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5]

제25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雇)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0.1.25]

제2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5]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5]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부 칙 <제5368호, 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1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法律 第4735號 行政規制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法 施行당시 既存規制의 自體整備에 대한 特例)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 施行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月 31日까지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既存規制의 自體整備에 갈음하여 이 法 施行당시 모든 소관 規制에 대한 年次別整備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整備計劃 및 그 施行 결과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條 (訓令·告示등의 再檢討)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 施行후 1년이내에 이 法 施行당시 施行중인 訓令·例規·指針·告示등에 規定된 規制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再檢討하여야 한다.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討 결과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지 아니한 訓令·例規·指針·告示등에 規定된 이를 지체없이 廢止하거나 關係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다른 法令의 規定”을 “다른 法令(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規定”으로 한다.

第42條중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62條第3號중 “制定 또는 改正”을 “改正”으로 하고, 同條第5號중 “行政規制”를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② 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調査·審査事項중 行政規制에 관한 法令·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規制改革委員會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할 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關聯資料와 함께 規制改革委員會에 移送하여야 한다.

부 칙 <제5529호, 1998.2.28>(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 行政規制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6條중 “總務處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⑥ 내지 <34> 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부 칙 <제7797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532호, 2009.3.25>(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9965호, 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11935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 일부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 일부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4호
- ▣ 일부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3.31)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① 삭제 <2006.3.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내용
 - 2. 위원회의 심사의견
 -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 사유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삭제 <2006.3.31>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외 점검·평가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5681호, 1998. 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436호, 2006. 3.31>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513호, 2006. 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2>생략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내지 <241>생략

부 칙 <제20724호, 2008. 2.29>(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 칙 <제24429호, 2013.3.2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으로 한다.

⑨ 생략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일부개정 2013.5.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1급 상당 고위공무원 이상인 관계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2.7.6. 개정)

제2조의2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08.10.2. 신설)

제2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은 관련 안건에 대해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13.5.24. 신설)

제3조(의안의 제출)

-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 2(중요규제등의 결정)

- ① 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2.7.6. 개정)
-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12.7.6. 개정)
 -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의3(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2.7.6. 개정)

-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경제분과위원회
 - 2. (삭제)
 -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

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08.10.2. 개정)

제6조(소관)

-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13.3.23. 개정)
- ② (삭제)
-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13.3.23. 개정)
- ④ (삭제) (’08.10.2.)

제7조(회의)

-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8조 (삭제) (’08.10.2.)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실의 직무) 규제개혁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08.10.2.)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12.7.6. 개정)

제5장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08.10.2. 개정)
-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08.10.2. 개정)

제14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08.10.2. 개정)

제15조 (삭제) ('08.10.2.)

제16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국무총리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08.10.2. 개정)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8.16]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8.16.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과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추진단에는 공동단장 3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 ② 공동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 ① 단장은 추진단을 각자 대표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추진단은 규제 개선의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의 개최)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00615호, 2013.8.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절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규제개혁위원회

회차	부처명	안건명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98회 (‘13.1.18)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병합심사)	의결	1	0	0	1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0	1	1	2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교육부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99회 (‘13.2.1)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300회 (‘13.2.15)	총리실	2013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의결	1	0	0	1
	문화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3	1	5
제301회 (‘13.2.28)	문화부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	의결	0	0	1	1
제302회 (‘13.3.15)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옴부즈만 운영성과 및 2013년 활동계획	보고	0	0	0	0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303회 (‘13.3.29)	국조실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보고	0	0	0	0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계속심사)	의결	1	0	0	1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계속심사)	의결	5	0	0	5
	국토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304회 (‘13.4.19)	국토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의결	0	4	0	4
제305회 (‘13.5.24)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회차	부처명	안건명	안건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06회 (’13.6.14)	산업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안	의결	0	4	0	4
	국조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계획안	보고	0	0	0	0
제307회 (’13.6.21)	국토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제308회 (’13.7.5)	권익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의결	2	1	0	3
제309회 (’13.8.16)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설치·운영계획안	보고	0	0	0	0
	국토부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고시) 개정안	의결	1	0	0	1
	국토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의결	2	0	0	2
제310회 (’13.8.30)	문체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2	0	2
	국조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보고	보고	0	0	0	0
	중기 옴브즈만	중소기업 옴브즈만 2013년 상반기 운영성과 및 하반기 활동계획 보고	보고	0	0	0	0
제311회 (’13.9.13)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312회 (’13.9.27)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의결	0	1	0	1
제313회 (’13.10.11)	규제개선 민관추진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보고	0	0	0	0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0	1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5	0	5
제314회 (’13.10.25)	안행부	기부금품의 사용 및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0	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0	1	0	1
제315회 (’13.11.8)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0	0	2
제316회 (’13.11.22)	국토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1	0	1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1	0	0	1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0	2	0	2

부 록

회차	부처명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17회 (’13.12.6)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2	0	2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4	0	5
제318회 (’13.12.13)	국토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3	0	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319회 (’13.12.20)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0	2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공정위	가맹사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4	0	5

* 개선권고 항목에 부대권고 포함

나. 경제분과위원회

한아름 사무관

(044)200-2414 hanarum@pmo.go.kr

회차 (일자)	부처	안건명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제457회 (‘13.2.1)	농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0	1	0
제458회 (‘13.2.28)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고시 등 개정안	2	2	0
제459회 (‘13.3.15)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2	0	0
제460회 (‘13.4.26)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0	1	0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0	1	0
제461회 (‘13.5.10)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2	0	0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0	1	0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	0	0
	산업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	0	0
제464회 (‘13.7.19)	국토부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고시 제정안	0	1	0
	미래부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0	1	0
제465회 (‘13.08.16)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0	1	0
제466회 (‘13.9.27)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3	0	0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0	3	0
제467회 (‘13.10.11)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0	2	0
제468회 (‘13.10.25)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0	1	0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3	2	0
	산업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1	1	0

부 록

회차 (일자)	부처	안건명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제469회 (’13.11.8)	국토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0	1	0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4	2	0
제470회 (’13.11.22)	기재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0	1	0
	산업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0	3	0
제471회 (’13.12.6)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0	1	0
	기재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0	0
제473회 (’13.12.20)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0	1	0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1	0	0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0	1	0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2013년)

송지영 주무관

(044)200-2437

yonha999@pmo.go.kr

회수	부처명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78회 (‘13.1.4)	문화재청	재검토행 일몰규제 1건	의결	1	0	0	1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0	1	1	2
479회 (‘13.1.18)	보건복지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0	2
480회 (‘13.2.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2	1	0	3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개정안	의결	0	1	0	1
481회 (‘13.2.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결	0	1	0	1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2	0	2
482회 (‘13.2.2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483회 (‘13.3.15)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개정안	의결	0	0	1	1
484회 (‘13.3.2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485회 (‘13.4.1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2	0	3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0	0	2
486회 (‘13.4.26)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487회 (‘13.5.1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의결	1	0	0	1
488회 (‘13.5.2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1	0	5
	안전행정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0	2	0	2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0	0	1

부 록

회수	부처명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89회 (‘13.6.21)	안전행정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21건	의결	13	5	3	21
	고용노동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31건	의결	11	16	4	31
490회 (‘13.7.5)	문화체육관광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6건	의결	4	2	0	6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의결	0	1	0	1
	교육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35건	의결	29	4	2	35
491회 (‘13.8.30)	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소방방재청	재검토형 일몰규제 3건	의결	2	1	0	3
	여성가족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9건	의결	4	5	0	9
	보건복지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10건	의결	6	3	1	10
	기상청	재검토형 일몰규제 1건	의결	1	0	0	1
	법무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3건	의결	3	0	0	3
	고용노동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3건	의결	2	1	0	3
492회 (‘13.9.13)	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0	1	2
	보건복지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29건	의결	18	11	0	29
	통일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4건	의결	3	0	1	4
	환경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36건	의결	17	19	0	36
	외교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1건	의결	0	1	0	1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493회 (‘13.9.27)	해양경찰청	재검토형 일몰규제 4건	의결	2	2	0	4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2	0	0	2
	국가보훈처	재검토형 일몰규제 14건	의결	6	8	0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재검토형 일몰규제 24건	의결	11	13	0	24
	경찰청	재검토형 일몰규제 37건	의결	30	6	1	37
494회 (‘13.10.11)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1	0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61건	의결	43	15	3	61
495회 (‘13.10.25)	안전행정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496회 (‘13.11.8)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0	0	2

회수	부처명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497회 (’13.11.22)	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	1	0	0	1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의결	0	1	0	1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498회 (’13.12.6)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499회 (’13.12.20)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2013년도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14. 3.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집·인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